釜山史料叢書11

국역왜인구청등록(Ⅰ)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왜인구청등록 전 8책(仁祖 15년 1637 ～ 景宗 4년 1724) 중 제 1책(1637. 3 ～ 1653. 2)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외교 및 무역과 관계되는 공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을 하되, 외교 및 무역 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본디 조선시대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번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는 다른 것이 있으나,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본 대로 살려 썼다. 다만 필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썼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1637. 3 ~ 1653. 2)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13

□ 丁丑(1637년, 仁祖 15년)

○ 3월 13일 戶曹에서 對馬島主가 요청한 求請雜物에 대한 處理를 논함 /33
- 倭譯 洪喜男 下去時 留館倭와 問答措辭를 持授해 보냄

○ 윤4월 2일 對馬島主差倭 定左衛門 出來 /34
- 島主의 大君前禮單所用之物 求貿를 開市之日에 私相賣買토록 開論함

8일 藤智繩의 歲賜米는 橘智正보다 적게 20石 정도를 題給할 것 /35
- 倭人求請鷹子 중 未收分은 秋鷹産出을 기다려 즉시 輸送할 것

○ 5월 30일 對馬島主의 要求대로 答書를 改撰해 보낼 것 /37
- 倭人求請馬는 司僕寺에서 揀擇下送케 할 것

○ 6월 1일 倭人求請馬 處理는 甲子年例대로 施行할 것 /37

22일 倭人求請馬는 司僕寺에서 別定 養理馬하여 下送케 할 것 /38

○ 8월 10일 東萊府使에게 對馬島 牛에 대한 求貿 周旋을 指示 /38

22일 倭人求請馬 중 倭人이 下買還授 上送한 2匹은 戶曹에서 處置 /39

○ 11월 6일 鷹蓮 等의 難買로 인한 代官倭의 행위를 對馬島主에게 통보키로 함 /39

8일 代官倭 행위에 대한 對馬島 통보를 중지하고 自京下送할 것 /42

9일 倭人求請馬는 戶曹에서 給價買得하여 下送할 것 /43

○ 12월 7일 戶曹에 倭人求請馬 3匹 貿送을 催促할 것 /43

10일 倭人求請馬 自京下送을 保留할 것 /44

□ 戊寅(1638년, 仁祖 16년)

○ 3월 8일 關白前禮單所用雜物 貿去次 差倭 善兵衛 出來 /44
- 差倭 要求 關白前禮單所用雜物을 下送하여 東萊府使가 評價許貿케 할 것

○ 4월 1일 倭人이 求請한 各種 藥根 藥核을 마련해 줄 것 /46

6일 倭人求請의 藥根 藥核은 가을에 覓給할 것 /47

○ 5월 4일 關白前禮單所用雜物 貿去催促次 差倭 平成淸 出來 /48
- 唐貨 및 鷹蓮 等 難得之物은 覓給 不許
- 馬匹 魚皮 果實 黃鶯 등은 빨리 覓給해 줄 것

□ 己卯(1639년, 仁祖 17년)

○ 4월 9일 己卯條 特送船 및 歲遣船正官 一行이 出來하여 鷹蓮 貿得을 요청 /50
- 島主가 求貿하는 體大馬를 貿給해 줄 것

13일 己卯條 特送船 및 歲遣船正官 一行이 月羅馬 貿得을 요청 /51
- 慶尙監司에게 道內에서 求馬貿給토록 指示

○ 5월 18일 己卯條 歲遣船正官 一行 上船宴 設行 /52
- 差倭 入往時 貿得에 필요한 良馬 1匹을 미리 下送할 것

18일 倭人求請馬에 대한 慶尙監司 狀啓와 備局(備邊司) 回啓의 차이로 元回啓 改付標 指示 /53

○ 8월 16일 兩倭가 求請하는 物目을 謄書上送함 /53
- 非鄕産之物에 대한 譯官 等의 手本謄書
- 土産可給之物은 隨便覓給해 줄 것
- 差倭 藤智繩 別求請藥材物目
- 雜物求請 幷願貿物目

22일 差倭 求請物 중 難得之物과 厥數過多物은 量宣題給할 것 /57
- 倭人求請物目 중 減數物을 元單子에 改付標할 것

○ 9월 10일 差倭 求請物인 智母를 枯死시키지 말고 各驛替傳하여 東萊로 下送할 것 /57

14일 差倭 求請物인 石鱗을 各驛 傳送하여 東萊로 보낼 것 /58

26일 頭倭 平成及 出來하여 回答書? 催促 /58
- 朝鮮이 日本側에 要請한 軍器等物의 許貿事에 대해 日本側이 書契 要求

28일 軍器 許貿事에 대해 日本에 書契를 보내지 말 것 /60
- 東萊府使 交替로 回答書?가 늦어지자 前官之名으로 書送토록 指示

29일 差倭가 大君前獻馬匹 貿得을 催促 /60

- 差倭 求請馬匹은 兵曹所備馬 중에서 下送할 것

○ 10월 17일 萬松院 送便船正官 平成太 및 歲遣船과 差倭 平成政 일행 出來 /61
- 差倭가 大君分付로 朝鮮所産 藥材 蠶絲 錦? 等物의 貿得을 要請
- 中國物貨 絶乏으로 倭譯들에게 措辭防塞케 할 것
- 土産物은 依例許貿할 것

24일 日本側의 物貨換貿 要請에 대해 廟堂에서 兩量處置토록 할 것 /62

□ 庚辰(1640년, 仁祖 18년)

○ 3월 12일 庚辰條 歲遣船正官 橘成尙 一行과 島主差倭 平成規 出來 /63
- 差倭가 前日 求索한 藥材 貿去 要請
- 慶尙道 所産 藥材 若干을 論價相換함

19일 差倭가 朝鮮所産 藥材 書冊 駿馬의 求貿를 要請 /65
- 12律 鷹鵲方 等의 書冊은 朝鮮所有之冊이 아니므로 開論防塞할 것
- 馬醫書는 司僕寺 改刊本 2件을 下送할 것
- 駿馬는 秋成을 기다려 許貿하도록 開論할 것
- 藥材는 慶尙道에서 覓給해줄 것

22일 馬醫書 諺解本 2件을 入送할 것 /66

○ 5월 19일 渡海譯官 洪喜男 金龍行 手本內容 /66
- 對馬島에서의 滯留日程 및 倭人과의 問答內容 報告
- 日本側에서 朝鮮藥材의 優數許賣와 茶?燔造 및 鷹鵲方 入送 要請
- 日本側에서 聖廟 創建에 필요한 祭器 및 儀註 等物의 入送 要請
- 渡海譯官이 日本側에 軍器 若干物을 許貿 要請
- 茶? 燔造에 필오한 物力을 送給해줄 것
- 鄕藥材를 優數 贈給해줄 것
- 日本 聖廟에 필요한 儀註 및 祭器 見樣을 造給해줄 것

28일 日本側이 要請한 聖廟의 祭器 儀註 및 茶? 藥材 等을 許給해줄 것 /76

30일 對馬島主 求請物目에 대한 從不從分定 內容 /77

○ 8월 3일 對馬島主 求請 文廟祭器 및 祭禮圖式 儀註 等物을 下送할 것 /78
- 儀註等物을 보낼 書吏所騎馬를 題給할 것

○ 9월 21일 差倭 藤智繩이 對馬島主 求請物 朝鮮 鄕藥材 및 大君前禮物 換貿 要請 /78
- 難得之物外 可以應求者를 前例에 따라 京外에 分定하여 及期下送할 것
- 藤倭 求請物의 各道 分定數
- 差倭所求藥材를 加磨鍊하여 從優許貿할 것

○ 10월 18일 庚辰條 副特送正官 平智友에 대한 茶禮物를 釜山僉使가 設行함 /81
- 正官이 朝鮮藥材 廣貿와 茶椀燔造 畢役을 催促함
- 茶椀燔造 未畢役을 來年 봄에 즉시 收合工人하여 燔造해줄 것
- 副特送使正官이 올린 小紙謄書
- 交易物의 品質과 價格에 대한 對馬島主의 要求

○ 21일 差倭 藤智繩 特送正官 平智友와 倭人求請事項 및 求請物에 대해 論議 /85
- 求請藥材는 應給之數를 調整하여 明春에 措備輸給할 것
- 釜山城移館 要請은 不許함
- 彦三 彦滿에 대한 送船圖書를 前例에 따름
- 藤智繩에 대한 受職은 不許하고 公貿는 從略許貿할 것
- 藤倭所求藥材에 대한 應給之數 및 各道 分定數

26일 倭人求請馬 1匹은 慶尙道에서 貿送할 것 /91

○ 11월 20일 倭人이 求請한 藥材 活獐 駿馬에 대한 處理 /92
- 藥材는 分定各道에 輸送을 催促하고 駿馬는 慶尙道에서 覓給할 것
- 差倭 一行이 藥材 및 求請物의 許貿를 催促함
- 釜山城移館 및 彦三 彦滿 送船은 不許함
- 藤智繩에 대한 受職은 不許하고 若干 公貿易만 許諾함
- 藥材 許貿에 대해서는 決難多得之意로 措辭 回答할 것

○ 12월 14일 差倭 藤智繩이 彦滿 送船 및 藥材許貿를 催促함 /97
- 藤倭 求請藥材를 加磨鍊하고 前改目에 改付標할 것

□ 辛巳(1641년, 仁祖 19년)

○ 1월 4일 庚辰條 受圖書 萬松院送使正官이 書冊 4種과 朝鮮地圖의 覓給을 要請함 /100
- 東坡集과 剪燈新話는 許給하고 地圖之請은 防塞함

○ 8월 13일 館守倭가 島主의 要請으로 生獐 生雕 書冊 藥材 등의 貿得을 要請함 /101
- 島主 求請物의 從不從與否와 各道 分定數

○ 9월 20일 辛巳條 副特送正官 一行 出來하여 雄獐 生雕 書冊 藥材 등의 貿得을 要請함 /104
- 書冊중 吏文輯覽만 入送하고 求請藥材는 藥名 確認 후 從略許貿할 것
- 倭人求請 鄕藥材중 慶尙道卜定 五味子는 該司에서 極擇好品하여 下送할 것

□ 壬午(1642년, 仁祖 20년)

○ 2월 21일 平差 出來하여 大君生子致賀回答書契 및 權現廟 創建에 필요한 器物 要請 /106

- 大藏經 數百卷을 印送해 줄 것
- 香爐 燭臺 花甁 等物을 鑄給해줄 것
- 倭人 別求請物目을 적은 小紙 內容
  ・該曹에서 參酌措備하여 下送할 것
- 對馬島主處 回答書契 撰送 및 回禮之物 磨鍊 指示
- 對馬島主處 東萊府使 回答書契 撰送 및 回禮之物 磨鍊 指示
- 對馬島主處 釜山僉使 回答書契 및 回禮之物 磨鍊 指示

○ 3월 6일 平差가 三國之勢에 대한 書契의 成給 要請 /111

- 書契 要請은 開論防塞하고 權現廟에 보내는 御筆에는 「爲政以得」寶를 安送할 것
- 藤智繩이 求請한 藥材를 該司 및 慶尙道로 하여금 急速 措備케 할 것
  ・藥材 題給之數

○ 12월 4일 島主 求請雜物 및 書冊 藥材에 대한 處理 /114

- 四書大典 五經大典은 戶曹로 하여금 校書館에 給價하여 訪問 貿得토록 함
- 藥材 중 鄕藥材는 慶尙道에서 覓給토록 함
- 倭人求請別祿

□ 癸未(1643년, 仁祖 21년)

○ 2월 26일 信使迎候差倭 平成幸이 通信使員役數名錄 先送을 要求함 /116

- 差倭가 要求한 駿馬는 慶尙道에서 買給해줄 것

□ 甲申(1644년, 仁祖 22년)

○ 3월 25일 甲申條 歲遣船正官 一行 出來 /118

- 通信使禮單鷹子 致斃分에 대한 對馬島主의 代給 要求에 開論防塞 指示
- 島主 要請 書籍에 대해 校書館과 戶曹에 給價貿得 指示

○ 5월 21일 歲遣船正官 平成矩가 弊鷹에 대한 代給 및 要請書冊에 대한 貿得 催促 /120

- 求請書冊 중 可得之冊 3件을 貿得下送함

23일 新館守 平成倫이 出來하여 館舍修治와 釜山城移館을 要請함 /121

- 釜山城移館은 不許하고 館舍는 明年에 修改해줄 것

- 倭人이 求請한 良馬 馬鞍 白羊 等物은 慶尙道에서 覓給 許賣해줄 것

○ 6월 12일 倭館 館舍 改造는 상세히 摘奸후 處置할 것 /123
- 茶椀 陶造는 農閑期를 기다려 擧行하도록 譯官으로 하여금 開論케 할 것
- 良馬求請事는 戶曹로 하여금 前例대로 處置토록 할 것

○ 9월 18일 對馬島主가 求請하는 良馬 2匹은 慶尙道에서 求訪買給할 것 /124

□ 乙酉(1645년, 仁祖 23년)

○ 3월 9일 館守倭가 禽鳥 花卉 藥材의 求得을 要請 /125
- 禽鳥 花卉 중 慶尙道內 可得之物만 覓給할 것
- 藥材는 醫司에 覓送토록 할 것

20일 差倭 藤智繩이 日本內(耶蘇) 宗門之徒의 朝鮮 出來時 搜捕入送을 要請 /126
- 差倭가 要請한 朝鮮地圖는 不許하고 藥材는 參酌 磨鍊해 줄 것
- 求請藥材 및 求請雜物의 各道 分定數

○ 6월 9일 對馬島主 및 正官以下의 各道求請物 중 可得之物은 覓給해 줄 것 /129
- 島主以下 各種 求請物에 대한 題給與否의 各道分定數

□ 丙戌(1646년, 仁祖 24년)

○ 1월 8일 乙酉條 平義眞送使正官 平成久가 人蔘 10兩 求請과 虎豹皮 改給 要請 /131
- 虎豹皮는 改論還給하고 求請 人蔘은 이번만 勉給함

○ 4월 17일 丙戌條 歲遣第1船正官 一行 茶禮宴 設行 /133
- 島主 求請의 註解武經七書는 慶尙道에서 覓給할 것

○ 6월 17일 頭倭 六郎助가 求請한 執政求請物 ?子의 願貿를 許貿함 /134

○ 11월 14일 橘成稅가 求請한 藥材 중 慶尙道所産 鄕材는 覓給하고 難得之物은 措辭開論할 것 /135

19일 丙戌條 特送第1船正官 一行에게 路次宴 設行 /
- 平義眞送使 正官 平成滋가 求請한 人蔘 10兩을 上年例에 따라 題給할 것

□ 丁亥(1647년, 仁祖 25년)

○ 1월 12일 倭人에게 入給한 ?子의 同價木을 戶曹로 하여금 區處케할 것 /137

25일 問慰渡海譯官 李亨男 一行 回還 및 丙戌條 副特送正官 平成傳 일행 出來 /137

- 島主求請 馬上才馬을 許貿하고 藥材는 慶尙道 鄕材를 入給할 것

27일 馬上才馬를 別定理馬하여 各別護送할 것 /138

○ 4월 18일 差倭 平成幸과 丁亥條 歲遣第2船正官 藤成友 一行 出來 /138

- 差倭가 淸國之奇에 관한 朝廷書契의 成給과 判事輩의 下來를 催促함
- 倭人이 馬上才馬의 買得을 拒絶하여 還送함

○ 5월 9일 副特送正官이 要請한 馬上才馬의 他馬交換에 대해 擇送 指示 /140

12일 能走 馬上才馬를 收司로 하여금 擇送케 할 것 /141

○ 7월 11일 倭人 擇送된 馬上才馬의 買去를 拒絶하고 他馬 更擇下送을 要請 /142

- 馬上才可給馬를 更擇 覓送할 것

13일 馬上才馬를 理馬로 하여금 各別 護送케 할 것 /143

○ 9월 16일 頭倭 與三左衛門이 出來하여 藥材 38種을 비롯한 各種 物品을 要請 /144

- 求貿之物 중 土産易得之物은 覓給許貿하고 難得之物은 防塞할 것
- 倭人求請物目 및 應給之數와 各道分定數

○ 11월 23일 館守倭가 島主求請雜物을 催促하고 下送할 馬匹과 騾子를 點退함 /146

- 善步馬와 騾子를 該司에서 覓給下送하고 慶尙道에서도 抄擇入給할 것

○ 12월 3일 丁亥條 歲遣第8船, 9船 出來하여 求請物件의 減數 반대하고 許貿催促 /146

- 求請物件의 減數는 定奪한 대로 施行할 것
- 若君所學用으로 要請한 書冊은 慶尙道에서 隨便 覓給할 것
- 良馬와 騾子는 各 1匹씩 自京發送하며 良馬 2匹은 慶尙道에서 覓給할 것

22일 倭人이 輿三左衛門의 求請雜物 중 減數된 物品에 대해 領受를 拒絶함 /148

- 減數한 物品 중 玳瑁筆을 제외한 物品에 대해서는 加備充給해 줄 것

□ 戊子(1648년, 仁祖 26년)

○ 2월 17일 差倭 輿三左衛門 求請 駿馬의 慶尙道內 求得不可로 該司에 貿送 指示 /149

20일 倭人求貿馬匹을 別定理馬하여 各別護送케 할 것 /149

○ 3월 28일 頭倭 平成久가 出來하여 熟馴鷹과 若君所用 豹皮 書冊을 求請 /150

- 豹皮는 該司에서 措備下送하고 鷹蓮은 慶尙道에서 覓給할 것
- 書冊 및 與三左衛門의 求貿物目 중 可得之物은 措備許貿할 것

○ 윤3월 5일 頭倭 平成久가 豹皮求貿 催促次 出來 /152

- 求貿豹皮는 上年條 未出來別幅應給豹皮 14張을 미리 贈給할 것

14일 倭人 豹皮 求貿 및 駿馬의 更擇下送을 催促 /152

- 豹皮 16張을 加許貿하고 駿馬는 該司에서 極擇求貿하여 準備할 것

○ 15일 倭人이 求貿한 書冊 중 許貿한 나머지에 대하여도 覓得許貿할 것 /153

○ 4월 9일 倭人求貿馬匹을 別定理馬하여 各別護送케 할 것 /154

□ 己丑(1649년, 仁祖 27년)

○ 1월 14일 對馬島主가 大君所用 各種 禽鳥 및 藥材를 求請 /154

- 求請物 중 可得之物은 覓給하고 難得之物은 措辭防塞할 것

○ 7월 7일 新館守倭 平成里 및 差倭 一行이 朝鮮漂流耶蘇宗門之徒 . 捕捉次出來 /156

- 差倭가 關白求請物인 各種 奇花 및 禽獸를 要請
- 日本의 耶蘇宗門之徒 捕捉事는 備邊司가 定奪施行할 것
- 關白求請物에 대해서는 原書契 上來 後 擧行할 것

19일 關白所求禽獸求得次 出來한 差倭 平成久 一行에 茶禮 設行 /157

20일 差倭 平成久가 가지고 온 書契 및 別幅 /157

- 差倭求請物目
- 求請物目 중 可得之物은 慶尙道에서 覓給하고 回禮之物은 本價를 參酌 磨鍊
- 求請物目에 대한 處理 및 回禮物目
- 平成久가 가지고 온 東萊釜山了書契 및 別幅
  - 所答草稿는 承文院에서 措辭撰出하고 回禮之物은 本價를 參酌하여 磨鍊
  - 東萊釜山回禮物目

○ 8월 14일 代官倭가 島主의 求請物目에 대한 求貿 要請 /159

- 準價和賣이니 難得者外는 本道와 該司에서 備送許貿할 것
- 求貿物目에 대한 應給之數와 各道 分定數

□ 庚寅(1650년, 孝宗 1년)

○ 1월 2일 弔差가 求請物의 覓給과 金?에 대한 換貿 要請 /160

- 求請物은 防塞하고 金?은 措備下送許貿할 것

16일 東萊府使 狀啓 措辭의 未瑩으로 인한 金? 處理 잘못을 바로 잡음 /161

- 倭人이 換貿코자 하는 金?은 戶曹雜物을 許給한 후 照數會減할 것

18일 倭人 換賣 金?에 대한 處理 잘못으로 禮曹堂上郎廳을 推考할 것 /162

○ 2월 5일 倭人이 大君 및 大君 三寸의 求請物인 禽鳥 藥材 書冊의 覓給 要請 /162

- 禽鳥는 慶尙道에서 隨便覓給하고 唐材 중 肉?蓉은 該曹에서 給價貿送할 것
- 參同契는 該曹에서 給價하여 校書館에서 貿送케 할 것

○ 3월 10일 倭人이 大君 및 大君 三寸 求請雜物의 許貿를 催促함 /164
- 日本鶯은 慶尙道에서 捕捉 覓給할 것
- 虎生肝은 乾肝으로 覓給하고 豹皮는 要求대로 覓送許貿할 것
- 肉蓯蓉과 參同契는 곧 下送함

○ 10월 21일 館守倭가 豹皮 黃毛筆 등 各種 求請物의 許貿를 要請 /165
- 倭人求請物目
- 豹皮는 150令 중 80令, 黃毛筆은 100柄 중 50柄만 措備下送할 것
- 參同契는 戶曹에서 校書館에 給價하여 覓送케 할 것

○ 11월 4일 求請物 催促次 飛船 出來 /167
- 豹皮 80令과 黃毛筆 50柄 및 參同契 2部를 곧 下送함

○ 윤11월2일 館守倭가 入給된 黃毛筆의 品劣不精을 이유로 改給 要請 /168
- 該曹에 申飭해 匠人으로 하여금 精好改造하여 下送할 것

12일 差倭가 出來하여 前日 要請한 禽鳥의 覓給 要請 /168
- 鸛鷹은 慶尙道에서 各官에 分定하여 入給할 것
- 求請物 중 易得物은 慶尙道에서 隨給 覓給할 것

26일 俊鷁差倭가 가져온 書契(對馬島主가 禮曹에 보내는 書契) /172
- 俊鷁 등의 求請物 覓給 要請
- 別幅
- 島主書契에 대한 回答書契 準備 및 回禮之物 磨鍊 指示
- 對馬島主가 東萊府使 釜山僉使에게 보내는 書契
  - 俊鷁 등의 求請物 覓給에 대한 協助 要請
  - 東萊府使 및 釜山僉使에 대한 別幅
  - 東萊 釜山 兩處 回禮物目

○ 12월 19일 俊鷁差倭 洲川次兵衛 一行에 대한 下船宴 設行 /174

□ 辛卯(1651년, 孝宗 2년)

○ 1월 6일 平義眞送使正官 平成太가 島主求請物인 駿馬 15匹의 貿去 要請 /175
- 駿馬를 司僕寺와 平市暑에서 廣加求得하고 戶曹에서 給價할 것

○ 2월 5일 俊鷁差倭 洲川次兵衛 일행의 上船宴 設行 /176

○ 4월 3일 왜선이 島主求請馬 중 3匹을 싣고 감 /176
- 倭人이 求請한 꾀꼬리는 朝鮮의 皮粥鳥이니 慶尙道 에서 促給함을 督促함

□ 壬辰(1652년, 孝宗 3년)

○ 8월 15일 對馬島主가 東萊府使에게 보낸 書契 /176
- 尾員과 鶯鳥를 求貿함
- 尾員과 鶯鳥 若干을 慶尙道에서 隨便覓給할 것
- 東萊府使 回答書契 準備 指示

○ 9월 15일 對馬島主가 日光山所用 香爐 燈寵 花甁 等物의 鑄成을 要請 /177
- 對馬島主가 禮曹에 보내는 書契
- 島主別幅
- 鑄物에 필요한 銘文樣式 謄本
- 島主의 要請대로 善手鑄匠을 慶尙道에서 釜山에 覓給할 것

26일 平成久가 島主求請物 許貿 要請 및 鑄成相議次 首譯 3人의 下送要求 /180
- 首譯 李亨男 下送하고 求請別單物種은 該曹와 慶尙道에서 覓送許貿할 것
- 求請書冊은 該司에서 校書館에 給價하여 覓送할 것
- 難得之物은 量減하여 措備下送하고 唐材는 覓送 不許함
- 求請物目에 대한 覓給許貿 與否와 措備 該司

○ 10월 5일 倭人所求香爐 鑄成時 銘文에 日本 年號 대신 干支를 사용할 것 /182

22일 差倭 橘成道 出來 /183
- 差倭가 香爐等物을 鑄給을 催促하고 島主求請物인 駿馬 鷲鳥의 許貿 要請
- 對馬島主가 東萊府使 釜山僉使에게 보내는 書契
- 鷲鳥求請에 대해서는 開論防塞하고 駿馬는 慶尙道에서 覓給할 것

26일 差倭 橘成正 接慰官이 香爐鑄成事領來差倭에 대한 茶禮 設行을 겸함 /

○ 11월 3일 倭人求請物인 甲? 禮服 藥器의 許給에 대한 論議 /185

10일 差倭가 出來하여 馬匹求貿와 渡海譯官의 入送 要請 /185
- 香爐의 銘文은 日本 年號 대신 干支年月日을 써서 鑄給할 것
- 馬匹은 許貿하고 渡海譯官을 下送할 것

○ 11월 19일 差倭 橘成正이 出來하여 弔慰譯官 및 議員 李時榮의 入送 要請 /186
- 差倭가 鷲鳥 및 藥器 祭器 禮服 兵器 藥材 書冊의 許貿 要請
- 香爐等物은 銘文 年號 問題로 差倭가 보낸 飛船 回來 後 鑄造할 것
- 尾員 鷲鳥를 錯誤해 誤撰한 回答書契를 改撰 下送 할 것
- 尾員 鷲鳥를 誤認한 訓別 및 東萊府使를 推考警飭할 것
- 求貿物目 및 그에 대한 覓給許貿 與否

- 醫員 入送은 開論防塞할 것
- 禮物 藥器 兵器의 求貿 不許
- 祭器는 각 1件씩 造給下送하고 該曺堂上이 직접 看品檢筋할 것

23일 差倭 橘成正이 求請單子 呈納 /192
- 差倭 求請物은 慶尙監司와 東萊府使가 相議하여 隨便覓給할 것
- 求請醫冊인 醫林?要는 戶曹에서 校書館에 給價하여 覓送케 할 것
- 差倭 橘成正 求請物目減錄

○ 12월 4일 倭人求請藥器 造作時 戶工曺에서 郎官을 別定하여 眼同檢飭할 것 /192

11일 醫林欌要는 校書館에서 求得 不可로 戶曹에서 兩醫司에 給價하여 貿送케 할 것 /

14일 漂風人領來差倭 平成廣이 求貿馬匹의 自京下送을 要請 /193
- 倭人求請馬는 戶曹에서 司僕寺 平市署에 給價覓得케 하여 自京下送할 것

□ 癸巳(1653년, 孝宗 4년)

○ 1월 3일 壬辰條 平義眞送使正官 平成久가 求貿馬匹의 自京下送을 催促함 /194
- 司僕寺와 平市署에 급히 求得하여 自京下送할 것 /

○ 2월 7일 求請牛黃은 3部를 許貿하고 祭器 藥器 深衣는 禮曺를 통해 覓送할 것 /195

8일 倭人求請物目 /196

10일 駿馬求貿差倭 橘成道가 京來馬 2匹을 折價求貿하여 入歸함 /196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弟一冊 /199

□ 찾아보기 /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김 **동** **철**
(부산대학교 교수)

차 례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貿)
3. 『왜인구청등록』 개관
4. 구청물품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6.『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참고문헌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해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사대(事大)와 교린(交隣) 등 여러 가지 통교(通交)관계가 존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수평적인 대등한 교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대마번(대마도)과는 조공적 기미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의 통교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간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고, 서계는 조선의 예조·동래부·부산진과 일본의 대마번 등 실무부서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이 국서와 서계에는 별폭(別幅)이라는 문서가 딸려 있었다. 별폭은 예물(禮物)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목록이다.

이 외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형태의 물품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의 국교는 1609년 5월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사이의 무역은 기유약조가 체결된 지 2년후인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견(歲遣) 제1선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는 모두 사절이 탄 사선(使船), 사송선(使送船)이었다. 따라서 왜관의 입항에서 출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다. 왜관에 도착한 사절 일행은 부산진의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에게 바다를 건너온 인사를 하였다. 이것을 '다례의(茶禮儀)'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마도주가 조선의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가 여기서 전달되었다. 이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헌상하는 물품목록인 별폭이 붙어 있었다. 일정한 예식(例式)에 따라 진헌(進獻)의 의식이 행해졌다. 이것을 진상(進上 : 후에는 封進으로 바뀜)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으로부터 서계와 함께 회사(回賜)라는 답례 물품이 내려졌다.

사절이 탄 사선(使船) 1척마다 물품의 접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의례적인 물품을 주고 받는 '진상과 회사'가 기본이었다. 사선에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을 위한 무역품도 있었다. 즉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1척의 사선에는 진상·공무역·개시무역(사무역) 3종류의 물품이 실려 있었다.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貿)

예조에서 편찬한 외교자료집인 『춘관지(春官志)』 연례송사(年例送使)조에서는 공무역・회례・구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춘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국에서 헌납하는 것에는 '진상'이란 것이 있고, '공무역'이란 것이 있다. 진상이란 것은 후추, 백반, 단목, 주홍, 화연갑, 동반(銅盤), 금병풍, 구리거울 등이다. 서계 안에 별폭을 마름질해 넣고 진상 물품을 나열하여 적기 때문에 별폭진상이라 한다. 공무역이란 것은 구리, 납 두 물건 및 단목, 흑각이다. 이 물건을 헌납하고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회례(回禮)가 있고, 공무가목(公貿價木)이 있고, 구청조(求請條)가 있다. 회례란 별폭진상에 답례하는 것으로 인삼, 호피, 표피, 백명주, 흑명주, 매, 돗자리, 붓, 먹 등이다. 모든 물건의 양쪽 끝에는 모두 예조의 조인(照印)을 찍는다. 회례를 주고 또 그 진상 물품에 따라 값을 쳐서 무명베를 주는 것을 진상가목(進上價木)이라 한다. 공무가목이란 구리, 납, 흑각의 값을 쳐서 무명베로 주었던 것이다.

구청이란 왜인들의 구걸로 인하여 주는 것이다. 인삼・매・다리미・마성・종이・붓・대추・밤・율무 등속인데, 왜국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증물(贈物)이라고도 한다(求請者 因倭人求乞而賜給者也 人參鷹火熨斗馬省紙筆棗栗薏苡之屬 倭地所不産之物 或謂之贈物)」.

『춘관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헌납하는 것으로는 진상과 공무역, 조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는 회례, 공무가목, 구청이 있다.

구청이란 일본측에서 자국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구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를 사급(賜給)・증여(贈與)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은 증물(贈物), 증급(贈給)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구청은 서계・별폭 등의 외교적 의식을 띠지 않고, 특별히 요청한 물건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상과 회사와 구분된다. 또한 물품 요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거래' 의미의 공무역과도 구분된다.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을 조선측이 무상(無償)으로 지급하는 '좁은 의미의 구청' 외에, 유상(有償)으로 지급하는 '넓은 의미의 구청'이 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청'을 흔히 구무(求貿)라고 부른다. 즉 구청에는 구무(求貿)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구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측에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조선측에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무에 해

당된다. 역으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요청 자체는 구무이지만 결과는 구청인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일본측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조선측이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춘관지』에서도 구청을 조선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좁은 의미의 구청'이 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면, '넓은 의미의 구청'은 공무역의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춘관지』에는 연례송사조에 구청 항목이 있는 것 외에, '구청'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구청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구청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나 희귀한 것으로서, 중세 이래로부터 그들의 구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을 증급(贈給)이라 부르고 혹은 구청이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춘관지』 구청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지급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구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청이란 대마도주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에도(江戶)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측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 조선측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특별한 형식이나 규정은 없었다. 구청, 구무, 청구, 증급, 증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편찬된 여러 외교 자료집에도 구청은 다양한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다. 『춘관지』에서는 구청(求請), 『동문휘고』에서는 청구(請求), 『변례집요』에서는 구무(求貿)조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3. 『왜인구청등록』 개관

『왜인구청등록』은 예조(禮曹)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 8책이다. 원본은 필사본(筆寫本)으로 책 크기는 41×26.6㎝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奎12955)에 소장되어 있다. 1637년(인조 15) 3월부터 1724년(경종 4)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여, 동래부사·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계(回啓)를 예조 전객사에서 등록한 원본이다.

전객사는 예조의 속사(屬司)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의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야인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의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왜인구청등록』의 수록 시기를 원본의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 1637년(인조 15) 3월～1653년(효종 4) 2월.
제2책 : 1653년(효종 4) 3월～1664년(현종 5) 12월.
제3책 : 1665년(현종 6) 1월～1676년(숙종 2) 11월.
제4책 : 1677년(숙종 3) 1월～1678년(숙종 4) 12월.
제5책 : 1677년(숙종 3) 1월～1687년(숙종 13) 10월.
제6책 : 1688년(숙종 14) 1월～1692년(숙종 18) 10월.
제7책 : 1693년(숙종 19) 4월～1704년(숙종 30) 11월.
제8책 : 1717년(숙종 43) 7월～1724년(경종 4) 4월.

대체로 한 달에 두세 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뒤쪽에는 서너 달에 한 번, 또는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된 곳도 있다. 1677・1678년분은 제4・5책에 날짜와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1704년 12월부터 1717년 6월까지의 기록은 없다. 간혹 날짜가 뒤바뀐 기사가 수록되는 등 편집상의 착오가 보이기도 한다.

『왜인구청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1～2책, 제2권에는 원본 3～5책, 제3권에는 원본 6～8책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싣고 있어서, 『왜인구청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김윤제(金允濟)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필자는 이를 참고・인용하면서 국역본의 해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여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와 이에 대한 예조와 비변사의 논의 및 처리과정에 대한 각종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구청물목, 동래부에서의 구청사실 및 감정(減定) 협상 보고, 예조 및 비변사의 논의과정과 처리지침, 구청물품의 각도 및 해사(該司)에 대한 조치와 분정(分定)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에 관한 각종 등록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류를 상세하게 분석한 한문종(韓文鍾)의 연구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는 30여 종에 이른다. 참고로 그 제목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양차왜등록목록(各樣差倭謄錄目錄)』, 『고부차왜등록(告訃差倭謄錄)』, 『공작미등록(公作米謄錄)』, 『도주고환차왜등록(島主告還差倭謄錄)』, 『고환등록(告還謄錄)』, 『도중실화등록(島中失火謄錄)』, 『동래부접대등록(東萊府接待謄錄)』,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논상사미등록(論賞賜米謄錄)』, 『별차왜등록(別差倭謄錄)』, 『서계위식등록(書契違式謄錄)』, 『세선응련등록(歲船鷹連謄錄)』, 『세선정탈등록(歲船定奪謄錄)』, 『세선항식출래등록(歲船恒式出來謄錄)』, 『역관상언등록(譯官上言謄錄)』, 『왜관수리등록(倭館修理謄錄)』, 『왜관이건등록(倭館移建謄錄)』,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왜인작나등록(倭人作拏謄錄)』, 『재판차왜등록(裁判差倭謄錄)』, 『전객사별등록(典客司別謄錄)』, 『조위차왜등록(弔慰差倭謄錄)』, 『진하차왜등록(陳賀差倭謄錄)』, 『징채등록(徵債謄錄)』, 『치하(차왜)등록(致賀(差倭)謄錄)』,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擧行謄錄)』, 『통신사초등록(通信使草謄錄)』, 『표왜입송등록(漂倭入送謄錄)』, 『표왜입송회사등록(漂倭入送回謝謄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차왜등록(漂人領來差倭謄錄)』, 『회사차왜등록(回謝差倭謄錄)』

30여 종의 등록 가운데 동래부에서 편찬한 『동래부접대등록』,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과 광주부에서 편찬한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조나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예조에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록류도 실제는 대부분 예조 속사인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등록이란 이전의 전례(前例)를 적어 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집무사항을 적은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사수록(謄寫收錄)한 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의 '등록(謄錄)'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등록 작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중요문서로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행해졌다. 등록에는 문서를 연월일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이나 고설(考說)을 붙이지 않은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조정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등록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춘관지』 구청조에 보면,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혹은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그것은 본조 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지금은 오직 그 조목만 들어서 후일의 상고(相考)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조 등록'이 바로 『왜인구청등록』을 가리킨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춘관지』를 편찬하는데『왜인구청등록』이 일차 사료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관지』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외교자료집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변례집요』(예조 전객사 편),『동문휘고』(예조 승문원 편),『통문관지』(김지남・김경문 편),『증정교린지』(김건서 편) 등을 편찬하는데도『왜인구청등록』을 비롯한 대일관계 등록류가 일차 사료로 이용되었다.

4. 구청 물품

일본은 대마도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에도(江戶)막부에서 요청한 각종 구청물품을 연례송사나 각종 차왜가 파견될 때 조선측에 요구하였다.『변례집요』구무조에 따르면, 1609년 5월에 일본 사신이 구하는 황납(黃蠟) 200근을 강원도와 경상도에 분정(分定)하고, 준마(駿馬) 4필 가운데 3필은 평시서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내려 보내고, 1필은 경상도에서 구입하여 주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본측에서 황납 200근과 준마 4필을 구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년 6월에는 일본 사신이 요구하는 우황 4냥, 청심원(淸心元) 30환(丸), 금박(金箔) 600장, 서각(犀角) 1냥, 석웅황(石雄黃) 4돈, 육종용 1근 10냥, 천궁(川芎) 1근 1냥, 인삼 13근, 웅담 1부(部), 황단(黃丹) 5냥, 매화연(梅花硯) 3부, 황모필(黃毛筆) 90병(柄), 궁궁(芎穹) 10냥, 우황 1부, 황기(黃芪) 10냥, 현호색(玄胡索) 5냥 등을 내려보내라는 예조의 관문(關文)이 있었다.

『변례집요』구무조를 보면, 기유약조 체결 후 최초로 파견된 1611년 9월에 도항한 세견제1선은 조선측에 노루(獐子), 사냥개(獵犬), 원정(蚖蜻), 모직물(遼東帽段), 무렴목박백지(無簾目薄白紙), 매(俊鷹) 등을 구무(求貿)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노루・사냥개・원정은 훈도에게 명하여 상인에게서 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 종류와 새로 구청한 웅담은 구하기 어려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1609년 국교가 재개되면서 일본인들의 구청 요구는 지속되었다. 구청물품은『왜인구청등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문종의 연구에는『왜인구청등록』에 나와 있는 구청 물품을 다음의 10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문종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적류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절요(朱子節要), 사기평림(史記評林), 논어, 맹자, 중용, 춘추,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맹자집주(孟子集註), 용학집주(庸學集註),

언해무경칠서(諺解武經七書), 칠서직해(七書直解),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대장경, 문한통고(文韓通考), 속문한통고,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퇴계집, 성재집(誠齋集), 동파집(東坡集), 전등신화(剪燈新話), 호전집해(胡典集解), 이문집람(吏文輯覽), 마의서언해(馬醫書諺解), 의학입문, 의학정전(醫學正傳), 의림촬요(醫林撮要), 동의보감, 두진원론(痘疹原論), 비급초본(備急草本), 화제국방(和劑局方), 응골방(鷹鶻方), 참동계(參同契), 십이율(十二律), 대명령(大明令), 예기(禮記), 진간재시집(陳簡齋詩集),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 육상산문집(陸象山文集), 문장변체(文章辨體), 산곡내외별집(山谷內外別集), 이백시집(李白詩集), 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영규율수(瀛奎律髓), 조선지도

② 약재류

인삼, 사삼(沙蔘), 오미자, 결명자, 우황, 웅담, 호담(虎膽), 호두골(虎頭骨), 구미(九味)청심원, 숙지황, 백출(白朮), 창출(蒼朮), 황금(黃芩), 황기(黃芪), 상기생(桑寄生), 생호간(生虎肝), 육종용(肉蓯蓉), 목방기(木防己), 지모(知母), 시호(柴胡), 전호(前胡), 마황(麻黃), 상산(常山), 하수오(何首烏), 백렴(白斂), 천문동(天門冬), 승마(升馬), 천마(天麻), 백두옹(白頭翁), 창이(蒼耳), 소계(小薊), 관중(貫中), 호본(蒿本), 누로(漏蘆), 백미(白薇), 호황련(胡黃連), 의이(薏苡), 원지(遠志), 위령선(葳靈仙), 백선피(白蘚皮), 진교(秦艽), 상륙(商陸), 목단, 속단(續斷), 여로(藜蘆), 대계(大薊), 보골지(補骨脂), 목숙(苜蓿)

③ 금수류

응자(鷹子), 양마(良馬), 월라준마(月羅駿馬), 마상재마(馬上才馬), 체대마(體大馬), 나자(騾子), 황앵(黃鶯), 생장(生獐), 생조(生雕) 백양(白羊), 금조(禽鳥), 혈연(穴燕), 전응(鸇鷹), 야학(野鶴), 활위(活蝟)

④ 모피류

호피, 표피, 양피, 유모웅피(有毛熊皮), 황구피, 적견피(赤犬皮), 당초피(唐貂皮), 어피, 산서피(山鼠皮), 황광피(黃獷皮), 청서피

⑤ 다기・제기류

다완, 등롱(燈籠), 목욕탕기, 종경(鍾磬), 유기, 향로, 촉대, 화병

⑥ 문방구류

진묵(眞墨), 대모필(玳瑁筆), 황모필(黃毛筆), 자필(咨筆), 화룡필(畵龍筆), 오죽필(烏竹筆), 홍당죽필(紅唐竹筆), 화병대필(畵柄大筆), 백죽필(白竹筆), 용편필(龍鞭筆), 도화지, 소유지(小油紙), 색납지(色蠟紙), 색지, 주지(紬紙), 우산지, 금묵(琴墨)

⑦ 직물류

백조포(白照布), 백저포, 세저포, 홍전(紅氈), 잠사(蠶絲), 대금백(大金錦), 생조포(生照布), 대선단, 대사(大紗)

⑧ 어패류

건대구어, 황대구어, 이어(鯉魚), 문어, 부어(鮒魚), 석린(石鱗), 자안패(子安貝)

⑨ 과일류

호도, 송자(松子), 백자(栢子), 조속(棗栗), 진자(榛子)

⑩ 기타

갑주, 목궁(木弓), 예복, 심의(深衣), 원선자(圓扇子), 미선(尾扇), 향선추(香扇墜), 마성(馬省), 석대성(石帶星), 옥대구(玉帶鉤), 금수(錦綉), 영롱당철(玲瓏唐鐵), 지포(紙砲), 당화(唐貨), 백합피갑(白蛤皮甲), 척촉(躑躅), 적죽(笛竹), 오죽, 악기, 녹두말(菉豆末), 황납(黃蠟), 자석영(紫石英), 산호, 황옥석(黃玉石), 백양석(白羊石), 흑양석, 부후석(浮厚石)

이와 같이 왜인이 구청한 물건은 서적, 약재, 금수, 모피, 다기・제기, 문방구, 직물, 해산물, 과일 등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매와 말 등의 금수류는 주로 대마도주가 막부장군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다기・제기류는 막부장군 등 최고위 지배층의 구청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제기류는 동조권현궁(東照權現宮; 德川家康), 대유원(大猷院; 德川家光), 엄유원(嚴猷院; 德川家綱) 등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서적류는 유교경전이 많으며, 의학 서적, 문집, 대장경, 조선지도 등도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의보감, 의학입문, 의학정전, 의림촬요, 두진원론, 비급초본, 화제국방, 마의서언해 등 의서(醫書)를 많이 구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기 번조(燔造)에 필요한 각종 흙이나, 별당・정자각 등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전장, 유기장, 사기장, 안자장

(鞍子匠), 주동장(鑄銅匠) 등 기술자나, 일본인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원, 화원까지도 요청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에 물품을 구청하였다. 대마도의 소(牛) 등 가축류와 칼(刀劍)·유황 등 무기나 화약 원료를 구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예조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한 『동문휘고』(附編 권22) 「청구(請求) 1」에서는 '아국인(我國人)', 「청구(請求) 2」에서는 '일본국인(日本國人)'이라 하여, 우리가 구청한 내용은 '아국인' 항목을 설정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왜인구청등록』에 나오는 일본측의 첫 구청 기록은 정축(인조 15, 1637) 3월 13일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입계(入啓)하기를, "이제 예조에 계하(啓下)한 이문(移文)을 보니 대마도의 특송선(特送船)과 세견선(歲遣船) 등의 선박에 대하여 도주(島主) 이하 각왜(各倭) 등의 구청 잡물 및 결과(結裹)에 들어갈 잡물이 매우 많습니다. 백저포(白苧布), 백면주(白綿紬), 흑마포(黑麻布), 황모필(黃毛筆), 인삼 등의 물건은 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내고, 호표피(虎豹皮), 백목(白木), 초주지(草注紙), 초석(草席), 유사(柳笥), 줄바[條所], 유둔(油芚), 유지(油紙), 협판(挾板), 백지 등의 물자는 본도(本道)에서 공물(貢物)의 남은 포목으로 값을 제하고 내어주거나, 혹은 금번의 은가(銀價)로 계감(計減)하여 공무역(公貿易)으로 지급하며, 홍주보(紅紬袱)는 본도에서 단목(丹木)을 사들여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백포보(白布袱)도 또한 갖추어 지급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화를 입은 일은 저쪽에서 반드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 같이 홍희남(洪喜男)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지급하게 함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입계(入啓)하나이다" 하였다. 전교(傳敎)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구청에 대한 조선의 처리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백저포·백면주·흑마포·황모필·인삼 등은 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냈다. 둘째, 호표피·백목·초주지·초석·유사·줄바·유둔·유지·협판·백지 등은 일본에 지급할 공목(公木) 값에서 제하고 주었다. 공목 값이란 대개 공무역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값이다. 또는 은 값에서 제하고 주기도 하였다. 은 값이란 일본에서 수입된 은에 대해서 조선측이 지급해야 하는 물품 값을 뜻한다. 셋째, 홍주보·백포보는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구청에 대한 처리 방식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요구를 허용하였다. 수량이 많은 물품은 수량을 줄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구청을 거절하거나, 왜관 개시일에 상인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개시무역(사무역)으로 교역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의를 거쳐, 호조・동래부・경상감영 등 해당 관청을 통해 조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값을 별도로 상계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청을 허락한 전례가 없는 물품은 엄하게 배척하였다. 이미 허락한 전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구청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구청에 대한 처리과정은『왜인구청등록』을 이용하여 구청관행과 결제방식 등을 분석한 정경주(鄭景柱)의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청의 처리 유형을 ㉠ 해조비급(該曹備給; 호조나 예조 등 물품과 관련된 관청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부비급(本府備給; 동래부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도멱급(本道覓給;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 경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다른 도에서 구하여 지급), ㉣ 사상매매(自相賣買; 왜관에서 상인이 사무역으로 매매)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거래 결제의 유형은 ㉠ 공목계제(公木計除;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목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 ㉡ 물화피집(物貨被執; 왜관에 물품을 먼저 반입하고 대금을 뒤에 결제받는 방식)과 은화피집(銀貨被執; 피집물화의 대금을 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6.『국역 왜인구청등록』(Ⅰ)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은 전 5권으로 간행되어, 2008년 완간될 예정이다. 이번에 간행되는 국역본(Ⅰ)은 1637년(丁丑, 인조 15) 3월 13일에서 1653년((癸巳, 효종 4) 2월 10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1책, 규장각 영인본(1)의 1~34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Ⅰ)』의 연대별 기사항목 수

연대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항목수	13	4	13	14	3	3	1	5	3
연대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합계)
항목수	5	12	7	5	12	3	13	4	120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싣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

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위의 표에 보면, 국역본(Ⅰ)에 수록된 기사 건수는 모두 120건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이 시작되는 초기인 1637년에서 1640년까지는 항목 수가 많다가, 1641년에서 1646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도 1637년부터 시작되지만, 앞서 언급한 30여종의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 가운데 『각양차왜등록목록』, 『공작미등록』, 『논상사미등록』, 『별차왜등록』, 『서계위식등록』, 『세선응련등록』, 『세선정탈등록』, 『역관상언등록』, 『징채등록』, 『치하(차왜)등록』, 『표왜입송등록』, 『회사차왜등록』이 1637년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며, 등록류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등록의 수록 시기가 1637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문종이 주목한 바 있다. 한문종은 그 중요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묘・병자호란(1627・1636년) 등 전란으로 인한 공문서의 소실이다. 전란으로 등록 편찬에 필요한 공문서가 거의 소실되어, 현존하는 등록의 대부분이 병자호란 이후부터 수록하고 있다.

둘째, 병자호란 이후 대청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나가와(柳川)사건'으로 불리는 국서개작(國書改作)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德川]막부는 교토[京都] 오산(五山)의 승려를 대마도 이정암(以酊庵)에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637년부터는 도항하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형식과 교역방법을 간소화하는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통교체제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서도 대일외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국역본(Ⅰ)의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청물품과 절차 및 교섭과정 등을 일반적으로 적은 기록과 함께, 목록과 같은 형식으로 구청의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 들어 있다. 내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이름 없이 후록의 형식으로 나열한 것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묘(1639) 8월 16일조 역관등수본등서(譯官等手本謄書), 차왜 등지승(藤智繩) 별구청 약재물록, 잡물구청병원매(幷願買), 경진(1640) 5월 30일조 후록(後錄), 경진 9월 21일조 후록, 경진 10월 21일조 후록 용약(用藥), 신사(1641) 8월 13일조 후록, 임오(1642) 2월 21일조 왜소지(倭小紙), 후록, 임오 3월 6일조 후록 등지승(藤智繩) 구청약재, 임오 12월 4일조 후록, 갑신(1644) 3월 25일조 서적목록, 을유(1645) 3월

20일조 후록 구청약재류, 구청잡물, 을유 6월 9일조 후록, 정해(1647) 9월 16일조 후록, 정해 12월 3일조 왜인구무별단(別單), 기축(1649) 7월 20일조 후록 구청물목(物目), 기축 8월 14일조 구무물목, 경인(1650) 10월 21일조 구청물목, 임진(1652) 9월 26일조 구청물목, 임진 11월 19일조 구무물목, 임진 11월 23일조 차왜 귤성정(橘成正) 구청물목 감록(減錄), 계사(1653) 2월 8일조 구청물건 등이다.

이러한 별구청물록, 구청물목, 구청물건, 구무물목, 구무별단, 수본 등 후록 내용들은 기사의 말미에 구청의 물목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이다.

을유(1645) 6월 9일조 후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도주(島主)	말	본도에 명하여 인근 읍의 말이 있는 곳에 알려 무역을 허락
	꾀꼬리	본도에서 이미 분정하여 들여줌.
	노루, 다람쥐, 토끼	본도에서 멱급(覓給)
정관(正官)	마서(1부), 문갑, 금은전(金銀箭)	방색(防塞)
	주역(周易) 1부, 화연(花硯), 호육(虎肉), 호안(虎眼), 호간(虎肝), 호담(虎膽), 마성(馬省), 준응(俊鷹) 1연, 우황(牛黃), 웅담(熊膽),	본도에서 제급(題給)
부사(副使)	『황화집(皇華集)』 1부	방색(防塞)
	진묵(眞墨), 대화연(大花硯),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우황(牛黃), 택사(澤瀉)	본도에서 제급(題給)
	신발	지급
	상인삼(上人蔘)	가져온 예단 가운데서 덜어내어 줌
	황모필(黃毛筆) 30자루	해사(該司)에서 내려보냄
	숙지황(熟地黃) 2근, 석린(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등지승 (藤智繩)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해사에서 급가하여 의사(醫司)에서 사서 보냄
	호경골(虎脛骨), 호두골(虎頭骨), 호간(虎肝), 호육(虎肉), 황기(黃芪), 당귀(當歸), 대황(大黃), 천궁(川芎), 백출(白朮), 황금(黃芩), 방풍(防風)	본도에서 제급
	지모(知母) 2근, 백렴(白蘞) 2근, 대석린(大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매 1연	강원도에서 제급
	자석영(紫石榮)	방색
봉진압물 (封進押物)	황모필(黃毛筆) 2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진묵(眞墨), 백지(白紙), 마성(馬省), 백작약(白芍藥)	본도에서 제급
	숙지황(熟地黃) 2근	황해도에서 제급
	준응(俊鷹)	방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물품을 도주(島主), 정관(正官), 부사(副使), 등지승(藤智繩), 봉진압물(封進押物) 등 구청자별로 나눈 후, 각 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물품 가운데는 서적류, 약재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경진(1640) 10월 18일조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날 대군이 도주에게 이르기를, 남만(南蠻)의 상선이 이미 끊어져 약재를 얻어 쓸 방도가 없으니 조선의 약재를 널리 무역하라 하거늘, 도주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더니, 대군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약사(藥肆)를 에도와 왜경(倭京), 오사카(大坂) 등지에 설치하고, 그 패 이름을 조선약사(朝鮮藥肆)라 하여 내걸었는데, 제가 관(館)에 와서 보니 약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도주가 대군에게 실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전일에 등차(藤差)도 이 일을 말하였으므로, 동래부사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하여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아마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보고하였다 하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라건대 다시 보고하여 재촉해주시도록.

㉡ 경진(1640) 11월 20일조

약재는 대군(大君)이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여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으로, 26종 내에 10종은 각기 1,000근, 16종은 각기 500근을 해마다 팔도록 허락하여 계속 대군 앞으로 납입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산출되는 곳에서 와서 팔도록 해주면 매우 좋겠다. 전일에 약재를 잡종과 혼동하여 내려보냈기에 당연히 사들이지 않을 것이로되 단지 죽은 말의 뼈를 사듯이 당약(唐藥)으로 서로 교환하였으니 또한 양쪽이 편한 일이다.

1640년 당시 도쿠가와막부의 대군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다. 이 두 기사를 보면, 남만무역이 중단되어 약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무역에 주력하여, 대군이 에도(江戶), 교토(京都), 오사카(大坂)에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고 약재를 구청(구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세 곳에 '조선약사(朝鮮藥肆)'가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와 관련해서는 타시로 카즈이(田代和生)가 대마번(대마도)의 인삼좌(人蔘座)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인삼을 파는 인삼좌는 에도, 교토, 오사카 등지에 설치되었다. 에도 인삼좌는 1674년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이미 30여년 전에 이에미쓰에 의해 약재를 파는 조선약사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구청(구무)에 의해 수입된 조선약재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조선약사와 인삼좌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까지 '조선약사'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인구청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구청(구무)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목계제(公木計除), 물화피집(物貨被執)·은화피집(銀貨被執)은 공무역의 대금 결제와 맞물려 있어 공무역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청의 처리 유형의 하나인 사상매매(自相賣買)는 개시무역(사무역)의 실태를 아는데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변례집요』·『동문휘고』·『춘관지』·『증정교린지』·『통문관지』 등 대일 외교관계의 기본 자료집, 『전객사별등록』·『논상사미등록』·『공작미등록』·『세선응련등록』·『세선정탈등록』·『각양차왜등록목록』 등 등록류, 그리고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의 관련 기록 등과 서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역사에 관한 연구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 밀무역에 관한 연구

가 중심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진상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경주의 연구가 유일하다. 구청(구무)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증여와 유상으로 지급되는 무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물품 교류이다. 외교와 무역이 미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의 경제교류의 독특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국역본의 간행을 계기로 구청(구무)을 비롯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무역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여, 상당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金文濟,「『倭人求請謄錄』 해제」『倭人求請謄錄 一』(영인본), 서울대 규장각, 199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제Ⅴ집, 史部 2), 서울대도서관, 1982, 188쪽「倭人求請謄錄」항목.
鄭景柱,「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朝鮮後期 對日貿易 事例 紹介-」『貿易評論』 창간호,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4.
韓文鍾,「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국사관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鄭成一,『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洪性德,『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硏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田代和生,『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硏究』, 創文社, 1981.
『국역 춘관지』, 법제처, 1976.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邊例集要』(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1970.
『同文彙考』(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8.
하우봉,「증정교린지 해제」『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하우봉,「변례집요 해제」『국역 변례집요』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국역 왜인구청등록(Ⅰ)
(1637. 3 ~ 1653. 2)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정축(1637) 3월 13일

호조(戶曹)에서 입계(入啓)[1]하기를, "이제 예조(禮曹)에 계하(啓下)[2]한 이문(移文)[3]을 보니 대마도의 특송선(特送船)[4]과 세견선(歲遣船) 등의 선박에 대하여 도주(島主)[5] 이하 각왜(各倭)[6] 등의 구청(求請)[7] 잡물 및 결과(結裹)[8]에 들어갈 잡물이 극히 많습니다. 백저포(白苧布)[9], 백면주(白綿紬)[10], 흑마포(黑麻布)[11], 황모필(黃毛筆)[12], 인삼(人蔘) 등의 물건은 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내고, 호표피(虎豹皮)[13], 백목(白木)[14], 초주지(草注紙)[15], 초석(草席)[16], 유사(柳笥)[17], 줄바[條所][18], 유둔(油芚)[19], 유지(油紙)[20], 협판(挾板)[21], 백지(白紙) 등의 물자는 본도(本道)[22]에서 공물(貢物)의 남은 포목으로 값을 제하고 내어주거나, 혹은 이번의 은가(銀價)[23]로 계감(計減)[24]하여 공무역(公貿易)[25]으로 지급하며, 홍주보(紅紬袱)[26]는 본도에서 단목(丹木)[27]

---

1) 입계(入啓) :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기 위해 각 관서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품의.
2) 계하(啓下) : 국왕이 재가하는 것을 이름이니, 국왕이 어람(御覽)한 다음 계(啓)자 인을 찍어 하부(下付)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문(移文) :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사에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해 보내는 공문.
4) 특송선 : 조선정부에서 왜관무역(倭館貿易)을 위하여 공식으로 인정해 준 무역선 선단의 명칭으로, 해마다 세견선(歲遣船) 17척과 특송선(特送船) 3척 등 20척의 입항을 허락하였다.
5) 도주(島主) : 대마도(對馬島)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킴.
6) 각왜(各倭) : 왜관 무역에 관계하는 각색 신분의 왜인(倭人).
7) 구청(求請) : 왜인들이 조선에서 교역하고자 하는 물자를 요청하는 일.
8) 결과(結裹) : 교역과 교역에 따른 접대 등의 일을 매듭 짓는 일.
9) 백저포(白苧布) : 빛깔이 희게 마전한 모시베.
10) 백면주(白綿紬) : 빛깔이 희게 마전한 명주(明紬) 베.
11) 흑마포(黑麻布) : 검은 빛깔의 삼베.
12) 황모필(黃毛筆) : 족제비의 꼬리털로 만든 붓.
13) 호표피(虎豹皮) : 범과 표범의 가죽.
14) 백목(白木) : 무명.
15) 초주지(草注紙) : 공문의 간략한 초록을 쓰는 종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계목지(啓目紙)와 초주지는 1권의 무게가 11냥(兩) 이상이고, 차초주지(次草注紙)는 9냥 이상, 공사지(公事紙)는 6냥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상급의 두꺼운 종이를 가리킨다.
16) 초석(草席) : 짚으로 쳐서 만든 자리. 짚자리.
17) 유사(柳笥) :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상자. 버들고리.
18) 줄바[條所] : 짚이나 삼 따위로 꼬아 만든 밧줄.
19) 유둔(油芚) : 비 올 때 물건을 덮기 위해 만든 기름을 먹여 이어 붙인 두꺼운 종이 장막.
20) 유지(油紙) : 기름을 먹인 종이.
21) 협판(挾板) : 짐을 꾸려 쌀 때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사이에 끼우는 널빤지.
22) 본도(本道) : 여기서는 왜관무역을 전담하는 경상도를 가리킨다.
23) 은가(銀價) : 왜관무역에서 조선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대가로 왜인들이 가져오는 은(銀)의 가격.
24) 계감(計減) : 계산하여 제함.
25) 공무역(公貿易) : 왜관무역에 있어서 조선정부가 대마도의 무역선단에 한 해 거래 총액을 정하여 공식으로 허용한 무역. 이 외에 별도로 사무역(私貿易)을 허용하였다.
26) 홍주보(紅紬袱) : 명주를 붉게 물들여 만든 보자기.

을 사들여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백포보(白布袱)[28]도 또한 갖추어 지급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를 입은 일은 저쪽에서 반드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 같이 홍희남(洪喜男)[29]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지급하게 함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입계(入啓)하나이다" 하였다. 전교(傳敎)[30]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의 관문 안에 방금 계하하여 동래부사의 서장을 비변사의 계목(啓目)[31]에 의거 첨부해서 계하토록 한 것이 있으니[32], 왜역(倭譯) 홍희남(洪喜男)이 내려갈 때 왜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과 문답한 말은 이미 주어서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니[33], 저쪽에서 만약 묻는 말이 있으면 희남과 더불어 다시 상의하여 말을 만들어 대답하되[34], 호마(胡馬)와 낙타, 궁전(弓箭), 안장 등의 물건에 대하여 만약 정묘(丁卯,1627) 변란 뒤의 사례로 구청한다면, 해당 관청에 명하여 혹 현재 있는 것이나 혹 구입하거나 하여 편리한대로 조처하여 보냄으로써 구청에 응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였음.

정축(1637) 윤4월 초2일

동래부사의 장계. 4월 24일 왜선 한 척이 나왔는데, 대마도주의 차왜(差倭)인 정좌위문(定左衛門)이 노인(路引)[35]을 가지고 나왔기에,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대군(大君)[36]이 딸자식을 낳아 여러 섬의 장관(將官)들이 가서 치하하는데, 도주(島主)가 에도〔江戶〕에 가서 치하하지 않을 수 없기에, 대군에게 올릴 예단에 사용될 물자를 사 가기 위해 이 일로 나왔다"고 한다 하였는데, 이는 규정 밖의 일이라 노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27) 단목(丹木) : 다목.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일종. 탄력이 좋아 활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속의 붉은 부분은 소목(蘇木)이라고 하여 홍색의 염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한약의 재료로 사용한다. 뿌리는 황색염료로 사용한다.
28) 백포보(白布袱) : 흰 무명으로 만든 보자기.
29) 홍희남(洪喜男) : 조선중기의 역관으로, 자는 자열(子悅),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임진란 후 대일관계에 있어 난관에 봉착하면 반드시 희남이 파견될 만큼 외교 수완이 뛰어났다. 벼슬은 숭록대부(崇祿大夫)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30) 전교(傳敎) : 임금이 지시 명령한 내용.
31) 계목(啓目) : 국왕에게 상주하는 문서의 목록.
32) 是白有亦 : [이두]이삷이신이여. 있으니까.
33) 爲白有昆 : [이두] 하삷잇곤. 하시었으니.
34) 爲白乎矣 : [이두]하삷오되. 하옵되.
35) 노인(路引) : 관청에서 병졸이나 장사꾼에게 내어준 여행권.
36) 대군(大君) : 일본 막부(幕府)의 최고실력자인 장군(將軍)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에서 적실 왕후의 소생의 아들에게 주는 칭호였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한 것이 있으니, 도주가 비록 무역할 물자가 있더라도 왜관에는 이미 왜관이 머무르는 관왜(館倭)[37]가 있으니, 개시(開市)[38]하는 날 스스로 교역할 것이거늘[39], 이제 규정 밖에 배를 보내어서 무역한다고 칭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듯합니다. 또한 이미 공무(公貿)[40]가 아니니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닙니다.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일러서 저들 스스로 매매하라는 뜻으로 깨우치라고 동래부사에게 행이(行移)[41]함이 어떠하올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허한다 하였음.

정축(1637) 윤4월 초8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 등지승(藤智繩)에 대한 세사미(歲賜米)[42]를 품정(稟定)하기 위해, 귤지정의 공로에 대한 앞서의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장계를 빨리 올리라는 것과, 그리고 강원(江原) 감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왜인들이 구청하는 응자(鷹子)[43]를 가을의 매가 산출되기를 기다려 추가로 보내도록 십분 타일러 기어코 듣게 하라는 관문을 보낸다 하였는데[44], 앞서의 등록을 상고해 보니 귤지정(橘智正)이 병자년(1636)에 능침(陵寢)을 범한 도적을 잡아 바쳤으며, 또한 오고가며 화친을 통하는 일을 그가 전담하여 관장하였기 때문에, 매년 쌀〔米〕 50석(石)과 콩 3석(石) 5두(斗)를 하사하였다가[45], 임자년(1672)에 수직(受職)[46]한 뒤로는 매년 한 번씩 조회하면서 미포(米布) 및 일공잡물(日供雜物)[47]을 받기에[48] 세사미(歲賜米)를 혁파하였거니와[49], 등왜(藤倭)는[50] 스스로 제 공로가 귤지정(橘智正)보다 못하지

---

37) 관왜(館倭) : 부산의 왜관에 상주하며 왜관 업무를 처리하는 왜인.
38) 개시(開市) :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무역 시장. 조선후기 부산 왜관에서는 매월 상순 중순 하순마다 각기 3일과 8일에 상인들이 동래부에서 발행하는 패를 받아 상품을 가지고 왜관의 수문(守門)에 가서 훈도(訓導)와 별차(別差) 및 수세관(收稅官), 개시감관(開市監官) 등의 감독 하에 장부에 기록하고 왜관(倭館)에 들여준 뒤 별도로 그 대금을 결재하였다.
39) 是白去乙 : [이두]이삷거늘. 이거늘.
40) 공무(公貿) : 조선정부에서 대마도 도주에게 공식으로 약정해 준 무역.
41) 행이(行移) : 행문이첩(行文移牒)의 준말. 공문을 전달하고 공문서로 조회함.
42) 세사미(歲賜米) : 조선 정부에서 외교상 공적이 있는 대마도 왜인에게 해마다 하사한 미곡.
43) 응자(鷹子) : 사냥용의 매.
44) 是白置有亦 : [이두]이삷두어신이여. 이시다 하니.
45) 爲白如可:[이두]하삷다가. 하다가.
46) 수직(受職) : 조선정부로부터 관직을 받는 것을 이름이니, 관직을 받은 왜인을 수직왜인(受職倭人)이라 하였음.
47) 일공잡물(日供雜物) : 왜관을 관리하는 수직(受職) 왜인에게 지급하는 일상 용품.
48) 乙仍于:[이두]을지즈로. ~이기에.
49) 爲白有在果 : [이두]하삷잇견과. 하시었거니와.
50) 段:[이두]딴. ~은(는).

않다고 하지만, 바라는 바가 50석에 이르지는 않는지라[51], 신의 생각으로는 세사미 이 삼십석이면 족히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니[52], 해조(該曹)[53]에 명하시어 다시 상의하여 처분하시기를. 신이 지난 9월분 각도(各道) 각관(各官) 각년(各年)에 왜인들이 구청한 매〔鷹子〕의 납부 여부를 초록해보니, 본도에서 정해 놓은 각관의 신미년부터 병자년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이 98연(連)[54]이고, 강원도는 임신년(1631)부터 병자년까지 수납하지 못한 것이 87연으로, 도합 185연이니, 앞서 을해(1635)·병자(1636) 두 해 분의 왜선 15척에 지급한 77연을 제하면, 더해야 할 수가 108연이나 되는데, 이는 곧 조흥(調興) 등에게 각 년마다 지급하지 못한 것임. 대개 각도 각관에서는 혹 필납(畢納)하기도 하고 혹 면제하였는데, 납입하기도 하고 혹 전체를 미납한 곳도 있어서, 각년의 미수(未收) 조목을 재량하여 감한다면 균등하지 못할 것이기에, 본도의 을해조 33연은 전감(全減)하고 병자조 23연은 재감(裁減)[55]하며, 강원도 을해조 32연은 전감하고 병자조 20연을 재감하여, 두 도에서 감하는 양을 합하면 108연이고, 본도에서 납입할 양이 42연, 강원도에서 납입할 양이 35연이거늘[56], 위의 재감(裁減)과 전감(全減)의 수를 본도 순찰사에게 알렸다는데[57], 본도에서는 미수(未收)가 10연이고, 강원도에서는 미수가 1연이거니와[58], 방금 행이(行移)한 일의 내용이 이러하며, 정축년 분의 매는 가을이 되면 찾아서 지급하겠다고 신이 역관에게 명하여 타이르라 하였으니, 강원도 가을 매를 기일에 맞춰 보내라고 해조에서 행이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하는데, 등지승(藤智繩)이 전후로 우리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쳐 주선한 공은 극히 가상하니 세사미를 귤지정(橘智正)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을 복계(覆啓)[59]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귤지정의 공로는 등왜와는 자못 차이가 있어서 한가지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등왜에 대한 세사미는 귤정정보다 양을 줄여 20석으로 지급함이 마땅할 것임. 왜인의 구청하는 매를 두 도에서 정하여 병자 이전의 각년 분 감량 수가 이렇게 많다 하니 극히 다행이거니와, 정축조의 매는 가을 매가 산출되기를 기다려 즉시 보내라고 강원감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그대로 윤허하였음.

---

51) 是白去等 : [이두]이삻거든. 이거든.
52) 是白置 : [이두]이삻두. ~이니.
53) 해조(該曹) :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해당 관청.
54) 연(連) : 매의 숫자를 헤아리는 단위.
55) 재감(裁減) : 재량하여 감함. 전체 양의 일부분을 감함.
56) 是白去乙 : [이두]이삻거늘. 이거늘.
57) 爲白有如乎 : [이두]하삻잇다온. 하였다는데.
58) 是白在果 : [이두] 이삻견과. ~이거니와.
59) 복계(覆啓) : 하부 관청에서 올린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관청에서 의견을 달아 국왕에게 올리는 일.

정축(1637) 5월 30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왜역(倭譯) 강우성(康遇聖)이 동래에서 와서 알리기를, 등지승(藤智繩)의 말 내용에 도주(島主)가 다음 달에 에도〔江戶〕에 가야 하는데, 본국의 답서를 또한 관백(關白)에게 특별히 보여 주어야 할 터인데, 글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에도의 평안을 하례하고, 다음으로 도주(島主)의 성의를 사례하고, 마지막에 본국에서 강화하고 군사를 물린 연고를 말하여, 문자 사이에 억양을 짐작하여, 그 자신이 와전되는 말을 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음. 승문원(承文院)[60]에 명하여 이에 의거하여 답서를 고쳐 지어 도주의 청원을 따라 줌이 무방할 듯합니다. 또한 들으니 도주가 좋은 말 세 필을 간절히 구하는데 본도에서는 합당한 말을 구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 합니다. 도주의 이번 걸음에는 소관 사무가 자못 막중하니 태복시(太僕寺)[61]의 외구(外廐)에 체구가 크고 합당한 말이 있으면 특별히 무역을 허락하여 에도〔江戶〕에서 생색을 낼 수 있도록 함도 무방할 듯하여 감히 입계한다" 하였다.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대로 하되, 외구의 말을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한 조목은 전례를 만들기에 난처한 듯하니, 말이 있는 사람에게 타일러서 내려 보냄이 옳을 것이다" 하였음.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비변사에서 입계한 말에 대하여 전교(傳敎)에 이리저리 하라 전교하셨다는데, 여염집에 비록 간혹 합당한 말이 있기는 하여도 주관하여 타이를 곳이 없습니다. 듣자니 갑자년에 조흥(調興)이 간절히 말 무역을 원하는 소청이 있었는데, 사복시에서 간택하여 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례에 의거하여 사복시에 명하여 말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체구가 크고 나이가 적으며 재능이 있는 말을 간택하여 내려보내어 값에 맞추어 매매하도록 함이 어떠하올지?" 하였더니, 전교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음.

정축(1637) 6월 초1일

사복시(司僕寺)[62] 관원이 제조(提調)[63]의 뜻을 받아 입계하기를, "예조에 입계한 말에 대하여 이리저리 전교하셨다는데, 이제 이 예조의 계사(啓辭)는

60) 승문원(承文院) : 조선 시대 때 외교 문서를 관장하던 관서.
61) 태복시(太僕寺) : 조선시대 국왕의 거마(車馬)와 말의 조련을 관장하던 관아.
62) 사복시(司僕寺) : 태복시(太僕寺)와 같음.
63) 제조(提調) : 각 관청의 일을 명목상으로 맡은 벼슬로서, 종1품 또는 종2품이 품질을 가진 이가 되는 경우를 일컬음.

단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것입니다. 본시(本寺)는 말을 관할하는 관청이니, 본시에서 내려 보낸다면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염집에 말이 있는 곳을 본시에 명하여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갑자년(1624) 말 무역의 규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갑자년에 왜인이 구청한 말을 무역할 적에 평시서(平市署)[64]에서 주관하여 오부(五部)[65]로 하여금 말을 찾아 알아본 뒤, 본시의 이마(理馬)[66]가 품질의 선악을 살피게 하고, 호조에서 값을 주어 사서 보내게 하였는데, 지금은 곡절은 말하지 않고 오로지 본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니, 매우 부당합니다.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하였다. 전교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음.

정축(1637) 6월 22일

예조단자. "전일 사복시(司僕寺)에서 입계하여 왜인이 구청한 말을 갑자년의 사례에 의거하여 호조(戶曹)에서 값을 주어 사서 보내라고 계하(啓下)하였는데, 방금 호조의 이문(移文)을 접하니, 앞서 말 세 필을 이미 사들여서 먹이고 있으니 사복시에서 살펴 처치하라고 관문을 낸다 하였기로, 사복시와 병조(兵曹)에 명하여 별도로 양마(養馬)[67]와 이마(理馬) 각 한 사람과 견마(牽馬)[68] 한 사람을 속히 지정하여 내려보내되, 가는 길의 각관에서 각별히 먹여서 호송하라는 뜻으로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음.

정축(1637) 8월 초10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제주(濟州)에서 소를 무역하는 일은 본도 감사의 장계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품의하여 처분할 것이로되, 신 등이 또 들으니 대마도에 소가 자못 넉넉하여 그 값이 은자 몇 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약 동래부사의 뜻으로 서계(書契)[69]를 만들어 관왜(館倭)에게 전해주어서 본국의 사정을 타일러 소 무역을 요청하면 도주(島主)가 반드시 마음을 다할 것이고, 대마도 소의 수가 부족하면 또한 이웃 섬에게 널리 무역하여 응할 가망이 없지 아니하

64) 평시서(平市署) : 조선시대 시장에서 사용하는 도량형과 물가의 고저를 감독하는 관청.
65) 오부(五部) : 조선 시대 서울 시내 다섯 구역의 행정단위.
66) 이마(理馬) : 사복시 소속으로 말의 조련을 맡아보는 관원.
67) 양마(養馬) : 말 먹이는 사람.
68) 견마(牽馬) : 말을 끌고 가는 사람.
69) 서계(書契) : 조선과 일본 사이에 거래하던 공식 외교문서.

니, 시험삼아 왜역(倭譯) 홍희남(洪喜男)에게 명하여 동래에 내려가 동래부사와 상의하여 주선하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입계한대로 하라 함.

정축(1637) 8월 22일

예조단자. 왜인이 구청(求請)한 말 두 필은 호조(戶曹)에서 값을 치뤄주고 사들여서 이마(理馬)가 끌고와서 내려 보냈는데, 방금 동래부사의 첩정(牒呈)[70]을 보니 '동 마필을 여러 날 먹이고 이마(理馬)와 역관에게 주어서 왜관에 들여주게 하였는데, 이른바 지마왜(知馬倭)[71]란 자가 말이 빛깔은 비록 청구한 것과 같으나 형체와 모양은 저들이 청구한 말이 아니라 하여 되돌려 보내고서는 전혀 다시 돌이킬 뜻이 없으니, 먼 길을 끌고 와서 끌고 가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아 극히 통분스러운데, 교활한 왜인은 스스로 말을 안다고 하면서 노태마(駑台馬)[72]라고 팔을 저으면서 사들이려고 하지 않기에, 부득이 하여 동 마필 두 마리를 이마(理馬) 홍의형(洪義亨)에게 도로 주어 올려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돌아온 말을 호조에 명하여 처치하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73] 하였음.

정축(1637) 11월 초6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부산첨사(釜山僉使) 정원필(鄭元弼)의 치통(馳通)[74]을 접하니, 왜관에 머무르고 있는 대관왜(代官倭)[75] 등이 '응련(鷹連)[76]과 마필(馬匹)[77]과 야학(野鶴)[78] 등의 물건을 팔러오지 않기에 친히 동래로 가서 영감 전에 간청하겠다' 하면서, 장차 수문(守門)을 나서려는 즈음에 군관(軍官)이 가로막았더니, 머리를 구타하고 문을 부수는 지경에 이르렀거늘,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겨우 되돌아 들어가게 하였거니와[79], 일후의 폐단이 극히 염려

---

70) 첩정(牒呈) : 첩보(牒報). 사건의 정황을 보고하는 문서.
71) 지마왜(知馬倭) : 말을 맡아보는 왜인.
72) 노태마(駑台馬) : 노태마(駑駘馬). 동작이 둔하고 느린 말.
73) 爲良如敎 : [이두]하야다이산. 하여라.
74) 치통(馳通) : 역마(驛馬)를 통하여 급히 전달하는 통보.
75) 대관왜(代官倭) : 조선시대 대마도주가 부산 왜관에 파견하여 공사 무역을 관장하게 한 왜인.
76) 응련(鷹連) : 사냥용의 매. 응자(鷹子).
77) 마필(馬匹) : 말.
78) 야학(野鶴) : 두루미.
79) 爲有在果 : [이두]하잇견과. 하였거니와.

되기에 치통한다 하였음[80]. 왜인들이 관시(關市)[81]에 탐을 내는 것은 거기에 당화(唐貨)[82]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화가 나오는 길이 이미 끊어져서 장사꾼이 왜관 문에 오지 않으니, 왜인들은 삭막하여 흥이 없어져 점차 억지로 짜증을 낼 뿐 아니라[83], 도주(島主)가 한번 무고를 당한 뒤로부터는 뇌물로 빌려 쓴 비용이 은자(銀子) 10만 여 냥에 이르렀다고[84], 왜관에 머무르는 상왜(商倭)[85]들을 일체 금하고, 대관왜 등이 그 이익을 독점하여, 물자의 가격이 날마다 폭등하였습니다. 어제 한 푼의 이익을 얻으면 오늘 또 한 푼의 값이 오르고, 날마다 달마다 불어나서, 몇 년 전에는 동철(銅鐵)[86] 1칭(稱)[87]의 값이 7,8냥에 불과하였는데, 근년에는 17냥에 이르렀고, 금년 봄에는 지삼(枝三)[88] 1칭의 값이 30여 냥에 불과하였는데, 금년 가을에는 70냥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까닭에 장사꾼들은 이득이 없어 비록 약간의 물자를 가지고 오는 자가 있더라도 팔러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의 구청은 앞서부터 매우 간절하였지만 요행히 말을 끌고 오는 자가 있어도 퇴짜를 놓을 뿐만 아니라 값을 너무 가볍게 매겨서, 근일에 조정에서 내려보낸 말 또한 퇴짜를 맞았습니다. 원근에 그 소문을 들은 자라면 그 누가 왜인을 위해 제 마필(馬匹)을 끌고 공연히 왔다 가려 하겠습니까? 여름 동안에 말 두 필을 겨우겨우 찾아 주었으나, 가을 들어서는 한 필도 끌고 오는 자가 없었다 합니다[89]. 몇일 전 만쇼오잉〔萬松院〕[90] 정관(正官) 등이 연향(宴享) 때에 사용할 말과 매 등을 진작 매입하지 못하여 극히 걱정된다고 간청하거늘, 신은 '저번에 말 두필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체구가 크고 색깔도 좋으며 걸음도 잘 걸어서 좋은 말이라 할 만하였는데도 퇴짜를 당하여 보내고는 그 뒤로 사람들이 헛고생을 꺼려하여 팔러 오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모두 너희들의 과오이다. 매는 철이 아직 이르니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ㅍ달 16일 대관왜 등이 신에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말과 매와 두루미〔野鶴〕 등은 곧 도주(島主)가 구하는 물건인데 아직도 매입하지 못하여 극히 민망스럽고, 쌀과 포목(布木)도

80) 是白有亦:[이두]이삷이신이여. ~이었으니.
81) 관시(關市) :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변방에 설치된 시장.
82) 당화(唐貨) : 중국 상품.
83) 叚不喩 : [이두] 뿐아닌지. ~뿐 아니라.
84) 是如 : [이두]이다. ~이라.
85) 상왜(商倭) : 장사를 목적으로 왜관에 드나드는 왜인.
86) 동철(銅鐵) : 구리쇠.
87) 칭(稱) : 무게 백100근(斤), 약 60㎏의 단위. 칭(秤).
88) 지삼(枝三) : 담배의 일종. 지삼초(枝三草). 진삼(鎭三).
89) 是白如乎 : [이두]이삷다온. ~이라 하니.
90) 만쇼오잉[萬松院] : 대마도에 있었던 사찰로 도주 소오 요시토모[宗義智]의 원찰(願刹) 이름이다. 조선후기 소오 요시토모의 외교적 공헌을 인정하여 해마다 이 사찰 명분의 무역선 한 척이 내도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였다.

속히 지급하여 줍시사 하였거늘, 신은 앞에 한 말로 답변하였고, 또 곧 원근에 알려서 모쪼록 지급할 미포(米布)로 제급(題給)[91]하겠다는 뜻으로 역관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는데, 이른바 일대관(一代官)이라 일컫는 자가 스스로 일찌기 정관(正官)을 지냈다면서, 다른 대관(代官)과는 견줄 수가 없는데, 올린 바 단자에 회답을 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였다고 역관이 와서 말을 하거늘[92], 신은 역관에게 전언(傳言)하기를 '정관(正官)으로 나왔으면 정관으로 대접하고, 대관(代官)으로 나왔으면 대관으로 대접할 따름이다. 대관 단자에 회답하는 것은 일찌기 그런 규정이 없다. 일대관(一代官)이 비록 일찌기 정관을 지냈다고 하나, 이제 대관(代官)이 되었는데 어찌 정관의 예로 대접하겠는가? 하물며 매와 두루미 등은 모두 본국에서 지급할 물건이 아니고, 피차간에 각기 매매하는 것이거든[93], 어찌 감히 자기의 사사로운 청을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노여워하는 것이냐'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역관이 돌아가 왜관에 가서 타이르다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마침내 문 지키는 사람을 구타하여 거짓으로 도망치는 모양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제멋대로 패악을 부리며 공갈을 하면서 반드시 제 사욕을 이루고자 하고 있는 바[94], 그 정상과 태도가 차마 바로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대개 수년 이래로 세견선(歲遣船)의 정관(正官) 및 별차(別差), 두왜(頭倭) 등 수십 명의 무리가 나와도 모두들 정성을 바치고 순종하지만[95], 일대관 육랑병위(六郎兵衛) 등으로 호칭하는 왜인 및 만쇼오잉〔萬松院〕 정관 평성관(平成寬) 등이 나온 뒤로는 이런 패악하고 거슬리는 해괴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변통하여 징계하는 조처가 없으면 일후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전의 등록을 상고하니, 정기광(鄭基廣)이 부사였을 때 요미(料米)를 지급할 즈음에 호방(戶房)의 색리(色吏)[96]를 왜인 등이 결박하고 손가락을 분지르기에, 즉시 조정에 장계하여 관왜(館倭) 등이 약조를 위반하고 소란을 부리며 폭행을 자행한 실상을 서계(書契)에 써서 보내었더니, 그 때 관왜 등이 자못 두려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97]. 이제 이번 홍희남(洪喜男)이 대마도에 들어갈 때 이런 사연을 서계에 첨가하여 넣음이 어떠하올지. 해조(該曹)에 명하여 상량하여 조처하시기를"

예조의 계목에 의거하여 첨부하여 계하함. 왜인들이 매〔鷹連〕와 말, 두루미〔野鶴〕 및 미포(米布) 등의 일로 패악을 부려 이렇게 공갈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타일러 진정시키는 것은 그만 둘 수 없을 듯하다. 홍희남은 왜어(倭語)

---

91) 제급(題給) : 결재를 하여 지급함.
92) 爲白去乙 : [이두]하숣거늘. ~하거늘.
93) 是去等 : [이두]이거든.
94) 爲白臥乎所 : [이두]하숣누온바. ~하온 바, ~이온 바.
95) 爲白乎矣 : [이두]하숣오되. 하지만.
96) 색리(色吏) : 특정한 일을 담당하는 하급 관리.
97) 是如爲白置 : [이두]이다하숣두. ~이라 하옵니다.

에 능통하여 이전부터 왜인들에게 존중받고 있는데, 일과 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수일 내로 차출하여 보낼 것이며, 도중(島中)에 보내는 서계 또한 정기광(鄭基廣)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승문원에 명하여 글을 지어, 홍희남이 가는 걸음에 부쳐서 타이르고, 듣지 않으면 도주에게 보내어서 두려워하여 조심하게 함이 어떠할지. 장계대로 하라 윤허하셨음.

정축(1637) 11월 초8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에서는 동래부사 정량필(鄭良弼)의 장계로 인하여 역관 홍희남을 보내어 타이르게 하자고 회계(回啓)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말과 매와 두루미 등은 곧 도주(島主)가 구하는 물건인데 요즈음 행상(行商)들도 팔려 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 저들이 극도로 초초하였기에 함부로 분노하여 문을 지키는 사람을 구타하였으나, 이 역시 도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 한 데서 나온 것으로 도리어 죄를 얻은 것이고, 도주의 요구 또한 모두 제가 스스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관백(關伯)에게 바쳐 보신(保身)하자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 형세가 반드시 얻은 뒤에야 그만 둘 것이니, 만약 제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한다면 저들의 패악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점차 굴러가다가 혹시라도 의외의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상(私商)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는 관가에 알려 재촉하기도 어려울 듯하고, 저들의 요구를 대충이라도 부응하여 그 노여움을 그치게 하지 않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각관에서 왜관에 들여갈 공목 및 왜공잡물 중에서 제감(除減)하여 각관에서 매와 두루미와 말 등을 사들여 왜인에게 지급하고, 그 가격에 맞추어 지급해야 할 공목(公木)[98]에서 계감(計減)하게 한다면, 왜인들도 반드시 그들이 구하는 바를 얻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우리로서도 저들이 얻고자 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어서 둘 다 편할 듯 합니다. 이런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이문(移文)하여 즉시 거행한 뒤 장계하도록 하고, 지급해야 할 공작미(公作米)[99]와 공작목(公作木)[100]도 속히 지급하게 명하심이 편할 듯 합니다. 또 도주에게 보내는 서계(書契)는 전일 정기광 때에는 왜인들이 요미(料米)를 주는 사람을 결박하여 손가락을 분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서계를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조심하게 한 것입니다마는, 이제

98) 공목(公木) : 공무역(公貿易)에서 조선측의 결재 대금으로 획정해 놓은 포목(布木).
99) 공작미(公作米). 일본과의 공무역을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서 포목(布木)인 공작목(公作木)을 미곡으로 바꾸어 편성한 예산.
100) 공작목(公作木) : 일본과의 공무역 대금으로 사용되었던 포목. 해마다 미곡 16,000섬 대신에 공목(公木) 400동(同)을 책정하였다.

는 도주가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노하여 공갈하는 등 못할 짓이 없었으니, 서계를 보내더라도 혹 들은 체 하지도 않을 수가 있어서 수고만 할 뿐 무익할 것입니다. 서계는 만들지 말고 다만 홍희남을 보내어 타이르게 함이 합당할 듯 합니다. 감히 이렇게 아뢰나이다."하였음.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대로 하되, 매는 공무역에서 제급하는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두루미는 사서 지급하는 규례를 만드는 것이 온당치 않을 듯하니, 이 두 조목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중 말 또한 외방에서 무역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을 터이니 전례대로 서울에서 내려 보내라" 하였음.

정축(1637) 11월 초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본조에서 입계한 일에 대하여 전교가 계셨습니다마는, 여염집에 재능 있고 색깔 좋고 체구가 큰 말이 없지는 않겠지만, 관가에서 독촉하여 보내는 것은 형편상 어렵습니다. 전례에 의하여 호조에 명하여 합당한 양마(良馬) 두세 필을 값을 주어 사들여서 급히 내려 보냄으로써 전일처럼 점퇴(點退)[101]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어떠하올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그대로 윤허한다' 하였음.

정축(1637) 12월 초7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구청한 말 두세 필을 호조에서 값을 주어 사들여 속히 내려보내라는 일로 지난 달 초순에 본조에서 입계하여 윤허를 받은 후, 호조에서 오래도록 거행하지 않음은, 형편이 아마 칙사로 인하여 일이 많아 다른 데 미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칙사가 지나간 뒤 본조에서 이문하여 재촉하였더니, 호조에서 회답하기를 '본조에서는 합당한 말을 찾아낸 뒤에 그 값을 쳐주라면 당연히 수에 맞춰 지급하겠지만, 마필을 찾아내는 데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 본조에서 알 바 아니요, 값을 바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본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이미 호조에게 명하여 값을 주어 사들여서 내려 보내라고 계하하였는데, 이렇게 미루는 것은 극히 미안합니다. 동래부사의 장계에 있는 홍희남의 수본(手本)[102]을 보니 왜인들이 말과 매와 두루미 등의 일로 온통 화를 내며 공갈을 하고 있어서 매우 염

101) 점퇴(點退) : 흠을 지적하여 물리침.
102) 수본(手本) : 공적인 일과 관련하여 자필(自筆)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문서.

려스럽다고 합니다. 전에 계하한 대로 호조에 명하여 수삼일 내로 급히 사서 보내라고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그대로 윤허한다' 하였음.

정축(1637) 12월 초10일

예조단자. 방금 도부(到付)[103]한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내용에, "방금 특별히 보낸 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도주가 구하는 마필을 외방에서 구입하기는 반드시 용이하지 않아서 두세 필을 서울에서 하송하라고 입계(入啓)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틀림없이 오래지 않아 내려올 것인데, 소인이 내도한 이후로 날마다 왜관에 가서 그들의 말과 안색을 살펴보니 마필을 무역하는 것이 비록 절박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을 담당하는 이마왜(理馬倭)가 이미 들어갔을 뿐 아니라, 구하는 것도 극상품 화마(花馬)[104] 한 두 필이라' 하는지라, 서울에서 오는 말이 만약 저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점퇴하여 무역하지 않을 것이니, 조정에서 무거운 값을 주고 구입하여 특별히 내려 보낸 말을 도리어 올려보내게 되면 일의 체면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국가에서 비용을 허비함도 적지 아니하니, 인근 고을의 말이 있는 집에서 모쪼록 알려 입급(入給)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도록 하시고,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말은[105] 잠시 정지하였다가[106] 후일에 이마왜(理馬倭)가 나와서 다시 구하면 장계하여 처치하라는 뜻으로 해조에 이문하도록[107] 수본(手本)에 근거하여 첩정한다 하였음. 동래부사의 보고가 이러하니 서울에서 하송하는 말을 아직 무역하여 보내지 마는 것이 어떠할지?" 하였음.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음.

무인(1638) 3월 초8일

경상감사 이경로(李景魯)의 장계 안에 좌수사(左水使) 이의립(李義立)의 치보(馳報) 내용에 이 달 25일 아침에 왜인의 분간할 수 없는 배 한 척이 나온 일로 수사(水使)가 바다에 나와 변고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시에 도부한 동래부사 정량필(鄭良弼)의 치보 내용에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역관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던 바, 회답한 말의 내용이 대마도 도주의

---

103) 도부(到付) : 공문 등의 전달 문서가 도착함.
104) 화마(花馬) : 워라말.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
105) 乙良 : [이두]을랑. ~은(는).
106) 爲有如可 : [이두] 하잇다가. 하였다가.
107) 爲只爲 : [이두] 위기암. ~하기 위하여.

차왜(差倭)인 선병위(善兵衛)와 격왜(格倭) 6명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108]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전일에 구청하여 들여간 매와 사무(私貿)[109]하여 간 매가 태반이 죽었는데, 관백(關伯) 앞으로 보낼 예단(禮單)에 소용될 매를 더 무역하는 일이 만분 긴급하기로[110] 이 일을 위하여 나왔다고 하였으며, 별도로 보낸 역관 홍희남(洪喜男)과 훈도 이장생(李長生)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는, 차왜 선병위가 작은 배를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매년 대군(大君) 앞으로 바치는 매〔鷹子〕 40연과 집정(執政) 등에게 납부하는 것도 또한 7,80연에 내리지 않는데, 금년에는 매가 많이 생산되지 않아서 얻은 것도 매우 적고, 전일 들여보낸 것도 태반이 죽어, 관백에게 보낼 공물이 극히 민망한데다가, 에도〔江戶〕의 응사(鷹師)가 오사카〔大坂〕 성에 나와서 바야흐로 재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하는 각종 잡물도 무역하여 들여 보내지 못하였으므로, 대관왜(代館倭)에게 모쪼록 무역을 요구하여 급급히 들여 보내라고 말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면서, 물목(物目) 발기〔件記〕를 내어 보여주거늘, 저희들이 말하기를 매는 재삼 치계(馳啓)하여 각관에 분부하여 속속 내려오고 있으나, 진응(陳鷹)[111]은 받지 않고 신응(新鷹)[112]은 체구가 작은 것을 또한 무역하지 않으니 이 밖에는 어찌할 수 없고, 또한 각양의 당물(唐物)[113]은 근래에 끊어진 까닭을 전에 이미 말하였거니와, 그 중에 호도와 잣, 대추, 청서피(靑黍皮)[114], 녹두가루, 황조포(黃照布)[115], 어피(魚皮)[116], 황앵(黃鶯)[117] 등의 물자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어피와 황앵은 각기 잡히는 철이 있어서 때가 아니면 얻기 어렵고, 황조포는 곧 드문 물건인지라, 지난해 통신사 때에도 간신히 마련하였거니와 이 또한 가을 추수 뒤에 짜는 물건인지라 갑자기 얻기가 어렵겠다 하였으며, 대개 이런 사연은 세견선(歲遣船)이 나올 적에 보내도록 말하는 것이 전례인데, 나와야 할 세견선은 아직도 나오지 아니하고 매양 비선(飛船)[118]을 보

108) 爲有去乙 : [이두]하잇거늘. ~하였거늘.
109) 사무(私貿) : 사무역(私貿易). 공식으로 책정한 무역량 이외에 왜인과 조선 상인 사이에 사사로이 거래하는 무역.
110) 乙仍于 : [이두]을지즈로. ~에 따라, ~이기에.
111) 진응(陳鷹) : 수지니. 잘 길들인 매. 2년생을 초진(初陳)이, 3년생을 삼진(三陳)이라고 한다.
112) 신응(新鷹) : 새로 포획한 어린 매. 날찐이.
113) 당물(唐物) : 중국의 상품.
114) 청서피(靑黍皮) : 뒤의 문맥으로 보아 청서피(靑鼠皮)를 가리키는 듯. 청서피는 날다람쥐나 하늘다람쥐의 털가죽이다.
115) 황조포(黃照布) : 계추리. 삼의 겉껍질을 긁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누런 색의 삼베. 황저포(黃紵布).
116) 어피(魚皮) : 물고기의 가죽. 대개 상어피를 가리킨다.
117) 황앵(黃鶯) : 깃털이 노란색의 꾀꼬리.
118) 비선(飛船) :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내니 전례에 어긋난다고 하였더니, 세견선은 지금 바야흐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의 형세가 불순하여 몸체가 큰 배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전일에 나온 차왜 평성련(平成連)에게도 돌려 물었더니, 말하는 것이 같다고 수본(手本)을 올렸음. 왜인이 구하는 물목 중에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면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방색하려고 하거니와, 황조포와 청서피와 어피, 기타 얻기 쉬운 물건은 모두 장사꾼들이 팔러 오는 물건이 아니오, 또한 본부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아니니, 어떻게 그 요구에 대응해야 할른지[119], 해조에 명하여 처치하게 하시고, 별도로 구청한 매 46연 중 40연은 이미 입납하였고, 본도에 획정한 6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본도에 보고하여 재촉하고 있으니, 신의 장계가 되돌아올 때까지 본도 각관의 사응(私鷹) 120연 중 추응(秋鷹) 14연과 진응(陳鷹) 98연을 각기 매의 주인이 가져오고, 추응은 하나도 몸이 큰 것이 없고, 진응은 노응(老鷹)이라고 일컬으며 사들이지 않고 모조리 점퇴하여 다시는 팔러 오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을 역관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겠다고 치보(馳報)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관백 앞으로 보내는 예단에 사용될 잡물을 무역하여 가는 일을 전담한 차왜가 나왔다고 하는 바[120] 그 도주의 절박한 사정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겠는데, 거두어들이지 못한 매〔鷹子〕는 이미 비국(備局)에서 회계(回啓)하여 재촉하고 있으나, 호도, 잣, 대추, 녹두가루, 어피 등의 물건은 비록 제철이 아니지만 본도에서 흔한 산물이며, 다만 행상이 팔러 다니는 물건이 아니니 왜인들이 사무(私貿)를 하는 데는 필시 쉽지 않을 것이니, 본도 감사에게 명하여 동래부사와 상의하여 편리한 대로 마련하여 주고 왜인에게 지급할 미포(米布)로 값을 계산하여 계감(計減)하도록 하며, 황앵도 역시 철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급함이 마땅할 것이며, 황조포와 청서피는 만약 해조(該曹)에 저장한 것이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는 형편이면, 힘 닿는대로 마련하여 동래부사에게 내려보내어 고른 값으로 무역하도록 허락함이 편하고 마땅할 듯함. 이 한 조목은 호조(戶曹)에 명하여 사세를 헤아려 품신하여 처분토록 함이 어떠할지. 입계대로 윤허하심.

무인(1638) 4월 초1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접한 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본 내용에, "특송(特送) 정관(正官) 등이 말하기를 기이(紀伊) 대납언(大納言)이 사람을 도주에

119) 爲白乎乙喩 : [이두] 하삷을지. 하시올지.
120) 是如爲白有臥乎所 : [이두]이다하삷이시누온바. ~이라 하시었다는 바.

게 보내어 청하기를 '약재가 혹 있더라도 일본 의원은 잘 알아서 변별하지 못하니 병을 다스리는 데 불리하다. 조선에는 반드시 좋은 의원이 있을 터인데 여러가지 약성을 물어 보고, 또한 약간의 약재를 별도 기록으로 써서 보내니, 그 열매와 뿌리를 얻어 뒷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고자 원한다' 하였는데, 대납언은 곧 대군의 동성 삼촌숙(三寸叔)인지라 이 사람의 청은 특별히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열매는 각기 종이 봉지에 담아 이름을 쓰고, 각종 약 뿌리는 질그릇 분에 이식하여 역시 표를 붙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 급급히 찾아 달라고 하면서 보내온 동 목록을 저희들이 가는데 부쳐 보냈습니다. 다례를 거행하는 날 동래영감에게 고하여 구청할 계획이나 일각이 급하기로 우선 이 사연을 진술하여 동래영감에게 고하고, 모쪼록 찾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며[121], 동 목록을 내어주기에 부득이하여 받아서 올리는 일로 수본을 올린다" 하였음. 이른바 대납언이란 자는 도주에게 연결하여 여러가지 약재의 뿌리와 열매를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니 부응해 주어야 마땅할 것이로되, 대개 각종의 약재는 혹 뿌리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것도 있고, 혹 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있으며, 혹은 당재(唐材)[122]도 있는데, 당재는 결단코 허락하여 일후의 폐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거니와, 위의 여러 약재의 뿌리와 씨를 있는 대로 찾아서 주도록 해조에 명하여 품신하여 처분하게 하시되, 올린 별폭을 봉하여 올려보내오니 회답하는 일도 역시 해조에 명하여 확정하게 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왜인이 구하는 것이 약재가 아니라 약종(藥種)의 뿌리와 씨이고, 이른바 대납언이란 자는 관백의 삼촌숙이라 하니[123], 당재 외는 얻을 수 있는 것이면 그 뜻에 부응함이 마땅할 것이로되, 뿌리를 옮기기에 철이 늦었거나 씨를 수확하기에 철이 이르면 그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종자는 양 의사(醫司)에 혹 저장한 게 없으면 해조에서 편의대로 사서 보내고, 약 뿌리 중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이면 생산되는 양남(兩南)[124] 지방에서 철에 맞추어 질그릇 분에 옮겨서 동래부로 보내도록 미리 분부하시며, 또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관왜(館倭)에게 말을 하도록 이문(移文)함이 어떠할지. 입계하니 그대로 하라 윤허하시며 호남은 아직 분부하지 말라 하심.

무인(1638) 4월 초6일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의사(醫司)[125]에 물으니 이번에

121) 爲白遣 : [이두] 하삽고. 하시고.
122) 당재(唐材) : 중국에서 생산되는 약재.
123) 是如爲白在果 : [이두]이다하삽견과. ~이라 하거니와.
124) 양남(兩南) : 전라도와 경상도.

왜인이 구하는 약은 모두 열매인데 평상시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오미자(五味子)[126]와 정력자(停藶子)[127] 외에는 창고에 저장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비록 사들이고자 해도 사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 반드시 가을이 되어 따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세가 이러하여 과연 서울에서 내려보내기가 어려우니, 본도에 명하여 각종 열매를 계절 따라 채취하여 찾아 주도록 하고, 각종 열매를 채취하거나 뿌리를 이식하는 데는 각기 그 철이 있으니, 아직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찾아 주겠다는 뜻으로 왜인에게 타이르도록 동래부사에게 이문함이 어떠할지? 입계한 대로 윤허함.

무인(1638) 5월 초4일

예조의 계목. 방금 접한 역관 홍희남과 이장생 등의 수본의 내용임. 어제 차왜 평성청(平成淸)이 타고 온 작은 배가 나왔거늘 그 나온 사연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이 달 22일에 에도에서 비선(飛船)이 내려와서 도주를 초청하였으므로 다음달 보름 께에 에도로 들어갈 것인데, 대군에게 헌납할 물건과 여러 집정과 장관(將官) 등에게 보낼 물건을 전일에 재삼 대관왜(代官倭)에게 말을 전하여 구득하라 하였는데도[128], 한 물건도 보내지 않고 도주가 출발할 일정이 임박하였음에도 예단에 소용될 물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으로 민망하기에, 부득이하여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지라[129], 이제 이번 물목(物目) 발기〔件記〕[130]를 동래 영감에게 전하여 드려서 급급하게 찾아주셔서 시일에 맞추지 못하는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답하기를 "에도에서 도주를 초청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물목 중에 당화(唐貨)는 근일 끊어진 이유를 전에 이미 평성련(平成連)에게 말하였고, 매는 이미 철이 늦었으며, 마필은 근간에 서울에서 내려올 것이며, 어피(魚皮)와 과실은 본도에서 이미 그것이 있는 곳에다 분부하여 지금 속속 팔러 오고 있으며, 황앵(黃鶯)은 잡기가 매우 어려우나, 그러나 모쪼록 구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도주의 에도 행은 다른 일은 없고 통신사를 배행(陪行)하여 내려온 지 이미 오랜 해를 경과하였는지라 그러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도주가 다른 사람에게 수십 만 냥의 부채를 지고 있고, 또한 에도에 가고 올 적에 허다한 요

125) 의사(醫司) : 의료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 조선시대에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를 삼의사(三醫司)라 하였다.
126) 오미자(五味子) : 오미자 나무의 열매. 폐(肺)를 도우므로 기침과 갈증을 멈추는데 사용한다.
127) 정력자(停藶子) : 두루미냉이의 씨. 이뇨(利尿), 통경(通經), 거담(祛痰)에 사용한다.
128) 爲良置: [이두]하야두. 하여도.
129) 爲有置 : [이두]하잇두. ~한 지라.
130) 발기[件記] :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열한 기록물.

구를 부응하기 어려워 극도로 번민하고 있는데, 이런 가련한 사정을 조정에서 통촉하시면 급한 일을 주선하여 줄 뜻이 없지 않을 것이로되, 이런 실정을 어찌 감히 태연히 진달하겠습니까? 대관(代官) 등이 형편없어 비록 팔러오는 자가 있더라도 염가로 교환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도주의 청을 예사로 여겨 일을 보는 사람들이 주선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지. 이번에는 용처가 급박하여 동래 영감 전에 서계(書契)를 곧바로 보내어 수일 내로 찾아 지급해 주어야[131] 가지고 갈 것이고, 당화(唐貨)는 없는 것으로 답하더라도 오히려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마필 등의 물건은 한 두 필을 백급(白給)[132]하여도 기실은 관계되지 않는 조선에서 생산되는 지극히 값싼 물건인데 이렇게 미루며 팔지 않는 것은 무슨 일인지. 이 모두 중간에서 저지하여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전일에 진달하였던 기이(紀伊) 대납언(大納言)이 구하는 약재의 뿌리와 열매에 대하여도 찾아 얻어 가야 책망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비록 물목의 수량대로 얻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몇 종류를 우선 찾아 지급해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평성련(平成連) 및 대관(代官) 등이 진작 여러가지 물건을 사들이지 않아서 도주의 행차에 미치지 못하면 중한 책망을 들을 것이기에 목이 타서 독촉하는 바, 극히 민망합니다. 그가 고한 바 별록(別錄)을 아울러 보내는 바, 수본과 함께 상고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왜인의 구청별록 내용에는 매와 말과 금선(錦線)과 선단(綠段)[133], 홍전(紅氈)[134], 상인삼(上人蔘)[135], 어피(魚皮), 잣〔栢子〕, 호도(胡桃), 황앵(黃鶯) 등인데, 매는 이제 이미 철이 늦어서 다시 얻을 길이 없고, 홍전과 금선과 선단은 없어진 사유를 전에 이미 누누히 말하였으니, 너희들도 또한 갖추어 아는 바이니 결코 지급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시고, 마필은 해조에서 매입하여 보내어 어제 이미 내도하여 아직 머물러 먹이고 있으니 수일 내로 들여줄 계획이며, 어피와 잣과 호도 등의 물자는 앞서 이미 본도의 있는 곳에 알려서 지금 바야흐로 무역을 허락하였고, 황앵도 역시 이제부터 찾아 지급할 계획이며, 상인삼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상품의 약재인데 여기서 찾아 지급할 길이 없사오나,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막아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언짢게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처치하게 하시며, 약재는 얻기 쉬운 종류나마 차왜가 들어갈 때 미처 찾아 주라는 뜻으로 본도에 첩보할 것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관왜가 구하는 물건

131) 爲良沙 : [이두]하야사. ~하여야.
132) 백급(白給) : 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줌.
133) 선단(綠段) : 옷이나 방석 등의 가장자리에 폭을 좁게 하여 둘러 장식하는 깁.
134) 홍전(紅氈) : 짐승의 털로 짜서 붉게 물을 들인 모직물.
135) 상인삼(上人蔘) : 상품의 인삼.

중에서 금선(錦線), 섬단(閃段)[136], 홍전(紅氈)은 당화(唐貨)인지라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중 매는 비록 이미 철이 늦었을지라도[137], 어피(魚皮)와 과실과 황앵 등의 물건은 다시 이문하여 속히 얻어 주라고 하시고, 대납언이 구하는 약재의 뿌리와 열매는 전일에 이미 입계하여 확정하여 이문을 보냈는데, 보낸 이문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다시 이문하시며, 구하는 바 상품(上品) 약용의 인삼은 규정 이외의 물자인지라 찾아 줄 것은 아니로되, 당화의 무역을 이미 허락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주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실망하여 노할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가려 지급하도록 이문함이 어떠할지. 숭덕(崇德)[138] 3년(1638) 5월 초3일 우부승지 신 김광욱(金光煜)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기묘(1639) 4월 초9일

경상감사의 장계. 당일 도부한 지난 3월 28일 자 성첩(成貼)[139]의 동래부사 이민환(李民寏)의 치보 내용. 이 달 27일에 기묘년조의 특송(特送) 제1선 정관(正官) 1인과 선주(船主) 2인, 압물(押物)[140] 2인과 시봉(侍奉)[141] 1인, 반종(伴從)[142] 7명, 동년조의 세견(歲遣) 제3선의 정관 1인과 반종 1명은 모두 다례(茶禮)를 차례대로 설행(設行)하고, 예조로 보내는 도주의 서계 2통과 별폭 2통 및 동 선박이 겸하여 대동한 세견 제6, 제7, 제8,제9, 제10, 제11 등 선박의 서계(書契) 8통과 별폭(別幅) 8통 도합 20통을 전례에 의하여 받아 감봉(監封)하여 해조에 올려 보내오며, 정관 등의 말로는 일본 및 도주는 무사하며, 이제 귀국에 도착하여서도 또한 무사하다 하오니 극히 기뻐 하례한다 하오며, 지난해 각 선편에 하사하신 매 그리고 사무역(私貿易)의 매가 매우 많아 극히 기뻤는데, 다만 운송하여 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보살피는 것을 잘못하여 거의 다 죽었기에, 여러 집정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지라, 도주께서 간절히 무역하여 얻고자 바라오니, 팔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다 하거늘, 신이 상사에 보고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하였으며, 구하는 바의 매와 말은 한편으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거행할 것이로되, 왜인이 구하는 마필은 도내에는

136) 섬단(閃段) : 빛깔이 서로 다른 날실과 씨실을 사용하여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도록 짠 비단.
137) 是白乎喩良置 : 이삷온지라도. ~이시올지라도.
138) 숭덕(崇德) : 청나라 태종의 연호.
139) 성첩(成貼) : 문서에 관인을 찍음.
140) 압물(押物) : 물건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141) 시봉(侍奉) : 높은 신분의 관원을 가까이 시중하는 사람.
142) 반종(伴從) : 높은 신분의 관원이 부리는 사환. 반당(伴倘).

전혀 없어서 심히 염려되오니, 특별히 해조에 명하여 상의하여 지휘해 주시도록[143] 연유를 장계로 올리며, 서계(書契)는 상사에게 전하며, 왜인의 구하는 바가 이러하니 매와 말이 있는 곳의 각관에[144] 시켜 팔러오게 하여 주시도록 첩정(牒呈)한다 하였음. 동 말과 매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 동래로 보내어 팔도록 허락하는 일을 각관에 행회(行會)[145]하고, 왜인이 뜻에 맞는 체구가 큰 마필을 과연 살 수 있을른지 기필할 수 없을 듯하여 매우 염려되니, 해조에 명하여 정탈(定奪)[146]을 지휘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일찌기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도주가 구하는 체구가 큰 마필을 본도에 명하여 마음을 다하여 무역하도록 허락할 것을 이미 행회한 일이 있으니, 이제 이번 장계에도 전례에 의거하여 진작 무역하여 주도록 다시 이문(移文)을 보냄이 어떠할지. 숭덕 4년(1639) 4월 초9일 행우부승지(行右副承旨)[147] 신 허계(許啓)의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기묘(1639) 4월 13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달 초5일에 기묘조의 특송 제1선 정관 1인, 선주 2인, 압물 2인, 시봉 1인, 반종 7명, 동년조 세견 제3선, 정관 1인, 반종 1명이 전례에 따라 진상하고 숙배한 뒤에 하선연(下船宴)[148]을 차례로 거행하였는데, 정관 등의 말에, 월라(月羅)말[149] 너댓 수(禾)[150]의 크고 실한 마필을 도주가 간절히 무역을 원한다고[151] 두세번 간절히 말하거늘, 전에 이미 본도 순찰사에 보고하여 각관에 알려 말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 팔라 하였다고 답하였으니[152], 그 언사를 살펴본즉 마필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극히 간절하니, 특별히 해조에 명하시어 상의하여 지휘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차왜의 말에 워라말〔月羅馬〕 너댓 살의 실한 말을 도주가 간절히 무

143) 爲白只爲 : [이두]하삷기암. ~하기로.
144) 良中 : [이두]아해. ~에.
145) 행회(行會) : 상부의 지시 명령을 소속 관원에게 알리고 시행 방침을 시달하는 일.
146) 정탈(定奪) : 사안을 확정하는 일.
147) 행우부승지(行右副承旨) : 관계(官階)가 높은 데도 관직이 낮은 우부승지에 임명되었으므로 행우부승지라 하였다.
148) 하선연(下船宴) :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도착하였을 때 접대하는 잔치.
149) 월라(月羅)말 : 얼룩말.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 워라말.
150) 수(禾) : 말의 나이를 세는 단위.
151) 爲良結 : [이두]하올아저. ~하여지이다.
152) 爲白有昆 : [이두]하삷잇곤. 하시었으니.

역하기를 원하여 두세번 간청하고 있다 하였는데, 원하는 대로 워라말이 있는 곳을 도내에서 널리 찾아 속히 무역하여 주도록 본도 감사에게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숭덕 4년(1639) 4월 13일 행우부승지 신 허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였음.

기묘(1639) 5월 18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달 초8일 기묘조의 세견 제1선 정관 1인, 선주 1인, 압물 1인, 반종 3명 및 동년조 세견 제2선 정관 1인, 반종 1명 등의 상선연(上船宴)[153]을 모두[154] 차례대로 행하였는데, 정관 등의 말에, '저희들이 와서 정성스런 대접을 후하게 받아 여러날 머물면서 여행길의 괴로움을 모두 잊었는데, 이제 멀리 떠나게 됨에 하염없는 정을 견디지 못하겠사오니 차후로 그리움을 어느 날인들 잊겠습니까. 근일에 말과 매 등을 다수 들여와 보여주어 관 안의 여러 사람들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며, 도주께서 들으시고 감사함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매는 다수 사들였으나 말은 단지 한 필만 무역하였는데, 또한 필을 장차 사들이려고 하나 저희들은 실로 말의 품질이 좋은지 여부를 알지 못하기로 도주에게 청하여 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내어 보내달라고 청하였으니, 그 사람이 올 때 다시 들여와 보여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관사(館舍)가 엉성하고 대접도 조촐하여 자못 객을 대하는 도리를 잃어 언제나 부끄러움을 한탄하였는데 이제 치사하는 말을 들으니 도리어 부끄럽거니와, 마필에 대한 일은 상사에 보고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안색을 살펴보니 감사하는 뜻이 진심에서 나오는데 품질 좋은 말을 사들이고자 누누이 간청하기에[155] 연유를 알리는 일로 치계한다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장계를 살펴보니 세견선의 정관 등이 들어왔다 갈 적에 마필을 장차 무역하겠다고 하였는데, 왜인이 와서 요청하는 것을 기다려 전례대로 비국(備局)에다 왜차(倭差)가 들어왔다 갈 적에 말 1필을 장차 사들이려고 하니 말하는 바 좋은 말 한 필을 미리 입계하여 서울에서 내려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 숭덕 4년(1639) 5월 18일 우부승지 신 박수홍(朴守弘)의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

153) 상선연(上船宴) : 왜관무역에서 공식 무역사절이 떠날 때 베풀어주는 잔치.
154) 爲等如 : [이두] 하트다. 모두.
155) 爲白昆 : [이두] 하삶곤. ~하기에.

기묘(1639) 5월 18일

승정원의 계사에 예조에서 동래부사가 장계로 왜인이 구청한 마필의 계목을 첨부하였더니, 전교하시기를, "이것이 회계(回啓)한 것이냐? 승지는 회계한 일을 살펴보라" 하시었기로, 본원의 초록 책자를 가져다 살펴보니, 비국(備局)[156]에서 일찌기 본도 감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합당한 말을 호조와 병조에 명하여 알아보고 사들여서 내려보내라'고 회계하였는데, 해조에서 이 사이 곡절을 알지 못하고 본도에 범연히 회계하였음은 극히 매우 미안하니, 이 공사(公事)를 도로 내어 주어서 하여금 다시 회계하게 하라는 뜻을 감히 입계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 그리고 회계할 때 한 말이 장계의 뜻과 같지 않다"고 전교하셨음. 이전에는 왜인이 구하는 마필은 장계가 있으면 본도 감사에게 이문을 보내었고, 감사는 도내에 합당한 말이 없으면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 알린 뒤에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것이 규례였으므로 신(臣) 등이 전례에 의거하여 회계하였습니다. 이제 하교를 받들고 보니 쓴 말이 잘못된 듯하여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오니, 원래의 회계에 부표를 고칠 것을 감히 아뢴다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전교하셨음.

기묘(1639) 8월 16일

동래부사의 장계. 지금 이제 두 왜인이 구하는 물목은 극히 번다하여 삼가 베껴서 올리거니와, 그 중 본디 토산물이 아닌 것은 이미 역관 등에게 명하여 사연을 타이르라고 하였고, 동 역관 홍희남(洪喜男), 이장생(李長生), 최의길(崔義吉) 등의 수본(手本)은 베껴서 감봉하여 올리오며, 본도 소산의 물건은 순찰사의 분부대로 찾아 주되, 다른 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본도에서 구하기가 어려워 매우 염려되오니, 해조에 명하시어 상의하여 찾아주어 먼곳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역관 등의 수본 등서(謄書)

一. 이색(異色) 매〔鷹子〕. 이른바 흰매〔白鷹〕나, 혹 눈 가운데 점이 있는 것이나, 혹 발가락이 보통 매보다 숫자가 많은 것, 체구가 비상하게 큰 것인데, 흰매는 우리나라에서 소산이 아닌 양으로 말을 하여 타일렀고, 다른 것도 평범한 것과 다름이 있는 것인데, 이는 일찌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으로 찾아주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역시 타일렀는데, 차왜가 답

156) 비국(備局) : 비변사(備邊司)를 달리 일컫는 말.

하기를 "대군이 구하는 것이므로 감히 진달하는데, 사세가 이러하니 어찌할지. 그러나 있는 곳을 널리 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一. 말 나이가 적고 체구가 크며 갈기와 꼬리털이 많고 재능이 있는 것. 흰점박이〔驄白〕는 구하지 않음. 이른바 흰점박이〔驄白〕이란 곧 우리나라의 백설라(白雪羅)[157]의 흰점박이〔驄白〕란 것입니다. 저들이 얻고자 찾는 것은 워라말〔花馬〕로서 나이가 서너 너댓이고 상처가 없고 재주가 있는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비록 체구가 적고 나이가 많더라도 재능과 품격이 있으면 취할 만하고, 비록 체구가 크고 색깔이 좋더라도 재능이 없으면 취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적고 체구가 크고 재능이 있는 것이라도[158] 조그마한 상처라도 있으면 사지 않으니, 너희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얻기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여 타일렀더니, 차왜(差倭)가 답하기를 좋은 말은 본디 귀국에서 생산되는데 모쪼록 한 두 필이나마 사들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一. 당(唐)[159]의 수적(手跡)[160]. 이른바 조맹부(趙孟頫), 왕희지(王羲之)나 송나라 휘종(徽宗)의 친필 따위. 우리나라에는 이런 물건이 전혀 없다는 말로 타일러 이미 방색(防塞)[161]하였음.

一. 관직 지위의 순서에 대한 서책은 우리나라 작위와 품계의 차례입니다. 이런 일은 글로 써서 주기가 미안한 일이로되 말을 할 길이 없어 방색하기가 어려운 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상의하여 분부하시기를.

一. 각양의 찻잔〔茶碗〕. 각기 그 겨냥〔見樣〕을 저들 스스로 가져와서 장인과 백토(白土), 땔깜 등을 구하여 관 안에서 조작하겠다고 말하거늘, 순찰사께서 분부하여 하동과 진주의 장인들이 번조(燔造)하기 위해 왜관 밖의 요(窯)에서 조작하기로 하였음.

一. 노루〔獐子〕 '회색, 사향(麝香)'이라는 것은 사향이 있는 노루입니다. 이 짐승은 본디 성질이 조급하여 산채로 사로잡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말을 하여 타일렀는데, 차왜의 말이 상관 없는 물건을 얻기가 어찌 어려울까 하였음.

一. 각종 약재의 물목은 백여 종이나 되는데, 태반이 당재(唐材)이기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이미 타일렀고, 또 별록(別錄)이 있는데 본조의 것과 들어주고 주지 않고 간에 똑 같으므로 등서(謄書)하지 않았음.

---

157) 백설라(白雪羅) : 온 몸이 하얀 털빛의 말.
158) 爲良置 : [이두] 하야두. ~하여도.
159) 당(唐) : 여기서는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60) 수적(手跡) : 손으로 직접 쓴 글씨.
161) 방색(防塞) : 틀어막거나 가려서 막음. 무리한 요구를 대충 응하여 책임을 모면함.

一.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왜차(倭差)가 구하는 수량과 조목이 매우 많아서 일일이 따라 주기 어렵지만, 다만 우리나라 토산으로 지급할 만한 물건은 편의대로 찾아 주어 먼곳 사람의 바램을 위로함이 마땅하겠는데, 전례대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간에 분간하여 서울과 외방의 많고 적음을 후록(後錄)하여 각 해당 관청 및 각도 관찰사에게 알려서 기일에 맞춰 내려보내도록 함이 어떠할지.

一. 차왜 등지승(藤智繩)이 별도로 구청한 약재 물목.

인삼(人蔘), 사삼(沙蔘)[162], 황기(黃芪)[163], 원지(遠志)[164], 황금(黃芩)[165], 시호(柴胡)[166], 전호(前胡)[167], 호본(蒿本)[168], 마황(麻黃)[169], 대황(大黃)[170], 당□, 하수오(何首烏)[171], 백렴(白蘞)[172], 목숙(苜蓿)[173], 천문동(天門冬)[174], 천마(天麻)[175], 백두옹(白頭翁)[176], 이상 각 2분(盆)을 본도에서, 지모(地母)[177] 2분은 황해도에서, 시호(柴胡) 1근, 여로(藜蘆)[178] 3냥, 백렴(白蘞) 3냥, 저근백피(樗根白皮)[179] 2냥, 신이(辛夷)[180] 3냥, 욱리인(郁李仁)[181] 2냥, 석종유(石鐘乳)[182] 2냥, 생지황(生地黃)[183] 1근, 숙지황(熟地黃) 1근, 이상은 본도에서. 우황(牛黃)[184] 5전, 호황련(胡黃蓮)[185], 운대(蕓薹)[186],

---

162) 사삼(沙蔘) : 더덕의 뿌리를 말린 약재. 거담(祛痰)에 사용함.
163) 황기(黃芪) : 황기의 뿌리. 원기를 돕고 방한(防汗)의 약재로 사용한다.
164) 원지(遠志) : 원지과의 다년초 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165) 황금(黃芩) :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초 속서근풀.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166) 시호(柴胡) :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를 발한(發汗) 해열제로 사용한다.
167) 전호(前胡) :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바디나물.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168) 고본(藁本) :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를 진통(鎭痛) 진경제(鎭痙劑)로 사용한다.
169) 마황(麻黃) : 마황과에 속하는 상록 관목. 줄기를 해열제로 사용한다.
170) 대황(大黃) : 마디풀과에 속하는 다년초인 장군풀의 뿌리.
171) 하수오(何首烏) :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만초 새박덩굴의 뿌리.
172) 백렴(白蘞) : 포도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만목(蔓木)인 가위톱의 뿌리.
173) 목숙(苜蓿) :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 거여목.
174) 천문동(天門冬) : 천문동과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풀 호라지좆의 덩이뿌리.
175) 천마(天麻) : 난초과에 속하는 기생 초본인 수자해좆의 뿌리.
176) 백두옹(白頭翁) : 미나리아제비과에 속하는 다년초 할미꽃의 뿌리.
177) 지모(地母) : 지모과에 속하는 다년초 지모(知母). 뿌리를 약용으로 쓴다.
178) 여로(藜蘆) :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 여로나 박새의 뿌리. 약재로 쓴다.
179) 저근백피(樗根白皮) : 가죽나무 뿌리의 속껍질. 치질, 이질 등의 약재로 사용한다.
180) 신이(辛夷) : 목련(木蓮).
181) 욱리인(郁李仁) : 앵도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 산앵도나무 씨의 알맹이.
182) 석종유(石鐘乳) : 석회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자라는 석회석. 돌고드름.
183) 생지황(生地黃) :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초 지황의 뿌리. 날 것은 생지황, 말린 것은 건지황, 찐 것을 숙지황이라고 한다.
184) 우황(牛黃) : 소의 쓸개에 병으로 생기는 덩어리.
185) 호황련(胡黃蓮) : 미나리아제비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를 약재로 쓴다.

이상은 들어주지 않음.

一. 잡물구청 및 함께 무역하고자 하는 것.

○ 매〔鷹子〕 이색(異色) 대신으로 좋은 상품의 매, 본도에서.
○ 요조응(鷂鳥鷹)[187], 본도에서.
○ 말, 나이가 적고 체구가 크며 갈기와 꼬리털이 많고 재능이 있는 것 2필, 해조에서.
○ 당(唐)의 수적(手跡) 필적(筆跡), 「적벽부(赤壁賦)」와 왕난정(王蘭亭)[188] 각 2건, 본도에서.
○ 관직의 차례에 대한 서책, 본도에서.
○ 석린(石鱗)[189] 큰 조각이 있는 것 1궤, 황해도에서.
○ 『성리군서(性理群書)』 전집 후집 10권, 본도에서.
○ 점찰피(占察皮)[190] 5장.
○ 호두 5말, 잦 5되,
○ 도기(陶器) 각양의 찻잔〔茶碗〕.
○ 장자(獐子)[191] 회색 사향(麝香)노루, 이상 본도에서.
○ 대사(大紗) 유문사(有文紗) 무문사(無文紗) 중 3필,
○ 각색 비단〔羅〕 1필, 금선(錦線) 3필, 선단(綻段), 들어주지 않음.
○ 추사(皺紗) 1필, 양팽단(楊彭段) 5필, 방사주(方絲紬) 3필, 홍전(紅氈) 3부, 각색 능(綾) 4필,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 장속(裝束)하는 돌 33개, 겨냥이 있는데 곧 대구(帶鉤)[192]임. 본도에서.
○ 당지(唐紙) 1000장, 들어주지 않음.
○ 『참동계(參同契)』 공동도사(空同道士) 추연(雛衍) 주(註) 신편집(新編集) 『십이율(十二律)』 2건, 본도에서.
○ 대모(玳瑁)자루 붓, 중국 모양처럼 큰 것 5자루, 해사에서.
○ 금의(錦衣), 들어주지 않음.
○ 양피(羊皮) 50영(令), 옥석(玉石) 5편, 본도에서.

---

186) 운대(蕓薹) : 겨자과에 속하는 월년초 평지.
187) 요조응(鷂鳥鷹) : 새매. 매과에 속하는 소형의 매. 길들여서 작은 새를 잡는 데 사용하는데 숫컷은 난추니, 암컷은 익더귀라고 한다.
188) 왕난정(王蘭亭) : 중국 진(晉)나라의 명필 왕희지(王羲之)가 쓴 난정서(蘭亭敍) 서첩(書帖).
189) 석린(石鱗) : 돌비늘. 운모(雲母). 석린(石磷).
190) 점찰피(占察皮) : 가죽의 일종이나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 분명치 않다.
191) 장자(獐子) : 노루
192) 대구(帶鉤) : 허리띠를 조이는 데 사용하는 띠고리. 여기서는 아마도 대구를 장식하는 문양이 좋은 돌을 가리키는 듯함.

숭덕 4년(1639) 8월 16일 우부승지 신 김세렴(金世濂) 차지로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되, 양피 또한 멱급(覓給)[193]하라고 판하(判下)[194]하셨기로 양피 50벌에 부표(付標)를 고쳐 계하함.

기묘(1639) 8월 22일

一.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당일 좌정한 호조 당상(堂上)이 와서 보인 예조에 계하한 왜차(倭差)의 구청에 대한 종(從) 부종(不從)의 별단(別單)은, 그 사이에 타당치 못한 곳이 있는 듯함. 대구석(帶鉤石)[195]과 『참동계』, 대모필, 옥석 등의 물건은 따라 줌이 가하지만, 우황(牛黃)은 얻기 어려운 물건이니 따라주지 않음이 옳고, 각색 주단(紬緞) 24필에 있어서는 그 수가 과다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 또한 반드시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니, 다만 얻어지는 대로 제급(題給)하되 '바닷길이 막힌 이래로 비록 간혹 조각배〔扁舟〕로 상통할 때가 있기는 했지만 물화는 내어올 수 없기 때문에 몇 필만 있는 대로 부응한다'고 하면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입계하나이다."하였음. 전교에 이르시되 "입계한 대로 하되 조각배로 상통한다는 뜻은 다시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一.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차의 구청 물목을 신의 부서에서 종 부종을 마련하여 입계하였는데, 이제 호조에서 비국(備局)의 계품(啓稟)으로 말미암아 있는 대로 나열하여 이문하라 하였기로, 전일에 계하한 원 단자 중의 부표(付票)를 고친다는 뜻으로 감히 입계하나이다" 하였음.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 대모자루로 된 붓도 수량을 감함이 옳다"고 하였음.

기묘(1639) 9월 초10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전일 왜차의 구청 중에서 지모(知母)는 황해도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2분을 심어서 올려보내라고 본도 감사에게 행회하였는데, 이제 서흥(瑞興)과 봉산(鳳山) 두 고을에서 각기 1분씩 색리(色吏)에게 맞춰 주어서 본조로 올려보냈습니다. 이제 만약 그대로 서흥 두 고을 사람을 시켜 동래로 내려보내면 해서(海西)지방에서 곧바로 동래까지 가는 길이 거의 천여 리나 되는

193) 멱급(覓給) : 찾아서 줌.
194) 판하(判下) : 판정하여 내림. 판부(判付).
195) 대구석(帶鉤石) : 허리띠의 띠고리를 장식하기 위한 색깔 좋은 돌.

데, 오가는 즈음에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한 지라, 아직 내려보내지 말고 홍희남이 이제 내려갈 것이니, 왜차를 잘 타일러서 편의대로 방색하게 하고, 장원서(掌苑署)[196]에 그대로 두어서 항상 물을 주어 얼어죽지 않도록 하여 홍희남이 다시 보고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뒤에 내려보냄이 어떠할지"라고 하였음.

전교에 이르기를 "여기서 사람을 정하여 내려보낼 일이다"라고 전교하셨기에, "지모는 곧 관계없는 향재(鄕材)인데 사소한 폐단으로 인하여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왜차의 구청에 대하여 온당하지 못한 듯하니, 마땅히 성주(聖主)의 전교대로 각 역에 명하여 대신하여 홍희남에게 전달하여 일시에 내려보내자는 뜻을 감히 입계하나이다"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대로 하여 말라죽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

기묘(1639) 9월 14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황해도에 분정(分定)한 왜차의 구청 석린(石鱗)을 궤에 담아서 안악(安岳) 사람이 어제 또 가지고 왔는데, 먼 지방 사람을 또한 곧바로 동래로 보내기가 어렵고, 이것은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니 지모의 사례와 같이 각 역으로 전하여 보내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기에 감히 입계하나이다" 하였음.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대로 하라" 하였음.

기묘(1639) 9월 26일

경상좌수사의 장계. 이 달 20일 자시(子時)에 도부하고, 어제 해시(亥時)에 성첩한 부산첨사 정원필(鄭元弼)의 치보 내용에, 이 달 18일에 나온 왜선 한 척에 두왜(頭倭) 평성회(平成灰)가 나왔기로 연유를 자세히 탐지하여 수본(手本)을 올리라고 신칙하였더니, 방금 별견역관(別遣譯官)[197] 강우성(康遇聖)과 훈도 이장생(李長生)과 별차 최의립(崔義立) 등의 수본을 접하였는데, 그 내용에, 당일 관(館)에 갔더니 평지연(平智連)과 등지승(藤智繩) 및 어제 나온 평성회 등이 한곳에 모여 있길래, 저희들이 평성회가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제가 나온 일은 특별히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번의 두 차사가 주관

196) 장원서(掌苑署) : 조선시대 궁궐 안의 정원에 꽃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가꾸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197) 별견역관(別遣譯官) : 특별한 일로 파견하는 역관.

하는 일이 전일의 보통 때와 비할 바가 아니고, 대군의 분부로 말미암아 두 차사를 보낸 것인데, 두 차사가 나온 지 거의 석 달이 되는 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기에, 도주가 매우 기다리고 있을 뿐 아니라, 차왜가 이 곳에 오래 머물며 고생하고 있는 사정을 가지고 대군이 의심을 하면, 조정에서 혹 허락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광채가 없으니,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속히 받아 오라는 일을 스스로 봉행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성연(平成連)이 들어왔을 적에 귀국에서 군기(軍器) 등의 물자를 무역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근년 이래로 대군이 극도로 엄금하고 있어서 도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대군을 거쳐야만 허락하든 않든 명령이 있을 것인데, 지금 귀국의 만분 요긴한 요구와 두 나라 사이의 정성과 신의로 보아, 도주가 아마도 보낼 것을 허락하도록 주선하려고 하는데, 이런 큰 일을 단지 입으로만 대군에게 품신(稟申)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뜻을 동래·부산의 두 영감에게 고하여, 해조에 보고하여 이런 연유로 서계를 보내면 스스로 봉행하여 도주에게 올려서 하여금 힘을 다해 주선하여 기어코 내어 보내도록 할 계획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말하기를 "두 차사가 주관하는 일로 홍역관이 이 일로 서울에 올라갔으니 몇 일이 되지 않아 마땅히 돌아올 것인지라 아직 조정의 처치가 어떠할지를 기다리고 있고, 군기 등의 일에 대하여는 평성연이 돌아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실정을 언급하였는데, 실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국가의 변방 군비로 소중한 것이 염초(焰硝)와 유황(硫黃)과 도검(刀劍) 등의 물건인지라, 사들여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 하는데, 네가 섬으로 돌아가면 모쪼록 주선하여 넉넉하게 보내 달라는 뜻을 말하여 보냈더니, 이렇게 유념하여 차인(差人)을 보내니 그 정성이 가상하다"고 하였더니,

등평(藤平) 두 차왜(差倭) 및 평성회 등이 말하기를, '조선은 곧 예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저들과 강화하는 것이 장구하게 갈 수 있는 계책일리 만무합니다. 모쪼록 획책하여 잘 처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귀국에 만약 위급한 일이 있으면 혹 병력을 돕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인데 하물며 이런 군기 등의 물자이겠습니까? 이제 이번 귀국의 변방에 우환이 있는 날 급한 일을 주선하지 않는다면 양국이 우호하는 본뜻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조에서 서계를 만약 만들어 보낸다면 도주에게 들여보내어 대군 앞에 진달하여 만분 힘을 다하여 다소간에 내어보낼 생각입니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서계 가운데 하는 말에는 많은 말을 할 것 없이, 단지 '염초, 유황, 도검 등의 물건은 국가에서 이번 변방의 대비로 요긴한 것인데, 일본국에서 금단(禁斷)이 지엄한 것인 줄 알지만 오로지 우호의 본뜻을 믿고서 이렇게 서계를 보내니, 만약 도모할 수 있는 형편이면 모쪼록 주선하여 대군 앞으로 내어보내라는 뜻으로 간결하게 써넣어 주시라'고 하여 수본(手本)을 올린다고 하였음. 이런 사연을 치보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 장계를 보니 두왜(頭倭) 평성회가 말한 군기 등의 물자 무역을 허락하는 일은 사정이 매우 완곡하니, 승문원에게 명하여 대신에게 품의하여 서계에 좋은 말을 써서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아직 입계하지 아니함.

기묘(1639) 9월 28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방금 전 동래부사 이민환(李民寏)의 장계를 보니, 차왜가 말한 바 염초 유황 한 가지 일을 서계에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뒷날의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이르기를 '이는 너희들이 성심으로 주선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이미 귀국에서 금령이 있는 줄을 알면서 문자에다 드러낸다면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이에 감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며, 또한 들으니 동래의 답서를 전관(前官)은 이미 교체되고 신임(新任)은 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써 주지 못하고 있어서 왜차가 오래도록 지체하게 한다 하니 매우 염려되는데, 신관이 아직 도임하지 않았다면 전관의 이름을 파격으로 써서 보내어야 마땅할 듯 하온데, 이를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음. 전교에 이르기를 "입계한 대로 하고, 또한 서계 한 가지 일은 해도 무방하니 지나치게 염려할 것 없다"고 하였음.

기묘(1639) 9월 29일

一. **왜역 홍희남과 이장생, 최의립 등의 수본 내용.** 왜차가 말하기를 "주간하는 일이 잘 되든 못되든 간에 오래잖아 돌아 들어갈 것인데, 전일에 진달한 구청 가운데 마필이 가장 긴급하나, 근일에 본 마필은 모두 합당하지 못하니, 대군 앞으로 올리는 데 합당한 말 한 두 필을 급급히 사들이려고 날마다 말을 하였는 바, 본도에서 달리 합당한 말이 없어 극히 걱정된다' 하기로, 연유를 수본 한 장으로 올림.

一.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이제 왜역 홍희남의 수본을 보니 '차왜가 말한 내용에 주간하는 일이 잘되든 못 되든 간에 속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전일에 구청한 마필이 가장 긴급한 바, 본도의 마필은 모두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한 말 한 두 필을 속히 사서 보내기를 날마다 이야기 하지만, 본도에서는 달리 합당한 말이 없다'고 하니, 전일 병조에서 마련한 말을 숫자 대로 급급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감히 입계한다고 하였음. 전교에 "알았다"고 하였음.

기묘(1639) 10월 17일

경상감사의 장계. 방금 훈도(訓導) 이장생과 별차(別差) 최의생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 기묘조의 도서(圖書)를 받은 만쇼오잉〔萬松院〕 송사선(送使船)의 정관 평성태랑(平成太郎), 선주 평성안(平成安), 진상압물(進上押物) 귤성정(橘成正), 반종 3명, 격왜(格倭) 40명, 제2척 수목선(水木船)[198] 격왜 20명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정관 등이 말하기를 '어제 겨우 물마루〔水旨〕[199]를 넘자 풍세가 불순하기로 밤새도록 노를 저어 이제 비로소 와서 정박하였으며, 기묘년의 도서(圖書)를 받은 평언삼(平彦三)의 송사선과 동년조의 세견(歲遣) 제12선, 제13, 제14, 제15, 제16, 제17선 등 7척의 서계도 겸하여 가지고 나왔으나, 상항의 각 선박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올리겠다'고 하였음.

만쇼오잉 송사선의 정관이 탄 배에는 차왜(差倭) 평성정(平成政)이 에도에서 동래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같이 타고 나왔다고 하거늘, 나온 일을 탐문하였더니, 차왜의 말에 '남만(南蠻)의 상선이 이전부터 일본에 왕래하였는데, 평소 불법(佛法)도 아니고 신도(神道)도 아닌 법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백성을 속이는 불의의 일이 많이 있으므로, 대군이 지금 이후로는 남만의 상선을 엄금하고, 기타 다른 나라의 상선은 전례대로 출입하되, 조선에서 산출되는 약물(藥物)과 잠사(蠶絲), 금수(錦繡) 등 각종 물건을 넉넉하게 부관(釜館)[200]에서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분부하였기로, 급속하게 품신하여 알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차인을 파견하여 고한다'고 하거늘, 재삼 상세히 물었더니 답하기를 '이 외에는 별로 다른 일이 없고, 어제 역풍을 만나 힘들고 어렵게 도착하였기에 멀미로 머리를 들고 조용히 진달할 수가 없다'고 하였고, 소지한 서계 내어주거늘 우선 받아들였거니와, 다시금 자세히 탐문하여 수본을 올릴 계획이라" 하며 돌아와 말하였기에, 동 서계 한 통을 받아 올리며 치통(馳通)한다 하였고, 만쇼오잉 송사(送使)가 소지한 서계는 전례대로 다례를 베푼 뒤에 받아 올릴 계획이고, 차왜 평성정이 가져온 동래로 온 서계 한 통은 해조로 올려보내려고 관찰사에게 보내었으며, 왜관에 머무르는 왜인은 240명이라고 치보하였음. 동시에 도부한 부산첨사 정원필(鄭元弼)의 치보(馳報)도 같은 내용이옵기에 동 서계를 올려 보내는 일로 장계를 올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경상감사의 장

198) 수목선(水木船) : 바다에서 선박에 먹을 물과 땔감을 공급하는 배. 왜관무역을 위해 대마도와 부산을 드나드는 선단에는 송사선(送使船)과 부선(副船) 및 수목선(水木船)이 한 선단을 이루었다.

199) 물마루[水旨] : 바닷물이 가장 높아 보이는 곳. 수종(水宗).

200) 부관(釜館) : 부산 왜관의 약칭.

계를 보면 차왜가 소지한 서계 내용에 남만에서 요사스런 법으로 백성을 속이기에 금년부터 상선의 왕래를 엄금하고, 무릇 약재와 잠사(蠶絲), 금수(錦繡) 등의 모든 물자를 부산 관시(館市)[201]에서 무역한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변란을 겪은 뒤로 중국 물자가 나올 길이 없음을 저들이 이미 상세히 알고 있으니, 왜역(倭譯) 등에게 명하여 말을 하여 잘 방색(防塞)하라 하고, 또한 묘당(廟堂)에 명하여 전례대로 상의하고, 승문원(承文院)에 분부하여 초고를 만들어 동래부사에게 보내며, 이 뜻을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이문(移文)함이 어떠할지. 숭덕 4년(1639) 10월 18일 우부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듣건대 길이시단(吉伊施端)[202]의 법은 남만(南蠻)에서 나온 것이고, 상선(商船)을 금하는 것이 여기서 말미암은 것 같으나 구청하는 금수(錦繡) 등 물건은 또 말을 만들어 속이고 업신여기는 것이거니와, 우리나라의 토산에 관계되는 것은 마땅히 전례에 따라 무역을 허가할 것이니 이 뜻을 해당 도(道)에 분부하고 또한 승문원으로 하여금 문장을 만들어 회답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윤허함.

기묘(1639) 10월 24일

동래부사 강대수(姜大遂)의 장계. 방금 별도로 보낸 역관 홍희남과 훈도(訓導) 이장생과 별차 최의길 등의 수본 내용에, "전일에 차왜 평성정이 에도에서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사정을 묻고 서계를 받아 부산진(釜山鎭)에 치보하였는데, 동 차왜의 서계 내용과 일본 소식을 다시 탐문하였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나라 안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다만 남만(南蠻)의 선박이 이전부터 왕래하며 장사를 하면서 장가들어 일본에 거주하는 자도 파다한데, 『천주실의(天主實義)』[203]라고 일컫는 책 두 권이 부처와 신도를 훼방하여 혹세무민하여 일본 사람들이 휩쓸려 들어가 흉내를 내어 길이시단(吉伊施端)이 된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고, 다이라노 히데요시〔平秀吉〕 또한 그 술책에 현혹되어 불의한 일이 곳곳에서 떼지어 일어나니, 이에야스〔家康〕[204]가 나라를 다스린 이후로 다시금 신칙하여 기리시단의 법을 엄금하였으나, 오히려 모조리 제거하지

201) 관시(館市) : 왜관과 관련하여 열리는 시장.
202) 길이시단(吉伊施端) : 기독교를 믿는 신자. 곧 크리스찬(Christian).
203) 『천주실의(天主實義)』 : 이탈리아의 중국선교사 마테오리치(Matteo Ricci)가 지은 천주교를 해설한 책.
204) 이에야스[家康] :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못하였더니, 지난해에는 오원(烏原)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려는 형세가 이미 갖춰졌는지라, 대군이 군사를 크게 내어 그 당을 섬멸한 뒤에, 어사를 나누어 파견하여 각 주를 순시하며 기찰(譏察)하게 하였더니, 그 당이 횡행하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서 모두 제거하기 어려운 듯 한지라. 그러므로 그 근본을 끊어버리고자 남만의 상선을 엄금하여 일본 땅 경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부하였기로, 이로부터 당물(唐物)과 약재 등의 물자가 영구히 끊어졌으므로,

집정(執政) 대관(大官) 등이 대군에게 고하기를 남만 상선의 왕래를 금단하면 나라에서 사용하는 잠사(蠶絲)와 금단(錦段), 약재 등의 물건을 어디서 대어 쓸 것이냐고 하자, 대군이 말하기를 대마도주에게 명하여 조선에서 넉넉하게 무역하여 얻어다가 국가에서 사용할 것이 모자라지 않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교하였기로, 도주가 방색(防塞)하고자 하였으나 시비가 있을까 두려워서 짐짓 그 명을 따르면서 서찰을 만들어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잠사(蠶絲)와 금수(錦繡), 약재 등의 물건은 당화(唐貨)인데 근년 이래로 당선(唐船)이 막혀서 얻기가 어려운 듯하며, 본국의 토산물은 산출되는 대로 파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여 은근하게 답장을 지어 보냄이 좋겠다'고 하거늘,

저희들이 말하기를 회답의 내용은 절로 조정의 처분이 있을 것이니 아직 하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타일렀으며, 이 연유를 수본으로 하여 올린다"고 하였음. 수본에 있는 회답하는 한 가지 일을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확정하여 회답을 내려주시도록 장계를 올린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전일 경상감사가 장계를 올려 왜차가 말한 바 남만의 상선을 엄금하여 본국의 물화를 바꾸어 무역한다는 일에 대한 회계를 묘당에서 이미 헤아리고 생각하여 처치하였고, 동래부사에게 행회하였으니, 다시금 이런 뜻으로 이문을 함이 어떠할지. 숭덕 4년(1639) 10월 20일 우부승지 신 김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진(1640) 3월 12일

동래부사의 장계임. 이 달 초5일에 곧 훈도 최의길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오라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경진조 세견 제1선 정관 귤성상(橘成尙), 도선주 귤지차(橘智次), 진상압물 평성근(平成近), 반종 3명,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수목선 격왜 10명이고, 제3척은 동년조 세견 제2선 정

관 등성우(藤成友), 반종 1명, 격왜 40명이며, 제4척은 동년조 세견 제3선 정관 등성정(藤成正), 반종 1명, 격왜 40명이며, 제5척은 동년조 세견 제4선 정관 평성상(平成尙), 반종 1명, 격왜 30명 등이 서계를 지니고 나왔는데, 동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올린다고 하였음. 제6선은 도주의 차왜 평성규(平成規), 반종 2명, 격왜 9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한편으로는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사유를 조정에 알리기 위해서이고, 한편으로는 전일에 요구한 약재를 사가려고 나왔다고 하며,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 등만 내어주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 등은 동래 부산 두 영감 전에 친히 올리겠다고 하면서 내어주지 않으므로, 동 서계와 별폭을 등서하고 갖다 주었으며, 또한 구 대관(代官)과 교체하려고 신 대관 3인이 상항의 차왜 평성규가 타고 온 배에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는 바, 상항의 차왜 평성규가 가지고 온 예조로 보내는 등본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 및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을 아울러 받아서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馳通)함.

상항의 세견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은 전례대로 다례를 베푼 뒤에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이며, 차왜 평성규가 가지고 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각 한 통의 등서와,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은 아울러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원 서계는 바쳐 올리면 즉시 올려보낼 계획이거니와, 전일 도주의 서계로 말미암아 약재 무역을 허락한 일은 신이 올린 장계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토산물이면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을 허락한다고 계하하고 이문하고 회답의 서계에도 또한 언급하였는데, 등지승(藤智繩)이 있을 적에 이 약재 무역을 허락할 것을 거듭 당부하여 마지 않았고, 그 뒤 평지연(平智連)이 누차 언급하거늘, 우리나라에는 본디 약재를 판매하는 사람이 없고 병이 나면 대응하여 사용하는 약재를 각자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 채집하여 사용하는데, 이제 비록 알렸으나 팔러 오는 것이 반드시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만들어 답하였고, 한편으로 본도에 보고하여 도내에서 산출되는 약간의 약재는 각관에 알려서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수일 전에 영일(迎日)과 함안(咸安), 현풍(玄風) 등지에서 각기 산출되는 약재를 보내왔거늘, 관 안에 들여보내어 역관 등에게 명하여 값을 따져 교환하라 하였으니, 숫자가 비록 영성하나 족히 말을 실천하였고, 타관에서도 필히 장차 계속하여 팔러 올 것이기에 연유를 치계함.

경진(1640) 3월 19일

동래부사의 장계. 차왜 평성규(平成規)가 가지고 온 서계는 직접 올리겠다 하기로 등서(謄書)를 해조에 올려보냈고, 원 서계는 올려받는 즉시 올려보낼 계획이라는 연유를 치계하였거니와, 진상 및 서계를 가지고 온 차왜는 이전부터 들어오기를 허락하면 비록 요미(料米)를 주지는 아니하나, 한 번 불러본 뒤에 쌀 섬과 찬물(饌物)을 지급하는 것이 전례이기에, 이 달 11일 불러보고 다례를 베풀었더니 맨발로 예를 행하며 극히 공경하여 삼가하였고, 우리나라 약재를 넉넉하게 무역하는 일을 도주가 올 적에 대군이 각별히 분부하였다고 재삼 힘껏 말하거늘, 시방 속속 팔러오고 있다는 뜻으로 회답하였고,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을 받아 감봉하여 올려보냄.

뒤따라 도부한 훈도 최의길과 별차 장선민(張善敏) 등의 수본 내용. 관수(館守) 평지련(平智連)과 차왜 평성규 등이 서찰을 보내어 초치하거늘 관에 가서 만나보았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이번 도주가 조정에서 하직할 적에 대군이 각별히 위로하면서 예물을 많이 주고는 뒤에 말하기를, 조선에서 산출되는 약재가 극히 정하고 좋다고 하는데 모쪼록 넉넉하게 무역하여 오고, 『마의서(馬醫書)』와 『응골방(鷹鶻方)』 및 『십이율(十二律)』 등의 책을 무역하여 들이는 일을 지난해 재삼 분부하였는데, 이와 같이 어렵지 않은 물건을 어찌하여 멱급(覓給)하지 않는지? 또한 근년에 얻은 조선 마필은 모두 뜻에 맞지 않으니 모쪼록 나이가 적고 체구가 큰 준마(駿馬) 한 두 필을 구입하여 보내라고 분부하였는데, 상항의 물건들을 급히 무역하여 가서 금월 그믐 이전에 에도에 들여보내야 할 것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令監)[205] 전에 꼭 고하여 속히 처치해 주시고, 또한 쓰건 쓰지 않건 간에 인근 각관에 있는 좋은 말 한 두 필이라도 이 달 보름 전에 알려서 내려보내시어 성의를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수본을 한다 하였음.

준마는 알려서 왔다가 점퇴하여 공연히 돌아가면 이런 농사철에 병폐가 적지 아니하겠기로, 가을 추수를 기다려 팔러 오도록 알리겠다는 뜻을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일러 짐짓 정지하였사오며, 『십이율』은 연전에 구청할 때 이미 그것이 본디 없다는 뜻을 말하였는데, 이제 또 이 말대로 하여 보내겠거니와, 『마의서』와 『응골방』은 있는 대로 찾아 주어서 먼 곳 사람들의 바램을 위로하는 것이 마지못할 일인 듯하며, 회답하는 서계 또한 만들어 급히 내려보내시어 머물러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해조에 명하려 처치하게 하라는 장계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차왜가 요구하는 『

205) 영감(令監) : 정3품과 종2품의 관원을 높여 부르는 존칭. 지방의 수령을 높일 때도 사용하였다.

십이율』과 『응골방』 등은 우리나라에 있는 책이 아니니 이전과 같이 타일러 방색하며, 『마의서』는 사복시에서 처음 간행하였다 하니 두 건을 청하는 바대로 내려보내고, 지급해야 할 예단은 해조에서 급속히 마련하고, 회답의 서계 또한 승문원에 명하여 지어내어서, 금군(禁軍)을 차출하여 발송하되, 준마는 가을 추수를 기다려 무역을 허락하도록 전례대로 좋게 타이르고, 약재는 본도 소산을 초봄에 새로 캐어 여러가지로 멱급(覓給)할 것을 본도 감사와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3월 19일 우승지 신 홍득일(洪得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진(1640) 3월 22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청하는 『마의서(馬醫書)』 두 건을 사복시(司僕寺)에서 찾아 보내라고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는 바, 이제 본시(本寺)의 첩정을 보니 『언해마경(諺解馬經)』만 있는데, 언해는 결코 다른 나라로 들여보낼 수 없다고 함. 우리나라에 언해서가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숨길 서적이 아닌 듯 하니, 이것을 들여보내어도 혹 무방할 듯함. 전과 같이 계하하여 두 건을 묶어서 들여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 하셨음.

경진(1640) 5월 19일

바다 건너간 **역관 홍희남(洪喜男)과 김근행(金謹行)의 수본.** 4월 초1일 초량목〔草梁項〕에서 발선하여 중도에 역풍을 만나 간신히 대마도 도요사키현(豊崎縣)에 정박하였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초6일에 비로소 부중(府中)에 토착하였는데, 연일 큰비가 내렸습니다. 저들이 택일하였으므로 12일에 도주(島主)의 성에 가서는 먼저 증여할 물건을 청 위에 배열하고 서계를 받들어 북벽(北壁) 탁상 위에 놓고, 도주는 동쪽에 서고 저희들은 서벽(西壁)에서 재배하고 도주가 답읍(答揖)을 하고, 토배(土盃)[206]로 삼작(三酌)[207]의 예를 행하였습니다.

그 뒤 도주(島主)가 말하기를 '조선에서 특별히 저의 에도에서의 수고한 실상을 생각하시고, 또한 아들을 얻은 기쁨이 있음을 듣고서 공 등을 보내어 이렇

206) 토배(土盃) : 예기(禮器)가 아닌 일상 생활용기로 사용하는 도자기 술잔.
207) 삼작(三酌) : 세 번 술을 따라 권하는 절차.

게 위문하시니 극히 감격하오며, 또한 공 등이 멀리 넓은 바다를 건너 진작 도착하였기에 깊이 사례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각하께서 오래도록 에도에 머무르며 두 나라 공사를 주선하고, 조정으로 향한 마음을 가슴속에서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말미를 받아 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 또한 귀한 아들을 얻어 경사로운 일이 묘하게 응하니, 정으로서나 예로서나 치하하지 않을 수 없어, 저희들을 차출하여 보내시어 각별히 위문하게 하셨는데, 다만 바람이 불순하여 진작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묻기를 '귀국에 다른 사정은 없으신가' 하기에, 답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봉행(奉行) 평전장감(平田將監)을 시켜 말하기를 '간략하게 술과 밥을 차렸으니 조용히 행례함이 마땅하겠다'고 하고는 일어서 나간 뒤에 일행의 관원과 일꾼이 아울러 잔치를 베풀고, 오작(五酌)을 행하고는 재삼 고사하여 파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등지승(藤智繩)이 도주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방금 도주와 소장로(召長老)와 서수좌(徐首座)가 함께 앉아 서계(書契)를 열어보니, 내용에는 단지 도주가 말미를 받아 내려온 것을 위문하는 뜻만 있지, 아들 낳은 데 대하여 치하하는 말은 조금도 없는데, 견문이 어찌하여 각기 다른 것인가? 도주에게 불만스런 기색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서계 중에 '무응길경(茂膺吉慶)' 등의 말은 득남(得男)한 일에 대한 말이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주에게 무슨 경사스런 일이 있는가? '나가신 행차 영광스럽게 돌아왔다' 등의 말에서 이른바 '영화스럽게 돌아왔다〔榮還〕'는 '영(榮)' 자는 또한 생남(生男)의 영화가 아니냐? 또한 '즉시 치하함이 합당하다'는 등의 말에서 이른바 '치하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 치하하는 것이니, 실상 아들을 낳은 것을 치하함이 아니냐? 장로(長老)와 수좌(首座)가 이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아 일 없는 중에 일을 만드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너는 우리나라 사정을 익히 알고 문자도 제법 이해하는데, 어찌하여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가?' 하였습니다. 등왜(藤倭)가 말하기를 '이른 말은 오늘 할 수가 없으니 조용히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소장로(召長老)가 나오기에 읍을 하고 마주 앉았는데, 장로가 말하기를 '양국의 정성과 신의를 이제 알 수 있겠다. 조선에서 도주가 섬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얻었다는 경사를 듣고서 공 등을 보내어 은근히 위문한 것은, 비단 도주의 경사일 뿐 아니라 우리들도 감격하오. 또한 지나간 해 다녀간 세 분의 사신은 모두 잘 계시는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도주가 에도에 왕래하는 것이 비록 심상한 일이지만, 이

번에는 4년이나 오래도록 머물었고, 또한 아들을 얻는 경사가 있으니 위문하고 치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들여보냈다. 세 분의 사신은 모두 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삼작(三酌)의 예를 행하고는 파하였습니다.

15일에 등지승(藤智繩)과 서수좌(徐首座) 등이 와서 말하기를, '도주가 이번 내려오는 날 대군이 말하기를, 조선에서 산출되는 약재를 넉넉하게 무역하여 계속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므로, 재삼 서찰을 만들어 간청하였는데, 어찌하여 진작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가? 심상한 일이 아니고, 대군이 곳곳에 새로 약국을 창설하여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전에는 남만(南蠻)의 배들이 각종 약재를 넉넉하게 가져 왔으나, 지난해부터 남만 상인을 크게 금지하여 달리 물자를 계속 대어 쓸 곳이 없고, 일찍부터 귀국의 약재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하교하신 것이니, 모쪼록 넉넉하게 매매하도록 허락하면 피차간에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답하기를 '향약(鄕藥)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라 하나 본디 약국이 없고 산출되는 각 관아에서도 혹 영성하게 채취하여 겨우 한 나라의 용도에 대비할 정도이며, 달리 매매하는 길이 없다. 그러나 지난날 도주가 서계를 보내어 구청하였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곳에서 부관(釜館)에 와서 매매하라는 뜻으로 각 관아에 분부하여 다소간에 오래잖아 들어올 것이다.' 하였습니다.

16일에 도주가 잔치를 청하기에 성 안에 갔더니, 봉행(奉行) 이하가 중문에 나와서 맞이하여 서원(書院)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서는, 도주와 상읍(相揖)하고 좌정한 뒤에 도주가 말하기를, '지난 해에 송사(送使)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각년(各年)의 미수(未收)를 추산(追算)하는 일 및 수직왜(受職倭)[208] 등의 송사(送使)를 또한 전례대로 복구하라는 것을 대군에게서 명을 받았고, 등지승을 내보낼 적에 시게오키〔調興〕 현방(玄方) 등의 송사(送使)는 그 대리를 이미 대군(大君) 앞에서 확정하였는데, 수직왜 등이 모두 시게오키〔調興〕가 친하고 믿는 사람들인지라, 복구 후에 전례대로 내보내면 혹 두 나라 사이에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일을 만들까 염려되어 극히 걱정하였다. 그러나 대군이 분부한 일이라 중간에 덮어 둘 수 없으므로 아울러 보내라고 하였으며, 등왜(藤倭)로 하여금 편의대로 처치하라고 하여 보냈는데, 귀국에서 특별히 본방(本邦) 사세의 경중을 생각하여 전례대로 복구하고, 병자년 이후의 미수(未收)를 또한 추산(追算)하고, 수직왜 등의 송사선(送使船)에 지급되는 공목(公木)을 일특송선(一特送船)에게 순조롭게 부쳐서 잡인이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하여, 피차간에 편리하게 되었다. 이런 뜻을 이미 집정(執政) 등에게 전달하였으나, 다만 현방(玄方)의 송사(送使)에 대한 각년의 미수(未收)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장로(長老)와 서당(西堂) 등이 조금 불만한 기색이 있는 듯한데 어찌 할 것

208) 수직왜(受職倭) : 조선시대에 대마도 사람으로 조선의 관직을 받아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왜인.

이냐?'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당초 시게오키〔調興〕의 송사(送使)는 실로 부관(副官)에서 지급된 배가 아니고,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충성을 바친 공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한 선단을 허락한 것인데, 지금 부관(副官) 송사선(送使船)이라 말을 하는 것은 심히 무리인지라, 결코 들어줄 수 없으며, 조정에서 특별히 합하(閤下)의 정리가 간절함을 생각하여 전례대로 복구한 것이다. 또한 현방(玄方) 송사(送使)에 대한 미수년조(未收年條)를 추산하여 부족하다는 뜻은 지난 해에 등왜가 들어왔을 적에 이미 말하여 보냈으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연전에 평성련(平成連)을 내어보낼 적에 왜관의 수책(水柵)[209] 담장을 쌓는 일과 숙배(肅拜)하는 곳을 당에 올라가 하자는 일을 말하여 보냈는데, 해장(海墻)[210]은 각 관아에 분부하여 즉시 성취하였으나, 숙배하는 곳은 끝내 쾌히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 그렇게도 심히 생각해 주지 않느냐? 귀국이 우리나라와 교린(交隣)함에 서로 대등하고, 귀국의 사신이 들어 올 때 대소 관인이 모두 당에 올라 배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신이 귀국에 가면 존비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모래 위에서 숙배하니 이게 무슨 예모(禮貌)인가? 군신(君臣)의 예로 말하자면 뜰 가운데서 배례하는 것은 그래도 말할 수가 있지만, 이웃나라의 예로 말하자면, 예절에 손상됨이 많이 있으니, 귀국의 본의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바다에 담장을 쌓는데 그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겠는가? 그러나 귀국의 송사가 왕래하는 데 혹 큰 바람을 만나면 파선할 염려가 있기에 민력(民力)의 경중을 헤아리지 않고 일시에 축조하여 지금까지 완전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숙배하는 곳은 우리나라 관사가 귀국에 비하여 다른 점에 있어서, 단지 대청 하나만 있는데 그 위에 전패(殿牌)[211]를 봉안하여 피차간에 사신이 감히 당에 오르지 못하고 뜰 가운데서 배례를 행하는 것이 예로부터 흘러온 철석같은 규범인지라 하루아침에 법도를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부관(釜館)의 북쪽 담장 밖에 큰 길이 있는데, 길은 높고 관(館)은 낮아서 왕래하는 사람이 관 안을 넘겨다보니, 이것은 비록 관계 않는다 하더라도 보기에 부당하니, 다른 곳을 잘라 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찻잔을 만드는 일에는 귀국의 사정에 폐단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자세히 알지만, 대군 이하 대소의 장관들이 모두 그것을 구청(求請)하니 달리 대어 쓸 곳도 없어서 부득이 하여 사람을 보내어 제조하는데, 지난 해에는 공장(工匠) 및 각종의 사토(沙土)와 소목(燒木) 등의 물자를 자주 자주 들여주어서 감사하여 마지

209) 수책(水柵) : 물 속에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방파제.
210) 해장(海墻) : 해안에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방파제.
211) 전패(殿牌) : 조선시대 각 지방의 객사에 전(殿) 자를 써서 모셔놓은 나무 패. 중앙의 국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방관원이 매양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앞에서 배례를 행하였다.

않았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 대군이 각양의 사기 겨냥을 요구하기로 역시 부득이 하여 차인(差人)을 일특송선(一特送船) 편에 보내었으니, 이 뜻을 돌아가 동래에 고하여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멱급(覓給)하고, 솜씨 좋은 장인을 전례대로 들여보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관의 담장 밖에 있는 대로를 다른 길로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니, 달리 낮은 곳이 없고, 또 도로를 막는 것은 자고로 불길하니, 이 길이 있은 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또한 전후로 전답이 많이 있고 또한 촌가가 있어서 방색하기 어렵다. 또한 사기를 제조하는 한 가지 일은 지난 해에는 민력(民力)의 다소를 피하지 않고 차왜가 말하는 대로 장인 및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들여보냈다. 그러나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영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그 사이에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는 혹 사람을 보내더라도 사조(私造)를 크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도주는 좌우를 물리치고 저희들을 가까이 불러 여러가지 사정을 말하였는데, 번거로와 일일이 적지 아니하고 **별지로** 올려보냅니다. 저희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근년에 잇달아 바람과 홍수의 재해가 있어서 목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무논의 수확을 하지 못하였기로, 귀국에서 보내는 송사를 접대하는 등의 일에 혹 모자라는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급할 공무목(公貿木)은 조정에서 엄하게 신칙하고 각관에서 극진히 간택하여 베올이 가늘고 잣수가 긴 포목을 입급하는데도 매양 점퇴하여 받지 않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다. 이후로는 대관왜(代官倭) 등에게 분부하여 편의대로 받아서 민간의 큰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또한 양국 사이에 정성과 신의를 지키는 본 뜻일 것이다. 또한 군기(軍器) 등의 물자는 귀국의 큰 금령인지라 합하께서도 감히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일찌기 들어서 알고 있으나, 다수를 내어 보내는 것은 형편상 이목에 번거로운 점이 있을 것이지만, 약간의 염초(焰硝)와 유황(硫黃), 도검(刀劍) 등의 물자를 송사가 왕래할 적에 내어 보내어 합하의 정성과 신의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감사하여 기뻐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요동(遼東)의 길이 막혀서 중국의 약재를 대어 쓰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염려스러우나, 나가사끼〔長崎〕 등의 곳에 당선(唐船)이 오니 거기서 무역하여 연속하여 내보내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주가 답하기를 '송사(送使)를 접대하는 크고 작은 일은 봉행(奉行)과 등지승(藤智繩) 등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고, 군기(軍器) 등의 일은 저 또한 유념하고 있으나, 다만 나라의 큰 금령 때문에 귀국에 정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움이 말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비록 약간의 군기를 얻더라도 달리 대단히 사용할 곳도 없다. 그러나 귀국의 병기는 본디 정예하니

편한 대로 내어 보내면 그것으로 만약의 용도에 보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주는 말하기를 '내년 봄에 에도에 올라가서 편리하게 잘 도모해 볼 계획이나, 다만 대군이 구하는 약재는 산출되는 곳에서 넉넉하게 매매하러 오게 하면 값을 주고 교환하여 조금도 민간에는 해가 없을 것이며, 중국 약재는 나가사끼〔長崎〕 등에서 그곳 당선(唐船)이 오기를 기다려 또한 무역하여 내어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8일에 소장로(召長老)가 잔치를 청하기에 이테이암〔以酊庵〕 사찰에 가서 상읍(相揖)의 예를 행한 뒤, 장로가 말하기를, '양국에 왕래하는 서계(書契)를 저희들이 십분 상세하게 살펴 짓는데, 다만 귀국 문자의 본뜻을 알지 못하여, 비록 피차간에 부족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천만 허물하지 말기를 바라며, 또한 지난 해에 대군의 분부로 이테이암〔以酊庵〕의 송사선(送使船)을 복구하는 일로 도주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는데, 귀국에서 전후의 사정을 헤아려 살펴서 전례대로 특별히 허락하시면 감사하여 마지않겠습니다. 저희는 비록 양국의 문서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주가 말하는 바를 한결같이 따라 하는 일개 서기(書記)에 불과할 따름이고, 대군의 명을 따라 이테이암〔以酊庵〕 도서(圖書)를 받았으니, 이후로는 귀국의 번신(藩臣)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과 안색을 살펴보니, 전일에 현방(玄方)이 담당할 때 해조에서 서계를 왕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현방의 사례와 같이 이테이암 도서를 받았으나,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올 적에는 해조의 서계가 없기 때문에 불만한 기색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말하기를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되어 이미 명을 전하였으니, 다른 긴요한 일이 없으면 회답 서계를 수일 내로 답장을 지어 보내 줌이 어떠할지? 금년의 바람은 이전에 비하여 다름이 있으니 순풍을 얻기 어렵고, 또한 안개비라도 만나면 돌아갈 기약을 정하지 못하니, 원컨대 장로께서는 일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여 곧장 서계를 지어 수일 내로 발선(發船)하게 해 주시면 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장로가 답하기를 '도주는 오래도록 에도에 있으면서 대군 앞에 총애를 받아서 유람하는 산행에 모시고 가지 않은 적이 없으며, 때대로 불러서 접대하는데 예와 정을 극진히 하였기에 감격하여 감히 입을 열어 말미를 달라고 하지 못했는데, 대군이 말하기를, 네가 성을 이을 아들을 얻었으니 조선에서 필시 사람을 보내어 치하할 것이니 너는 나가서 접대하라 하고 특별히 말미를 주었으므로 내려왔는데, 공 등이 들어왔다는 기별을 듣고 이미 대군에게 알렸으니, 에도에서의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러나 도주와 상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답하기를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다른 일은 없고 위문하는 한 가지뿐이다. 에도에서의 회답이 돌아온 뒤에 나가라는 것인가?'하였더니,

장로가 말하기를 '공 등이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도주와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고는, 또 평전장감(平田將監)과 서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쟁을 일삼아서 학문을 익히지 않았는데, 이에야스〔家康〕 이후로부터 연소한 장관(將官)들이 시서(詩書)를 부지런히 익히고 창칼을 전혀 폐기하였으며, 에도에 문묘(文廟)를 창건하고 학식이 있는 장로들로 하여금 수직(守直)하면서 날마다 분향하고 삭망에 제를 행하게 하니, 이를 모방하여 곳곳마다 성전(聖殿)을 건립하였다. 귀국은 본디 예의의 나라인데 이러한 예절이 아마도 정밀하게 구비되었을 것이다. 제향(祭享)에 사용되는 각종의 도구 및 의주(儀註)[212] 등의 물건을 한결같이 대명(大明)의 예법대로 갖추고자 하는데, 공 등이 돌아가거든 예조에 고하여 상항의 제기(祭器) 및 전각 가운데 배치할 물건을 들여보내 주면 이를 겨냥으로 주조(鑄造)하여 성전(聖殿) 좌우의 도구를 갖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성묘(聖廟)를 만드는 것은 천하가 동일하다. 그러니 일본에서도 이러한 예를 베푼다 하니 극히 가상하다. 제기(祭器) 등의 물건에는 특별히 다른 모양의 기구는 없다. 그러나 돌아가 진달(進達)하여 고할 계획이다' 하고 파하였습니다.

20일에 등지승이 와서 말하기를 '지난 해에 관위(官位)의 직급 순서를 적어 보내었는데, 보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 각 직위 아래에 일일이 주를 달고, 또한 대군이 구하는 『응골방(鷹鶻方)』 책은 조선국의 재상 이란(李爛)이 지은 것이라 하는데, 모쪼록 있는 곳을 널리 찾아서 드려보내 주면 좋겠고, 『응골방』 중에 있는 양응절목(養鷹節目)에는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다고 대군에게서 글을 써서 보내왔기에 베껴 왔으니, 돌아가는 즉시 해석하여 보내주면 좋겠으며, 지난 해에 부특송선(副特送船)의 미수(未收)를 추산할 때, 을해조는 전감(全減)하고 그중 별폭에 부친 매〔鷹子〕 12련과 인삼 6근 14냥 및 병자년 이후 4년 간의 주미(酒米) 150석 2두 8승을 계산하여 받고 청산하려고 왔습니다.

도주가 말하기를 을해조는 이미 감제(減除)하였는데 그 중 매와 인삼은 극히 영성하니 병자년 이후의 4년 잡물을 아울러 전감(全減)하면 그 중에 주미(酒米) 100여석이 무슨 관계가 된다고 이렇게 조정하러 왔는가. 이런 일은 도무지 접대하는 정성과 신의인 것이지 물건의 다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받거나 받지 않거나 위의 세 종류 물건도 역시 감하는 것이 가하다 하여 재삼 분부하기로 이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지난 해에 이미 조정한 일은 이제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전대로 약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더니,

등왜가 답하기를 '이 일을 나와 공 등이 십분 서로 약조를 확정하여 오라고

212) 의주(儀註) : 나라의 전례(典禮)에 대한 절차를 적은 것.

도주 이하 봉행 등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도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겠다'고 하거늘, 이 일은 따로 대단히 이해가 있는 일이 아닐 뿐 아니라 매와 인삼 및 미곡 또한 심히 작지 아니하므로 그 말대로 따랐음.

회답 서계를 진작 써 주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서계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한 조목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다가, 에도의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나가라는 것 역시 칭탁하여 천연하는 무리한 일인데, 날마다 언설을 더하여 극히 원통하고 미운지라, 등지승으로 하여금 날마다 재촉하게 하였더니, 26일에 서계 및 별폭에 진상잡물을 부쳐 봉행 등이 관소(館所)로 가져와서 은근히 치사하여 전해주면서, 상선연(上船宴)을 청하거늘, 여러 가지로 고사하였다가 도주의 성 안에 가서 행례한 뒤에,

도주가 말하기를, '회답의 서계를 급급히 써 올려야 하겠으나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기에 이제야 비로소 써서 보내니 바라건대 폐 없이 배가 돌아가기를 바라며, 이런 감격하는 뜻을 예조에 전달함이 마땅하고, 또한 군기에 대한 일은 감히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여 귀국을 위하여 충성을 바치지 못하여 스스로 부끄러우나, 모쪼록 주선할 계획이며, 또한 솜씨 좋은 장인을 부관(釜館)에 내어보내어 칼을 두드려 만들면 어떻겠으며, 또한 등지승을 귤지정(橘智正)과 같은 사례로 왕래하게 하면, 양국 사이를 주선하여 편하게 할 일이 많을 것이며, 귀국의 각별한 후대에 대하여는 저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답하기를 '이렇게 말하니 감사한 마음 견딜 수 없고, 이런 말씀을 전달할 계획이며, 등왜가 매년 왕래하며 고생하는 실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통찰하여 알지만, 별도로 후대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치사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주는 소매 속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대군이 구하는 물목인데 십분 유념하여 선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열어보니 모두 구청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청국(淸國)의 물건을 구한다고 써 놓았거늘,

저희들이 말하기를 '이 작은 종이에 있는 당물(唐物)은 결코 찾기 어렵거니와, 청국(淸國)의 물건 또한 얻기 어렵다. 그 밖의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면 예조에 진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니,

도주가 말하기를 '귀국에서 산출되는 것은 면주(綿紬)와 백저포(白苧布), 호표피(虎豹皮), 인삼(人蔘), 면자(綿子)[213], 약재(藥材) 등의 물건 뿐인데, 그 중에 면주는 올이 가늘고 잣수가 긴 것으로 극진히 가리고, 면자 또한 깨끗하고 희고 정한 것을 취하여 팔도록 허락하면,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교환하겠고, 향약의 약재 또한 속히 매매를 허락하며, 청국의 물건은 얻는 대로 들여보내주면 대군 전에 들여보낼 계획이라'고 하거늘,

213) 면자(綿子) : 목화(木花).

저희들이 답하기를 '이렇게 매매하는 일을 어찌 이다지 재삼 말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봉행 등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본디 금광에서 채굴하여 쓰는 일이 없고, 이전에는 중원에서 사들여 와서 금박(金箔)을 만들어 청심원(淸心元)을 조제하고, 또 금대(金帶)와 관자(貫子)에 사용하였으며, 그밖에 부인의 수식(首飾)이 있었는데, 수년 이래로 대어 쓸 길이 없어서 약간의 금을 공무역(公貿易)의 동철(銅鐵)과 시가(市價)로 교환할 계획이라' 하였더니,

봉행 등이 답하기를 '은과 금은 과연 본국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공무역의 동철과 교환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만약 용처가 있다면 대관왜 등에게 말하여 교환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거늘,

해마다 황금 100여 냥을 공무역의 동철과 교환하여 쓰기로 약속하고 왔으며, 또한 등왜와 더불어 군기(軍器) 등의 물자를 널리 찾아 주선하기로 하였으되, 대마도에는 본디 생산되는 것이 없고 깊숙한 곳에서 무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저축한 것이 없기로, 단지 석류황(石硫黃) 200근을 매 1근 값을 은 3전으로, 궁각(弓角)[214] 200통은 매 통의 값을 은 1냥으로, 장검(長劍) 1자루의 값을 은 22냥, 중검(中劍) 5자루는 자루마다 가격을 은 4냥으로 하여 뒷날 대관왜에게 계급하기로 약조하고 가져 왔음. 이것이 비록 매우 영성하여 관심이 되지 않겠지마는 이로 인하여 길을 열어서 일후에 대어 쓸 수 있도록 할 것임.

일본의 사정을 상세히 탐문하니, 관백(關伯)은 정축년 이후로 오래도록 병석에 있어서 좌당(坐堂)을 전폐하였는데, 이제는 차도가 있어서 놀러다니는 것을 일로 삼아 나라 안에 통고하여 기이한 새와 묘한 짐승을 모두 원림(苑林)에 모아서 구경거리고 삼고,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을 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또한 지난 해 4월 사이에 관백의 성 안에 화재가 나서 성 안의 전각과 대소 공관(公館) 건물이 비로 쓸듯 소진되었고 전해오던 보물도 또한 재가 되었으며, 이에 야스〔家康〕의 생사당(生祠堂)인 닛코오지〔日光寺〕 또한 불이 나 허다한 사찰들이 아울러 불탔기 때문에, 두 곳에서 일시에 토목 공사를 일으켜 각 주의 장관(將官)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고 함. 또한 우역(牛疫)이 크게 일어나 지난 해부터 농사를 모두 인부가 경작하였고, 흙비〔泥雨〕가 사철 끊이지 않아서 이변이 비상하다 함.

또한 여러 장수들이 각기 관현악의 책임을 맡아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일로 삼아,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으면 수많은 상금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벌을 엄하고 혹독하게 시행하여, 좌우 사람들이 감히 입을 열지 못하며, 지위를 전하는 한 가지 일은 아직 조정하지 못하였다 함. 또한 도주는 이전보다 자존과긍(自尊誇矜)함이 백 배나 더한데, 봉행(奉行) 이하 장관들 중

214) 궁각(弓角) : 활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황소의 뿔.

에 우리나라 사정을 제법 이해하는 자는 모두 나이가 늙었고, 그 밖의 연소하고 모질고 악독한 무리들이 동서로 각기 대립하여 원수처럼 시기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모두들 협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도 등지승(藤智繩)은 제법 우리나라 사정을 알아서 모든 일을 주선하면서 현저히 생색을 내고 있거니와, 간승(奸僧) 서수좌(恕首座)가 장로들을 사주하여 따르기 어려운 폐단을 무수히 야기하니, 장래 접대할 일이 극도로 염려됨.

이번의 위문하는 일 및 별폭의 말과 매〔鷹連〕 등의 물건은 전에 비해 수량이 더하여 보기에 광채가 난다고 십분 사례하였음.

금년조 일특송선이 지로선(指路船)이 되어 4월 29일에 부중(府中)에서 떠나 혹은 노를 젖고 혹은 돛을 달아 이 달 초1일에 악포(鰐浦)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초7일에 부산으로 되돌아 건너와서 장계를 올리기 위해 수본 및 별단 한 통과 회답 서계와 별폭을 아울러 등서하여 우선 진정(進呈)하며, 급급히 올라갈 계획으로 수본을 올림.

동래부사의 장계. 특송선 3척 및 바다를 건너온 역관 홍희남 등이 회박(回泊)한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고, 홍희남 등의 수본 두 통 및 서계와 별폭의 등서 각 한 통 등을 올려보냄. 수본 중에 도주가 소청한 일은 해조에 명하여 헤아려 조처하게 하시며, 그 중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차왜가 방금 도착하였으니 불가불 진작 부응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램에 부응하여야 하겠고, 장인은 이전부터 저쪽 왜인들이 넉넉하게 요포(料布)를 주었으니, 대단한 폐단이 있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백토(白土)의 운반은 극히 어려운데, 6, 7월 농사가 조금 쉬게 되는 것을 기다려 비로소 일을 시작할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장인과 백토는 가까운 각관에서 전례대로 보내줄 것을 해조에 명하여 미리 분부하시며, 마서(馬書)와 응의방(鷹醫方)은 이전부터 간절하게 구하였음에도, 전일에 해조에서 『마의서(馬醫書)』만 보내었고, 이제 이 수본에는 본도에다 또 거듭 청하였으니 부응하지 않아서는 안될 듯한데, 서울에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는 집이 없을 터이므로 전일에 해조에서 내려보내지 않았기에 극히 염려되었더니, 도내 인근 각읍에서 물어보다가 마침 응방(鷹方) 고책(古冊)을 얻었기로 이것을 들여보내줄 계획이며, 홍희남의 수본 두 통은 말이 파다하여 정서(精書)할 즈음에 치계(馳啓)가 하루 늦어져 극히 황공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홍희남 수본 내의 사설은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상세히 물어본 뒤에 의론할 바가 있으면 계품할 것임. 다만 그들이 구청하는 물건은 저들로서는 긴요한 것이면서 우리로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아니하면 순리대로 그들이 뜻에 부응해 주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기를 굽는 흙 등의 물자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수를 줄

여서 때에 맞추어 지급해 줌이 마땅할 것이며, 약재를 요구하는 것은 비록 전부터 있었지만 지급한 것이 지극히 영성하여 그들이 청하는 의도와 전혀 맞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들에게 당재를 요구했으니 후하게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해조에게 명하여 미리 조처하여 향약 약재 각종을 넉넉하게 지급하도록 하며, 만리 머나먼 절역에서 문사(文事)에 뜻을 두어 성묘(聖廟)를 건립하고 의물과 체식(體式)을 간절히 구하는데 이것은 뒷날 점차 분쟁이 사라질 좋은 소식인지라 우리로서도 부응함에 또한 광채가 있으니, 의주(儀註) 및 제기 겨냥을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상의하여 확정 지급하도록 허락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5월 16일 우부승지 신 구봉서(具鳳瑞)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왜인구청의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은 지난 해에도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고, 장인과 백토를 편리하고 가까운 고을에서 전례대로 보내어 줄 것이로되, 농사짓는 여가에 부역하도록 하는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대로 시행할 것. 약재의 구청은 이전에는 영남에서 산출되는 것은 본도에서 무역을 허가하고, 목록 중 다른 도에서 생산되는 약재는 이제부터 양 의사(醫司)에 명하여 찾아내되 각종을 넉넉하게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본도에 명하여 부응하도록 하며, 성묘의 제례 의주는 신 조(曺)가 마련하여 보내고, 제기(祭器)의 체식(體式)은 한결같이 『오례의(五禮儀)』의 겨냥에 의거하여 공조(工曹)에 명하여 만들어 지급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5월 19일 동부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진(1640) 5월 28일

비변사에서 입계하기를, "홍희남이 가져온 도주(島主)와 봉행(奉行) 등의 구청단자를 보니 방언을 뒤섞어 써서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으므로 감히 입계하지 못하고, 홍희남으로 하여금 별단(別單)을 번역하게 하여 입계하였는데, 그 중에 당물(唐物)을 무역하는 일은 이미 방색하였다고 하고, 성묘(聖廟)의 제기(祭器) 의주(儀註)와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과 약재 등의 물건을 지급하도록 허락하는 일은 이미 입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며, 이 밖에 다른 건의 허가 여부는 해조로 하여금 복계(覆啓)하여 처치하게 함이 어떠할지."하였더니,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 하였음.

경진(1640) 5월 30일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번 도주(島主)와 봉행(奉行) 등이 요구한 바 성묘(聖廟)의 제기(祭器)와 의주(儀註) 및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과 약재 등의 물자에 대하여는 이전에 이미 계하하였는데, 그밖에 우리나라 토산이면 편의대로 찾아주어 먼 곳 사람의 바램을 위로하지 않을 수가 없겠기로 이전대로 종(從) 부종(不從)을 분정하여 후록(後錄)하니, 각 해당 관서 및 각도 감사에게 알려서 하여금 기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고, 그 중 우리나라 지도와 청국의 개갑(鎧甲)과 편곤(鞭棍)[215], 피병(皮甁)[216], 환도(環刀), 마상장도(馬上長刀) 등의 각 모양을 구하여 보고자 하는 일은 신의 부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라, 다시금 묘당(廟堂)에 명하여 확정 시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후록

○ 1년 12개월의 절일(節日)의 창시(創始) 의식을 적어 보내는 일. 종(從). 승문원(承文院)
○ 성묘(聖廟)의 제향에 사용되는 여러 기물 및 석전(釋奠) 의주(儀註) 1건을 얻고자 요구한 일. 이미 계하함.
○ 준마, 서너 살 되는 것을 무역하는 일. 종(從). 본도.
○ 우리 나라의 안장 3부. 내에 2부는 나전(螺鈿)으로, 한 부는 어피(魚皮)로 만든 것을 무역하는 일. 종. 본도.
○ 응서(鷹書)의 구청 및 별단(別單)의 문목(問目)을 주해하여 보내는 일. 종. 승문원.
○ 특별한 모양의 매〔鷹子〕 및 황앵(黃鶯), 두루미〔野鶴〕, 어피(魚皮). 종. 본도.
○ 인삼(人蔘), 저포(苧布), 장도(粧刀), 필묵(筆墨) 등의 물건을 무역하는 일. 종. 해당 관서.
○ 우리 나라 약재를 넉넉하게 무역하기를 간청한 일. 이미 계하하였음.
○ 당물(唐物)의 금선(金線), 금단(錦段), 대단(大段)을 무역하는 일. 부종(不從).
○ 사기를 구워 만들 때의 사토(沙土)와 공장(工匠)과 소목(燒木) 등의 물자를 전례 대로 멱급하는 일. 이미 계하하였음.
○ 우리 나라 면주(綿紬)를 너비 1자 3치, 길이 40자로 한정하여 특별하게 직조하여 넉넉하게 매매하도록 허락하는 일. 이미 계하하였음.
○ 공목(公木)은 비록 가려 지급한다 하였으나 당초 약조한 겨냥보다 못하여

215) 편곤(鞭棍) : 무예에 사용되는 도구의 일종인 쇠도리깨와 곤봉(棍棒).
216) 피병(皮甁) : 가죽으로 만든 물병.

점차 거칠고 엉성하게 되었다고 다시금 분부하는 일. 종. 전라도.

○ 개시목(開市木)[217]이 매우 거칠어서 비록 매매하더라도 도리어 쓸 데가 없다고 다시 분부하는 일. 종. 본도.

숭덕 5년(1640) 6월 초3일 좌부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여 계목대로 시행하되 특별한 모양의 매 및 면자(綿子)는 들어주되 편안하고 천천히 하라 하셨음.

경진(1640) 8월 초3일

예조의 계목. 방금 계하하신 대마도 도주가 구청한 문묘(文廟) 제기 및 제례도식(祭禮圖式)과 의주(儀註) 등의 물건에 대하여, 이미 일을 마쳤는데, 상항의 물건을 예조 서리(書吏)에게 가지고 내려보내어 훈도에게 명하여 함께 일일이 대조하여 줄 것이로되, 서리(胥吏)가 타고 갈 말 및 제기를 실어갈 말 또한 병조에 명하여 수량을 헤아려 제급(題給)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8월 초3일 좌승지 신 홍득일(洪得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경진(1640) 9월 21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 달 11일에 차왜 등지승(藤智繩)에게 다례를 베푼 뒤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을 받아올려 감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냈으며, 행역(行役)을 친절하게 위문하고 그 밖의 섬 안과 에도의 소식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무사한데 다만 대군(大君)이 길이시단(吉伊施端)의 법을 엄금하여 남만(南蠻)의 배가 내도하자,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배를 침몰시키고 단지 10여 명만 살려서 돌려보내어 남만에 보고하게 하여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였기로, 다른 물화가 나올 길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약재가 장차 없어질 형편인지라, 대군께서는 이 때문에 조선의 향약(鄕藥) 재료를 얻어서 나라 안에 병을 고칠 재료로 통용하고자 하여, 지난 해부터 왜관에서 무역하여 들여보내고 있는 향약 약재의 물명(物名)이 60종인데, 그 수량의 합계는 겨우 백여 근이라, 이것으로는 결단코 나라 안에 두루 사용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나라 안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약재 26종을 별록(別錄)하여 왔으니, 26종 중 한 종류마다 각기 수백 근, 혹 백여 근 씩 무역하여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우리나라에

217) 개시목(開市木) : 왜관의 개시(開市)에 상품으로 출하되는 포목.

는 본디 약초를 캐어 매매하는 일이 없음을 전에 이미 누차 언급하였는데, 병이 있는 사람이 혹 캐어 사용하더라도 이미 매매하는 법이 없는지라, 단지 제가 사용할 물건만 장만하지 매매할 만큼 남는 수량이 없는데, 한 번 섬에서 구청한 뒤로 여러 가지로 알렸으되 채취하여 팔러 오려고 하지 않고, 전에 무역하여 보낸 60종의 약재도 어렵게 알려 수합하여서 교환하여 보냈거늘, 각종 약재의 수량이 수백 근 또는 백 근이나 많은 것은 결코 수량대로 무역하기 어려울 것이라' 하였더니, 답하기를 '영감의 말씀은 참으로 그러하나, 편의대로 무역하도록 알려서 전에 비해 조금 넉넉하게 하여 주시라'고 하며 약재를 적은 작은 종이를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등서(謄書)하여 해조에 올려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알려서 시행하게 하십시요. 또 작은 한 종이는 도주가 정월 사이에 되돌아가서 동무대군(東武大君) 전에 바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취하여 본즉 준마 한 필, 살아있는 노루 자웅 두 쌍, 새매〔鷂〕 5연, 꾀꼬리〔黃鸝〕 5마리, 환모응(換毛鷹) 등 모두 5종이었는데, 환모응은 흑색과 백색 혹은 담백색 중에서 털 색깔이 특별한 매〔鷹子〕입니다. 신은 답하기를 '준마는 예로부터 드문 물건인데 상년에 간신히 얻어 교환해 주었거니와 지금은 다시 얻기 어려우며, 노루는 생포하기 어려운데 자웅을 함께 잡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꾀꼬리는 철이 아니라서 얻기가 어렵고, 환모응은 구름 사이로 날아다니는 물건인데 어찌 마음대로 찾아내겠는가' 하였더니, 답하기를 '영감의 말씀은 모두 이치가 있어서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지만 조선의 물산을 구하여서 대군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니 심히 어려운 것 외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어 무역하도록 허락하시어 광채가 나도록 해 달라'고 하기에, 여기에 별록으로 또한 등서하여 해조에 올려보냅니다. 꾀꼬리는 지금이 철이 아니어서 철이 되면 알려서 무역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타일렀고, 준마는 신이 물어보니 지난 해에 무역을 허락한 말이 이름 있는 준마였는데 도주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에도에 들여보내었더니 자못 좋다고 칭송하였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며, 서너 살의 마필을 구하기 어려우면 일 여덟 살의 마필도 무방하다고 하는 바, 외방(外方)에 준마는 전혀 없으니 서울에 만약 있다면 호조에서 전과 같이 찾아 보내어 값을 받으면 본전을 잃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노루를 얻는 것은 폐단이 있을 듯한데, 지난 해에 사향노루를 또한 찾아주었으니 이제 한결같이 방색하기가 어렵고, 새매〔鷂〕는 얻기 쉬운 물건이며, 환모응(換毛鷹)은 있으면 무역을 허락하고 없으면 저들 역시 억지로 구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본도 감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당초 역관의 수본에 의거하여 격군이 30명이라고 치계하였는 바, 이전부터 격군 40명이 내도하였는데 이제와서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재삼 역관 등에게 말하거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과

연 40명으로 급료하였으며, 역관 등이 중선(中船)인줄 착오하여 이렇게 수본을 하였으니, 40명 이전의 규례가 있는 사실을 지금 와서 감급(減給)하기가 불가하기에 접대를 한결같이 사례에 의거하여 행한다는 뜻을, 본도 감사와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알리라는 일로 올린 장계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계하하실일. 이제 이 등왜(藤倭)가 구하는 것이 준마 등의 5종과 약재 26가지인데 구하는 대로 응하여 주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 중 얻기 어려운 물건 외에 요구에 응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례대로 경외(京外)에 분정(分定)하고 많고 적음을 후록(後錄)하였으니 각 해당 관서 및 각도 관찰사에게 알려서 기일에 맞추어 내려보내도록 하되, 격왜 40명의 급료와 접대 등의 일은 한결같이 상고하여 전례대로 시행할 것을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후록.

준마 1필, 호조

야생 노루〔野鹿獐〕 2번(番). 자웅 구비.

새매〔鷂〕 5연

꾀꼬리 5마리

백출(白朮)[218] 5근, 창출(蒼朮)[219] 10근, 백작약(白芍藥)[220]과 적작약(赤芍藥)[221] 각 3근, 반하(半夏)[222] 3근, 갈근(葛根) 3근, 오미자(五味子) 5근, 방풍(防風)[223] 2근, 길경(桔梗)[224] 5근, 천문동(天門冬) 2근, 맥문동(麥門冬)[225] 2근, 산약(山藥) 3근, 산수유(山茱萸) 3근, 하수오(何首烏) 작은 것 5근, 우슬(牛膝) 2근, 사삼(沙蔘) 작은 것 5근, 고삼(苦蔘)[226] 5근, 천남성(天南星)[227] 2근, 초룡담(草龍膽)[228] 2근, 마황(麻黃) 2근, 이

---

218) 백출(白朮) : 국화과의 다년초 삽주의 덩이뿌리. 비위(脾胃)를 돕는 약재로 사용한다.

219) 창출(蒼朮) : 국화과의 다년초 삽주의 결구되지 아니한 뿌리줄기. 백출보다 발한(發汗) 작용이 강하여 약재로 사용한다.

220) 백작약(白芍藥) : 작약의 뿌리 겉껍질을 벗긴 것. 보혈(補血) 진정(鎭靜)의 약재로 사용된다.

221) 적작약(赤芍藥) : 작약의 뿌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

222) 반하(半夏) : 천남성과에 속하는 다년초 끼무릇. 지하의 덩이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223) 방풍(防風) :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초 방풍나물의 묵은 뿌리. 거풍(祛風) 제습(除濕) 지통(止痛)의 약재로 사용한다.

224) 길경(桔梗) :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초 도라지의 뿌리. 거담(祛痰) 진해(鎭咳)의 약재로 사용한다.

225) 맥문동(麥門冬) : 백합과의 다년초 맥문동의 덩이뿌리. 보음(補陰), 청폐(淸肺), 거담(祛痰), 자양(滋養)의 약재로 사용한다.

226) 고삼(苦蔘) : 콩과의 다년초 쓴너삼 또는 개너삼의 뿌리. 청열조습(淸熱燥濕) 거풍살충(祛風殺蟲)의 약재로 사용한다.

227) 천남성(天南星) : 천남성과의 다년초 천남성의 덩이뿌리. 독성이 있으나 거풍(祛風) 거담(祛痰)

상 본도.

숙지황(熟地黃) 3근에 2근 더, 생지황(生地黃) 3근에 2근 더. 황기(黃芪) 3근에 2근 더, 백렴(白蘞) 3근에 2근 더, 지모(知母) 3근에 2근 더, 이상은 황해도.

택사(澤瀉)[229] 3근에 2근 더, 전라도에서 제급(題給).

환모응(換毛鷹) 특이한 색, 혹은 흑색, 혹은 백색, 혹은 담백색. 부종(不從).

숭덕 5년(1640) 9월 21일 우부승지 신 김육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입계대로 시행하되 약재는 편한대로 마련하여 넉넉하게 무역하도록 허락하고, 다른 도에 정한 것도 더 마련하도록 행회하라 하심.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차왜가 구청하는 약재의 수량은 판부(判付)에 의거하여, 다른 도의 소산은 더 마련하여 계목 중에 부표(付標)하여 들이고, 본도 소산의 약재도 또한 정한 것 외에 편의에 따라 더 준비하여 넉넉하게 무역을 허가할 것을 경상감사에게 행이(行移)할 뜻을 감히 아뢰니, 전교하기를 "알겠다" 하셨음.

경진(1640) 10월 18일

동래부사의 장계. 이 달 초8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정해(鄭楷)의 치통 내용. 방금 도착한 귀부의 이문(移文) 내용에 경진조 부특송선(副特送船)이 나온 지 이미 오래인데, 본부 부사가 파직된 연고로 다례(茶禮)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본부에 사고가 있으면 부산에서 홀로 거행하는 것은 본디 있는 전례인지라, 이달 초6일에 다례를 이미 확정하여 홀로 행하기로 한 후에 이문(移文)한다 하였으나, 이전부터 동래부사에게 사고가 있으면 첨사(僉使)가 홀로 연향(宴享)을 행하는 일이 있지만, 이번의 부특송선은 곧 복구(復舊)하는 행차라, 문답하는 사이에 불편한 일이 많이 있기로, 순찰사가 확정한 뒤에 하여야 할 것이나, 저들이 다례를 속히 행하자고 청할 뿐 아니라, 동래부에서 차왜(差倭)에게 날짜를 정한 뒤에 이렇게 이문하니, 진퇴하기가 어렵고, 다례를 연기하면 객으로 온 사람을 노하게 할까 염려되어, 부득이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초7일에 설행(設行)하였고, 다례 때 서계(書契) 별폭(別幅)을 받아올려 가져다 보니, 별폭 이외에 또 별폭이 있는데, 곧 지난 병자 정축 무인 등 4년 동안의 진상별

의 약재로 사용한다.

228) 초룡담(草龍膽) : 용담과의 다년초 용담초나 과남풀, 큰용담 등의 뿌리. 청열조습(淸熱燥濕)의 약재로 사용한다.

229) 택사(澤瀉) : 택사과의 다년초 택사의 덩이뿌리. 이뇨(利尿)의 약재로 사용한다.

폭(進上別幅)이거늘,

즉시 정관에게 묻기를, '당초 복설(復設)할 때 왕년의 진상은 매년 송사(送使) 때 1년씩 첨가하기로 등지승(藤智繩)과 상세히 확정하였거늘, 이번 걸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한꺼번에 진상하는가? 상정(詳定)한 것과 전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물력(物力)으로 일시에 장만하여 줄 길이 만무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제가 올 때 비록 한꺼번에 가지고 왔으나 마련하여 주는 것은 오직 귀국에서 상량하여 조처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거늘, 끝내 거절하기 어려운지라, 재삼 굳게 확정한 뒤에 받았음.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날 대군이 도주에게 이르기를, 남만의 상선이 이미 끊어져 약재를 얻어 쓸 방책이 없으니 조선의 약재를 널리 무역하라 하거늘, 도주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더니, 대군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약사(藥肆)를 에도와 왜경(倭京), 오사카〔大坂〕 등지에 설치하고, 그 패 이름을 조선약사(朝鮮藥肆)라 하여 내걸었는데, 제가 관(館)에 와서 보니 약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도주가 대군에게 실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전일에 등차(藤差)도 이 일을 말하였으므로, 동래부사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하여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아마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보고하였다 하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라건대 다시 보고하여 재촉해주시도록.

정관이 말하기를 '인삼은 극히 적고 좋지 않으며, 목화는 거칠고 형편없이 나쁘며, 명주〔綿紬〕는 길이와 너비가 짧고 좁으며, 공목(公木)은 예전보다 지극히 나쁘며, 통용하는 시중의 포목〔市木〕 또한 길이가 짧다'고 재삼 말하거늘,

답하기를 '이는 우리나라 산물이 본래 이러한 것이지, 일본을 위하여 강등하여 줄인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더라도 나라의 풍속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을 지어 타일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앞서 있었던 일은 저희도 알고 있으니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보고하여 품정(稟定)하자'고 하거늘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겠다고 하였음.

정관이 말하기를 '왜관의 지세가 평이하고 또 여염집들과 멀리 격리되어 있으며, 뒤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의외의 변고가 생기면 방비하기 어려운데, 부산성(釜山城) 안에 일찌기 관을 설치한 일이 있었으니 이 지역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관을 설치하고 개축하여 만약의 일에 대비할 수 있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부산성은 곧 우리가 진을 설치한 곳이고, 교린의 도리로는 오직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서 너희를 박하게 대접하지 않고 관을 지어 우대하여 조금도 흠결(欠缺)이 되는 일이 없었거늘, 무단히 다른 사람의

성지(城池)를 빌리겠다는 것은 심히 해괴하여, 비록 대단히 어긋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들어 줄 수 없으니, 다시는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관사가 이러하니 에도에서 들을까 심히 두렵다. 수시로 관에 들어와 다시금 정결하게 수축해 주든지, 이곳에는 결코 오래 거처하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수리 보완한 공사를 헛되게 할 것이냐' 하였더니,

다시 부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고 작은 종이 한 장을 바치며 말하기를, '비록 대강의 내용을 면전에 진술하였으나, 일이 많은 중에 망각할까 염려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니, 이 작은 종이를 동래에 보내어서 계달(啓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늘, 동래부로 보낼 양으로 받아들였음.

파할 무렵에 또 말하기를 '찻잔을 구워만드는 일은 곧 에도의 대군(大君) 이하 제장(諸將)들이 간절히 구청하는 물건이고, 도주가 심력을 다하는데, 전일에 단자를 올려 구청하고 이제 와서 보니 만든 것이 많지 않고 재료도 쉽지 않아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닌데, 금년에는 겨울철에 이미 들었으니 말해도 무익하거니와, 명년에는 십분 유념하여 달라' 하거늘,

답하기를 '금년에도 구을 흙과 땔깜과 장인을 말하는 대로 정하여 주었는데, 만든 수량의 다과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매년 구워 만드는 것은 따라 주기 어려울 듯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마땅히 품보(稟報)할 계획이라' 하였음. 또 말하기를 '등지승이 비록 우리 국가에 공이 있기는 하지만 일이 사사로운 일인지라 감히 보고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파할 무렵에 정관이 누누이 한 말이 모두 지승(智繩)을 위한 것이기로, 들은 바를 이렇게 매거하였음.

정관이 말하기를 '저는 도주의 명을 봉행하는 사람인데 책임이 번다하여 내년 봄이 되는 즉시 도주와 함께 에도로 갈 사람인지라, 일이 이렇게 바빠서 맡은 일을 마치면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부관 이하의 사람들을 모두 남겨두고 저는 즉시 들어갈 계획이니, 이런 뜻을 또한 알려달라' 하였기로 연유와 서계 한통, 별폭 두 통, 정관이 올린 작은 종이 한 장 등을 받아서 보내는 일임.

부산첨사가 전례에 의거하여 홀로 다례를 행하면서 등왜(藤倭)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은 매우 싫어하는 듯하며, 이제 서계를 보니 정관의 이름 글자 평지교(平智交)는 평지우(平智友)를 못 알아본 것인데, 당초 역관이 사정을 물어본 수본(手本)을 만들 적에 어두운 밤 급한 중에 우(友) 자의 곁에 있는 점을 잘못 본 소치임.

서계 별폭 각 한 통만 받아 해조에 올려보내고, 추급(追給) 연조의 진상별폭 한 통은 이미 당초 매년마다 1년조를 덧붙여 준다는 약조를 어긴 것이어서, 병자조의 진상만 금년 2월분으로 받아서 올려보내어 해조에서 이미 꺾어 확정하여 이문(移文)하였거늘, 이렇게 뒤섞어 기록하는 것이 부당한 듯하여 고쳐 보내겠다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돌려주었고,

정관이 바친 작은 종이는 모두 부산에서 보내온 이문(移文) 가운데 실린 바를 거듭 청하는 이야기인데, 첫면에 '동래·부산 양 영공'이라 썼고, 또한 도주의 서계 가운데 쓰는 양 영공의 사례가 아니기로 역시 환송(還送)하고, 후록(後錄)에 등서하여 올려보냄.

신은 이미 파직되어 참으로 직명이 없으나, 아직도 임지에 있기에 변방의 사정을 치계하지 않을 수 없어 직함을 태연히 예전대로 써넣었으니 이미 지극히 황공하며, 별폭의 위약(違約)과 별지의 위식(違式)은 모두 교활한 왜인들이 일찌기 시험하는 버릇인지라, 짐짓 환송하여 그들의 뜻을 살핌. 직위에 벗어난 죄 더욱 도망할 바 없으나, 연유를 알리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정관의 이야기는 홍역관이 아마 이미 문답을 조정하였을 것이기에 여기서는 헤아릴 수 없고 경솔히 먼저 대답하여 혹 서로 같고 다름이 없을 수 없는데, 아울러 홍희남의 고목(告目)이 온 뒤에 조처하시되, 찻잔을 구워 만드는 일은 당초 대단히 조처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데다가 금년에 아직도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는 데는 본도에서도 늦춘 실수가 없지 아니하나, 매년 구워 만드는 일은 따라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역관들이 이미 방색했다고 하니, 금년의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은 봄이 되면 즉시 공인을 수합하여 때맞춰 구워 만들어 그들의 뜻에 부응함이 합당하니, 이 뜻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그대로 하라 윤허하였음.

一. 바친 **작은 종이의 등서**. 동래·부산 두 영공대인합하〔東釜兩令公大人閤下〕

一. 약재(藥材)를 교역하여 매매하는데 크게 내어주겠다는 뜻을 보여달라는 말은 이제 진달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동무대군(東武大君)이 대마수(對馬守)에게 하명한 물건입니다.

一. 지난해부터 내어온 인삼은 지극히 적고 좋지 않으며, 또한 예전에 대명에 통용되는 것이라고 한 것과 어긋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一. 매양 상인이 사오는 무명은 지극히 나쁩니다. 원컨대 좋은 무명을 만들어서 가격도 높은 값으로 하면 상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一. 명주〔綿紬〕와 관련된 일인데, 가로 1자 3치, 길이 15심(尋)[230]으로 이 또한 잘 짜낸 명주라야 교역 매매할 적에 가격도 높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一. 시목(市木)[231] 또한 길이가 12심(尋)으로 지극히 좋게 짜낸 것이라야 합니다.

---

230) 심(尋) : 1심은 8척이다.

231) 시목(市木) : 시중에서 통상 거래하는 포목.

一. 조선국에 있는 상인이 사는 물건은 어떤 것이든 내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위의 조목은 지금부터 조선국에서 산출되는 물건을 구하는 것으로 일본의 공의(公儀)도 알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또한 왜관의 위치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원산(圓山)으로 옮기자는 뜻과, 또한 개시 역시 예전과 같이 상인들이 같이 왜관에 들어오는 일을 홍지사(洪知事)가 이번 봄에 바다 건너 대마도로 왔을 때 비록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그 사연이 없습니다. 곁으로 들으니 상인들이 비록 많지마는 관문(館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왜관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 하여 이렇습니까? 오는 상인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상인들이 장사 이익을 취할 가망이 있어서 상인이 많을 것입니다. 조선인이 관문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음이 어떠할지. 이런 연고로 이제 존안(尊顔)을 뵙고 이 서찰을 올리오니, 대마수(對馬守)의 실정이 이러합니다. 10월 초6일 부특송(副特送) 정관 평지우(平智友) 착명(着名).

경진(1640) 10월 21일

경상감사 구봉서(具鳳瑞)의 장계임. 신이 방금 밀양에 도착하여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의 수본(手本)을 보았사온데, 차왜(差倭) 등지승(藤智繩)이 특송정관 평지우(平智友)를 초치하여 한 곳에 같이 앉아 홍희남에게 이르기를, '여름에 차인(差人)을 보내어 위문한 일을 에도에 보고하였더니, 대군(大君) 이하 집정(執政) 들이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면서 대마도주(對馬島主)가 다행히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조선에서 치하하기까지 하였으니 양국의 정성과 신의의 본의를 알 수 있겠기에, 급급히 회사(回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여 나왔는데, 대개 대군이 구하는 약재는 실로 약간의 구청(求請)에 비길 것이 아니고, 귀국의 약재 또한 품질이 좋으니 모름지기 모쪼록 채취하여 수량을 넉넉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약재를 캔 사람을 보내어 그 값을 맞추어 주고, 하여금 연속하여 팔러 오도록 할 것이며, 또한 언만(彦滿) 송사(送使)는 한결같이 언삼(彦三)의 사례대로 도서(圖書)를 만들어 줄 것이며, 그리고 부산성(釜山城)에 왜관(倭館)을 옮겨 접대하는 등의 일을 상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겠기에, 평지우(平智友)가 부특송(副特送) 정관을 겸하여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홍희남이 답하기를 '부산성과 관련된 일이 불편하다는 사정을 전일에 이미 도주에게 다 말하였고, 언만 송사는 더욱이 극히 무리한 일이며, 언삼의 송사선은 도주가 승습(承襲)한 뒤로 즉시 제거하여야 마땅할 것이로되, 조선에서 특별히

도주의 간청을 생각하여 지금까지 그대로 두어 그가 아들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 언만의 도서를 요구한다면 언삼의 송사를 제거한 연후에라야 절로 조처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어찌하여 무리한 청을 제기하는가?' 하며 이렇게 발언하였으니, 반드시 부끄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약재는 이미 치계하여 아직 회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 편의대로 조처할 것이거니와, 다만 우리나라 약재는 본디 채취하여 매매하는 규례가 없는데다가 각종의 약재 천근이나 되는 많은 양을 혹 매매한다 하더라도 결코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니, 평지우가 답하기를 '이런 일은 구설(口舌)로 다투는 것이 불가하니 다례(茶禮)하는 날 마땅히 진달할 것인데, 지금까지 다례를 하지 않는 것은 이어찌 접대하는 정성인가?' 하였고, 등왜(藤倭)는 말하기를 '당초 귤지정(橘智正)이 왕래할 적에는 평경직(平景直)과 현소(玄蘇) 등이 주로 관장하고, 귤지정은 오가면서 말을 전달한 노고에 불과함에도, 특별히 귀국에서 후한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도 일본에 이름이 전해지니, 그 자손의 영광과 다행이 어떠하겠는가? 저는 근년 이래로 귤지정의 대신으로 매양 나왔기에 차츰 귀국 사람들과 친숙해졌고, 대소의 일을 십분 상의하여 피차 간에 편리하고 타당하게 조처하였는데, 온 섬의 사람들이 시국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한갖 욕심만을 품고서 참소하고 훼방하여 못할 짓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희가 두 나라에 대하여 필경에는 상벌이 어떻게 될지 극도로 걱정이 된다. 이번에는 부특송 정관으로 나왔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고 하였음. 고 제 자랑을 하며 종일토록 그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니 교활한 왜인의 농간을 측량할 수가 없는데, 타이른 형편은 다시 치보할 계획이라는 수본임.

다례(茶禮)의 잔치는 지금 즉시 거행하라고 재삼 알렸는데, 차왜(差倭)가 나온 이튿날 불행히도 동래부사 강대수(姜大遂)가 이 즈음에 파직되어 초두의 접응(接應)에 빠진 점이 있기에 불만한 기색을 초래하여 재촉하는 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왜관에 머무르는 것이 느리고 빠른 것을 지금 미리 예측할 수 없으나, 신임 부사를 묘당(廟堂)에서 명하여 밤낮 없이 재촉하여 내려보내시기를.

신이 약재 별록(別錄)을 가져다 보니 원수(元數)가 26종이며, 한 종류의 수량이 많기로는 혹 천 근이나 되기도 하고 혹은 백여 근이나 되는 것이 있는데, 결코 일일이 부응해야할 이치는 없고, 대개 의도가 경중에 따라 값을 따져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닌지, 저들이 계속하여 무역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였으니, 한꺼번에 무역해 줄 필요는 없고, 시일을 보내며 얻는 대로 무역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을 것이로되, 초면에는 초초하게 몇몇 종류로 그들의 후한 바램을 색책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생산되는 곳에 따라 다른 도에 분정(分定)하여 급급하게 내려보내어, 본도에서 얻어지는 것과 동시에 무역하도록 허락하심이 어떠할지.

백렴(白蘞)과 두 가지 지황(地黃)과 오미자(五味子)와 지모(知母), 황금(黃芩)[232], 맥문동(麥門冬), 반하(半夏), 마황(麻黃) 등의 약재는 모두 본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닌지라 이 때문에 염려되며,

부산성에 이주하는 일은 저들에게 별로 대단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도 방색(防塞)하는데 어려움이 없거늘, 우리나라 인심이 본래 견고하지 못하여 한 번 이설을 발하면 중외(中外)의 인심이 혹 의심하고 우려하는 일이 많을 것인 바 참으로 한 바탕 웃을 일이며, 저들도 꼭 이주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듯 하온데, 언만송사선의 일과 함께 거론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얻으려는 계책이오니, 이는 간교한 계략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이 지난번 하도(下道)를 순시할 적에 감만이(勘蠻夷)[233]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부산 앞바다에 도달하여 왜관의 형세를 바라보았는데, 담장을 꼭 물려 쌓을 것은 없고, 예전 그대로 두고서 잠시 활 한 바탕 거리를 더 축조하고, 겉치레가 되어버린 극위(棘圍)[234]를 철거하면, 저들도 반드시 편하다고 할 것이며, 부산성의 나뭇꾼이나 농사들이 다니는 길도 영구히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겠기로, 명년 봄철 날이 따뜻할 때 이대로 거행할 뜻으로 역관 등에게 한편으로 타이르게 하였으며, 저들이 비록 이주하려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염려할 일은 없을 것이로되, 옳건 그르건 간에 변방의 진을 설치한 곳이 끝내 저들이 거처하는 곳이 되었다고 소문이 들리면 피폐하게 될 것이므로, 이주하는 일은 시종 막을 계획입니다.

언만 송사선에 언삼의 사례대로 도서를 만들어 주는 일은, 이른바 언삼(彦三)이란 자는 곧 지금 도주(島主)의 아명(兒名)이고, 이른바 언만이란 자는 도주의 새로 난 아들 이름인데, 이전에 도주의 아버지 평의직(平義直)이 도주였던 날 언삼이 태어났으므로 도주가 언삼의 선박 하나 얻기를 청하였기에, 조정에서는 그 말하는 바를 들어주었는데 그대로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사촬요(考事撮要)』[235]에 수록된 도주의 아들 평언삼 세견선 1척이란 이른바 언삼의 선박입니다. 언삼이 승습한 뒤로는 선박 한 척은 마땅히 감하여야 할 것인데, 폐조(廢朝)[236] 때 해조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둘 것을 허락하도록 입계하여, 금일 중첩하여 요구하는 폐해가 되었으니 극히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때는 아직 언삼의 선박을 두어 도주가 낳은 아들을 대우하였으나, 이에 의

---

232) 황금(黃芩) : 원문에 황령(黃苓)이라 하였으나 황금(黃芩)으로 고침.
233) 감만이(勘蠻夷) : 감만이포(勘蠻夷浦). 현재 부산시 남구 감만동이다.
234) 극위(棘圍) : 왜관 출입구에 잡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막아놓은 가시울타리.
235)『고사촬요(考事撮要)』 : 사대교린(事大交隣) 및 기타 일용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책. 중종 때 어숙권(魚叔權)이 저술하고 선조 때 허봉(許篈)이 증보하고 박희현(朴希賢)이 속찬하였으며 이어 인조 때 최명길(崔鳴吉)이 증감 수정하였다.
236) 폐조(廢朝) : 광해군(光海君) 시대.

거하여 바꾸어 주는 데는 반드시 서로 약속한 문서가 있어야 할 터인데, 국가가 여러 번 변란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문적(文籍)이 많으니, 이제 해조에 보관되어 있는지도 기약할 수 없거니와 혹 기유(己酉,1609) 경술(庚戌,1610) 연간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237] 중에 있는지, 해조에 명하여 급급히 상고하여 신(臣)에게로 내려보내 주시어 그것으로 방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조종조(祖宗朝)에서 왜인을 접대할 때, 도주 웅수(熊守)의 송사선이 한 척 있었는데, 승습한 뒤 그 아들 웅만(熊滿)에게 바꾸어 주었지만, 또한 근거할 만한 문서가 없기에, 이를 염려하여 또 이런 이야기를 역관 등에게 말하여 하여금 일일이 타이르게 하였으며, 또한 역관에게 명하여 신(臣)이 언만의 송사선에 대한 일은 무리하여 감히 진작 장계로 조정에 알리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알리게 하였으니, 이런 언설을 한 뒤에 한편으로 치계(馳啓)하오니, 청컨대 묘당(廟堂)에 명하여 좋을 대로 지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경상감사가 된 이후로 더욱 왜공(倭供)[238]의 방대한 일과 세견선(歲遣船)의 감당하기 어려운 병폐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릇 차왜(差倭) 정관(正官) 등이 나올 때 잔치를 베풀어주는 등의 일에는 조종조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규례가 많이 있고, 찬품(饌品)의 번다한 것은 말할 것도 못되고, 심지어는 한낮에 술잔을 권하는 절목〔奉盃節目〕을 한결같이 중국사신에게 하는 규범과 같이 하는 바, 지난날 이지완(李志完)이 현소(玄蘇)와 약속할 적에 교활한 왜인에게 속아서 그대로 번져 흘러온 폐단입니다. 이 때문에 온 도의 힘이 장차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고, 60여 고을에서 백성의 고혈을 짜서 수응하느라 분주한 꼴이 보기에도 한심하지만, 국가의 세입(歲入)이 줄어드는 것이 그 수가 매우 많은데도, 이런 때를 당하여 또 언만의 송사선을 더해달라는 설을 발하니, 이를 허락한다면 앞날에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은 배로 더욱 더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탈을 잡을 만한 말이 있으니 시종 방색하더라도 반드시 대단하게 억지를 부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묘당에 명하여 한결같이 영구히 따라주기 어렵다는 뜻을 견고하게 고집하시기를. 이제 등왜가 스스로 자랑하는 모양을 보고 또 그가 귤왜의 예전 사례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면 그의 희망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바, 반드시 직첩(職牒)을 받고 공무역(公貿易)을 하는 등의 사례일 것인데, 직첩을 받는 것은 결단코 경솔히 허락하여서는 불가하며, 공무역은 천시(天市)[239]에 연계되는 것으로 백급(白給)[240]하는 것과는 다르니, 작정(酌定)하는 물량을 귤왜(橘倭)의 공무(公貿)보다 반으로 꺾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위로한다면 득실이 어떠하올지, 또한 묘당에 명하여 참작 상

237)『광해일기(光海君日記)』 : 광해군 재위 15년 동안의 실록.
238) 왜공(倭供) : 왜관무역과 관련하여 왕래하는 무역 사절을 접대하는 일.
239) 천시(天市) : 중국과 교역하는 무역시장.
240) 백급(白給) :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의하여 처치하시기를. 저들이 구하는 살아 있는 노루〔生獐〕 4마리와 새매〔鷂子〕 5연 중에 여러 곳에 물어서 민간에서 기르고 있는 노루 3마리와 매 5연을 사들여 이제 장차 보내줄 계획이며, 꾀꼬리〔黃鸝〕는 철이 어긋나 얻기 어려우니 추후에 멱급(覓給)하겠다는 뜻으로 이미 확정하였고, 약재를 구하는 목록은 등왜(藤倭)가 작은 종이에 평범하게 써서 성명을 적어 역관에게 내어주었는데, 신이 가져다 보고 등서(謄書)한 뒤에 비변사로 올려 보냈습니다.

또한 그가 사사로이 구청한 물건 또한 예닐곱 종이 있는데 종이와 과실 등의 물건에 지나지 않기로 번거로이 장계로 알리지 않고, 본도에서 장차 편한 대로 멱급하려고 하는 일로 장계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등왜의 약재목록 원수는 매우 방대하여 혹 천 수백 근에 이르니 일시에 부응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거니와, 경중을 헤아려 값을 따져서 무역하는 것이 본디 교역의 도리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반드시 한꺼번에 무역해 줄 것이 아니라, 얻는 대로 무역하는 것은 들어주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도 아니니, 장계대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게 하여 각도에서 산출되는 것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선후를 분간하여 내려보내되, 다만 금년 가을 채취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각종의 약재를 수합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명년 봄 채취시기를 기다려 무역 개시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타이르게 하시며,

부산성에 이주하는 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으며, 담장을 더 축조하고 극위(棘圍)를 철거하는 일은 형세를 살펴 헤아려서 장계대로 시행함이 무방할 것임. 언삼(彦三)은 의성(義成)의 아명(兒名)인데 도주로 승격된 이후에는 전일 언삼의 송사선은 마땅히 즉시 감하여야 할 것이로되 지금까지 그대로 둔 것은 극히 근거 없는 일인지라, 이제 마땅히 답하기를 언삼의 송사선을 감한다면 언만을 언삼 때의 사례대로 송사선 1척을 허락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비록 두 선박을 중첩하여 받는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답변이 이미 이치가 있으니 저들로서도 할 말이 없을 것임.

기유(1609)·경술(1610) 연간의 일기는 이 일로 인하여 상고할 필요가 없으며, 등왜가 바라는 바가 수직(受職)과 공무(公貿)에 있는데, 수직은 뒷날의 폐단이 매우 많고, 공무는 호시(互市)[241]에 가까우니 간략하게 무역을 허락하여 그 뜻에 답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며, 별단의 끝에 있는 꾀꼬리〔黃鸝〕와 산노루〔生獐〕 등의 물건은 본도에서 마련하여 주는 것으로 이미 처리하였다고 하였고, 준마와 체응(替鷹)은 전례대로 해조에 명하여 복계(覆啓)하여 거행하도록 하였으며,

---

241) 호시(互市) : 상호간에 값을 계산하여 교역하는 일.

차왜가 나올 적에 동래부사가 마침 교체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나, 신임 부사 정호서(丁好恕)를 임명하여 조정에 하직하고 부임한다는 것은 일찌기 이미 행회(行會)하였거니와, 본도에서 다시 재촉하라는 뜻으로 이문을 보냄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10월 19일 우부승지 유철(兪撤)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하라고 윤허하시되, 극위(棘圍) 한가지 일은 옛 법규를 훼손하지 말라고 하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등왜가 구하는 약재는 비국(備局)에서 내년 봄이 되어 비로소 무역을 허락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계하하였거니와, 우리 나라에는 본디 약을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상인이 없어서 전일에 산출되는 각도에 분정한 것도 많아야 대 여섯 근에 불과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요청한 것이 많게는 천 수백 근이나 되니 각도에서 마련해 내려면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고, 비록 봄철의 채취로 부응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라는 수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니, 지급할 수량을 계목으로 마련하여 후록(後錄)하였으니, 진작 내년 봄에 준비하여 보내어 주라는 뜻으로 각도 감사에게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사용 약재

백출(白朮) 1,000근 중 30근
창출(蒼朮) 1,000근 중 50근
백작약(白芍藥) 1,000근 중 20근
갈근(葛根) 1,000근 중 30근
방풍(防風) 1,000근 중 10근
길경(桔梗) 1,000근 중 30근
천문동(天門冬) 1,000근 중 10근
택사(澤瀉) 1,000근 중 10근
산약(山藥)[242] 1,000근 중 20근
산수유(山茱萸)[243] 1,000근 중 5근
하수오(何首烏) 100근 중 10근
우슬(牛膝)[244] 1,000근 중 10근
사삼(沙蔘) 200근 중 20근
고삼(苦蔘) 1,000근 중 20근
천남성(天南星) 1,000근 중 20근

---

242) 산약(山藥) : 마과의 다년 덩굴풀 마의 덩이뿌리.
243) 산수유(山茱萸) : 층층나무과의 낙엽 활엽 교목인 산수유나무의 과실 또는 종자.
244) 우슬(牛膝) : 비름과의 다년초 쇠무릎의 뿌리. 이뇨(利尿)와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약재로 사용된다.

초룡담(草龍膽) 1,000근 중 20근
합패(蛤貝)[245] 2,000근 이상 본도.
숙지황(熟地黃) 1,000근 중 10근 전라도 5근, 황해도 5근
생지황(生地黃) 1,000근 중 10근 전라도 5근, 황해도 5근
반하(半夏) 1,000근 중 10근
맥문동(麥門冬) 1,000근 중 8근 이상 전라도 제급
황금(黃芩) 500근 중 20근 충청도 제급
오미자(五味子) 1,000근 중 20근 함경도 제급
황기(黃芪) 1,000근 중 20근
백렴(白蘞) 100근 중 5근
지모(知母) 1,000근 중 5근 이상 황해도 제급
마황(麻黃) 1,000근 중 5근 강원도
준마(駿馬) 1필 단 3,4세 호조에 명하여 내려보낼 것.
이미 계하함.
산노루〔生獐〕 2번 단 남2 여2
새매〔鷂〕 5연
황리(黃鸝) 5연 이상 본도에서 제급하기로 이미 계하함.
체응(替鷹), 백색이나 큰 것. 부종(不從)하기로 이미 계하함.

숭덕 5년(1640) 10월 24일 우부승지 신 유철(兪橃)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하라고 윤허함.

경진(1640) 10월 26일

호조에서 입계하기를, "부산에서 구청한 말 한필을 서울에서 사들여 보내는 일로 예조에서 이문하였는데, 이전부터 구청하는 말을 서울에서 사들여 내려보냈으나, 저들이 말을 보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서 비록 극진히 간택하여 사 보내도 누차 물려오니, 무거운 값으로 사들여도 허사로 돌아감을 면치 못하여 참으로 애석합니다. 이번에 역시 본도에서 합당한 말을 가지고 가게 하여 스스로 택하여 사도록 한다면 일이 매우 편할 것이니, 지난 해의 전례대로 본도에 명하여 구하는 말 한필을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하였음.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 하였음.

245) 합패(蛤貝) : 홍합 조개.

경진(1640) 11월 20일

경상감사 구봉서(具鳳瑞)의 장계. 등차가 나온 뒤 수응하는 등의 일은 이전에 이미 재삼 치계(馳啓)하였거니와, 이제 오늘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치보와 역관 등의 수본을 보니, 등차(藤差)가 바야흐로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기색이 있고 또한 노여움을 보인다고 하였는바, 그의 바램은 오로지 언만(彦滿)의 송사선(送使船)을 허락하는 일이고, 겸하여 부산성과 관련된 한 조목을 탐지해 보고자 하는 계책이거늘, 결코 이로 인하여 흔들려 그 소원대로 따라주어서는 안되겠기로 시종 막는다는 뜻으로 이제 또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였음.

대개 약재(藥材)는 신이 얼마 전에 본도에서 취합한 250여 근을 영하인(營下人)에게 주어서 역관 등으로 하여금 우선 입급(入給)하게 하였거늘, 신이 일찌기 예조의 관문을 접한즉 타도에 분정한 약재는 그 수가 영성하여 본도에 지급하는 수량의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기다린지 이미 오래인데도 지금까지 보내오는 곳이 없어 극히 염려되오니, 해조에 명하시어 다시 재촉하여 내려보내시어 등차가 돌아가기 전에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산 노루〔活獐〕는 도내에서 마침 먹여 기른 노루 4마리를 얻어 이미 보내주었는데, 암노루〔雌獐〕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칭탁하며 다시 더 얻어내려고 하거늘, 숫노루〔雄獐〕 1마리를 지금 바야흐로 얻어서 이어 보내주려 하고 있으며, 전후로 지급한 것에 모두 값을 정한 일이 없거늘, 역관의 수본에 이른바 1마리 5필(匹)의 설은 필시 각관에서 노루를 가져온 사람의 소위인지라, 그러므로 방금 물어보고 있으며,

준마는 신이 가을이 된 뒤로 30여 필을 보내어 잇달아 보이게 하였으나, 저들이 모두 무역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도착 즉시 퇴송하여, 본도에는 평소 좋은 말이 없다고 일컬으니, 이후로는 결단코 부응할 가망이 없으나,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것을 해마다 정식으로 하는 것도 이후의 폐단이 없지 아니하여, 또한 그 말대로 따르기도 어렵사오며, 등차는 스스로 제 공을 자랑하며 희망하는 모습이 현저하거늘,

신이 이것을 장계로 알려 공무역이나마 귤지정(橘智正)의 예전 사례보다 절반으로 하여주기로 묘당(廟堂)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게 되었거늘, 일찌기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알렸고 이 밖에는 달리 우대한 일이 없음. 담장을 축조하는 일은 봄이 되면 즉시 다시 품계한 뒤에 거행하는 일로 장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 장계 중의 각 건의 일은 일찌기 동래부사의 장계에 올린 홍희남의 수본으로 인하여 비국

(備局)에서 이미 복계(覆啓)하여 조정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약재에 이르러서는 저 사람들의 구청 중 본도 소산이 20종이고 그 나머지 6종으로 타도에 분정한 것의 수가 통틀어 모두 100여 근인데, 황해도에 분정한 5종 25근은 이미 도주(島主)에게 회사(回謝)하는 예단(禮單)을 가지고 가는 역관 김시성(金時聖)에게 부쳐 보내었으며, 전라도에 분정한 택사(澤瀉) 5근은 본도에서 동래로 직송하였으니, 등차(藤差)가 돌아가기 전에 급급히 수송하라고 다시 재촉하시며, 준마(駿馬) 한 가지는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본도에서 말 있는 곳을 찾아 들여주니 서울에서는 내려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호조에서 본도에 명하여 멱급(覓給)하라는 일로 입계하여 행이(行移)하였다 하는데, 본도에서 찾아 주라는 일로 다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11월 20일 좌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하라 윤허함.

경진(1640) 11월 20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초8일에 나온 중귀선(中歸船)의 왜인 실정을 문답한 일은 어제 이미 치계(馳啓)하였고,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의 수본 내용에, 지난번 중귀선이 나온 뒤로 등왜(藤倭)가 날마다 돌아가기를 재촉하였으며, 부특송(副特送) 정관(正官)과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정관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나온 이후로 무릇 진달(進達)한 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회답이 없으니,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가 전혀 아니다. 도주(島主)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는 오직 귀국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어찌하여 부산성으로 관을 옮기는 일이나, 약재 무역을 허락하는 등의 일과, 그리고 오는 봄에 에도에 들어갈 때 사용할 구청 물자는 급급히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한 등차(藤差)가 양국의 일을 전담하여 매년 왕래하면서 바친 충성이 귤지정(橘智正)보다 못하지 않으므로 전일 다례(茶禮)할 적에 대략 대강의 사연을 진술하였는데, 또한 희다 검다 말이 없다'고 하면서 안색을 지어 말하거늘,

저희들이 답하기를 '부산성으로 관을 옮기는 일은 결코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에 이미 다 말하였으니 다시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약재도 근근히 수합하여 수백 근이나 되는데, 이 외에 천근이나 오백 근을 채취하여 팔러 올 길은 만무하며, 구청하는 마필은 비록 내도하더라도 점퇴하여 무역하지 않으니 어찌할 수가 없으며, 그 밖의 잡물은 얻는 대로 와서 줄 것이나 잠시 지체하는 것을 혐의하지 말 것이며, 등차(藤差)는 비록 드러난 공은 없으나 말하는 바가 이러하기에 이미 치계(馳啓)하였으니,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림이 옳을 것이

다' 하였습니다.

등왜(藤倭)가 말하기를 '저의 소관은 단지 회사(回謝) 뿐이고, 부산성에 관을 옮기는 일은 도주(島主)의 처치에 달려 있고 저희들이 억지로 다툴 바가 아니며, 약재는 대군(大君)이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여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으로, 26종 내에 10종은 각기 1,000 근, 16종은 각기 500근을 해마다 팔도록 허락하여 계속 대군 앞으로 납입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산출되는 곳에서 와서 팔도록 해주면 매우 좋겠다. 전일에 약재를 잡종과 혼동하여 내려보냈기에 당연히 사들이지 않을 것이로되 단지 죽은 말의 뼈를 사듯이 당약(唐藥)으로 서로 교환하였으니 또한 양쪽이 편한 일이며, 구청잡물 중에 말과 매는 무거운 값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산 노루 몇 마리를 얻는 것이 무슨 중대한 일이라고 한 마리의 가격을 베 5필씩이나 절가(折價)하였는지, 저희는 한결같이 공 등이 말하는 대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은 조금도 도주를 성심으로 대하는 뜻이 아닌지라 참으로 한탄스럽다. 그리고 저에게 상을 내리는 일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도중(島中)의 논의인데, 비록 정관(正官)의 말과 같을 지라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귤지정(橘智正)이 당초 양국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그 때는 현소(玄蘇)와 평경직(平景直)이 공무를 전담하고, 귤왜(橘倭)는 단지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다가 특별히 귀국의 은혜를 입어 지금까지도 일본에 이름을 남겼으니 그 자손의 영광이 어떠하겠는가? 저는 불행히도 이렇게 일이 많은 날에 이런 중대한 책임을 맡아서 양국 사이에 출입하는데, 비록 소회가 있다 해도 어찌 감히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단지 도주가 만년에 아들 하나를 얻었기에 마땅히 언삼(彦三)의 사례대로 송사선으로 내빙(來聘)하여야 할 것인데, 도주가 말하기 전에 특별히 언만의 송사를 허락한다면 광채가 비할 데 없을 것이다. 도주의 아들에게 특별히 송사선 하나를 허락하는 것은 전해온 오랜 규례이니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처치함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거늘,

저희들이 답하기를 '약재는 혹 우리나라 소산이 있더라도 일찌기 채취하여 파는 법이 없고, 산골짜기 사이에서 각기 채취하여 말려서 팔러 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장 염가로 값을 매기니, 이후로는 아마도 팔러오는 사람이 없을까 염려된다. 하물며 온 나라 백성이 힘을 기울여도 각종 약재를 천근씩 찾아내는 것은 만무하니 참으로 염려스럽다. 언만(彦滿) 송사선 한 조목은 어찌 그리도 생각을 못하느냐? 언삼(彦三)은 곧 도주(島主)이다. 다히라노 요시토시〔平義智〕의 생시에 도주의 아들 이름으로 송사선을 만들었는데, 언삼이 도주를 승습(承襲)하였으니 즉시 언삼송사선을 없애야 마땅하였는데, 그 때 재삼 간청하기를 아들 얻는 것의 빠르고 늦음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니 아직 그대로 두자 하기로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 언만(彦滿)을 위해 송사선을 하고자

한다면 언삼을 없앰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등왜가 말하기를 '이후 언만의 송사선에 폐단이 많이 있으면 그전에 편의대로 처치할 것이나, 조선에서 폐단을 제거하는 방도로 어찌 언삼을 없애자는 말을 내는가?'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큰 소리로 질책하여 말하기를 '하늘의 살핌이 두려우니 이런 무리한 말은 하지 말라' 하며 타이르고 그 말과 안색을 살폈더니, 부산성에 왜관을 옮기는 일을 기화로 삼아 언만 송사의 말을 또 제기한 것인지라, 날마다 이야기하여 방색(防塞)하고 있으며, 등왜(藤倭)는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입에서 끊지 않고 있으며, 약재는 얻는 대로 부응할 듯한데, 각종을 천 근씩 무역하겠다는 것은 마련해 낼 길이 만무하기에, 이 뜻을 해조에서 글을 지어 들어보내는 일을 속히 확정하실 것이며, 각양의 구청 물자도 처음에는 간절하게 요구하는 듯하다가도 필경에는 억지로 헐값으로 정하여 공짜로 얻자는 계교이며, 이번에는 등왜의 소위가 패악스럽기 견줄데 없으니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마필을 서울에서 내려보내는데 만약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적지 않겠기에 가까운 고을의 말이 있는 곳을 널리 탐문하여서 들여주어 색책하여도 무방할 것이니, 서울에서는 아직 내려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전계(轉啓)하도록 수본을 올린다고 하였음.

추가로 도부한 홍희남의 수본 내에, 방금 나온 왜선에는 도주가 오래잖아 에도에 들어가기에 분부할 일이 많으니 등왜(藤倭)는 속히 들어오라고 하는 도주의 서찰이 왔다고, 동 서찰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나온 지 몇 달 동안 하나도 결말을 지은 일이 없으니 저는 낭패를 보게 되었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야겠다.' 고 하며 무릇 그가 청한 것이 모두 근거 없는 일인데도 도리어 아직까지도 회답이 없다고 탈을 잡아 말하는 것이 극히 민망함. 앞에 올린 수본과 동시에 치계하여 속히 결말을 지어 그가 말하는 대로 속히 들여보내라는 일로 수본을 올린다 하였음.

신이 부임한 지 겨우 3일인지라 연향(宴享)의 여러 도구들을 미처 마련하지 못하여 왜인을 때맞춰 접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번 11일 연향을 베풀 적에 마땅히 저들을 보고 일에 따라 응답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부산성에 관을 옮기는 일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역시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누누히 언급하는 것은, 단지 따라주기 어려운 청을 제기하여 언만 송사의 계교를 이루자는 것이로되, 언삼송사선이 도주의 아명인데도 지금까지 중첩하여 보냈으니, 이로써 언쟁하면 할 말이 없지 아니하거니와, 담장을 물려 쌓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 아니고, 그들의 하는 말을 일일이 틀어막아 버린다면 우호의 감정을 잃을까 염려되므로, 저들이 만약 연향(宴享)하는 날 다시 언급한다면,

처음에는 굳게 고집하다가 마지막에 허락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오며, 관사(館舍)를 정하게 짓는 일을 또한 아울러 청한다 하는데, 이렇게 물력(物力)이 고갈되어 있는 시기에 기회에 따라 방색할 것이며, 담장은 이미 물려 쌓아 그들의 욕구를 맞춰줄 일이 없으니, 부산성에 관을 옮기는 일을 다시 언급하더라도 이미 너희 말을 따라 담장을 물려 쌓았는데 관을 옮기는 일을 왜 또 말하느냐고 하면 저들이 아마 답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신의 그릇된 의견이 이러하오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확정하여 지휘하시기를.

약재를 매매하는 일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얻기 어려운 약종이 아니고, 천근 오백 근의 수량이 비록 갑자기 마련하기 어렵지만, 삼남지방과 강원도 등지에서 산출되는 대로 모으면 300근의 수량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한 약재로 저들에게 요즘 모자라는 당재(唐材)와 교환한다면 이익이 없지 아니하거니와, 등차(藤差)가 이전부터 돌아갈 것을 재촉할 뿐 아니라 전후로 나온 배를 도주가 이렇게 재촉하는데, 왜인의 성품이 조급한데다가 저들의 법 또한 엄하니, 그가 걱정하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실로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회답할 일을 만약 다시금 지체한다면 노여움을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아 실로 염려되오니 해조에 명하시어 속히 확정하여 처치하라 하되,

환모응(換毛鷹)은 갑자기 찾기가 어렵고, 꾀꼬리〔黃鸝〕도 제 철의 물건이 아니니, 이는 편의대로 응답하면 될 것이며, 그 또한 다시 그다지 심하게 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 노루는 순찰사 신 구봉서(具鳳瑞)가 이미 4마리를 얻어 들여보냈고, 암수를 구비하지 못한 것도 지금 바야흐로 본도에서 숫컷을 찾고 있어서 혹 찾아 줄 수 있을 듯하며, 준마도 이미 한 필을 지급하였는데, 에도의 소용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미 색책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혹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혹 저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오고가며 고생만 하고 말 것이니, 아직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편할 듯함.

등왜(藤倭)가 상을 바라는 뜻을 말과 안색에 드러내고 귤왜(橘倭)의 일까지 거론하여 하고싶지 않다는 말을 억지로 하며 곁에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말을 내게 하는바, 만약 수고에 보답하는 은전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낙심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시어 참작 상의하여 처치하게 함이 어떠하올지. 망녕된 생각으로 계품(啓稟)함. 신은 11일 접견하면서 무릇 다툴만한 일을 면전에서 말하여 변정한 뒤에 다시금 상세히 치계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부산성에 관을 옮기는 것은 들어주기 어렵다는 일 및 언삼·언만 등의 송사선에 대한 일은 이치에 근거하여 쟁변할 수 있으려니와, 담장을 물려 쌓는 일은 방색할 필요가 없

고, 앞서 강대수(姜大遂)의 장계를 보니 길이 높은 곳을 파낸다는 등의 말이 있었는데, 본도 감사와 동래부사가 상의하여 편리한 대로 잘 처리할 것이며, 관사(館舍)에 만약 무너진 곳이 있으면 편한 대로 고치는 것은 그만 둘 수 없는 일인 듯함. 등왜가 상을 바라는 마음을 누누히 발설하고 심지어는 귤왜를 전례로 거론하는데, 전일의 직첩은 내어줄 수 없고 약간의 공무역만 허락하라는 뜻으로 이미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오며, 약재는 피차간에 서로 바꾸는 것이 굳이 불가할 게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본디 약을 파는 상인이 없어 약재의 귀천을 막론하고 한 종류에 천 근이나 오백 근이나 되는 많은 양을 장만하여 부응할 길이 만무한데, 한번에 그칠 일이 아니고 해마다 항상 행할 사례라면 근수를 감한다면 혹 힘을 들여 주선해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조에 명하여 홍희남 수본에 의거하여 글을 지어 보냄이 마땅할 것임. 그 나머지 일은 한결같이 장계대로 편의에 따라 응답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11월 17일 우승지 신 김세렴(金世濂)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그 중 약재의 물량을 감하는 한 가지 일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니 결코 많게 얻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회답하라고 하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각종의 약재가 비록 천하다고는 하나 약 한 종류에 천근 백 근의 수효는 결코 마련하기 어렵기로, 본조에서 앞서 26종의 무역 요청을 참작 상의하여 우리로서 어렵고 쉬운 형편에 따라 각종의 약재를 합하여 400여근의 수량을 마련하여, 명년을 시작으로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이미 확정하여 계하하였는데, 이제 하교를 받들어 양감(量減)하는 한 가지 일은 타당하지 않은 듯하니, 결코 많게 얻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회답하라고 하신 하교를 받으니 지극히 합당한지라, 이 말씀의 뜻으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답서를 지어 내려보냄이 어떠할 지. 숭덕 5년 11월 20일 동부승지 신 신민일(申敏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진(1640) 12월 14일

경상감사 구봉서의 장계. 방금 드린 이달 초5일 성첩(成貼)된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 내용임. 방금 등차(藤差)가 글을 보내어 초치하거늘 훈도와 더불어 가 보았더니 말하기를, '어제 나온 만쇼오잉〔萬松院〕의 걸음에 속히 들어오라고 도주께서 명령하셨기로 수일 내에 발선(發船)할 계획인데, 다만 관에 머무른 넉 달 동안 한가지 일도 결말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니 저는 매우 면목이

없고, 도주도 상관하지 않고 접대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차마 듣지 못할 말을 무수히 발설하거늘,

답하기를 '우리로서는 조금도 박대한 일이 없다. 언만(彦滿)의 일은 극히 무리지만, 언삼(彦三)을 없앤다면 형세가 할 수 있다. 너의 상전(賞典)에 대한 일은 조정에서 특별히 귤지정(橘智正)의 사례보다 절반으로 하여 공무역(公貿易)을 허락하여 회답이 내도하였고, 구청하는 물자도 아울러 허락하였는데, 그 중 길이 먼 각관에서 미처 운반해 오지 못한 약재는 얻는 대로 무역을 허락할 것이나, 천근이나 되는 수량은 결코 부응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조의 서계(書契)가 내려왔다. 그밖에 무슨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는가? 삼가 이런 무리한 말은 발설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언만의 일은 지금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가 막급할 것이고, 상전(賞典)은 고맙기는 고마우나, 제가 여러 해 동안 왕래하면서 귀국을 위한 정성이 귤왜(橘倭)보다 배로 더하였는데도, 도리어 귤왜의 절반으로 하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대여섯 동(同)의 포목은 그냥 주어도 괜찮을 것이다. 제가 귀국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당초에 바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으려고 하였는데, 다만 짐승을 보듯 매우 박하게 대우하니 죽고 싶어도 죽을 곳이 없다. 다음 다음 날에 배를 탈 계획이다'하거늘,

답하기를 '큰 일을 이룰 자가 이렇게 경망한가? 언만은 결코 하기 어렵고, 너에 대한 상은 지금 바야흐로 오고가며 확정하지 못하였으니, 아직 관에 머물렀다가 온전히 확정된 다음에 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말하기를 '만사가 말만해서는 무익한데 하물며 나의 상격은 비록 만금을 준다 해도 도무지 관계없고, 우리 주인의 명령대로 속히 들어가는 것이 옳겠다'고 하며 노하여 돌아가기를 재촉하는 바,

이런 지경에 이르니 다른 좋은 계책이 없고 제 하는 대로 맡겨두되, 객을 대접하는 도리로는 매몰차게 들어보낼 수가 없어서 타일러 만류하였거니와, 그 말과 안색을 살펴보니 연향을 받지 않고 들어갈 모양이 안색에 드러나 있었음. 이는 불과 몇 가지 따라주기 어려운 청을 일시에 제기하였다가 모두 청을 이루지 못하여 무료하게 된 데서 이렇게 노한 것이거니와, 언만 한 조목은 우리에게도 할 말이 있고 저들에게는 잘못이 있으니 비록 말꼬리를 잡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상을 귤왜보다 감등한 데 불만한 뜻이 많아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며 돌아간다고 재촉이 날로 심한 것이기에 부득이 접위관(接慰官)[246]이 수일 내로 상선연(上船宴)을 베풀겠다고 청하였으며, 형편을 보아 타일러 들여보

246) 접위관(接慰官) : 일본에서 외교상 중대한 일로 관직이 높은 대차왜(大差倭)가 나올 경우 이를 접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관원을 파견하고, 그 외의 외교상 문제로 차왜(差倭)가 나올 경우에는 인근 고을 수령이 대신하였다.

낸 뒤에 수본을 올린 계획이온 바 수본을 올린다 하였음.

등차(藤差)가 온 후로 무릇 관(館)의 곡식 등에 대한 일을 별도로 신칙하여 넉넉하고 후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요구하는 물건이 있으면 해조에 번거롭게 아니하고 본도에서 힘있는 대로 갖추어 주었으나, 약재만 하여도 신의 감영에서 보낸 것이 또한 250근이나 너머 되었는데, 들어갈 임시에 먼저 공갈하는 말을 발하였다 하는 바, 그 뜻을 살펴보면 바라는 것이 오로지 언만 송사선에 있는데, 대개 도주가 지금까지 언만 송사선을 그대로 둔 것도 이미 무리라 할 것인데, 이것도 부족하여 감히 송사선을 더할 계교를 내었으니, 여러번 타일러도 끝내 듣지 않고, 부산성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겸하여 발하였으니, 이후로는 반드시 더욱더 온 도의 물력을 고갈시키더라도 일일이 부응할 수가 없는 형편임. 이들 무리가 종전에는 왕래하면서 비록 이욕에 대한 말은 있어도 모진 말을 드러내어 발설하지는 않았는데, 국사가 이런 지경에 이른 뒤에는 저들 또한 우리를 가볍게 보는 마음이 있어서 매양 만상(灣上)의 객사(客使)가 여기 올 즈음에는 예사로 한층 더 기를 내니 더욱더 해괴하고 분합니다.

등왜의 공무역을 귤왜의 사례에 준하여 허락한다고 이미 계하하셨기로 지난날 진작 분부하셨으며, 연향을 받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로 나라의 체면을 손상함이 있었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여러가지로 잘 타일러 매몰찬 행동이 없도록 하였음.

그가 구한 바 약재는 비록 일일이 숫자대로 맞추기는 어렵지만, 저들이 관백(關白)이 요구하는 것이라 말을 하였으니 계속하여 들여보냄이 마땅할 것이고, 그 약재들을 살펴보면 모두 희귀한 약종은 아니어서 황해·충청·전라 등의 도에서 더 얻어서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조처하시기를 장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언만 송사선 및 등왜(藤倭)의 공무역 조정에 대한 일은 비국에서 이미 회계하였는데, 다만 오늘의 사세를 생각하면 끝까지 방색하기는 어렵고, 자그마한 비용이 드는 청을 한결같이 끊어버릴 수가 없을 듯한데, 이제 동래부사가 형세를 살펴 짐작하여 품처(稟處)하였듯이, 약재의 구청은 피차간에 양편이 이로운 일인데 다만 우리나라 향약 약재는 비록 도처에 있지마는 관에서 저축해 두지 않고, 민간에서도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여, 이제 비록 준다고 허락하였으나 그들이 청하는 바 천 근 백 근의 수량은 일시에 부응하게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에 채취한 뒤 계속하여 지급함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하여금 타이르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또한 이런 뜻을 각도에 알려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다수를 채취하여 연속으로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5년(1640) 12월 14일 우승

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비국(備局)의 확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약재는 다시 분정을 마련하여 해가 바뀐 뒤에 수송하라 하심.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등왜(藤倭)가 구청하는 약재는 전일에 각종 400여 근을 봄에 채집하여 달라고 하여 이미 계하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이제 다시 마련하여 분정하라는 전교를 받았기에 계목 가운데 1,000여 근을 더 마련하는 수량을 표를 고쳐 들이라는 뜻으로 감히 입계하나이다" 하였더니,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고 하심.

신사(1641) 정월 초4일

경상감사 구봉서(具鳳瑞)의 장계. 이제 지금 경진(庚辰)조의 도서(圖書)를 받은 만쇼오잉〔萬松院〕 송사선의 정관 이하 사람들에 대한 하선연(下船宴)을 베푸는 일로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가 올린 장계**에 있는 내용임. 정관이 말하기를 '『전등신화(剪燈新話)』[247] 2질, 『소동파시집(蘇東坡詩集)』 1질, 『사서장도(四書章圖)』 1질, 『양성재집(楊誠齋集)』 1질. 이는 모두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재삼 간청하는 바, 이는 따르기 어려운 청이 아니어서 멱급(覓給)하여도 무방한데, 상항의 서책 등의 판본이 모두 본도에 있지 않으므로 얻어서 부응하기가 어려운 형편임. 『전등신화』는 마침 도내의 사찰에서 바야흐로 새로 간행한 곳이 있다고 듣고 지금 막 종이를 보내어 찍어 오라 하고 조정에서 허급(許給)한다는 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도(地圖)는 가져간 지 오래 되지 않았는데 파손되었다고 칭탁하며 또 한 질을 구하는 바, 살펴보건대 그 정성이 정직하지 못한 듯할 뿐 아니라 해마다 찾아 보낼 수는 없겠기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 대개 만쇼오잉 일행은 돌아가기를 매우 간절히 요구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면 하루의 폐단을 더는 것인지라, 요구하는 바 서책 및 회답 서계(書契)를 해조에 명하여 급급하게 확정하여 내려보내 주시라는 일임.

그리고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내용임. 이달 26일 경진조의 도서를 받은 만쇼오잉 송사선 정관 1인, 도선주(都船主) 1인, 진상압물 1인, 반종 3명이 전례대로 진상하고 숙배한 뒤에 하선연을 베풀었는데,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정월 내로 에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받은 공무를 신속히 마감하여 들여 보내주시면 원래 기한 이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신속하게

247)『전등신화(剪燈新話)』 : 명나라 문인 구우(瞿佑)가 지은 중국 고대 문어체의 전기소설집(傳奇小說集).

주선하여 미치지 못할 걱정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도주가 『전등신화』 2질, 『소동파시집』 1질, 『사서장도』 1질, 『양성재집』 1질을 얻어서 에도에 사용하려고 하며, 귀국의 지도(地圖)는 전일에 가져간 것이 이미 해가 오래되어 파손되었으니, 새것 한질을 다시 멱급해 주시기를 또한 간청한다' 하였음. 지도에 대한 일은 전일에 등지승(藤智繩)이 또한 간청하였으며 또한 이르기를 '일본지도 또한 정밀하게 베껴 내어보내겠다'고 하였사온데, 신 등이 미처 치계(馳啓)하지 못하였는 바, 만쇼오잉이 또 언급하였기로 아울러 이렇게 계품하오니, 해조에 명하시어 상의하여 처치하며, 부특송선(副特送船) 및 만쇼오잉 일행은 모두 원래 기한 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도주가 정월 안에 에도에 간다는 설이 적실한 듯하고, 지급해야 할 예물 및 회답 서계를 진작 내려 보내주시면, 무릇 폐단을 더는 일이 또한 적지 아니하겠으니,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되도록 속히 조처할 일로 장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왜인의 서책은 이전부터 부응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구하는 『양성재집』과 『사서장도』는 서울의 서관(書館)에도 이미 그런 책이 없고, 영남 서원(書院)에 혹 있을 듯하지만 또한 단본(單本)을 다른 나라에 줄 수는 없으며, 『동파집』은 민간에 많이 있으니 호조에 명하여 속히 매입하여 『전등신화』와 함께 지급함이 마땅하고, 지도의 요청은 전에 이미 방색하였는데 이 뜻을 아울러 행이(行移)하며, 만쇼오잉 회답 서계 및 지급할 예물 또한 각 해당 관서에 명하여 속히 거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숭덕 6년(1641) 정월 초5일 좌부승지 신 김육(金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사(1641) 8월 13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역관 최의길(崔義吉)과 이호(李豪) 등의 수본 내용.** 관수(館守) 평지연(平智連)이 말하기를 '나온 배를 도주(島主)가 글을 보내면서 이르기를 대군(大君)에게 전년에 구청한 암노루를 이미 구청하여 얻어 들여보냈고, 이제 또 살아 있는 숫노루 두 마리와 살아 있는 수리〔生鵰〕 한 틀과 서책 5부, 약재 31종을 구청하는데, 매년 그냥 얻기는 불가하니 금년에는 동래 영감 앞에 간청하여 값을 주고 무역하되, 약재 31종 중 향재(鄕材)가 아니면 제거하고 그 나머지 향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혹 종자로 혹은 살아 있는 뿌리에 흙을 붙여서 산채로 심어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기로, 부득이 진달하며, 도중에서 열록(列錄)하여 내어 보냈거늘 동 별지(別紙)를 받아 바친다'고 하였음.

별지는 해조로 올려보내고, 동 약재 종자를 다음으로 구청하였기로, 종자로나 뿌리로나 많이 보낼 필요는 없고, 향재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산출되는 곳에 분정하여 들여보냄이 어떠하올지. 살아 있는 노루와 산 수리〔生鵰〕는 별지에 기록되지 않고 관수(館守)가 구전(口傳)으로 말한 것이라 하기로, 본도 순찰사에게도 낱낱이 보고하였으며, 한편으로 치계하는 일 및 별록(別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렇게 요구하는 바의 물건을 일일이 따라 허락해 주는 것은 불가한 듯하나, 이미 관백(關伯)이 구하는 것이라 하니, 따라줄 만한 물건이면 해당 관서 및 산출되는 각도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도록 **후록(後錄)**하며, 그 중에서도 따라줄 수 없는 물건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따라줄 수 없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타이르도록 행이함이 어떠할지.

『대명령(大明令)』 1건
『이문집람(吏文輯覽)』 1건
『석문(釋文)』 1건 이상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고 찾아 줌〔給價覓給〕
산 숫노루〔生雄獐〕 2마리
오미자(五味子) 종자 3근
결명자(決明子)[248] 종자 1근
속단(續斷)[249] 산 뿌리〔生根〕 15본
사삼(沙蔘) 산 뿌리 20본
대계(大薊)[250]와 소계(小薊)[251] 산 뿌리 15본
백두옹(白頭翁) 산 뿌리 15본
관중(毌衆)[252] 산 뿌리 15본
창이(蒼耳)[253] 종자 3근
고본(藁本) 산 뿌리 15본 이상 종(從) 본도
보골지(補骨脂)[254] 산 뿌리 15본

248) 결명자(決明子) : 콩과의 일년초 결명차의 열매.
249) 속단(續斷) : 꿀풀과의 다년초 속단의 뿌리와 줄기. 청열(淸熱) 소종(消腫)의 약재로 사용한다.
250) 대계(大薊) : 국화과의 다년초 엉겅퀴의 지상부와 뿌리. 양혈(凉血)과 지혈(止血), 소종(消腫)의 약재로 사용한다.
251) 소계(小薊)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조맹이의 지상부. 양혈(凉血) 지혈(止血)과 해독(解毒) 소옹(消癰)의 약재로 사용한다.
252) 관중(毌衆) : 곧 관중(貫衆)이니 면마과(綿麻科)의 여러해살이풀 관중의 뿌리줄기. 살충(殺蟲)과 해독(解毒), 지혈(止血)의 효능이 있다.
253) 창이(蒼耳) : 국화과의 일년초 도꼬마리의 열매. 풍습(風濕)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이다.
254) 보골지(補骨脂) : 콩과의 일년초 보골지의 성숙한 열매. 보신장양(補腎壯陽)의 약재로 사용한다.

방기(防己)[255] 산 뿌리 10본
하수오(何首烏) 산 뿌리 20본 이상 종 강원도
천마(天麻) 산 뿌리 20근
위령선(葳靈仙)[256] 산 뿌리 50본
백선피(白蘚皮)[257] 산 뿌리 15본
승마(升麻)[258] 산 뿌리 15본 이상 종 전라도
누로(漏蘆)[259] 산 뿌리 15본
백미(白薇)[260] 산 뿌리 15본 이상 종 황해도
진교(秦艽)[261] 산 뿌리 20본
전호(前胡) 산 뿌리 20본
상산(常山)[262] 산 뿌리 15본
여로(藜蘆) 산 뿌리 15본
상륙(商陸)[263] 산 뿌리 15본 이상 종 충청도

『율조소의직인석의(律條疏議直引釋義)』

산 수리〔生鵰〕, 단삼(丹蔘)[264], 청호(青蒿)[265], 황약자(黃藥子), 유기노초(劉寄奴草)[266] 100부, 희렴(豨薟)[267], 호황연(胡黃連), 운대자(芸薹子) 이상 부종(不從)

숭덕 6년(1641) 8월 13일 우부승지 신 이성신(李省身)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다만 생근(生根)의 수효가 혹 과다한 듯하니 다시 참작하여 기한을 정하여 운반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하심.

---

255) 방기(防己) : 새모래덩굴과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 방기 또는 분방기의 뿌리. 풍습(風濕)을 제거하는 약재로 사용한다.
256) 위령선(葳靈仙) :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초 으아리의 뿌리. 풍습을 제거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재로 사용한다.
257) 백선피(白蘚皮) : 운향과의 다년초 백선의 뿌리. 습열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약효가 있다.
258) 승마(升麻) :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초 승마의 뿌리. 열독과 두통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한다.
259) 누로(漏蘆) : 국화과의 다년초 절굿대나 뻐꾹채의 뿌리. 열독(熱毒)을 해소시키는 약효가 있다.
260) 백미(白薇) : 박주가리과의 다년초 백미꽃의 뿌리. 발열을 해소하고 해독하는 약효가 있다.
261) 진교(秦艽) : 용담과의 다년초 진교의 뿌리. 풍습을 제거하여 관절통에 사용하는 약재이다.
262) 상산(常山) : 운향과의 낙엽관목 상산의 뿌리.
263) 상륙(商陸) : 자리공과의 다년초 자리공, 섬자리공의 뿌리. 이뇨(利尿)와 소종(消腫)의 약효가 있다.
264) 단삼(丹蔘) : 꿀풀과의 다년초 단삼의 뿌리.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고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약효가 있다 한다.
265) 청호(青蒿) : 국화과의 일년초 개똥쑥, 또는 제비쑥의 지상부. 허열(虛熱)을 물리치고 학질을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한다.
266) 유기노초(劉寄奴草) : 현삼과의 다년초 절국대의 지상부. 파혈통경(破血通經)과 소종(消腫)의 약재로 사용한다.
267) 희렴(豨薟) : 국화과의 일년초 진득찰, 털진득찰의 지상부.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판하(判下)하심. 먼곳 사람들에게 주는 물건을 박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구청 중에서 어려운 약재가 아니면 넉넉하게 마련하라고 하신 주상의 말씀이 지극히 합당하니, 참작하여 수량을 감하고 부표를 고치니, 이렇게 알림이 어떠할지. 숭덕 6년 8월 14일 우부승지 신 이성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사(1641) 9월 20일

동래부사의 장계. 어제 나온 왜선 3척이 서평포(西平浦)[268] 앞바다에 표류하였는데, 부산첨사 정해(鄭楷)가 사정을 물어 치통(馳通)하기를 기다려 즉시 치계(馳啓)하겠다는 연유는 이미 장계로 올렸음. 이달 11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정해의 치통 내용.** 당일 진시(辰時) 쯤에 훈도 최의길(崔義吉)과 별차 이호(李豪) 등이 동 왜선이 있는 곳에 가서 사정을 물어보고 돌아와 하는 말이. "지금 온 세 척의 배는 곧 신사(辛巳)조 부특송선(副特送船)인데 제1척은 정관 귤성경(橘成慶), 부관 귤성공(橘成供), 도선주 평성진(平成眞), 시봉 2인, 반종 3명,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이선주(二船主) 평성차(平成次), 진상압물 1인, 사복(私卜)[269] 압물(押物)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이며, 제3척은 수목선(水木船)으로 선주 1인, 반종 1명, 격왜 20명 등이며, 예조로 보내는 서계를 지니고 나왔는데, 동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 하였으며, 도주와 에도의 사정을 물었더니 답으로 하는 말이 이전과 꼭 같은데, 다만 도주는 8월 22일에 딸의 혼인을 정했는데 아마 이미 행례하였을 것이며, 대군은 본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는데 지난 8월 초2일에 사내아이를 낳아서 온 나라의 막대한 경사인지라 여러 장수들이 치하하기 위해 모조리 에도로 올라갔다 함. 또한 전일 평지연(平智連)에게 글을 써서 보낸 숫노루〔雄獐〕, 산 수리〔生鵰〕, 서책, 약재 중에서 혹 산채로 심거나 혹 종자로 하거나 무역을 요구하여 또한 급속히 찾아 보내는 일을 저희들에게 간절히 고하였다"고 하며 돌아와 말하기로 연유를 치통하며, 해가 뜬 뒤에 바람이 잔잔하기로 초탐장(哨探將) 개운포(開雲浦)[270] 만호(萬戶) 이경화(李景化)가 거느리고 이미 수책(水柵) 안에 정박하였고, 상항의 서계 별폭은 전례대로 다례를 베푸는 날 받아 올릴 계획임.

산 숫노루〔生雄獐〕, 약재 등의 물건은 전에 신(臣)의 장계로 말미암아 이미 각도에 분정하였다는데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거니와, 전일 장계를 올릴 때는

---

268) 서평포(西平浦) : 현재 사하구 구평동이다. 여기에 서평포 만호영이 있었다.
269) 사복(私卜) : 사사로운 짐.
270) 개운포(開雲浦) : 현재 동구 좌천동이며, 수군만호영이 있었다.

풀 열매가 성숙하는 절기로는 아직 이르기에, 혹 뿌리로나 혹 종자 중에 들여보내어 구청에 응하라고 치계하였는데, 지금은 온갖 풀들이 이미 열매를 맺었으니, 먼 곳에서 뿌리를 캐어 운반하려면 인력이 많이 허비되어 극히 무겁고 어렵기로, 구청한 각종을 모두 종자만 봉지로 싸서 보내주면, 사내 한 사람의 힘으로도 모두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니, 해조에 명하여 상세히 헤아려 처치하시되,

이는 관백(關白)이 요구하는 것이라 하는바, 어렵지 않은 물건을 진작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은 또한 미안하기로 10월 내로 남김없이 들여보내어 봄이 되어 심어서 종자를 취할 수 있게 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램에 부응하도록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산 숫노루는 전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이미 본도에서 제급(題給)하게 하였으며, 각종 약재는 혹 생근으로 혹 종자로 참작하여 마련하도록 전에 이미 각도에 분정하였으니 아마도 10월 초 이내에 반드시 운반하여 들이라는 일로 다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숭덕 6년(1641) 9월 20일 동부승지 신 홍무적(洪茂績)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또한 장계의 말이 심히 가볍고 편리하니 모두 종자로 내려보내어 운반하는 폐를 덜도록 하라 하심.

예조의 계목.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관백이 구하는 서책 5건 중 『이문집람(吏文輯覽)』[271] 이외에 기타 『석문(釋文)』 등 4건은 해당 관서에 본디 없으므로 명백하게 해명하여 치보하라는 일로 이문하였는데,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내용에 이 뜻을 가지고 훈도(訓導)에게 명하여 관왜(館倭)에게 상세히 물어보라 하였더니,

평지연(平智連)이 말하기를 '서책 중에 본디 없는 것은 어찌할 수 없고, 있는 것 한 두 책이라도 들어 보내 주시며, 산 수리〔生鵰〕 및 약재 31종은 혹 산채로 심거나 혹은 종자로 속히 들여 보내주며, 금년 가을에 채취하는 약재 500여 근의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기에 첩정한다 하였음.

당초 따라준다고 한 서책 3건 중에 단지 『이문집람』만 있고, 그 밖에 서책은 해조에서 끝내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하니 허락해 주기 어려운 듯하며, 산 수리는 저들이 청하면서 이르기를 본도에 명하여 제급하여 달라 하였고, 요구하는 가을 채취의 향약 약재 500여 근은 약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근수만 대충 말하였기에 다른 도에 분정하기가 어려운 듯하기로, 훈도에게 명하여 그 약명을 물어서 본도에서 간략하게 무역을 허락함이 편할 듯하오니, 이런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숭덕 6년(1641) 9월 20일. 동부승지 홍무적 차지로

271) 『이문집람(吏文輯覽)』 :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集覽)의 약칭이니, 중종 때 최세진(崔世珍)이 이문(吏文)을 해석한 책.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상감사의 장계. 부특송선 귤성경(橘成慶) 등에게 사정을 물어본 사연은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에 상세하게 있음. 이른바 대군(大君)이 새로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설과, 각 주의 제장(諸將)들이 치하한다는 말을 함부로 초두에 발설하여 과시하는 것은 장래에 희망이 있을 듯할 적에 계교로 하는 법인데, 이번에는 전례에 따라 오고가는 배에 불과한데도 이런 말이 있었으나, 도주로부터 통고가 없으니, 국가로서는 먼저 듣고 알았다는 기색을 보일 수는 없음.

약재를 산채로 심은 것을 초목이 열매를 맺은 뒤 추운 겨울이 다가올 즈음에 요구하는 것은 피차간에 무익한 일로 결단코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지, 저들이 구하는 약재를 산채로 심는 약종 중에서 혹 동래 근처에 있는 것을 근래에 간간이 채취하여 보여주면, 저들이 보고 모두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지극히 흔한 풀이라 하여 가지고 가려하지 않는 바, 저들 나라에서는 본래 약리(藥理)를 잘 모르기로 그 풀이 무슨 약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이렇게 산채로 심은 것을 구하는 일이 있는 것이므로, 마른 종자로 계급(計給)한다는 뜻을 동래부사에게 알려, 역관들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타이르게 하시기를.

대개 먼 곳의 사람이 구하는 물건은 만약 품질이 정하지 아니하면 묻어두어야 할 듯한데, 본도의 오미자(五味子) 한 가지는 더욱 형편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너댓 근을 가려 보내어 속히 들여줄 수 있도록 할 것.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전에 관백이 새로 사내아이를 낳았다는 설은 오가는 배에서 비록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먼저 듣고 알았다는 기색을 보이는 것은 부당한 듯하고, 약재 중에 오미자는 영남에서도 산출되므로 본도에 분정하였는데, 본도 소산이 더욱 형편없다고 하므로 해당 관서에 명하여 좋은 품질로 극진히 골라서 오미자 5근을 급급하게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숭덕 6년(1641) 9월 20일 동부승지 신 홍무적의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오(1642) 2월 21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내용. 어제 신 등이 왜관에 가서 평차(平差)와 상견하고 다례를 파한 뒤에, 평차가 원하기를 가까이 평좌(平坐)하여 조용히 고할 일이 있다고 하거늘, 신 등이 그 말대로 자리를 마련하여 평좌하였더니,

평차왜(平差倭)가 말하기를 '대군(大君)이 새로 아들을 얻었는데 나라 안에 막대한 경사이기로 각주의 제장(諸將)들이 모조리 모여서 축하하였는데, 한 집정(執政)이 도주(島主)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일역(日域)의 큰 경사인데 조선에서 들으면 또한 반드시 기뻐하여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여러 장관들이 소리를 같이하여 호응하면서 이 말이 참으로 옳으니 도주로 하여금 통지하게 하자고 하거늘, 도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즉시 저희들을 불러 내보내기에, 저희들은 에도에서 즉시 나왔는데, 다만 집정 및 여러 장관들이 도중(島中)에서 사신을 청한 일을 알면, 조선에는 전혀 광채가 없을 것이니, 회답하는 서계(書契)에는 다만 대군이 만년에 약군(若君)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귀국의 막대한 경사인지라 이웃나라끼리 잘 지내자는 의리로 사신을 보내어 치하하려 하니 일자의 늦고 빠름은 도중에서 헤아려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라'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대군에게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두었으니 조선에서 듣고는 반드시 기뻐할 일이지만, 다만 관백(關白)이 아들을 낳아도 일찌기 사신을 보내어 치하한 때가 없지만, 너희들이 말한 것을 마땅히 장계로 올리리라' 하였더니,

평차가 또 말하기를 '닛꼬오산〔日光山〕에다 대권현(大權現)을 위하여 새로 석실(石室)을 극히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이른바 대권현은 곧 이에야쓰〔家康〕의 사후 칭호이다. 지난 해 8월에 여러 고을의 장관(將官)이 일시에 모여서 크게 낙성을 베푸는 날,

남기방(南耆坊)이라고 하는 어떤 노승(老僧)이 나이 이제 120세인데 대군에게 말하기를, 대군이 크게 덕정(德政)을 닦아 지성으로 선조를 모시며 이렇게 전에 없던 사당(社堂)을 건립하여 후세에 남기려고 하는데, 조선은 이에야쓰〔家康〕와 매우 돈독하게 화친하였고, 또 문학으로 천하에 이름을 떨치는데, 만약 이 기특한 일을 들으면 반드시 글을 보내고 물건을 보내어 기뻐하는 뜻을 표할 것이니, 사당을 위하여 자취를 남기는 일로는 대장경(大藏經)을 구득하여 후세에 전하여 없어지지 아니할 보물로 하고, 만약 이를 얻지 못하면 치는 종을 비록 동철(銅鐵)과 납철(鑞鐵)을 보내어서라도 조선의 공장(工匠)이 만들어 달라고 하라 하였는데,

대군이 그 말이 지극히 옳다고 하여 도주로 하여금 간청하여 대장경(大藏經)을 구해 달라고 하여 반드시 구하여 오라 하였다'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이 경(經)은 임진란 이전에는 혹 큰 사찰에 판목(板木)이 있었으나 난중에 산실된 뒤로는 다시는 있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찾을 것이냐?'고 하였더니, 재삼 간청하였지만 시종 답을 하지 아니하였더니,

평차가 말하기를 '이것을 만약 얻지 못한다면 치는 종을 반드시 만들어 주고, 향로와 화병과 촛대 등도 모두 만들어 달라' 하면서 각종 겨냥을 꺼내어 보여주

는데, 그 형체가 자못 크고 향로를 만든 품이 가장 기교를 부렸거늘,

신 등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원래 구리가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서 공장(工匠) 등이 겨우 일상 용기만 만들 뿐 이렇게 큰 물건이나 기묘한 물건은 결코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구리나 납은 도중에서 수량 대로 들여갈 터이고, 장인(匠人)의 졸작이라면 더욱 더 좋다. 다만 귀국에서 만든 것을 얻어서 후세에 전할 보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이런 일 또한 필시 이루기 어려우나, 마땅히 계품하겠다'고 하였더니,

평차가 또 말하기를, '조선에서 일본을 대접함에 정성과 신의가 지극한데 원컨대 칙필(勅筆)을 얻어 사당(社堂)을 장식하여 만세에 영광을 빛낼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하거늘,

신 등이 묻기를 '이른바 칙필이란 아름다운 글씨를 말하느냐?' 하였더니,

답하기를 '닛꼬오산〔日光山〕의 형세와 풍경은 전일 사신이 들어갔을 때 모두 목도한 것으로, 어제(御製) 시문(詩文)과 여러 신하들의 화운(和韻) 수 편을 얻어서 사당 가운데의 보물로 삼고자 한다'고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예의의 나라로서 인군(人君)은 성학(聖學)으로 교화할 따름이고, 사장(詞章)은 곧 문인(文人) 재자(才子)들이 음풍영월(吟風詠月)하는 일인지라, 이것은 다만 청원을 얻을 리도 만무할 뿐 아니라, 신하로서 또한 감히 계달(啓達)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답하기를 '비록 나라 안에서는 음영(吟詠)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웃나라의 우호를 위하여 지어보내는 것이야 무슨 상관이냐? 두 영감께서 일본이 귀국을 가볍게 보고 모욕한다고 하여 이 청을 이렇게까지 굳이 거절하는 것이 아닌지? 다만 조선과 영원히 우호를 맺고 양국의 안녕을 위한 계책인데, 이것을 만약 안된다면 종전의 화친하는 뜻도 모조리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반드시 진달하여 기어코 꼭 이루도록 하자' 하거늘,

엄한 말로 물리쳐 끊기를 재삼 하였더니, 자못 언짢은 기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고, 또 두 개의 봉서(封書)를 내어서 역관에게 내어주거늘, 즉시 뜯어보니, 모두 그 나라의 해서(諧書)[272]인데 그 중 하나는 예조에서 회답하는 서계에 넣을 말을 적은 것이고, 또 그 하나는 닛꼬오산에서 구하는 각종의 물건과 통신사(通信使) 등의 일이었음.

예조 서계 및 동래로 보내는 서계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는데, 역관 등에게 준 서계에는 위의 조목들을 간략하게 청하는 바가 있기에, 동 서계 3통과 예조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별폭 3통, 언서(諺書) 2통은 아울러 해조로 올려보냄.

272) 언서(諺書) : 일본 문자를 가리키는 듯.

대개 대군의 아들 낳은 일에 치하하는 일 및 닛꼬오산을 칭송하는 등의 일에, 그들이 자청(自請)하였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소식을 듣고 보낸 것처럼 하려고, 좁은 자리에 평좌하여 그의 좌우를 모조리 물리치고 또한 비밀스레 말한 것임. 또한 다른 이야기가 있거늘 별지에 써서 기록하여 이장생(李長生)이 받아 갔음. 통신사의 일에 대한 회답 서계 및 닛꼬오산의 일에 대한 별도의 서계는 그들이 친히 받아가겠다고 하였고, 역관에게 보낸 서계와 언서(諺書) 중에 기록된 바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청을 들어주더라도 신 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무방할 듯하며, 그 나머지 각 건의 일에 대하여는 장계 안에는 소루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이장생이 장계를 가지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올려 보낼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세히 하문하여 속히 참작하여 처치하시기를. 또 끝에 가서는 작은 종이를 내어 보이는데 무역을 요구하는 약간의 물건이기로, 역시 동봉하여 해조에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평차(平差)가 말한 일은 전에 온 장계와 다름이 없고, 서계 가운데 별로 구청하는 말은 없으니, 이는 필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을 얻으려는 뜻인지라, 지금 회답 가운데 마땅히 귀국의 큰 경사에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에 소홀히 볼 수 없어서 장차 하례를 보내려고 하며, 또한 대군이 선조를 받들어 효성을 다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정을 표하는 물건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가부를 모르겠다는 뜻으로 말을 넣어 얽어 보내는 것이 마땅함.

구청한 물건으로는 불경(佛經)을 인쇄하여 보내는 것이 종을 주조하는 일 보다 쉬울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편한 대로 수백 권을 인출하여 보내고, 향로와 촛대 화병 등의 물건도 또한 주조하여 주고, 어제시문(御製詩文)은 전에 감히 논의하지 못한다고 복계(覆啓)하였는데, 이 장계를 보니 저들이 구하는 바로 이것이 가장 간절하니, 약간을 사신(詞臣)에게 짓게 하여 내어 줌이 무방할 듯하며, 혹자는 어제시문(御製詩文)을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하나, 어필(御筆)의 편액 몇 자와 조정 신하가 지은 것을 함께 들여보내면, 저들도 필시 감동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하니 주상(主上)께서 어떻게 조정하실지.

우승지 신 한흥일(韓興一)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그대로 윤허하되, 수백권 경서는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기 어려운 듯한데, 접위관이 말한 바대로 시행하고, 또한 요구하는 시문은 승려의 시축(詩軸)인 듯 한데, 부득이하다면 시축 머리에 넉자를 써서 주면 가할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경서는 접위관 등

이 이미 난을 거친 뒤로 산실되었다고 말을 하였으니 이제 비록 인출하여 주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하나, 저들이 바라는 바가 종보다 중한듯 하니, 이제 만약 수백 권을 인출하여 주면서 산질(散帙)된 나머지 이 책만 있다고 타이르면 족히 저들의 바람을 막으면서 따로 대단한 비용이 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종은 접위관의 문답으로 살펴본다면 또한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그들의 말대로 아울러 주조하여 주면 합당할 것이니. 이렇게 알려 시행함이 어떠할지. 숭덕 7년(1642) 2월 17일 우부승지 신 홍무적(洪茂績) 차지로 입계하여 윤허함.

왜인이 보여준 소지(小紙) 내용

소마(小馬) 1마리
화연(花硯) 5
화병대필(畵柄大筆) 20자루
황모필(黃毛筆) 400자루 가운데 용편필(龍鞭筆) 100자루,
대모필(玳瑁筆) 100자루, 백죽필(白竹筆) 10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100자루
생저포(生苧布) 40필
약삼(藥蔘) 1근
청심원(淸心元) 50알
연령단우황원(延齡丹牛黃元) 3전(錢)
수은납호진묵(水銀蠟好眞墨) 한림풍월(翰林風月) 2동(同)
수양현정(首陽玄精) 10동
금묵(琴墨) 10동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역관 이장생이 가져온 왜서의 별구청물건(別求請物件)을 별도로 첨부하여 입계하였는데, 그들이 비록 값을 맞춰 서로 교환한다 말하였으나, 우리가 접대하는 예에 있어서는 박하게 와도 후하게 보내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냄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남선(南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예조의 계목. 대마도 도주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넣어 답장을 지으라고 하였는데, 회례하는 물건은 그 별폭에 부친 물건을 근거로 하여 참작하여 후록을 마련하였사오니 해조에 명하여 급급히 준비하여 이장생이 내려갈 때 주어 보내라 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호피(虎皮) 3장
인삼(人蔘) 5근
백면주(白綿紬) 15필
백저포(白苧布) 15필
백목면(白木綿) 50필
흑마포(黑麻布) 5필
황모필(黃毛筆) 50자루 이상은 해당 관서
육장부유둔(六張付油芚) 3부(部)
사장부유둔(四張付油芚) 3부
화석(花席) 10닙〔立〕
진묵(眞墨) 50홀(笏) 이상 본도

예조의 계목. 대마도 도주에게 동래부사가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보내되, 회례(回禮)하는 것은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당 관서에 명하여 급급히 준비하여 내려보내되, 보낼 물건이 올라온 뒤 해조에 명하여 처리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호피(虎皮) 1장
인삼(人蔘) 2근
백면주(白綿紬)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백목면(白木綿) 10필
황모필(黃毛筆) 20자루 이상 해당 관서
화석(花席) 3닙
진묵(眞墨) 20홀 이상 본도

예조의 계목. 대마도 도주에게 부산첨사가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찬술하여 보내되 회례(回禮)할 물건은 동래부사와 같음.

임오(1641) 3월 초6일

접위관 이태운(李泰運)과 동래부사 정호서(丁好恕)의 장계 내용. 신 등이 어제 관에 가서 두 번 째의 연향을 베푼 뒤에, 평차(平差)가 말하기를, '전일에

진술한 각 건의 일에 대한 장계의 회답이 아마도 이미 내려왔을 것인데,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이장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조정에서 특별히 도주의 간절한 정성을 생각하여 대개 그대로 허락할 듯하다고 들었으니, 이장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상세히 알 수 있겠다'고 하였더니,

평차가 말하기를 '진달(進達)한 일이 장차 이루어진다 하니 참으로 지극히 감사하고 다행하나, 다만 어필(御筆)에 놓을 보인(寶印)은 반드시 전일에 통신사가 가지고 간 국서(國書)에 놓았던 보인으로 찍어놓아야 서로 대조하여 미덥게 될 것이니, 혹시라도 서로 어긋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급급하게 장계를 올리시라'고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어필 한 가지 일은 극히 중대한 것이라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허락한다면 어찌 인보(印寶)가 어긋날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나 장계를 올려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왜가 또 말하기를 '세 나라의 형세를 별도의 서계(書契)로 만드는 일을 어렵다 마시고 진계(陳啓)하여 만들어 주시면, 마땅히 돌아가 대군에게 보고하여 의심을 풀게 하겠다'고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세 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전에 이미 상세히 말하였는데, 구두로 곡절만 말하면 되었지 어찌 꼭 서계를 받아야만 그 의심을 풀겠는가? 또한 이 일은 무단히 서계를 만들어 보내어서는 불가하다. 너희 섬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이에 조금도 숨기는 일이 없으니 모름지기 의심하지 말라' 하고 재삼 막았더니, 또 전일의 별단서계(別單書契)의 일로 다시금 공갈하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제법 길지만 이전에 두 차례의 별폭(別幅)에 이미 모두 진달하였기로 다시 번거롭게 계문(啓聞)하지 않음. 이른바 서계를 반드시 받아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청국(淸國)이 우리나라와 강화한 이후로 정성과 신의가 서로 두터워서 다른 일이 없다는 뜻으로, 도주가 일찌기 대군에게 답한 것과 꼭 같이 별장(別張)의 서계로 대략 얽어 만들자고 하는 것은 졸렬한 모략에 가까운 것 같은데,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별장의 서계를 만들어 주더라도 초초하게 말을 넣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떠할른지, 묘당(廟堂)에 명하여 속히 확정하시기를. 불경(佛經)은 저들이 요구하는데 본디 그 수량을 정하지 아니했고 또한 요긴한 것 같지도 않아서 지금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일러 확정하게 하라 하였음. 이 일로 장계함.

첨부된 **비변사(備邊司)의 계목** 내용. 평차가 별도의 서계를 얻어 돌아가 대군에게 보고하여 의심을 풀고자 하는 것은, 당초 공갈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나, 실정을 참작하면 또한 이치에 가깝고, 세 나라의 형세로는 청국(淸國)이

오직 전쟁과 살륙을 일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백성을 살리자는 계책으로 그들과 교분을 두텁게 하고 있고, 중국은 화친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병화가 연결되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태연히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나라의 교분을 두텁게 하는 의도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니, 중복하여 탐문할 것도 없고, 또한 꼭 문서를 만든 다음에 실상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도주와 서찰을 통하는 격식이 반드시 보고나 물음이 있은 연후에 비로소 답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차인(差人)의 입에 나온 말에만 의지하여 갑작스레 서계를 만들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타이름이 마땅할 것입니다.

경서를 인쇄하여 주는 일은 대단한 폐단까지는 안되기에, 짐짓 판본이 산실되고 남은 것이 많지 않아서 혹 인출해도 완질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저들이 꼭 얻고자 한다면 이전대로 행회(行會)하여 인쇄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이니, 이렇게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우승지 신 한흥일(韓興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첨부한 **예조의 계목.** 어필(御筆)을 이미 허락하였으면 마땅히 어보(御寶)를 찍어야 하는데. 앞서 통신사를 보낼 적에 일본에 보내는 서계에는 '위정이덕(爲政以德)'이란 어보를 놓아 보낸 것이 사례였으니, 이제 이 어필에도 이 어보를 놓아 보내야 마땅할 것이나, 아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주상의 재감(裁鑑)이 어떠신지? 우부승지 신 남선(南銑)의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라 하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 등차가 요구하는 별폭에 첨부된 약재가 이렇게 많아서, 제급(題給)하는 수량을 참작하여 후록(後錄)으로 마련하였으니 해당 관서 및 본도에 명하여 급속히 준비하여 제급하라고 함이 어떠할지.

후록. 등지승(藤智繩)의 구청약재

우황(牛黃) 2부 중 1부 종. 해사(該司)
호간(虎肝) 1부
호경골(虎脛骨) 4
호육(虎肉) 10근
황밀랍(黃蜜蠟) 10근
욱리인(郁李仁) 1근
의이인(薏苡仁) 1두
백작약(白芍藥) 2근
사장부유대지(四張付油大紙) 3매
유지(油紙) 10편(片)

오색지(五色紙) 100편
우산지(雨傘紙) 20편
백박상지(白薄上紙) 100편
녹두말(綠豆末) 1두(斗)
유(油) 1두

우부승지 신 남선 차지로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하라 윤허함.

임오(1641) 12월 초4일

경상감사 임담의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첩정(牒呈) 내용. 차왜(差倭)에게 다례를 행하고 접견할 적에, 도주가 분부한 약재 별록과 서적 잡물을 구청하는 별록을 내어 보이며 간절히 요구하였고, 그 밖의 잡물구청은 이전부터 편의대로 부응하는 것이 규례가 되어 있는데, 이 뜻을 사또께서 참작하시어 별록의 약재를 속히 찾아 보내시어 차왜가 돌아 들어갈 때 주어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며, 기타 잡물도 편의대로 제철의 산지에서 멱급(覓給)하라는 뜻으로 미리 분부하시기를.

또한 별견역관 홍희남의 수본을 접했는데 그 내용에, 당일 차왜(差倭)가 바친 도주의 구청단자 중에 철안장〔鐵鞍子〕을 만드는 야장(冶匠) 및 입사장(入絲匠)이 각 포구에 있는데, 지난 해에도 순찰사에게 치보하고 수영(水營)에 이문하여 동 장인 등을 왜관으로 들여보내고, 다 만든 뒤에는 대관왜(代館倭)에게 타일러 수공(手工)을 계급(計給)하였는바, 이번에도 이대로 하도록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처치함이 어떠할른지, 연유를 수본으로 올린다고 하였음. 동 각항의 장인을 전례대로 소재지에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왜관에 들어가서 만들어 준 뒤 사례대로 값을 받아 오게 하라는 뜻을 속히 행회(行會)하시되, 동 구청별록을 등서(謄書)하여 순찰사에게 올리며, 그 중에 제철에 나는 산물이 아니거나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은 타일러 방색하라는 뜻으로 별록 가운데 기록을 달아 첩정하였고, 또한 차왜가 왕래할 때에 도주가 구청하는 잡물 및 서책 약재라고 하여 혹 요구하여 오는데, 본도에는 문안(文案)이 소루하여 근거할 만한 등록이 전무하여 앞서 수응한 규례가 소상하지 아니하니, 이런 물건들을 편의대로 멱급(覓給)하여도 무방한 듯하나, 그 중에 본도 소산이 아닌 약재 및 본도에 판본이 없는 서책은 해조에서 각도의 소재지에 따라 분정하여 운반하여 보내는 것이기로, 이른바 구청별록을 해조에 등서하여 올려보내오며, 연유를 치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 차왜가 도주

의 뜻으로 구청한 서책 및 잡물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그 중 멱급할 수 있거나 혹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은 본도에서 이미 타일렀으며, 사서(四書) 및 오경(五經)은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책이니 멱급함이 마땅할 듯하나, 다만 난리를 겪은 뒤로 서울에 겨우 있던 판목도 모조리 잃어버렸기에 찍어내기 어려우니, 해조에 명하시어 교서관(校書館)에 값을 주어 있는 곳을 찾아 사들이게 하며, 약재로는 본디 없는 당재(唐材) 이외의 우리나라 소산의 약재는 또한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멱급하고, 혹 본도 소산이 비록 품질이 나쁘더라도 정한 것을 가리면 쓸 수 있으니 모두 본도에서 멱급할 것. 해조에 값을 줄 서책 및 본도에서 멱급할 물건을 아울러 후록(後錄)함. 후록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구청별록(求請別錄),

『칠서지강(七書之講)』. 이 책은 우리 나라에 매우 드물어서 쉽사리 멱급하지 못한다는 뜻을 본도에서 타이를 것.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논어(論語)』 각 1건. 호조에 명하여 교서관에 급가(給價)하여 찾아서 무급(貿給)하게 함.

『오경대전(五經大全)』 1부 중 『주역(周易)』은 본도에서 인쇄하여 주고, 『시(詩)』, 『서(書)』, 『춘추(春秋)』, 『예기(禮記)』 각 1건은 호조에 명하여 교서관에 급가(給價)하여 찾아서 무급하게 함.

꾀꼬리〔黃鸝〕 10마리. 본도에서 내년에 산출 된 뒤 멱급(覓給)할 것이라 타이를 것.

까치〔鵲〕 6마리

노루〔獐〕 사향노루

다람쥐〔鼯鼠〕 10수 이상 본도에서 멱급

산호(珊瑚) 우리나라에 본디 없어 찾아주지 못함.

청서모필(靑鼠毛筆) 10자루 해조에서 제급

입은사철안(入銀絲鐵鞍) 2부, 만드는 장인을 본도에서 또한 거행

약재(藥材)

백출(白朮) 12근

길경(桔梗) 8근

창출(蒼朮) 4근

맥문동(麥門冬) 10근

천문동(天門冬) 2근

독활(獨活)[273] 5근

273) 독활(獨活) : 산형과의 다년초 어수리의 뿌리. 풍습을 제거하고 지통(止痛), 해독(解毒)의 약재

시호(柴胡) 5근
백작약(白芍藥) 4근
택사(澤瀉) 2근
갈근(葛根) 7근 이상 본도에서 편의대로 멱급
지모(知母) 1근 비국에서 이미 내려보냈으니 이것으로 들여줄 것.
저령(豬苓) 1근
당재(唐材) 찾아주지 못함

좌승지 신 김상(金尙) 차지로 입계하여 윤허함.

계미(1642) 2월 26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의 장계 내용. 이 달 15일에 신사(信使)를 맞이하러 나온 차왜 평성행(平成幸)에게 19일에 다례를 행하고 서계 두 통을 받아 올려 해조에 올려보냈거니와, 접견하여 이야기 할 즈음에

평차가 말하기를, '신사(信使)의 행차를 정한 기한 안에 들여보내겠다고 쾌히 허락하여, 도주(島主)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뜻을 대군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렇게 정녕 치보한 뒤에 만약 혹 조금이라도 그 기한을 어기면 반드시 큰 일이 생길 것이니 기일을 어기지 말고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도주가 재삼 말하여 보냈기로, 이 뜻을 조선에 전달하여 기일을 어겨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도록'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정한 기한대로 들여보내겠다는 뜻으로 한편으로 답장의 서계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여행 중의 여러 도구들을 급급하게 조치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일을 어겨 신의를 잃을 걱정은 없을 것이니,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였음.

평차(平差)가 또 말하기를 '신사(信使) 일행의 상하 인원과 일꾼의 다소를 미리 상세히 알아서 통보하여야 도중에서 대접하는 등의 일을 마련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인데, 인원 수와 명록(名錄)이 지금까지 오지 않아서 극히 염려된다. 이 뜻을 급급히 전달하여 인원 수를 진작 도중에 통보할 수 있도록' 운운하였음. 또 말하기를 '연전에 사신을 들여보낼 적에 여러 집정(執政)에게 보낸 서계(書契) 가운데 쓴 말 중에, 대군을 귀 대군(貴大君)이라 칭하였는데 이렇게 존대하여 칭한 뜻을 집정 이하의 사람들이 모두들 감격하였거늘, 이번에도 집정 등의 서계 가운데 이전대로 귀 대군 등의 말을 써서 보내어 전후로 달리

로 사용한다.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서찰에 쓰는 말의 사례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이번의 서계 가운데 쓰는 말도 아마 필시 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거니와, 당연히 이런 뜻을 전달할 것이다'라고 하였음. 평차가 또 말하기를 '이번 대군 앞으로 보내는 서계에 찍는 어보(御寶)가 전일에 들여보낸 어필에 찍은 어보와 다름이 있으면 필시 서로 어긋나 탈을 잡는 사단이 있을 것이니, 이 뜻 또한 계달하여 전후로 서로 어긋나는 걱정이 없도록 하오며', 또 '저희가 나올 때 도주가 정녕 분부하기를 준마 2필을 그 중 면백(面白)이 없는 것으로 골라 비록 무거운 값을 주더라도 속히 사들여 들여보내라고 하며 보냈는데, 모쪼록 급급히 주선하여 주시면 사들여 보내려고 한다'고 하였음.

상항의 문답 사연을 해조에서 상의하여 처치하시되, 사신 일행의 대소 인원수를 별록(別錄)하여 내려보내어 진작 통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도주가 구청한 말 무역에 대한 일은 필시 신사가 갔을 적에 사용하려는 뜻일 터이데, 서울에서 사서 보낼 즈음에 혹 지연되면 저들이 실망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니 본도에 준마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서 들어보내라는 일로 한편 순찰사에게 낱낱이 보고하였음.

임오조의 언만송사(彦滿送使) 정관 1인, 압물 1인, 반종 3명 등의 노차연(路次宴)을 동일 차례로 거행하였는데, 잔치 자리에서 서로 접견할 때 정관 등지정(藤智正)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이번의 송사절목(送使節目) 등의 일로 도주의 심정이 매우 무거운데, 해조에서의 처치가 전후로 각기 달라 극도로 마음을 졸였는데, 성전하(聖殿下)께서는 도주의 사정을 통촉하시어 특별히 이렇게 통쾌하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내리시니, 이는 이른바 총명이 만리를 내다본다는 것인지라 감격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재삼 사례하였음.

이런 연유로 **예조에서 첨부하여 올린 계목**에 근거하여 계하함. 인원 명록을 도중에 먼저 보내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인데, 일행의 인마(人馬)로 파악된 수는 경상감사에게 이미 행이하였으니, 대략의 명수는 필시 들어 알 터이고, 인원이 혹 증감되어 바꾸어 고치면 사신이 떠나는 날 비로소 분명한 이름을 기록하여 보내도록 하며, 사신에게 명하여 급속이 등록을 보내라고 할 것이며, 문서에 찍는 어보는 전후 한 가지로 하고, 귀대군이란 칭호 역시 그 뜻대로 할 것. 준마는 본도에서 매매하여 주는 것이 과연 편하니 마땅히 속히 이대로 거행하라 하는 일로 행이하심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홍헌(洪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3월 25일

동래부사 정유성(鄭維城)이 15일에 성첩한 장계. 이달 초4일에 나온 세견 제1선, 제2선, 제3선이 나온 연유 및 각선이 가지고 온 서계를 다례 때 받아 올려보내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음. 신은 병세가 한결같이 위급하여 침석에 몸을 맡기고 있기에 참석해야할 연례에 누차 참석하여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황공하고 민망하여 몸을 둘 데 없어 누차 장계를 순찰사에게 올렸는데 필시 이미 계문하여 처치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세견 각선의 정관 이하에 대한 첫 다례를 부산첨사 김탕(金逿)이 또한 홀로 참여하여 베풀었는데, 방금 도부한 첨사의 치통 내용에, 이 달 14일에 갑신조의 세견 제1선 정관 1인, 선주 1인, 압물 1인, 반종 3명과 동년조 세견 제2선 정관 1인, 반종 1명, 동년조 세견 제3선 정관 1인, 반종 1명 등에게 다례를 차례로 베풀었으며, 각선에서 예전대로 올리는 서계 3통과 별폭 3통 및 우리나라에서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내어보내는 별서계(別書契) 한 통 등을 받아 보내거니와,

제1선의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신사의 행차가 바다를 건널 때 예단에 소용되는 것으로 추가로 들여보낸 매가 에도에 도착하여 4연이 저절로 죽었거늘, 도주가 사사로이 무역한 매로 대신 충당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때 즉시 사신 행차에게 고하였더니 추후에 그 값을 제급(題給)하여 실로 감격하거니와, 오사카성〔大坂城〕에서 저절로 죽은 것 8연도 역시 도주의 개인 소유의 매로 수를 채워 사용하였는데, 그 때 일이 많아 분주하였기에 미처 사신 전에 고달(告達)하지 못하였는데, 당초 여기에서 보내면서 서명한 표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값은 비록 제급(題給)하지 않았지만 도주가 수를 충당하여 사용한 사유를 알리고자 가져왔으니, 동일 저절로 죽은 8연을 전급(傳給)하라' 하거늘,

첨사가 답하기를 '이는 첨사가 받아 들여보낸 매가 아니니, 비록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진위를 상세히 알 수 없다' 하여 준절하게 물리쳐 받지 않았음. 또 도주의 구청이라고 별지의 목록을 바치거늘 역시 받아올려 보낸다고 치통하였음.

세 선박에서 가져온 서계와 별폭 각 3통 및 표풍인출송(漂風人出送) 별서계(別書契) 1통, 도주가 구청하는 서적목록을 아울러 해조에 올려보냄.

정관 등이 말하기를 '신사가 왔을 적에 예단의 매가 도중에서 절로 죽은 4연 외에 또 8연이 죽었거늘 도주가 자기 매로 숫자를 충당하여 사용했다' 하고 또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며, 심지어는 저절로 죽은 매를 가져와서 꺼내어 보여주는데, 처음번에 충당한 4연은 사신의 장계로 말미암아 이미 분정하여 들여주었거니와, 8연의 매는 그들의 구설(口說)일 뿐 또 해가 지난 뒤에 값을 보상하라

는 것인바 이는 대단히 따라주기 어려운 청이로되, 만약 이런 길을 열어두면 뒷날의 폐가 있을 듯하기로 해조에 명하여 참작 상의하여 조처하게 하시며, 도주가 요구하는 서적도 종(從) 부종(不從) 간에 속히 확정하여 처치하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신사(信使)의 예단(禮單)에 소용된 매 8연 대신으로 만약 도주가 자기의 매로 사실상 충당하여 사용하였다면 추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한 것이 아니로되, 다만 그들의 구설일 뿐 해가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의 체면상 미안함.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라 하되, 요구한 서책은 그 수가 극히 많을 뿐 아니라, 모두가 얻기 어려운 책이어서 모조리 부응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그 중에 얻을 수 있는 책은 교서관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도록 하고, 교서관에 이미 여유가 없으면 전례대로 호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들임이 어떠할지.

서적목록.

『사서장도(四書章圖)』, 『진간재시집(陳簡齋詩集)』,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 『육상산문집(陸象山文集)』, 『문장변체(文章辨體)』, 『산곡내외별집(山谷內外別集)』, 『이백시집(李白詩集)』, 『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화제방(和劑方)』, 양성재(楊誠齋) 『영규율수(瀛奎律髓)』 이상. 그 중 얻을 수 있는 책은 교서관에 명하고 또 호조에 명하여 값을 주게 할 것.

순치(順治)[274] 원년(1644) 3월 23일 우부승지 신 강대수(姜大遂)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되, 매에 대한 일은 사신에게 물어보고 처치하라 하심.

이에 근거하여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그 때 정사 윤순지(尹順之)에게 물었더니 매는 사신이 부산에 있을 적에 왜인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가지고 가게 하였으므로 에도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그 중 병들어 죽어서 부족한 수가 단지 4연이라고만 말하였으므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그때 혹 병든 것이 10여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왜인들은 그 수는 말하지 않고 단지 그 부족한 수만 말하였기 때문에 대가로 단지 4연만 주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추가로 말하면서 이미 문서가 없으니 또렷하게 알기가 어려우나 또한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고 하였으니 이제 와서 추가로 지급하기가 불가하다는 뜻을 이전대로 회

274) 순치(順治) : 청나라 세조(世祖)의 연호.

계(回啓)하여 동래부사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원년 3월 25일 동부승지 신 조석윤(趙錫胤)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5월 21일

동래부사의 장계. 방금 접한 훈도 한상(韓祥)과 별차 노기현(魯起賢) 등의 수본 내용. 세견 제1선 정관 평성구(平成矩)가 서찰을 보내어 보기를 요청하거늘 소인 등이 관에 갔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저희가 돌아 들어갈 날이 임박하였는데 앞에 전달한 신사(信使)의 예단에 매 죽은 것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 및 서책 등에 대해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회답이 없는가' 하거늘,

답하기를 '서책은 이루어지던 않든 간에 근일에 회답이 내려올 것이거니와, 매에 대한 일은 그 때 이미 사신 앞에 고하지 않았고 또 문서도 없는데 저들의 구전(口傳)만으로는 결코 계급(計給)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전에 동래 영감이 이미 조정에 계품(啓稟)하였는데, 하회가 없다'고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초 창황하여 미처 고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사소한 매를 어찌 두 나라가 서로 신임하는 사이에 거짓말을 지어내겠느냐? 시종 방색하니 부끄러울 뿐 아니라 도리어 불신까지 사게 되니 다시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갈하거늘,

소인들이 말하기를 '무릇 일이 비록 명백하더라도 그 때를 당하여 처치하여야지, 이렇게 뒤에 와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 다시는 번거로이 말하지 말라'하고 준절하게 배척하였는바, 이를 수본으로 올린다고 하였음.

죽은 매의 대가를 지급하는 일을 재삼 말하는 것은 이쪽의 뜻을 탐지하여 보고서 요행을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인데, 이미 준절하게 물리쳤으니 다시 청할 이치는 없을 듯 하거니와, 서책에 대한 일은 해조로 하여금 신속히 확정하도록 분부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요구하는 서책은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모두가 얻기 어려운 책이니 부응하기 어려운 듯하되, 이미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이기에 그 중에서 『진간재집(陳簡齋集)』,『진후산집(陳后山集)』,『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각 1건을 이미 사들여서 이달 초8일에 내려보냈으니 아마도 이미 그쪽에 도착할 듯하다. 이런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좌승지 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5월 23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의 장계. 이달 15일 신(新) 관수(館守) 평성륜(平成倫)과 반종 3명의 하선연(下船宴) 다례를 베풀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 3통, 별폭 1통,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별폭 2통 등을 받아올려 해조로 올려보냄. 이른바 평성륜(平成倫)은 곧 대마도 도주 집안의 노마조(老馬助)의 둘째 아들임.

서계를 전한 뒤 성륜(成倫)이 그대로 신에게 말하기를, '관사에 들어가 있어 보니 해가 오래되어 기울어지고 비틀어져서 보기에도 딱할 뿐 아니라 앉고 누워 있기에도 극히 염려스러우니, 귀국에서 공장(工匠)을 불러모아서 본도의 공장(工匠)과 합력하여 수리하면 공사를 쉽게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도의 장인은 집을 지을 때 그 재목을 치밀하게 가리는 솜씨가 귀국 목수와는 다름이 있으니, 이렇게 집을 지으면 왜관도 오래가고 살기에도 편안하여 피차간에 무방할 것인데, 사세가 절박하니 해조에 낱낱이 보고하여 기어코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산성에 왜관을 옮기는 뜻은 전에 이미 언급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장계할 때 아울러 치계하기 바란다'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본 왜관은 지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허다한 각 실 중에 혹 기울어진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비록 부응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해를 이어 흉년이 들었고 또 돌림병도 있는데, 이런 때에 고쳐 수리한다는 것은 아마도 기필할 수 없을 것 같으며, 부산성으로 왜관을 옮기는 일은 전에 이미 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일이 근거 없기로 조정에서 이미 준절하게 물리쳤고, 심지어는 도주(島主)와 조정하였거늘, 이제 또 제기하니 극히 해괴하다. 이는 비록 조정에 장계하더라도 들어 줄리 만무하니 치계(馳啓)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하였더니,

성륜이 답하기를 '피차가 힘을 합치자는 것은 당초 귀국의 폐를 줄이자는 데서 나왔고, 또한 오래도록 편안하게 거접(居接)하자는 계획에서 나왔는데, 막힘을 면치 못하니 양국이 서로 두텁게 지내자는 뜻이 한갓 이렇게 헛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뒷날 퇴락하여 객이 만약 압사라도 당하면 주인의 마음에 있어서 어떠할 지 모르겠다. 부산성으로 왜관을 옮기는 일도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도주가 장차 서계를 보낼 것이고, 서계를 보내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사신을 보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동래영감께서는 단지 속히 장계를 올리면 그만이다' 하였음.

도주가 반드시 왜관을 부산성으로 옮기려 한다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든 간에 당초 서계에 거론하지 않고 다만 성륜에게 구전으로만 하였을 리는 없을 듯하오며, 구관(舊館)을 수리하는 일이 급급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서계 및 그

의 이야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뜻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따라주기 어려운 청을 야기하는 것은 그 의도가 반드시 구관을 수리하려는 데 있는 것 같으며, 야소(耶蘇) 종문(宗門)의 일에 대해서는 그의 말에 '지난번 귀국 장기(長髻)의 어선이 석견주(石見州)에 표류하였기에 대군(大君)이 심지어 각도에 전령(傳令)하여 의복과 양식과 어선을 지급하여 주고 아울러 십분 보호하여 보내라고 하였는바, 대군의 성의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종문(宗門) 등은 이런 배와는 달리 이미 본국에서 죄를 얻었는데 혹 표류하여 귀국에 닿았다면 귀국에서는 끝까지 추궁하여 사로잡아 대군의 귀국에 대한 도리에 보답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찻잔〔茶碗〕을 만드는 잡물에 대하여는 비록 해마다 전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건이지만 속히 찾아 보내주시어 지체되는 근심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른바 서계 가운데 도공(陶工)은 곧 사기장(沙器匠)이며, 그가 써 준 작은 종이 가운데 좋은 말, 말 안장, 백양(白羊) 등의 물건은 도주가 8,9월 사이에 에도에 들어가는데 그 때 가지고 가서 대군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기에, 아울러 기일에 맞춰 모아서 왜관에 들여보내 값을 주고 무역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말은 색깔이 없는 말이라고 하며, 서책은 곧 절일 세견 제1선이 소청한 것이라 하오며, 산 잉어〔生鯉〕와 노랑꾀꼬리〔黃鶯〕는 전에 본도에서 편의에 따라 멱급(覓給)하였다고 말하기로 그가 써서 주는 작은 기록과 아울러 올려보내오며, 대마도의 홍장로(洪長老)가 바뀌어 가고 그 대신에 단장로(旦長老)가 내도하였기로 치계하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부산성에 왜관을 옮기는 일은 결코 따라줄 수 없다는 뜻을 어제 이미 복계하여 윤허하였으니 이것을 변방 신하에게 알려서 하여금 준절하게 거절하게 하고, 때때로 관사에 들어가 기울어진 모양은 우리 사람들이 목도한 것인데, 저들이 압사를 염려하여 심지어는 저들의 장인과 합력하여 내년 봄에 수리하자고까지 하였는 바, 간절하고 긴박한 청은 끝내 시종 굳게 거절하여서는 안될 듯 하오니, 쓸만한 옛 재목 이외에 보충할 재목과 기와를 앞서 닥쳐오는 농한기에 미리 마련하였다가 내년 봄에 수리하여 주는 것이 마지 못할 일인 듯하며, 서책은 이미 내려보냈거니와 찻잔을 빚어 만들고, 좋은 말과 말안장, 백양(白羊), 노랑꾀꼬리, 잉어 등의 물건을 이제 본도의 사례에 따라 찾아 주고 매매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경상도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신민일(申敏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6월 12일

경상감사 임담이 초7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 동래부사에게 계하한 서장 내용 중 해당 왜관을 수리하는 것과 양마(良馬)와 말안장, 백양(白羊) 등을 무역하는 일에 관한 서장.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에 근거하여 계하한 내용임. 부산성으로 왜관을 옮기는 일은 결코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어제 이미 복계(覆啓)하여 윤허하였으니, 이것을 변방의 신하에게 알려서 준절하게 거절하게 하라 하였고, 때때로 관사에 들어가 기울어지고 무너진 실상을 우리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이나,

저들이 압사를 염려하여 심지어는 내년 봄에 도중에서 장인이 나와 합력하여 수리하겠다고까지 하였는바, 간절하고 긴박한 요청을 시종 굳게 거절할 수 없을 듯한데, 쓸만한 예전의 목재 이외에 보충할 재목과 기와를 닥쳐오는 농한기에 진작 성취하여 미리 준비하였다가 내년 봄 수리하여 주는 것은 마지못할 듯하오며,

서책은 이미 내려보냈거니와, 찻잔〔茶碗〕을 빚어 만들고 양마(良馬)와 말안장, 백양(白羊), 노랑꾀꼬리〔黃鶯〕, 산 잉어 등의 물건은 본도에 명하여 전례대로 멱급하여 매매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원년 5월 23일 우부승지 신 신민일(申敏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은 일이 있었음.

계하한 내역의 사연을 상고하여 시행하며, 위 사연을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알려 시행하라고 관문을 내렸음. 부산성에 왜관을 옮기는 일은 이전부터 있었으되, 그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들어주지 않을 줄 모르는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제기한 것은 실로 당시에 관사에 들어갔다가 기울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반드시 고쳐야 하겠으므로 도중에서 장인이 나와 합력하여 수리하겠다고 하며 또한 청원이 더욱 간절하기로, 목재와 기와를 준비하여 때맞춰 수리하면 피차간에 편하겠기에, 초봄에 신이 부산에 순시하여 이르렀을 때, 왜관 앞의 해장(海墻)과 수책(水柵) 또한 아울러 퇴락하여 무너졌는데, 만약 금년 여름을 넘기면 선박을 댈 곳이 없어 극히 걱정스럽기에 역관으로 하여금 진정한다 하거늘, 신이 즉시 역관과 파수하는 변장(邊將)을 보내어 함께 무너져 훼손된 곳을 조사하게 하였더니 과연 형편없다 하기로, 부근 각 포구에 분부하여 남기고 올리고 파수할 곳을 분정하여 해장과 수책을 간신히 수리하였는데, 이제 이 관사를 개조하는 것은 인력이 더욱 많이 들고 그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목재와 기와 보충의 다소를 다시 상세히 조사하고 마련하여 조처할 것이며,

그들이 구청한 말안장과 노랑꾀꼬리〔黃鶯〕와 백양(白羊), 산 잉어는 바야흐

로 각기 그 산출되는 곳에다 분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들여주라 하였으며, 찻잔을 빚어 만들기 위한 백토(白土) 80석, 약토(藥土) 10석, 황토(黃土) 50석, 장인(匠人) 5,6명, 소목(燒木), 가가(假家)는 실로 호대하고, 본도에서 자기를 만드는 토물(土物)은 단지 우도의 호남 경계에 있는 한 두 읍에만 있는데, 이처럼 가뭄이 극심하여 농민이 살아가기에도 어려운 시절에 갑자기 흙을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실로 염려되기에, 한편으로 왜인 등에게 7월달 사이로 물려서 거행하자는 뜻으로 역관들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는데 아직 수긍할 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으며,

양마(良馬)에 이르러서는 저들이 간절히 구한 것이 이전부터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동 가격은 공목(公木)에서 제하여 넉넉하게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동 말을 단지 체구가 크고 모양이 좋은 것으로만 하고 재간이나 걸음으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되, 도내에 합당한 말이 전혀 없어서 전후로 매양 퇴짜를 받아 찾는 요구가 그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간혹 타도 및 서울의 있는 곳에 알려서 보내어 매매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또한 피차간에 해가 없으면 착실하게 찾아 주는 뜻을 보일 것이며, 상항의 관사와 도토(陶土)와 양마(良馬) 등의 일을 해조에 명하여 좋을 대로 선처하게 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관사를 개조하는 일은 상세히 조사한 뒤 요리하여 처치하며, 도토에 대한 일은 역관으로 하여금 잘 타일러서 농사를 마치고 거행하도록 행이하되, 양마에 대한 일은 호조에 명하여 전례대로 처치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원년(1644) 6월 12일 우부승지 신 신유(申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갑신(1644) 9월 18일

동래부사 심지명(沈之溟)이 13일 성첩한 장계임. 방금 접한 훈도 장위민(張偉敏)과 별차 노기현(魯起賢) 등의 수본(手本) 내용. 어제 관왜(館倭) 등이 글을 보내어 소인 등을 보고자 하거늘, 즉시 왜관에 갔더니, 정관(正官) 등이 말하기를 '도주(島主)가 다음 달에 에도에 들어가는데 양마(良馬) 두 필의 무역을 구청하라 하였는데, 워라말〔花馬〕, 청가라(靑加羅)[275] 및 순색 중 갈기와 꼬리가 모두 숱이 많은 걸로 요구가 매우 간절하며, 값은 가격에 따라 맞추어 줄 것이니, 동 마필이 있는 인가에 신속히 알려서 내려보내게 하여 기일에 맞추어 무역하여 도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가장

275) 청가라(靑加羅) : 털빛이 검붉은 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곧 워라말 및 청가라이기에, 이러한 사연을 순찰사 전에 사유를 갖추어 첩보하고 각관에는 한편으로 분부하여 알리고 한편으로는 장계하여 처치함이 어떠할지. 일이 황공하여 감히 품신하며 수본을 올린다고 하였음.

전일 사복시(司僕寺)의 말이 왕래할 적에 끼친 폐단이 적지 아니하였는데도 도리어 물리쳐 보내는 일이 있었거니와, 이제는 순색 외에 또 워라말과 청가라 두 가지를 무역하기를 청하였으나, 본도에는 원래 말이 없는데다가 전일에 순색 2필의 말을 또한 맞지 않는다 하여 1필만 무역하여 갔는바, 이러한 말의 구청에 대한 부응은 또한 알 수가 없다고 일찌기 본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말을 가진 자가 와서 팔라는 뜻으로 각관에 이미 알렸고, 서울에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알리는 것이 어떠하올지. 사연을 올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두 필의 말을 무역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은 방색하기가 불가하거니와, 본도에서 찾아서 사다가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한데, 이제 서울에서 민간에 알려 팔러 가도록 하더라도 필시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 시행하기 어려운 듯하니 이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이지항(李之恒)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유(1645) 3월 초9일

동래부사 이원진(李元鎭)의 장계 내용. 이달 29일 신이 왜관에 나가 관수(館守) 평성륜(平成倫)과 다례를 행할 즈음에 성륜이 훈도 장위민(張偉敏)을 불러 구청(求請) 2첩을 전송(傳送)하였는데, 1첩에는 '산 학〔生鶴〕 암수〔雌雄〕, 노랑꾀꼬리〔黃鸝〕 20수, 목단(牧丹) 청황적백흑, 이초목화(異草木花)'라고 썼고, 다른 한 첩에는 '반묘(班猫)[276], 원청(芫靑)[277], 석척(蜥蜴)[278]'이라 썼거늘,

신이 장위민에게 시켜 전언하기를 '구청에 백조(白鳥)가 있는데 새 중에 흰 것이 한둘이 아니거늘 구하는 새가 어떤 백조이냐' 하였더니, 평성륜이 그 이름을 지적하지 못하고 다만 말로만 그 새의 형상을 형용하는데, 대개 백로(白鷺)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학과 백로와 꾀꼬리〔鸝〕 세 가지 새는 모두 잡기가 어려운 물건이고, 산채로 잡기는 더욱 어려운데, 가령 산채로 잡았다 하더라도 매처럼 사람에게 붙지 않고 야성을 길들이기 어려워 먹이

276) 반묘(班猫) : 가뢰과에 속하는 곤충인 먹가뢰, 왕가뢰, 목람가뢰 등을 말린 약재.
277) 원청(芫靑) : 청가뢰. 가뢰과의 몸길이 1㎝ 내외의 작은 곤충. 맹독이 있는데 약재로 사용함.
278) 석척(蜥蜴) : 도마뱀.

를 쪼아먹지도 않고 죽어 극도로 기르기 어렵다'고 하니,

평성륜이 말하기를 '잡기 어렵고 기르기 어려운 줄 이미 알지만 이것이 도주가 구하여 약군(若君)에게 바치려는 물건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간청하니 구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거늘,

신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비록 애서 부응하려고 해도 반드시 알을 까서 새끼가 되어 둥지에서 내려와 먹이를 먹을 때가 되어야 혹 얻을 수가 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목단(牧丹)의 다섯 색은 우리나라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서적에도 보지 못하였고, 청흑이나 황색이라 하는 것도 중원의 낙양(洛陽)에서만 생산되지 다른 곳에서는 없다. 흰 것 역시 드문 물건인데 이제는 종자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한즉,

평성륜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붉은 것만이라도 얻으면 족하다'고 하였으며,

신이 또 말하기를 '이른바 이초목화(異草木花)란 어떤 꽃을 가리킨 것이냐. 색목(色目)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하였더니, 그 역시 어떤 꽃이 이화(異花)인지 모르고 단지 말하기를 '귀국에 반드시 이상한 꽃이 있을 것인데, 산화(山花) 중에서 색깔 있는 것과 국화 중에서 색깔이 붉은 것이면 가할 듯하다'고 하였으며, 3종의 약재는 무게로 1근을 얻었으면 한다고 하였음. 구청한 물건을 찾아주는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처치하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여기 구청한 조류는 혹 우리나라 소산이라도 인간에서 길들여 기르는 물건이 아니며, 각색 화훼 역시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 사실대로 타일러서 일일이 부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알게 하되, 그 중에 본도에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은 편의대로 찾아주어 먼 곳 사람의 소망이 낙심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며, 약재 중에 반묘(班猫), 원청(芫青). 석척(蜥蜴) 등의 물건은 의사(醫司)에 명하여 찾아 보내는 일로 아울러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이지항(李之恒)의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유(1645) 3월 20일

동래부사 이원진(李元鎭)의 장계 내용. 이달 13일에 도부한 접위관(接慰官) 양산군수 이여익(李汝翊)의 첩정 내용. 이달 12일 차왜(差倭) 등지승(藤智繩)의 진상(進上)을 받고 숙배(肅拜)한 뒤 그대로 관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해조에서 내려보낸 증여하는 잡물(雜物)을 나누어 준 즉,

등왜(藤倭)가 훈도 장위민(張偉敏)을 불러 말하기를 '접위관을 보내어 은근히

접대하니 이미 감사한데, 각종의 물건을 은혜롭게 하사하기까지 하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없이 황공하다. 다만 면전에서 진술할 사정이 많으니 술잔을 돌리는 것을 그치고 평좌(平坐)[279]하여 조용히 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한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조정에서 베푸는 잔치의 예를 중지할 수 없다. 9작(酌)을 한 뒤에 평좌하여 중배례(中盃禮)[280]를 행함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등왜(藤倭)가 말하기를 '이번에 나온 연유는 전일에 이미 진달하였거니와, 종문(宗門)의 당(黨)이 몰래 불측한 마음을 품고 일본을 점거하고자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대군(大君)이 나라 안에 분부하여 일일이 수색하여 잡아다가 남김 없이 참살하라고 하였으며, 남만(南蠻)에 왕래하는 선박을 일체 금지하였으되, 남은 무리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문초를 받아보면 혹은 조선에서 왔다고 하므로, 지난 해에 대군의 명을 받아 서계를 만들어 진달하였고, 귀국에서 각 포구에 신칙하여 배 한 척을 사로잡아 대마도로 들여보냈는데, 그 중에 종문의 당이 26명이나 있었으므로 대군이 기뻐하여 오래잖아 사람을 보내어 치사하였다. 이 또한 양국의 정성과 신의인데, 이른바 오관(五官)이라 칭하는 자가 또 나가사키〔長崎〕에서 잡혔는데, 그 말의 내용에 적의 우두머리 두 사람을 새로 당선(唐船)을 만들어 조선으로 내어 보냈는데, 조선의 경계에서 오래지 않아 들어온다 하였기로, 이 두 우두머리를 만약 잡지 못하면 그 우환이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니기에, 급급히 귀국에 알리게 하고, 각진과 각포에 분부하여 비상하게 망을 보고 수색하여 잡으라는 뜻을 도주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잡힌 사람이 모두 조선에서 들어왔다고 하기에, 저로 하여금 가까운 고을과 각 진을 순시하여 살피라고 하여 지도와 형상을 상세히 그려 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돌아갈 적에 단지 회답 서계만 가지고 가고, 증거하는 일이 없으면, 장래에 적도들이 잡혔을 적에 또 조선에서 들어갔다고 하면, 대군이 반드시 그 사이 사정을 의심하여 당연히 근시(近侍) 대신(大臣)을 바로 보내어 귀국의 여러 도의 연변을 두루 살피며 수색하여 잡을 것이고, 도주 또한 배행(陪行)하여 올 것인데, 그 때 무슨 말로 방색(防塞)할 것인가? 이런 사연을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여 속히 처치하여 후회가 없기를 천만 바란다'고 하거늘,

군수가 답하기를 '나는 단지 접대하는 일만 관장할 따름이요 대소의 사정은 등차가 전에 이미 동래에 고하였을 것이니 지금은 다시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전일의 도주의 서계 가운데 종문(宗門)의 당을 모쪼록 수색하여 잡아 들여 보내 달라고 하면서 간청하였거늘, 조정에서 특별히 귀국의 형편을 염려하여 각

279) 평좌(平坐) : 예절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앉음.
280) 중배례(中盃禮) : 외국 사절을 맞이하여 한낮에 베푼 술잔치.

포에 신칙하였다가 다행히도 배 한 척을 찾아 즉시 들여보냈는데, 그 중에 적당이 26명이나 있었으니 우리나라의 정성과 신의는 이미 알 것이로되, 이후로 다시 신칙하여 밤낮으로 망을 보다가 오면 잡아 보낼 것이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친히 각 포를 보고 지도를 얻어야만 그 허실을 알 수 있겠느냐? 등차는 다년간 왕래하며 사정을 익숙하게 알 터인데 어찌 공갈하며 따르기 어려운 청을 발하는가' 하였더니,

등차가 말하기를 '귀국의 지도는 평시에도 나라 안에서 찾아 얻을 곳이 많고, 또한 저의 부친이 직첩을 받아 해마다 내조하고 두세번 서울에 올라갔을 때 지도를 얻어서 지금도 가져 왔다'고 하면서 내어 보여주거늘,

군수가 답하기를 '이 지도도 또한 매우 정하여 좋고, 이러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또 어찌하여 다시 얻고자 청하는가?' 하였더니,

등차가 말하기를 '저는 특별히 귀국의 은전을 입어 변방의 백성이나 다름이 없는데 무슨 속일 일이 있어 장황하게 말을 하겠는가? 한장의 종이에다 새로 지도를 그리고 여러 포구와 외딴 섬을 일일이 써 넣고, 그 말단에 금년 월일을 서서, 가지고 가서 대군에게 드리면 제가 나와서 주간한 일을 명백하게 하고 대군의 의혹하는 마음을 풀 것이며, 또한 그로써 대군이 사자를 직송하여 수포(搜捕)하게 하는 큰 폐단을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섬의 각관에서 황당선(荒唐船)[281]의 유무를 수사가 달마다 서계(書契)하여 일후의 허실에 대한 증거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거늘,

군수가 답하기를 '이 한가지 일은 더욱 따라주기 어렵다. 이런 일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임의로 결단할 바 아니다'라고 하니,

등차가 말하기를, '접위관의 생각에는 이후로 종문의 당이 또 귀국에 오리라고 여기는가? 다시는 전혀 오지 않으리라고 여기는가? 만약 나오리라고 생각되면 미리 선처하여 일후의 따르기 어려운 우환을 막는 것이 상책이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면 보통 일로 여기고 늙은이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로 조처하여도 좋다'고 하였음.

군수가 또 답하기를 '오면 잡아 보내고 오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해외의 형적이 없는 일인데 어찌 올지 안 올 지를 미리 알겠느냐? 종일토록 이야기해도 모두 들어주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즐겁게 놀다가 파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더니,

등왜가 말하기를 '진술한 일은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으니 동래 영감과 상의하여 급급히 치계하여 오래 지체되는 폐가 없게 함이 어떨지'라고 하였음. 그리고는 구청단자를 바치거늘 전례대로 받아서 보내는 일로 첩정한다 하였음. 진상 물건은 추후에 올려보낼 계획이고, 등차가 구청한 작은 종이는 받아서

281) 황당선(荒唐船) :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연해에 출몰하였던 소속 불명의 외국선박.

해조로 올려 보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지금 등왜가 한 말중에 세 가지 일은 모두 따라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묘당에서 이미 복계하였거니와, 접위관이 문답할 즈음에 또 대군이 근시 대관을 보내고 도주가 배행할 것이라는 등의 말에는 공갈하는 정상이 극히 측량할 수 없음. 이 장계를 비국으로 이송하되, 그 중 구청 약물은 물종이 비록 많더라도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닌 듯하니 참작하여 계목 후록을 마련하여 본도 및 생산되는 곳에서 급급히 수합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후록 구청약재 종류

백출(白朮), 백작약(白芍藥), 창출(蒼朮), 산약(山藥), 산수유(山茱萸), 택사(澤瀉), 욱리인(郁李仁), 오미자(五味子), 호간(虎肝), 호골(虎骨), 호육(虎肉), 이상 각 2근 본도로 하여금 마련할 것.
숙지황(熟地黃), 백렴(白蘞). 이상 각 2근 황해도에서 마련할 것.
독활(獨活), 강활(羌活)[282]. 이상 각 2근 강원도에서 마련할 것.

구청잡물

백호마(白胡麻)[283] 참기름〔眞油〕, 들기름〔法油〕 이상 각 3두
일장유둔(一張油芚) 10장
후상백지(厚霜白紙) 3권
다리미〔火熨〕 2개
마성(馬省)[284] 3개, 이상 본도에서 마련할 것,
백밀(白蜜), 밀랍(蜜蠟), 본도에서 짐작하여 제급.

우부승지 신 이지항(李之恒)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을유(1645) 6월 초9일

예조의 계목. 방금 도착한 접위관의 관문 내용. 이제 이번 사사(謝使)의 정관 등이 한 말 내용에, '전에 구청하는 물건의 규례(規例)가 있으니 이전대로 멱급(覓給)하여 달라' 하거늘, '만약 얻기 어려운 물건이면 따라줄 수 없고, 얻

282) 강활(羌活) : 산형과의 다년초 강활의 뿌리. 거풍(祛風) 지통(止痛)의 약재로 사용한다.
283) 백호마(白胡麻) : 참깨.
284) 마성(馬省) : 말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솔. 마쇄(馬刷).

을 수 있는 물건이면 해조에 보고하여 처치한다'고 운운하였는데,

정관 이하가 각기 보내어 구청한 발기〔件記〕와 도주가 구청한다고 써보낸 기록 중에, 얻기 어려운 물건이면 말을 만들어 방색하고, 약간의 지방에서 생산되는 약재나 살아 있는 짐승 등의 물건은 본도와 상의하여 멱급할 계획이고, 본도 소산이 아닌 서책이나 약재 등은 그들이 보내오는 물목(物目) 및 도합발기〔都合件記〕에다 기록을 달아 올려보내고,

필묵(筆墨)은 이미 예단(禮單)으로 증급(贈給)하는데도 또 요구하는 것은 그 뜻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얻으려는 일인 듯하므로 아울러 급급히 내려보낼 것. 매〔鷹子〕는 당초 예단으로 5연을 본도 및 강원도에 분정하였는데, 이번에는 국왕의 사신이 아니니 증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보내지 말라고 두 도에 이문(移文)하고,

이번 정관(正官)의 도선주(都船主)가 구청한 매는 비록 허락하더라도, 이제 여름철을 당하여 데려오는데 또한 죽을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가을 겨울을 기다려 들여보내는 일을 아울러 상량하여 처치하시도록.

각 항의 구청 물건에 대하여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을 계목 후록(後錄)으로 마련하였으니, 해사 및 각도에서 급속히 마련하여 제급하되, 매는 이런 철에 데려가기 어러운 형편이니 가을 추수 뒤에 보낸다고 하여금 타이름이 어떠할지.

후록.

도주가 구청한 말. 본도에 명하여 인근 고을의 말이 있는 곳에400 알려 무역을 허락할 것.

꾀꼬리〔鶯〕는 이전의 구청으로 말미암아 본도에서 이미 분정하여 바야흐로 들여줌.

노루〔獐子〕, 다람쥐〔栗鼠〕, 토끼〔兎子〕, 이상 본도에서 멱급.

정관구청

마서(馬書) 1부, 문갑, 금은전(金銀箭), 이상 방색.

주역(周易) 1부, 화연(花硯), 호육(虎肉), 호안(虎眼), 호간(虎肝), 호담(虎膽), 마성(馬省), 준응(俊鷹) 1연, 우황(牛黃), 웅담(熊膽), 이상 본도에서 제급

부사구청

『황화집(皇華集)』 1부, 방색.

진묵(眞墨), 대화연(大花硯),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우황(牛黃), 택

사(澤瀉). 이상 본도에서 제급.
신발〔履〕, 당초 가져온 당혜〔鞋〕를 들여 줌.
상인삼(上人蔘), 가져온 예단 가운데서 제하여 들여 줌.
황모필(黃毛筆) 3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숙지황(熟地黃) 2근, 석린(石鱗) 10근, 이상 황해도에서 제급

등지승의 구청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해사에서 값을 주어 의사(醫司)에서 사들여서 보냄.
호경골(虎脛骨), 호두골(虎頭骨), 호간(虎肝), 호육(虎肉), 황기(黃芪), 당귀(當歸), 대황(大黃), 천궁(川芎), 백출(白朮), 황금(黃芩), 방풍(防風), 이상 본도에서 제급
지모(知母) 2근, 백렴(白斂) 2근, 대석린(大石鱗) 10근, 이상 황해도에서 제급.
매〔鷹子〕 1연, 강원도에서 제급.
자석영(紫石榮), 방색.

봉진압물 구청

황모필(黃毛筆) 2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진묵(眞墨), 백지(白紙), 마성(馬省), 백작약(白芍藥), 이상 본도에서 제급.
숙지황(熟地黃) 2근, 황해도에서 제급.
준응(俊鷹), 방색

동부승지 신 이만(李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술(1646) 정월 초8일

동래부사 황호의 장계 내용. 을유조 평의진(平義眞) 송사 정관 평성구(平成久)가 돌아 들어갈 원 기한이 이번 정월 초2일인데, 상선연을 세전(歲前)에 베풀겠다는 뜻으로 역관 장위민 등을 시켜 기일에 앞서 타일렀더니, 답하기를 '전일에 구청한 인삼 일로 그 결말을 기다려 돌아 들어가고, 늦거나 빠르거나 간에 원 기한은 헤아리지 않고 반드시 계문(啓聞)하여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하거늘,
신이 또 장위민을 시켜 타이르기를, '이 배의 송사(送使)는 해마다 나오는데 이 일의 결말이 조만간에 있다 하더라도 너는 기한을 넘겨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속히 기한 전에 잔치를 받으라'고 재삼 왕복하였는데, 동 평성구가 더욱 그

독기를 부려 시종 듣지 않았음.

해조에서 인삼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계하(啓下)한 이문(移文)이 12월 29일에 비로소 도부하였거늘, 신이 또 '조정에서 10냥의 인삼에 대하여 아끼는 바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조에 없는 일이기에 길을 트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고 속히 잔치를 받고 돌아 들어가라'고 여러가지로 타일렀더니,

평성구가 답하기를 '이른바 약조라는 것은 곧 접대하는 등의 일이니 구청잡물은 다른 배에도 종전에 역시 원래 정해진 약조가 없으며, 인삼은 약재에 소용되는 데 불과하고 조선의 토산물이기 때문에 여러 배의 송사들이 구청하여 지급을 허락받았는데, 홀로 저희 배만 허락하지 않으니 명목과 지위는 일체인데 예절과 대우를 차별하니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이에 하소연하였고, 입을 열던 날 왜관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 아는데, 이런 미세한 일을 끝내 소청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섬 안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무용지물로 여길 것이니, 죽음이 있을 따름 결코 감히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조금도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며, 동 선박의 도주에게로 보내는 별폭에 부친 호피(虎皮)와 표피(豹皮) 각 한 장을 당초에 입급(入給)할 적에 털이 얇고 품질이 나쁘다고 말을 하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늘, 타일러 도로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호피와 표피를 역관 등에게 내어주면서 '저희 배에 지급한 물건이 다른 배만 못한데 이걸 가지고 가면 반드시 도주에게 죄를 얻겠기에 바꾸어 줄 것을 청한다' 하거늘,

역관을 시켜 답하게 하기를 '조정의 뜻이 예물을 아껴서가 아니라 체면을 보존하자는 뜻이거늘, 너희가 연소한 사람으로서 일의 체면을 모르고 이렇게 까지 하니 비록 도주로 하여금 묻게 하여도 필시 너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니, 이 기한 밖에 머무르든지 머무르지 않든지 너희 스스로 하고, 또한 별폭에 부치는 물건은 곧 조정에서 보내는 것이니 혹 조금 못한 물건이 있더라도 마땅히 받아가면 그만이지 네가 어찌 감히 이런 일을 벌이는가? 결코 들어줄 수 없다' 하였고, 또 바꿔 줄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 등이 이틀이나 버티며 십분 고집을 하였는데, 한결같이 거역하며 감히 화를 내었음. 기한 밖에 더 머무르면 그 폐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상이 매우 통분스러움. 저들이 도중에서는 권세있는 사람인데 교만하고 망녕됨이 이러하니 언어로서는 듣게 할 수 없는지라, 신이 조그마한 일개 차왜를 시종 타이르지 못하여 극히 황공스럽습니다.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따라 지휘해 주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당초 10냥의 인삼을 조정에서 아낀 바가 아니고 특별히 약조에 없는 것이라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화를 내며 기한 너머 더 머무른 뒤에 그 소청을 들어준다면 체

면이 손상되고 뒷날의 폐단이 무궁할 것이니 결코 들어줄 수 없으며,

연소하고 경망한 사람이 그 권세를 믿고서 더욱 그 독을 피우면서 끝내 들어가지 않는 것 또한 극히 난처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다시 상의하여 확정하게 하시되, 호피(虎皮)와 표피(豹皮)는 이미 받았다가 돌려보냄이 극히 통분하니, 동래부사로 하여금 십분 타일러 도로 들여주도록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3년(1646) 정월 초8일 좌부승지 신 정치화(鄭致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10냥의 인삼이 그리 크지 아니하나 화를 낸 다음에 그 소청을 들어주는 것은 체면에 손상될 뿐 아니라 후일에 우려될 만한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로되, 제 독기를 더욱 부려 진작 돌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심히 난처하나, 그가 이미 약재를 구청한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짐짓 따라주고 뒤에는 전례로 삼지 못하도록 엄한 말로 타이르게 하라는 뜻으로 행이(行移)함이 어떠할지. 우승지 신 여이재(呂爾載)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술(1646) 4월 17일

동래부사 황호가 성첩한 장계. 이달 초9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남두병(南斗柄)의 이문 내용. 병술조 세견 제1선 정관 1인, 선주 1인, 진상압물 1인, 반종 3인 및 제2선 제3선 제4선 정관 각 1인, 반종 각 1명 등에게 다례를 베풀었으며, 바친 서계 4통과 별폭 4통을 받아올려 보내었음.

제1선 정관이 『칠서강의(七書講義)』,『칠서직해(七書直解)』,『호경골(虎脛骨)』등의 물건을 작은 종이에 적어 보여주면서 말을 보내기를 '이것은 도주가 구하는 물건인데 달리 구할 길이 없기에 부득이 진달한다' 하거늘, 첨사가 답하기를, '이런 비상한 시국에 서적을 인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거니와, 이 뜻을 동래부에 통기할 계획이라'고 답하였기에 이문한다 하였음. 신이 어제 왜관에 갈 즈음에 평소 앓고 있는 풍현(風眩)의 증세가 다시 발작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기에, 부득이 전례에 의하여 부산첨사로 하여금 홀로 행하게 하였음.

제1선 정관이 말한 바 도주가 구청하는 호경골은 본도 순찰사에게 통보하여 구해줄 계획이거니와, 이른바 『칠서강의』, 『칠서직해』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여 어떤 책인지 알 수 없기에 역관 장위민 등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게 하였더니, 그들 역시 알지 못하고 다만 『삼략(三略)』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기에 신의 억측으로는 필시 『주해무경칠서(注解武經七書)』라고 생각되나 줄지 여부는 해조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시며, 동 서계 4통

과 별폭 4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제1선 정관이 구하는 『칠서강의(七書講義)』와 『칠서직해(七書直解)』라고 하는 것은 일찌기 들어보지 못한 책이거니와 동래부사 황호가 이것이 필시 『주해무경칠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간행하였으니 본도에서 구해주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이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이시해(李時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술(1646) 6월 17일

동래부사 황호의 **장계**. 이달 초6일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한 척이 물마루에 나온다고 각처 봉군(烽軍)들이 진고(進告)하였음. 술시(戌時)에 도부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 아침에 분간되지 않는 왜선 한 척이 노인(路引)[285]을 가지고 나왔거늘 인솔하여 수책(水柵) 밖에 정박하여 지키고 있다고 초탐장(哨探將)이 치보하기에, 즉시 훈도 장위민(張偉敏)과 별차 이시길(李時吉)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병술조 세견 제7선의 격왜(格倭) 15명이 겸대선(兼帶船) 조로 받은 잡물을 싣고 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며, 지난 4월분에 죽은 도주(島主) 모친의 대관(代官) 차지의 물건을 조사할 차로 육랑조(六郎助)라고 하는 이름의 두왜(頭倭) 1인이 함께 타고 나왔다 하기에 일본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답하기를 '이전 그대로이고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지난번에 들여보낸 표왜(漂倭) 등은 지난 5월분에 서계(書契)를 고쳐 지어 들어갔다가 즉시 에도〔江戶〕로 전송(轉送)하였다'고 함.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신이 마침 부특송(副特送)의 상선연을 베푸는 일로 바야흐로 관에 도착하였더니 상항의 두왜 육랑조가 신에게 말을 보내어 이르기를 '도주는 지금 에도에 있는데, 대관(大官) 집정(執政)의 요구로 나귀를 무역하고자 하였다'고 하거늘,

신이 장위민 등으로 하여금 타이르기를 '나귀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혹 있더라도 심히 희귀할 뿐 아니라, 전에 없던 일을 새로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육랑조가 답하기를 '병인년 간에 일찌기 진달하여 무역해 갔으니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재삼 간청하는데, 무역의 허락 여부를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지휘하게 하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본조에서 난리 전의

285) 노인(路引) : 관아에서 발행하던 여행권.

문적이 산실되어 병인년 간에 무역을 허락한 전례를 상세히 알기가 어려운데, 나귀는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나 얻기 어렵지는 않음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으니 반드시 무역하여 가려고 한다면 방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이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순치 3년(1646) 6월 17일 행좌승지 신 남선(南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술(1646) 11월 14일

동래부사 장계 및 객사(客使)가 보낸 구청의 각양 약재 목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삼가 동래부사 민응협(閔應協)이 등서(謄書)하여 보낸 귤성세(橘成稅)의 구청물목을 보니 모두가 약명(藥名)인데, 약재를 구하려고 하는 것과는 견줄 바가 아니어서 혹은 그 열매를 구하고 혹은 그 뿌리를 구하는데, 당재(唐材)는 결코 부응할 형편이 아니거니와, 기타 향재(鄕材)는 본도 소산으로서 쉬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거늘, 우선 약간 종을 찾아주어서 그 바람을 색책하고, 얻기 어려운 물건은 사실대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되, 노랑꾀꼬리는 반드시 4월 뒤에 나오기에 지금은 얻을 길이 없으니, 그가 만약 꼭 얻고자 하거나 또는 추가로 보내주기를 청하면 그 산출되는 곳을 찾아 부응하라는 뜻으로 말을 보내어도 무방하니, 이런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술(1646) 11월 1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이 달 12일 병술조 특송 제1선의 정관 1인, 선주 2인, 시봉 1인, 반종 7명 등에게 노차연(路次宴)을 베풀었는데, 의진(義眞) 송사선의 정관 평성자(平成滋)가 신에게 말하기를, '다른 송사의 정관에게는 구청 인삼 10냥을 전례로 지급하는데 저는 도주의 일자(一子) 송사 정관인데도 유독 10냥의 인삼을 주지 않았고, 지난 해에 평성구(平成久)가 나왔을 때 동래부사에게 힘써 변론하여 재삼 치계한 뒤에 비로소 지급 허락을 하였으니, 얻어도 얻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인지라, 광채가 없음이 어떻겠는가. 이번에는 좋은 말로 치계하여 수량 대로 쾌히 허락하고, 회답 서계와 아울러 속히 내려보내면, 원래 기한은 비록 다음달 13일이지만 도주의 닛꼬오산〔日光山〕 행차가 멀지 않으니, 이 달 20일 사이에 기일에 앞서 들어갈 것이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10냥의 인삼은 관계되는 바가 있지 않으나 특별히 약조에 없기 때문에

조정에서 어려워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평성구가 약용으로 재삼 구청하였으므로 조정에서 특별히 소원을 허락하였으나, 이는 한 때 억지로 따라준 것일 뿐 결코 전례로 인용해서는 안되며, 감히 장계로 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 치계하더라도 윤허할 리가 만무하다'고 하였는데, 성자(成滋)가 말하기를 '무릇 여러 송사(送使) 일행에게 별폭 외에는 전혀 지급하는 것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같은 송사인데도 다른 데는 모두 증급(贈給)하면서 유독 우리 일행에게는 다름이 있으니, 물건이야 사소하지만 그 유감이 어떻겠는가? 곡진히 치계하여 기어코 허락을 받아서 이달 안으로 회선(回船)하여 돌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누누히 말하여 마지않는데, 낮에 말을 하여 해가 지도록 그치지 않았음. 조정에서 방색하는 뜻을 시종 입이 아프도록 타일렀으나 한결같이 간절하게 애걸하므로, 만약 지금 계문하지 않다가 지난 해에 평성구처럼 기한을 넘겨 가지 않은 연후에 허락한다면 다만 광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일의 체면에 손상이 되겠기로 연유를 치계하오니,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품처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지난 해에 평성구가 나왔을 적에도 10냥의 인삼으로 인하여 기한 밖에 더 머물러서 체면을 손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본조에서 청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라 하였더니,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그가 이미 약용으로 구청한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짐짓 억지로 따라 준 뒤 전례로 삼지 말라 하여 계하하였기로, 금년에는 마련하지 않았음.

만약 지난해의 예를 인용하거든 엄한 말로 방색한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행회하였는데, 이제 민응협의 치계를 보니 평성자의 큰 욕심이 과연 인삼을 얻는 한가지에 달려 있어서 누누이 말하여 그치지 않고 한결같이 간절히 애걸한다 하니, 이는 전에 정한 정식(定式) 밖에 있는 일이고, 해마다 법을 굽혀 따라주어서 별례(別例)로 제급하는 것은 해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오니, 비변사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치하게 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정언황(丁彦璜)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만약 이후의 일이 염려된다면 한개의 물건도 가볍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거니와, 그의 욕심이 과연 인삼을 얻자는 한가지 일에 있고, 10냥의 인삼은 그 수량이 많지 않으며, 더 머무는 폐단은 도리어 적지 아니한데, 이 한가지 일로 말미암아 먼 곳 사람의 바램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마도 합당하지 아니한 듯하니 짐짓 약용이라 말하여 지난해의 예대로 제급하는 뜻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이원진(李元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정월 12일

동래부사 민응협(閔應協)의 장계 내용. 이달 초6일에 도부한 부산첨사 남두병(南斗柄)의 치통 내용. 병술조 특송 제1선 정관 평성흥(平成興)이 짐을 먼저 운반할 차로 그의 수목선(水木船) 한척에 격왜(格倭) 10명을 당일 오시에 발선(發船)하여 들어갔는 바 치통한다 하였음.

전에 도부한 예조의 관문 내용에는 해당 가라(加羅)[286] 숫나귀 한필을 내려 보내니 왜인에게 들여보낸 뒤에 장계를 올리도록 하라는 관문이 있었기에, 나귀가 내려온 즉시 역관 등으로 하여금 타일러 들여주게 하였더니, 공목(公木) 3동 10필로 절가(折價)한 뒤 동 나귀를 성흥(成興)의 짐을 싣는 배에 싣고 갔음. 당초 내려보낼 적에 해조에서 만약 이미 값을 주어 사서 보냈다면 다시 품처(稟處)해야 할 일이기에 해조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시도록. 동일 병술조 특송 제1선 정관 1인, 압물 2인, 시봉 1인, 반종 7명 등의 상선연을 행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얼마 전의 나귀는 당초 호조에서 마련하여 보내었는데, 동 나귀값의 가목(價木)[287]을 호조에 명하여 구처하게 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안헌징(安獻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정월 25일

동래부사 민응협(閔應協)의 장계 내용. 이달 16일 부산첨사 남두병(南斗柄)의 치통 내용. 각처 봉군 등의 진고(進告)에 근거하여 당일 왜선 4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 하거늘, 인솔하여 수책(水柵) 밖에 부박하여 지키면서 치보한다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장위민(張偉敏)과 별차 이시길(李時吉)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는데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 이형남(李亨男)·한상국(韓相國)이 타고 온 배로서 폐 없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함. 제2척은 병술조 부특송선 정관 평성전(平成傳), 부관 평성증(平成增), 도선주 등성원(藤成元), 진상압물 1인, 시봉 2인, 반종 4명, 격왜 40명, 제3척은 이선주(二船主) 평성우(平成友), 유선주(留船主) 1인, 사복압물(私卜押物)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제4척은 수목선 격왜 20명 등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친다 함.

---

286) 가라(加羅) : 털빛이 검은 것.
287) 가목(價木) : 값에 해당하는 포목의 양.

제5척은 동년조 특송 제1선 정관 평성흥(平成興)이 짐을 먼저 운반하기 위해 그의 2호선 한척 격왜 18명이 지난해 12월 12일에 들어갔다가 동선 격왜들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돌와오면서, 노인 1통을 가지고 납입하였다고 하면서 돌아와 말하였고, 노인 1통을 보내고, 치통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함. 바다 건너 갔던 역관 이형남 등이 도중에서 문답한 사연의 수본을 신에게 보내었는데, 치계가 급하여 미처 등서하지 못하였기로 해조에 올려보내오며, 훈도 장위민이 사정을 묻고 돌아와 말한 내용에, 도주가 마상재(馬上才)의 말을 간절히 구하는데 잘 달리고 잘 달리면서 성질이 길들여진 것이면 값의 고하를 불문하겠다고 하는데,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도록. 상항의 돌아온 배의 노인 1통은 해조로 올려 보내며, 부특송의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받아서 올려보낼 것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형남 등의 수본 내 사연은 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려 다시 더 상세히 문답한 사정을 물어서 품처함이 옳을 듯하고, 약재는 일찌기 구하는 것을 본도로 하여금 향재를 구하여 주라는 일로 해조에서 계하하여 감사에게 분부하여 넉넉히 더 마련하여 매몰하지 않게 하고, 노랑꾀꼬리는 곧 여름에 비로소 나오는 물건이니 철을 기다려 구해줌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각처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4년(1647) 정월 23일 동부승지 신 채유후(蔡裕後) 차지로 입계하여 윤허함.

정해(1647) 정월 27일

예조단자. 동래부사의 장계에 대마도 도주가 구하는 마상재(馬上才)[288]에 가합한 말을 무역해 보내는 일로 인하여 비변사에서 복계하였는데, 전례대로 사복시에게 명하여 별도로 이마(理馬)를 정하고 또한 경과하는 각관에 명하여 특별히 먹여서 폐 없이 호송하라고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정해(1647) 4월 18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이달 13일 왜선 3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훈도 김근행과 별차 이시길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

288) 마상재(馬上才) : 말을 타고 여러가지 기능을 발휘하는 무예의 일종.

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제1척은 차왜 평성행(平成幸)이 타고온 배로서 인솔 5명과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서수좌(恕首座)가 타고온 배인데 인솔 5명과 격왜 40명이며, 제3척은 정해조 세견 제2선 정관 등성우(藤成友), 반종 1명, 격왜 40명 등인데 서계를 가지고 나왔음.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도주가 이미 배와 격군(格軍)을 다스리고 동무(東武)로 가는 걸음을 하려고 조선의 서계를 고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흑백이 없어 도중의 상하가 모두들 마음을 졸이고 있기에, 이런 연고로 예조 및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니와, 지난 달 23일에 돌아간 소선(小船)에서 등지승(藤智繩)의 글을 얻어 본즉, '판사(判事) 중 두세 사람이 속히 내려오는 일 및 조정에서 청국(淸國)에 기별하는 서계를 만들어 보내는 일을 일찌기 이미 치계하여 오래지 않아 내려올 것이라 하였거늘 이미 내려 왔으리라 여겼는데 지난 이달 초2일에 부중에서 출발하여 와니우라〔鰐浦〕에 이르러 바람이 불순하여 지금 비로소 도착하였는데 아직 흑백도 없고 판사들도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연고인지?'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지승(智繩)이 와서 말하기를 청국의 기별에 대해 조정에서 서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되, 도주의 서계가 있은 연후에 그 답서를 보낼 따름이지 원래 우리가 먼저 서계를 보내는 규례는 없으며, 판사 등이 내려오는 일은 일찌기 치계하였지만 전례가 공등(公等)이 나오면 서울에서 반드시 접위관이 내려오고 그 때에 데리고 올 수 있거니와, 짐짓 공 등이 소지한 서계를 내어 보이라'고 하였더니,

두 왜인이 답하기를 '판사들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연소하고 생소한 자들로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나이가 들고 피차간의 사정에 익숙한 자가 급급히 내려오라고 즉시 동래영감에게 고하여 다시금 치계하되, 종전에는 이런 긴급한 일에는 장계가 오고가는 데 팔 구일의 날짜에 불과하더니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느린가? 다시는 심상하게 여기지 말며, 서계는 반드시 판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처치하라고 도주가 분부하였으므로 먼저 내어보일 수가 없는데, 서계 중의 사연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거늘, 서계를 열어 볼 수 없어서 거기에 사용한 말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도주가 친히 봉하여 표를 하고 주었기에 저희들도 상세히 모른다'고 하였음.

세견 제2선에는 격왜가 아닌 듯한 자 두 사람이 함께 타고 왔거늘 몰래 관에 머무는 왜인에게 탐지하였더니 이르기를 한 사람은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나왔으며, 한 사람은 향약 재료를 무역하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 또렷이 알지 못하니 전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평성행(平成幸) 등은 이런 등의 말은 발

설하지 않았음. 동 제2선의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한 일로 치통하였음.

역관이 먼저 사정을 묻는 것은 곧 그 나온 연유와 주간할 일이 무엇인지 묻기 위함인데, 저들이 답을 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조용히 수작하면서 그 정형을 살펴보고 신에게 말을 한 연후에 낱낱이 거론하여 계문할 것이로되, 이번에 이 두 왜인이 나와서는 그 주간할 일을 전혀 발설하지 않고, 서계 또한 내어보이지 않고 반드시 익숙한 역관이 내려오도록 기다린다 하기로, 접위관이 도착할 곳으로 치통하여 급급히 달려오도록 하시오며, 세견 제2선 서계와 별폭은 다례일에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임.

전일에 내려보낸 마상재의 말은 왜인들이 재차 시재(試才)하고서는 이르기를 '이 말이 형색은 비록 좋으나 도주가 구하는 것은 마상재의 말인데, 이 말은 힘이 강건한 데 못미치고 재능은 치달리는 데 익숙하지 못하니 외모를 어디다 쓰겠는가? 고생스레 멀리 보내온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지만 형편으로는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강건하고 잘 달리며 마상재에 잘 맞는 말을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잘 계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거늘, 오래도록 머물러 먹이면서 역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타이르고 이런 말은 다시는 얻기 어렵다는 뜻을 누누히 설명하였으나 끝내 사려고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하여 도로 올려보내오니, 달리 내려보낼 일은 없다고 한마디 한 뒤에 다시는 발설하지 말고, 혹 다시 간청하는 일이 있으면 추후에 계문할 계획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평·서 두 왜인이 지금 비록 나왔으나 소지한 서계를 아직 내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이 주간할 일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고, 전일에 도주가 구하는 말을 내려보냈는데 마상재에 적합하지 않다고 끝내 매입하려 들지 않아서 도로 올려보낸다고 하였으니 차후로 다시 다른 말을 요구하여 시종 마지않을 것이니, 그들의 청에 부응해야 할 듯하니, 임시에 갖추어 보내는 것은 형편이 쉽지 않으니 해당 관장하는 곳으로 하여금 미리 구해놓도록 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지금은 아직 두라고 하심.

정해(1647) 5월 초9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이달 초2일 정해조 세견 제1선 정관 1인, 선주 1인, 압물 1인, 반종 3명 등이 진상 숙배한 뒤 하선연을 전례대로 베풀었으며, 동년조 세견 제2선 정관 1인, 반종 1명 등도 진상 숙배한 뒤 하선연을 또

한 동일에 베풀었음.

전일에 해조에서 내려보낸 마상재의 말을 끝내 사들이려고 하지 않아 부득이 이미 도로 올려보내고, 다른 말을 내려보내는 일은 한번 말한 뒤로 다시 발설하지 않고, 만약 혹 다시 간절하게 구청한다면 추후에 치계할 뜻을 전에 이미 계문하였는데, 어제 연향할 때 부특송이 또 이 일을 제기하여 신에게 말을 보내기를 '저희 일행 중에 말을 잘 달리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에 진달한 마상재 말을 반드시 강건하고 잘 달려서 마상재에 합당한 것을 속히 내려보내도록 다시 치계해 달라'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지난번에 내려보낸 말은 극진히 간택한 것인데 너희들이 마상재에 모자란다고 사지 않았는데, 또 계품하는 것은 극히 번거로운 일일 뿐 아니라, 그 말보다 더 나은 것은 실로 얻기 어렵고, 그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얻어도 소용이 없다. 진실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는 서로 매매하는 일이니 말 주인으로서도 꺼리지 않을 터인데 내가 어찌 계품하지 않겠으며, 해당 관서에서 어찌 구해보내지 않겠느냐?'하고 역관들로 하여금 이런 뜻으로 말을 만들어 방색하게 하였는데, '살 수가 없다면 이른바 잘 달리는 것으로 떨어져서 기다리겠다'고 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마상재의 말을 극진히 간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왜인들이 본디 말을 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도리어 말이 못났다고 하니, 이 후로는 비록 열번 간택하여도 왜인들이 달리는 데 합당할 것이 없을 듯하니, 이렇게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면, 저들이 혹 알아들을 것이지만, 다만 왜인의 성품이 고집을 좋아하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다른 말을 택하여 보내어 교린의 도리를 후하게 함이 합당하다고 행이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채유후(蔡裕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5월 12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이달 초6일 병술조 부특송 정관 1인, 부관 1인, 선주 3인, 압물 2인, 시봉 2인, 반종 7명 등에게 전례대로 별연(別宴)을 베풀었는데, 파할 즈음에 정관이 또 마상재(馬上才) 말에 대하여 제기하거늘, 신이 얻기가 쉽지 않다고 말을 만들어 답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나이의 노소나 형색의 좋고 좋지 않음은 구애하지 않고, 단지 힘이 있고 잘 달려서 마상재에 합당한 말인데, 온 나라 안에 어찌 이런 말 몇필이 없다고 내려보낼 수 없는지? 저희가 돌아갈 기한이 보름 쯤인데 그 전에 미

처 내려오지 않는다면 두 선주가 평소 말을 잘 보는 지라 형편상 이 때문에 머물러 기다려야 할 터이니, 이 뜻을 다시 치계하여 달라'고 간절이 요청하여 마지않으니, 해당 관로 하여금 품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앞서 마상재에 합당한 말을 가려 보내는 일을 전에 장계로 인하여 이미 계하하였는데, 이제 이 장계 내용에는 나이의 노소와 형색의 좋고 좋지 않고는 구애하지 않고 단지 잘 달리며 마상재에 적합한 말을 원한다 하니 다시 해사에 명하여 장계대로 급급히 가려 보내도록 이문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채유후(蔡裕後)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7월 11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이달 초4일 도부한 부산첨사 허동립(許東岦)의 치통 내용. 왜관 조성을 위하여 감역왜(監役倭) 등이 타고 나온 배 한척의 동 감역왜(監役倭) 1인, 대목수왜(大木手倭) 15명, 소목수왜(小木手倭) 36명, 격왜 10명, 병술조 만쇼오잉 송사선〔萬松院送使船〕 정관 귤성뢰(橘成賴)가 탄 배 한척의 도선주 1인, 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왜관에 머무르고 있는 대관왜(代官倭) 등의 짐을 실어 운반하기 위해 나온 병술조 세견 제12선 한 척의 격왜 20명, 도합 3척이 당일 발선하여 돌아 들어갔으며, 성조도차검왜(成造都差檢倭) 2인, 감역왜 1인, 종왜(從倭) 6명, 대목수왜 5명, 소목수왜 13명 등은 도중의 회보를 기다려 돌아가려고 왜관 가운데 떨어져 머물고 있음. 같은 날 정해조 세견 제1선 정관 1인, 선주 1인, 압물 1인, 반종 3명 및 동 년조 세견 제2선 정관 1인, 반종 1명 등에게 상선연을 베풀었음.

방금 접한 훈도 김근행(金謹行)과 별차 윤제현(尹悌顯)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이번에 내려보낸 마상재(馬上才) 말을 십여일 동안 머물러 먹였는데 전일에 떨어져 머무르던 이선주(二船主)가 타 보고는 이르기를 '이 말은 나이가 많고 재주가 둔하며 곧장 함부로 치달으니 도리어 전일에 내려보낸 말보다 못하여, 결코 사들일 수 없다'고 하거늘 저희들이 백반으로 타일렀으나 왜인들이 이르기를, '조선국에 마상재의 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평소에 잘 아는 바인데, 온 나라 안에 어찌 잘 달리는 말 한두 필이 없다고 매양 쓰지 못할 말을 내려보내어 끝내 애만 쓰고 무익하게 돌아가도록 하는가? 저희가 나올 때가 정월 16일이었는데 이렇게 괴롭게 머무른 지가 벌써 반년이나 되어 가을이 이미 닥쳤는데, 돌아갈 생각이 더욱 간절하며 이 사이에 민망하고 절박한

꼴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하물며 이는 억지로 구청하는 것에 비할 것이 아니고, 본디 값을 주고 무역해 가려는 것인데, 이렇게 거듭 어렵게 하는 것은 왜냐? 이는 짐승인데도 오히려 이러하니, 양국이 서로 두텁게 지내자는 뜻을 어디서 보고 믿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칭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이 뜻을 동래영감 앞에 갖추어 진술하여, 나이 어리면서 강건하고 굳세어 마상재에 가장 좋은 것 두 필을 급급히 내려 보내도록 다시 치계하여, 저희가 다시 가을 겨울을 지내지 않게 해 달라' 고 하여 수본을 올린다고 하였음.

신이 생각건대 매양 물리는 병폐 때문에 어제 왜관에 갔을 때 역관들을 불러 타이르게 하였더니, 이 말이 이전의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빈말이 아니어서 왜인들이 한번 타고 달려본 뒤로는 즉시 물리치며 자못 무어라고 하였는데 무익한 줄 알면서 억지로 변론하면 나무라고 모욕하는 말이 반드시 나올 형편이라 하는데, 당초 조정에서 이미 구해주기로 허락하고는 이제 와서 색책하는 것도 어려울 듯하기로, 물린 것은 도로 올려보내오니, 유사(攸司)에 명하시여 품지(稟旨)하여 처치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마상재에 합당한 말을 가려서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왜인들이 말을 다룰 줄 몰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먼 길에 내려보낸 뒤 매양 점퇴(點退)하기에 이제 비록 다른 말을 다시 가려 내려보내더라도 저들이 순순히 받을 지는 또한 확신할 수 없으니, 전례에 근거하여 방색함이 마땅할 것이로되, 다만 왜인이 이 일로 인하여 왜관에 머문 지 이미 반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방색하면 먼 곳 사람의 마음을 잃을 듯하므로, 사복시(司僕寺) 및 평시서(平市署)에 명하여 달리 적합한 말을 급급히 다시 골라 찾아보내어 물리지 말라고 타이르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정유성(鄭維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7월 13일

예조단자 내용, 왜인이 구하는 마상재에 적합한 말을 해사에서 이미 마련하여 전례대로 사복시에서 이마(理馬)를 차출하여 보내는 바, 경유하는 각 관에서 잘 먹이고, 끌고가는 사람을 차례차례 정하여서 폐 없이 호송하는 일로 해당 도의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정해(1647) 9월 16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금월 초5일에 나온 왜인의 각양 구무(求貿)하는 물건을 상세히 문답하여 그 실정을 안 연후에 추가로 치계할 것을 이미 계문하였는데, 방금 훈도 김근행의 수본을 접하니 그 내용에, 사기를 번조(燔造)하고 잡물을 무역하는 연유를 탐문하는 일로 관수(館守)를 만나보았는데, 서계 및 구청물건을 꺼내어 보여주거늘 등서(謄書)하여 올려보내며, 이떼이암〔以酊庵〕의 배에 함께 타고 나온 두왜(頭倭)와 삼좌위문(三左衛門)이라 칭하는 자는 별록(別錄)의 잡물을 무역하는 일로 나왔으며, 서계에 부친 등원성(藤原成)이라 칭하는 왜인은 사기(沙器) 번조(燔造)의 일로 일시에 나왔는데, 배가 떠나는 날 갑자기 기절하여 나오지 못했는데, 추후에 당연히 나올 것이고, 서계는 이미 배에 실었기로 그대로 가져왔다 하며, 도공(陶工)은 삼좌위문이 데리고 온 사람 중 두 사람과 이떼이암 선격(船格) 중에도 약간 사람이 있다 하기로, 감역(監役) 두왜(頭倭)가 비록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날씨가 점차 추워져 속히 일을 시작하도록 고달(告達)하여 시행하자고 함.

서계 및 구청 물목의 등서를 올려 보내는 일로 수본을 올린다 하였음. 두왜(頭倭)와 삼좌위문(三左衛門)이라 일컫는 자가 주간하는 구무물목(求貿物目)은 곧 에도〔江戶〕에서 구하는 것이라 하는데 물건 종류가 극히 많아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라 하는데, 이미 무역한다 하였으니 서로 매매하는 일에 불과하니 산출되는 물건이면 원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없는 것이면 말을 만들어 방색하는 것이 사리의 당연함이오며, 종전에 구무한 물건이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크고 많은 것은 없었으며, 또한 평(平)·서(恕) 등이 들어가기 전인지라, 생각건대 에도에서 구색하는 길이 넓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근일에 사퇴하는 뜻을 실증하려는 뜻인 듯하며,

약재 중에 당재(唐材)가 또한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일찌기 왜관에서 사들이던 것인데 도리어 우리에게 구색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과 교통하는지를 탐지해 보려는 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일체 거절함이 마땅할 것임. 기타 나머지 물건은 혹 서울에서 혹 본도에서 편의에 따라 무역을 허락하기 위하여 동 구청물목의 등서를 해조로 올려보내며, 사기(沙器)에 대하여는 나와서 굽는 것이 이미 근래의 사례가 되었기에 감역왜(監役倭)가 오고 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손익이 없으니 전례대로 구워만들도록 허락하며, 서계는 받아서 해조로 올려 보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이제 이 구무(求貿)하는 물건은 비록 교역하는 일이지만 물종(物種)이 극히 많아서 혹은 이름도 모르는 얻기 어려운 물건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에 소산이 없는 물건도 있으니 이치에 근

거하여 방색함이 마땅할 듯한데, 그 중에 토산으로서 얻기 쉬운 물건은 해당 관서 및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주어 무역을 허락하며, 양마(良馬) 및 네 가지 붓과 화초(畵綃) 등의 물건에 대하여는 또한 모두 그 소망을 부응하기는 어렵고, 말은 본도에 명하여 한 두필 편의대로 찾아 주되, 네 가지 붓과 화초는 각기 반으로 꺾어서 해당 관서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도록 후록(後錄)을 마련하였으니 후록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경상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후록

호담(虎膽) 등 본도 소산 약재 38종.
양마(良馬) 3필 중 한 두 필.
안장(鞍裝) 2부
비오리〔雨鴨〕 암수 각 2.
전응(鸇鷹) 2연, 색실을 목에 매어 놓은 것.
매 발에 매는 가죽 10장
다람쥐〔栗鼬〕 10마리
먹〔墨〕 100정
백연근(白蓮根) 10본
백목단(白牧丹) 10떨기
앵도나무 5
두루미〔野鶴〕 깃이 검고 흰 것. 이상 종(從), 본도에서 마련.
나귀 1필, 체구가 큰 것. 호조와 사복시와 평시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냄.
붓 400자루 중, 대모필(玳瑁筆) 100자루, 청서모당죽필(靑鼠毛唐竹筆) 100자루, 황모오죽필(黃毛烏竹筆) 100자루, 반죽필(斑竹筆) 100자루, 각기 반으로 꺾어 호조와 공조에 명하여 마련하게 함.
화초(畵綃) 10필 반으로 꺾어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련하게 함
당분지(唐粉紙) 1,000장. 호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함.
강활(羌活), 원청(芫靑), 이상 양 의사(醫司)에서 마련하게 함.
백렴(白蘞), 석린(石鱗) 큰 것 100근, 이상 황해도에서 마련하게 함.
육종용(肉蓯蓉)[289] 등 당재 11종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님.
운대자(芸薹子) 등 17종, 이름을 모르거나 얻기 어려운 물건임.

순치 4년(1647) 9월 16일 우부승지 강백년(姜栢年)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되 대모필 및 석린은 삼분지 이로 감하라고 하심.

289) 육종용(肉蓯蓉) : 열당과의 다년초 육종용의 육질 줄기. 보신(補腎) 익정(益精)의 약재로 사용한다.

정해 11월 23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이달 14일 정해조 도서를 받은 이떼이암〔以酊庵〕 송사 정관 1인, 반종 3명 등의 노차연(路次宴)을 전례대로 베풀었으며, 잔치를 파한 뒤에 관수(館守) 평성(平成)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두왜(頭倭)와 삼좌위문(三左衛門)이 나올 때의 도주 구청잡물을 장계로 올린 지 이미 오래 되었다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도주가 에도로 가는 걸음이 이미 박두하였으니 이 모두 일행이 가져가야 할 물건이니 수합하여 들여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하다고'고 한 지루한 이야기는 감히 번거롭게 모두 알리지 못하거니와, 그 중 '도내 각관에 분정한 마필을 보내온 수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모두 체구가 작고 품질이 못하며 재능 없는 말인지라, 결코 돌아가 도주에게 보이고 에도〔江戶〕에서 자랑하기에는 불가하므로 도착 즉시 물려 보내었으며, 조선의 준마는 모두 서울에 모여있다고 들었는데 이 뜻을 사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하여 체구가 크고 나이 적고 잘 걷는 말 3필을 얻어 도주가 에도에서 광채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간절히 애걸하였으며, 나귀도 당초에 체구가 크고 잘 걸으며 색깔이 푸른 것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이 내려보낸 나귀는 품질이 못하고 나이 들고 걸음과 재능도 또한 없으니, 색깔은 비록 청색 흑색이 아닐지라도 체구가 크고 잘 걷는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말과 나귀를 이렇게 점퇴(點退)하며 간절히 구하여 마지않는데, 이미 먼 곳 사람이 값에 맞춰 매매하기를 청하는 것이라 한결같이 막아버리는 것도 마음에 쓸쓸한 듯하니, 원하는 바에 합당한 잘 걷는 말 한 필과 나귀 한 필을 호조 및 사복시와 평시서로 하여금 알아보고 찾아서 속히 내려보내게 하며, 도내 각처에도 합당한 좋은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한 두 필을 가려 뽑아 들여주어서 그들의 소원을 충족하게 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강백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12월 초3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방금 도부한 부산첨사 한영(韓榮)의 치통 내용. 아침에 판명되지 않은 왜선 세 척이 나왔다는 진고(進告)에 의거하여 초탐장 개운포(開雲浦) 만호가 치보하기를 왜선 3척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와서

수책 밖에 부박(浮泊)하여 지키고 있다고 치보하였음. 즉시 훈도 김근행과 별차 윤제현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정해조 세견제8선 격왜 20명, 제2척은 동년조 세견제9선 격왜 18명 등이 겸대선 조로 받은 잡물을 싣고 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3척은 동년조 도서를 받은 이떼이암 송사 정관 귤성우(橘成友)가 짐을 먼저 운반하기 위해 그가 타고 나온 배 한 척의 격왜 15명이 지난 10월 초10일에 들어갔다가 동 선박의 격왜 등이 노인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동 선박에는 두왜(頭倭) 평성차(平成次)와 종인(從人) 3명이 동래로 보내는 서계 1통과 관수(館守)에게 보내는 봉행(奉行) 등의 사서 1통을 가지고 함께 타고 나왔거늘, 서계 및 각 선박의 노인을 가져와서 내었는데, 봉행 등의 사서(私書)에 이르기를 '지난번에 나간 무역차왜(貿易差倭)와 삼위문(三衛門)이 무역하는 물건을 아직도 찾아주지 아니하고, 그 중에 또 수량을 감한 물건이 있어서 극히 민망하니, 목록대로 일일이 속히 무역을 허락할 것을 동래 영감 전에 면달(面達)하며, 또한 서계에 부친 특별한 모양의 매〔鷹子〕는 곧 대군이 구하는 것이니 또한 각처에 분부하여 팔러 오도록 하며, 대군의 아들 약군(若君)이 이제 처음으로 글을 배우는데 조선 서책을 얻으려고 하므로 별지로 보내니, 이 또한 간곡하게 동래 영감 전에 진달하여 품질이 좋은 책자를 찾아 무역하여 보내도록 하되, 동 책명은 추후에 등서하여 내어 보낼 것이라' 고 하였으며,

일본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장서기(掌書記) 장로(長老)가 10월 초에 병이 나서 죽고 그 대신으로 백서당(栢書堂)이 차정(差定)되었는데, 아직 섬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어제 물마루에 도달하였을 때 홀연 역풍이 불어 이제 비로소 도착하였다'고 회언(回言)하였음. 서계 및 노인 3통은 받아 보낸다고 하였음. 전일에 나온 차왜(差倭)와 삼좌위문(三左衛門)이 구청한 물건 중 감한 물건은 조정에서 이미 확정하였기에 이제 다시 고칠 수 없다는 뜻을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할 계획이며, 특별한 모양의 매는 왜인의 평소 성품이 이상한 물건을 좋아하기에 이런 요청이 있는 것인데 만약 한 번 요구를 들어주면 뒤의 폐단이 염려되기에 역관 등으로 하여금 방색할 계획임.

약군(若君)에게 가르칠 서책은 별단(別單)으로 등서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며, 관수왜(館守倭)의 말에 전일에 요구한 말과 나귀가 가장 긴급하다고 누누히 말하여 마지않으니, 해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치하시기를. 노인 3통과 동래로 온 서계 1통 합 4통은 해조로 올려보내며, 같은 날 정해조 도서를 받은 평의진(平義眞) 송사선의 정관 1인, 반종 3명 등의 노차연을 전례대로 베풀었음. 이런 연유를 치계함.

왜인의 구무별단(求貿別單)

『오경대전(五經大全)』 1질, 『사서대전(四書大全)』 2질. 『전한서(前漢書)』 1질. 『후한서(後漢書)』 1질. 『칠서흥의(七書興義)』 1질. 『사기(史記)』 2질 등의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전일에 구무(求貿)한 가운데 감한 물건은 이미 확정하였으니 지금 그대로 부응하기 어려우며, 특별한 모양의 매는 만약 한결같이 요구대로 응한다면 뒷날의 폐단이 염려된다 한 것은 참으로 소견이 있으니 장계한 대로 말을 만들어 타이르고, 별단의 서책도 방색해야 마땅할 듯하나, 이미 약군(若君)이 배울 것이라 하였으니 무역을 허락하지 아니함은 또한 매몰찰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라고 함이 합당함. 좋은 말과 나귀 각 한 필은 전월 29일에 이미 서울에서 발송하였고 좋은 말 두 필은 본도에서 찾아 주라는 일로 전에 이미 계하하여 행회하였으니, 이전대로 공사를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강백년(姜栢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해(1647) 12월 22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내용. 정해조 도서를 받은 이떼이암〔以酊庵〕 송사선의 원 기한이 이달 11일인데 정관 귤성우(橘成友)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상선연(上船宴)을 기한 내에 행할 수 없었는데, 동 정관이 이제 비로소 회복되었기에 그가 받을 잡물을 원래 기한 내에만 계급(計給)하고, 이달 15일에 동 선박의 정관 1인, 반종 3명 등의 상선연을 전례대로 행하고 연유를 치계하며, 전일에 나온 여삼좌위문(與三左衛門)의 구무 잡물 중 대모필을 3분지 2로 감하고, 오죽필(烏竹筆)과 당죽필(唐竹筆)·반죽필(斑竹筆)·화초(畵綃)도 반을 감하며, 석린은 단지 5분의 1만 보내어, 그의 소망에 차지 않는다고 말하여 마지않는데, 해조에서 이미 헤아려 감하여 행회한 것이기로 타일러 방색한 연유는 전에 이미 치계하였지만, 동 각색 붓과 화초와 석린 등의 물건은 모두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적에 인정(人情)으로 사용할 것이라서 숫자를 헤아려 알리고 값을 맞추어 사들이는 등 사정이 매우 긴박하고 절실하거늘, 이렇게까지 감손(減損)하니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짐짓 다른 곳에 두었다가, 본도에서 구입하는 약재와 말안장 등의 물건에 대한 일을 마치고 수합한 뒤에 일시에 들여줄 계획이나, 만일 수량이 적다고 일컬어 시종 받아가지 아니하고 혹 지체하여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지, 해조로 하여금 다시 확정하여 지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첨부하여 계하함. 준가(准價) 구무(求貿)하는 물건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받지 않고 더 머무르기까지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것은, 이웃나라와 교류하며 먼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혹 흠이 될까 염려되며, 이 계품(啓稟)의 사연을 보니 저쪽의 절박한 사정에서 나온 듯하며, 붓과 화초(畵綃) 역시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며, 석린(石鱗)은 당초 3분의 1로 해서(海西)에 분부하였는데, 해당 도에서 보낸 것이 또 그 수량을 감하여, 이제 이 장계에는 5분의 1이라 칭하였는 바, 마땅히 해도에 추론(推論)하여야 할 일이거니와, 상항(上項)의 오죽필·당죽필·반죽필·화초를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 주고, 대모필과 석린은 원 수량 중에서 절반으로 하여 아울러 더 준비하여 보내고, 동래부사로 하여금 임시로 형편을 보아 보충해 주도록 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강백년(姜栢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하되, 대모필은 이전대로 확정하여 시행하라 하심.

무자(1648) 2월 17일

동래부사 민(閔)의 장계 내용. 전일에 나온 차왜(差倭) 여삼좌위문(與三左衛門)이 준마 1필을 더 얻어 둘어가서 에도로 가는 걸음에 맞추고자 한다고 매양 이야기를 하였는데, 도내의 각 고을에서 보내온 말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도착하면 점퇴하고, 이로 인하여 더 머무르면 그 폐가 적지 아니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올린 첨부 계목**. 준마를 끝내 방색하지 못하고, 도내에 합당한 말이 없다고 이렇게 더 머무는 것은 과연 염려할 일인지라 해조로 하여금 전례대로 사들여 보냄이 어떠할 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자(1648) 2월 20일

예조단자. 왜인이 구무(求貿)한 마필을 해당 관청에서 이미 마련하여 사복시에 명하여 이마(理馬)를 별도로 정하고, 또한 경과하는 각관에서 끌고 갈 사람을 차출하여 전례대로 각별히 먹여서 폐 없이 호송하는 일로 각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을 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무자(1648) 3월 28일

동래부사 민응협의 장계. 이달 22일 왜의 소선 1척, 두왜 평성차(平成次), 격왜 7명, 종왜(從倭) 3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김근행(金謹行)과 별차 윤제현(尹悌顯)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아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간절히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관수(館守)등에게로 보내는 도주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아니하기에 추가로 탐문할 계획이며, 노인 1통은 받았다고 돌아와 말하였음.

그 사정을 탐지하려고 역관들로 하여금 다시 탐문하게 하였더니, 방금 훈도 김근행과 별차 윤제현의 수본(手本)을 접하니 그 안에, 어제 나온 평성차(平成次)에게 다시 탐문하니 답하는 것이 어제와 꼭 같고, 평성춘(平成春)에게 가서 물으니 성춘이 관수(館守) 지승(智繩)을 불러 같이 앉아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이달 14일에 에도〔江戶〕에서 비선(飛船)이 나와서 대군의 아들 약군(若君)이 다음 달 초에 닛꼬오산〔日光山〕 이에야쓰〔家康〕의 사당에 들어가는데, 이때 소용되는 잡물을 구하여 보내라고 하여 왔는데, 그 물목 중에 가장 긴요한 것은 표피 30여 장이었다. 이것을 구무하려고 비선을 보내었는데, 이는 준비하여 기다리는 무역에 비할 바가 아니고 기한이 이미 임박하니 형편이 매우 걱정스럽다. 바라건대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서울에서 인편을 뽑아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인하여 말하기를 '지난 해에 나온 삼좌위(三左衛)의 구무(求貿) 물건 역시 이 때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아 더욱 극이 민망하니, 바라건대 목록대로 급급히 무역하도록 구하여 긴요하게 사용할 때에 맞추게 하여 준다면 피차간에 광채가 클 것이고, 만약 쓸 때에 맞추지 못하면 그냥 주더라고 굳이 기뻐할 바 없다. 또한 잘 길들여진 전응(鸇鷹) 두 세연을 또한 무역해 가려고 하는데, 이는 조선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도주가 절박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지난 겨울에 약간 연을 무역하여 주었으나 모두 산 매〔生鷹〕로 입급하였으므로, 에도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에 죽은 것이 아닌지, 만약 조선에서 잘 길든 것이 아니면 실로 쓸데가 없는 것이니, 여러 곳에서 널리 구하여 잘 길든 매 수삼 연을 급급히 무급하며,

서책도 역시 약군 전에 드릴 물건이므로 지난 해부터 구무하였는데, 이제 이미 해가 지났음에도 전혀 염려해주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서로 두텁게 지내는 뜻이냐' 하면서 구무물목(求貿物目)을 가져다가 다시 보여주기에,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는 구무물목 중에 조선에 없는 물건이니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고,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무역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그 있고 없는 것과 이미 무급한 물건을 상세히 지적하며 이야기하였

으며, 표피(豹皮)도 수량이 많은 물건은 무역할 수 없다는 뜻을 여러가지로 타이르니,

성춘이 말하기를 '조선에 없는 물건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거니와 있는 물건이나마 다시 더 주선하여 곧 찾아주며, 표피도 약군(若君)이 닛꼬오산에 갈 적에 전마(前馬)의 안장에 사용할 것인데, 만약 얻기 어렵다고 말하면 지난 해에 나오지 않은 각 송사선의 별폭에 부치는 표피를 내려보내 줄 것을 장계로 올리면 될 것이고, 전일에 이 별폭으로 보낸 표피가 도중(島中)에도 많이 있으나 모두 색깔이 바래졌기 때문에 반드시 털이 좋고 정결한 것을 얻어 쓸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성춘의 이야기 사이에 이른바 '에도에서 조선에 요구하는 물건을 도주가 힘을 다해 구하려고 부응하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한 계책이 아니라 실은 조선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피차간에 광채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의 스스로 자랑하는 이야기는 번거로와 다 진술하지 못함. 여삼좌위문(與三左衛門)이 구무한 물목 중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으로 아직 무급(貿給)하지 못한 것을 다시 열록(列錄)하여 주거늘 받아 올리는 일로 수본을 만든다고 하였음. 본도에서 무급(貿給)하는 물건은 순찰사에게 낱낱이 보고하였거니와, 구하는 표피는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지금 이 표피는 비록 양국 간에 환무(換貿)하는 일이나 30여 장이나 되니 모두 그 바라는 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거니와, 저들이 이미 에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칭하여 비선을 보내었으니 교린(交隣)하는 사이에 시종 방색하기도 어렵고, 지난 해에 나오지 않은 송사선의 별폭에 줄려고 하였던 표피는 특송선 3척 및 부특송선 1척에 각 3장과 도서를 받은 만쇼오잉〔萬松院〕 평언삼(平彦三) 두 배에 각기 한 장씩, 합하여 계산하면 14장이 지급할 물건인데, 이런 때에 먼저 주면 우리로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고 저들에게도 광채가 있을 듯하니, 마땅히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그 뜻을 살피도록 함이 마땅한 듯하며, 전일에 구한 서책 및 여삼좌위문의 구무물목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이미 본도와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일로 마련하여 계하하면 다시 의논할 사단이 없을 것이며, 잘 길들인 전응은 본도에서 편의대로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니 아울러 말을 만들어 타이르라는 일로 행이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자(1648) 윤3월 초5일

동래부사 민(閔)의 장계 내용.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역관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소선(小船)에는 두왜 평성구(平成久)와 종왜(從倭) 3명, 격왜 7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다른 일은 없고, 전일에 나온 두왜(頭倭)가 진정한 바 표피 등의 물건이 쓸 곳이 일각이 급하기에 재촉해서 무역해 가려는 일 및 봉행(奉行) 평성춘(平成春)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성춘에게 도주가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 도주가 구무하는 표피 30장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기로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그들이 원한 바 상년조의 나오지 않는 배의 별폭으로 지급할 표피 14장을 우선 증급하는 일로 이미 복계하여 윤허를 받아 해당 관서에 내려 이제 이미 마련하여 즉시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이문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그대로 윤허함.

무자(1648) 윤3월 14일

초6일에 성첩한 **접위관 정, 동래부사 민 의 장계** 내용. 수역(首譯)으로 하여금 평성춘과 문답하게 하였는데 공목(公木)을 끌어쓰는 일을 끝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소연 하는 말을 간절히 기원하는 뜻으로 중복하여 마지않았으며, 또 표피(豹皮)와 준마(駿馬)의 무역을 요구하는 등의 일을 계속하여 말하기를, '표피는 대군(大君)이 불시에 구하는 것으로 많게는 100장에 이르는데 다행히도 조정의 은덕에 힘입어 별폭으로 지급한 표피를 여러 해 저장해 둔 것이 근 70장이기로 30장을 더 준비하여 100장의 요구에 응하려고 하였는데 그 기한이 매우 급하여 성화같이 독촉을 받는데, 이런 등의 일은 종종 난감하고, 또한 마필은 반드시 나이가 적고 재주가 좋은 것을 해마다 에도에 바치기 때문에 종전에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으나 모두 대군이 타기에는 맞지 않았고, 이번에 무역한 것도 매우 나이가 많고 무용하여, 이미 왜관에 도착한 이후로 수역(首譯)의 말을 거듭 어기면서, 비록 이미 들여보냈더라도 물릴 수 없는 이치는 만무하니, 다시 준골(駿骨)을 가려서 속히 내려보내기 바란다'고 하거늘,

신 등이 답하기를 '표피는 오래잖아 올 것이나 말은 우리나라에 본디 좋은 말

이 없으니 이제 비록 치계하더라도 또한 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라고 한즉, 그가 말하기를 '전후로 보내준 말이 모두 본 주인이 팔려고 하는 물건이었으므로 좋은 말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였다. 만약 팔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말을 구한다면 좋은 말을 얻지 못할 걱정은 없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매사에 방색하는 것은 종전처럼 이웃나라 간에 우호하는 도리가 아닌 듯하고, 표피에 있어서는 구한 수가 많지 않은데 전에 14장을 보낸 것은 전일 세견선에 주려고 한 것이고, 그 외 16장은 그들의 소청에 의하여 무역을 허락한 것이며, 마필은 전일에 보낸 것이 끝내 점퇴를 당하면, 임시로 고쳐 마련하는 데 궁색할 염려가 없지 아니하니 미리 찾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니, 아울러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표피(豹皮)는 그 소청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마필(馬匹)은 찾아놓고 기다리라고 계하하였는데, 좀 전에 표피를 구무하겠다고 칭하면서 요구하는 말이 지극히 간절하여 해조로 하여금 그 중 쓸 만한 것을 골라 급급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하였으며, 말은 전에 보낸 마필이 가려서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이런 일이 있으면 운운하였기에 다시금 호조 및 사복시와 평시서로 하여금 나이 적고 합당한 말을 특별히 극진하게 골라 찾기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자(1648) 윤3월 25일

예조의 계목. 방금 도부한 **경상감사의 관문** 내용. 지난 해에 왜인이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 및 『사기(史記)』,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의 무역을 요청하였는데, 도내에 판본(板本)이 있는 것은 『통감(通鑑)』, 『주역(周易)』, 『서전(書傳)』, 『맹자(孟子)』 인지라, 그 때 이미 인출하여 매매를 허락하였으나, 그 나머지 서책은 얻기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차왜의 말이 '『사서오경』과 『전후한서』는 조선에 많이 있는 물건일 뿐 아니라, 서울 및 전남도(全南道)에도 반드시 판본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물건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으니 극도로 민망하다'고 하며 간청하는 뜻을 동래부사가 사유를 갖추어 첩보하였던 바,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이 만약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면 마땅히 편의에 따라 찾아 부응함으로써 그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실망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기에,『시전(詩傳)』과『중용(中庸)』·『대학(大學)』 등의 판본이 호남 각 고을에 반드시 남아 있는 곳이 있을 터이므로, 해인사 승려 등에게 명하여 인출해 와서 팔라고 하였거니와, 『예기(禮記)』와 『춘추(春秋)』, 『전후한서(前後漢書)』 등의 책판이 본디 있는지 없는지 또렷이 알 수가 없으니, 혹 서울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이런 서책은 백급(白給)에 견줄 것이 아니고, 값을 맞춰 사 갈 것이라 하며,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는 일본에도 반드시 보관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오늘 처음 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니, 만약 보지 못한 곳에 별로 어려운 형편이 아니면 상항의 서책을 속히 찾아 동래로 보내거나, 혹은 형편이 곤란하면 상세히 회이(回移)하여 막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관문이 있었음.

상항의 서책은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닌 듯한데 해를 지낸 뒤 지금에 와서 방색하면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를 잃은 듯하니, 『예기(禮記)』와 『춘추(春秋)』가 본도에 만약 판본이 없으면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호조 및 교서관(校書館)으로 하여금 값을 주어 찾아보내라고 하되, 전후한서는 서울에도 또한 매우 드문 것이라 찾아내기 어려울 형편이니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방색하라고 이문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자(1648) 4월 초9일

예조단자. 발군(撥軍)을 통해 내도한 **동래부사의 첩정(牒呈)** 내용. 차왜(差倭)가 말한 내용에 마필(馬匹)을 도중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루가 급하기에 속히 내려보내라는 일을 누누이 간청한다 하는데, 동 말을 급속히 내려보내어 무역하도록 허락하는 일을 예조에서 참작 조처하라는 일로 첩정하였음. 동 마필은 해당 관서에서 이미 마련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전례대로 사복시에 명하여 이마(理馬)를 특별히 차출하고, 또한 경과하는 각관에 명하여 끌고 갈 사람을 차출하여 차차로 각별히 먹여서 폐 없이 호송하라는 일로 이문(移文)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심.

기축(1649) 정월 14일

동래부사 노(盧)의 장계 내용. 왜의 소선(小船)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훈도 노기현(魯基賢)과 별차 김여례(金汝禮)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소선에는 두왜(頭倭) 1인, 격왜 1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사유를 탐문하니, 두왜의 말에 '도주가 에도에 있으면서 도중에 서찰을 보내어 말하기를, 대군이 구하는 원앙(鴛鴦)과 흰거위〔白鵝〕 및 기타 각색의 즐길만한 물건을 조정에서 구하여 급속히 들여보내라고 하여 차출되어 내도하였고, 유관왜(留館倭)와 대관왜(代官倭)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오로지 이를 위하여 나왔다'고 하거늘, 인하여 저쪽의 사정을 물었더니 에도와 도중은 전과 꼭 같은 모양으로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함. 동 노인 1통을 가져가 드린다"고 돌아와 말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하였음.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 "도중(島中)에서 뜻하지 않게 차왜(差倭)가 나왔거늘 그 나온 사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도주가 구청(求請)하는 일로 나왔다' 하며, 등지승(藤智繩)이 소인 등을 부르기에, 소인 등이 관에 가니 등왜(藤倭) 및 대관왜(代官倭) 등이 소인에게 이르기를, '대군(大君)이 근래에 호화로운 사치가 날로 심하여,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후원에 모아놓고 날마다 미녀와 서로 모여 구경하는데, 나라 안의 구경거리가 모자라 다른 나라의 물건을 가져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국에서 산출되는 살아 있 두루미〔野鶴〕, 살아 있는 흰 거위〔白鵝〕, 살아 있는 원앙(鴛鴦) 각 두 쌍과, 살아 있는 고슴도치〔蝟〕 10수 및 살아 있는 학알〔鶴卵〕 20개 등을 대군이 도주에게 구청하였기로, 도주가 부득이 하여 비선(飛船)으로 절박한 사정을 고하여 왔는데, 값의 고하는 논할 겨를이 없으니 급급히 찾아 주면 값은 조정에서 명하는 대로하겠다'고 하며,

'약재도 근래에 도중에는 모자라는데 대군이 급히 육종용(肉蓯蓉) 3근을 구하나, 얻을 길이 없어 절박하니, 동 육종용 3근을 또한 값을 매겨 내려 보내주시도록' 또한 간절히 이야기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함. 이른바 살아 있는 고슴도치〔活蝟〕는 밭 가운데 있는 부고충(負苽蟲)이라 하는 바, 수본으로 알림. 상항의 노인 1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지금 이 왜인이 구하는 두루미〔野鶴〕, 흰 거위〔白鵝〕, 원앙(鴛鴦), 고슴도치알〔蝟卵〕 등의 물건은, 혹 얻을 수도 있고 혹 얻기 어려운 것인데, 먼 곳 사람이 구하는 것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그 중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본도로 하여금 즉시 찾아 주어 아끼는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그 중에 얻기 어려운 것은 비록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겠는가? 동래부사로 하여금 그 얻을 수 없는 뜻을 분명하게 말하면, 비록 주지 않더라도 저들 역시 이를 한탄하지 않을 것이다. 육종용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이전부터 중국에서 무역하여 사용하였는데, 근래에는 중국 약재를 전혀 사올 수가 없고 의사(醫司)에 물어보아도 또한 떨어졌다고 하니,

역시 동래부사로 하여금 이 뜻을 말로 만들어 말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행이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임전(林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649) 7월 초7일

동래부사 노(盧)의 장계 내용. 이달 27일 왜선 3척이 나왔는데, 훈도 노기현(魯起賢)과 별차 김여례(金汝禮) 등이 사정을 묻고 돌아와 말한 내용. 제1척은 새 관수(館守) 평성리(平成里)가 서계를 가지고 나왔고, 제2척은 차왜 평성설(平成雪)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동 차왜가 말하기를 '남만의 야소종문(耶蘇宗門)의 무리가 아마도 필시 조선으로 표류하였을 것이니, 기어코 사로잡으려고 오로지 그것을 위해 나왔다'고 하며, 제3척은 차왜 평성구(平成久),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30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및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왜인은 '관백(關白)이 새로 화원(花苑)을 만들고 바야흐로 기화요초와 각색 구경할 만한 금수를 구하기 때문에 관백이 구하는 금수를 별지에 쓰고 도주가 또 차왜를 정하여, 또한 에도로부터 이를 위하여 나왔다'고 하며, 다례(茶禮)하는 날 서계를 올릴 때 다시 상세히 다 고달(告達)하겠다고 하였음. 상항의 서계 및 구청하는 금수를 기록한 별지는 모두 우선 등서하여 가져다 바친다고 돌아와 말하였음. 동 베껴서 바친 서계 등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치보함.

관수 및 차왜가 가져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받아 올릴 계획이며, 야소종문의 일은 연해 각관에다 기찰(譏察)하라는 뜻으로 타이를 계획임. 관백이 구하는 각종 금수 목록의 등서를 올려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처치하게 하시고, 상항의 차왜 등 서계 별폭도 등서하여 올리며, 동 차왜는 단지 이 일을 주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전례대로 본부에서 접대할지 또한 해조에 명하여 지휘하게 하라는 일로 장계와 서계, 별폭과 구청 별지를 올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야소종문의 무리를 사로잡은 등의 일로 비변사에 명하여 확정하여 시행하게 하되, 새 관수가 나오면 접대하는 전례는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사례를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며, 차왜 등이 에도에서 나왔으니, 본도 및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그들의 경중을 보아 객을 대접하는 도리를 잃지 말고, 또한 바야흐로 국휼(國恤)을 당하여 특별히 음식 잔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함이 마땅할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온 서계에 대한 회답 및 별록구청 등의 일은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거행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김익희(金益熙)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649) 7월 19일

동래부사 노가 14일 성첩한 장계 내용. 관백(關白)이 구하는 금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차왜 평성구(平成久)와 압물 1인, 반종 3명 및 차왜 평성설(平成雪)과 새 관수(館守) 등에 대한 다례의 잡물은 전례대로 건물(乾物)로 들여주었고, 예조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구청목록의 작은 종이 및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와 별폭 등을 감봉(監封)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

기축(1649) 7월 20일

차왜 평성구가 가지고 온 서계 및 별폭.

자색가죽〔紫色韋〕 10장. 매 1장 값 은 5전씩.
문지(紋紙) 1000편. 매 100편 값 은 8전씩.
시회중갑(蒔繪重匣) 2개 매 1개 값 은 1냥 5전씩.

구청물목

새매〔鷂〕 예닐곱 거(居)
개〔犬〕 10필
비둘기〔鳩〕 50
메추라기〔鶉〕 20
꾀꼬리〔鸎〕
천조(千鳥) 예닐곱
원앙(鴛鴦) 6 비상한 것. 풍치가 다른 것.
고슴도치〔蝟〕 30
구멍제비〔穴燕〕 50
담비〔貂〕 15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요구한 별단을 보니 그 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모두 얻거나 기르기 어려운 물건이니 전례에 의거하여 방색함이 마땅하되, 이미 관백이 구하는 것으로 차왜를 보내었으니 교린하는 사이에 또한 모조리 방색하기는 어려우니, 그 중에 얻을 수 있는 물건이면 본도의 산출되는 곳으로 하여금 편의대로 찾아주라 하고, 별단을 마련하였으니 이런 뜻으로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지어 답장을 만들게 하되, 회례하는 물건은 본가(本價)를 보고 참작하여 계목후록을 마련하니, 해당 관서 및 본도에 급급히 마련하라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구청물목

새매〔鷂〕 예닐곱
개 10
비둘기 50
메추리 20
꾀꼬리 10
원앙 6
고슴도치 30
구멍제비 50 이상. 본도로 하여금 편의대로 찾아 주라 할 것.
천조(千鳥), 예닐곱. 이는 이름을 몰라 찾아 줄 수 없음.
담비〔貂〕 15, 북방 소산이나 얻기가 매우 어려워 또한 찾아 줄 수 없음.

회례(回禮)

호피(虎皮) 1장
인삼(人蔘) 1근
백저포(白苧布) 5필
백면주(白綿紬) 5필
흑마포(黑麻布) 3필
백목면(白木棉) 24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이상은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낼 것.
사장부둔(四張付芚) 3부
화석(花席) 5닙
진묵(眞墨) 30홀. 이상은 본도에서 제급(題給).

평성구가 가져온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및 별폭.

동수수관(銅手水盥) 1개, 가격 은 1냥 5전.
동편구(銅片口) 1개. 가격 은 5전.
소면(素麵) 1갑, 가격 은 3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답할 초고를 이제 승문원에서 말을 만들어 지었는데, 두 곳의 회례(回禮)하는 물건은 본가를 보고 참작하여 계목후록을 마련하여으니, 해당 관서에 급급히 준비하라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동래 부산 희례, 각각

백면주(白綿紬) 3필
백저포(白苧布) 3필
백목면(白木綿) 5필

순치 6년(1649) 7월 20일 우부승지 신 유경집(柳景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축(1649) 8월 14일

동래부사 노(盧)가 초8일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훈도 노기현과 별차 김여례 등의 수본 내용, 대관왜 등의 말에 '이번 부특송선 2호가 돌아 올 적에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등이 저희에게 보낸 사서(私書)에 이르기를 도주(島主)가 에도에서 도중에 보낸 내용에 예단(禮單)으로 사용할 극품(極品) 인삼 100근, 생골(生骨) 1근, 성분(星糞) 5냥, 산 노루〔生獐〕 10수, 석린(石鱗) 50근 등이 있다' 하면서 구청물목을 내어 보여주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인삼은 장사꾼이 가져와서 무역하니 이것으로 족히 쓸 것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별도로 구청하며, 그 밖의 각종 물건도 또한 모두 얻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방색하였는데,

저들이 답하기를 '그렇지만 장사꾼이 파는 인삼은 모두 품질이 못하니, 극품의 약용 인삼 및 각종 물건을 팔도록 허락하면 가격대로〔准價〕 무역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간절하게 말하기로, 동 구청물목과 아울러 수본(手本)을 올린다고 하였음.

이미 구무(求貿)한다 하였으면 인삼은 장사꾼에게서 사들이는 것이 옳지, 조정에 장계로 알릴 일이 아니오며, 기타 생골(生骨), 성분(星糞), 산 노루〔生獐〕, 석린(石鱗) 등의 물건도 역시 상인에게 무역을 요구할 일이라고 역관 등을 시켜 재삼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였으나. 대관왜 등이 한결같이 간청하여 마지않기로, 역관 등의 수본 내의 사연을 부득이 계품하며, 구청물목의 등서(謄書)를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해조로 하여금 확정하여 지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첨부한 **예조의 계목**. 지금 이 구무하는 물건은 혹 얻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방색함이 마땅한 듯하나, 이미 에도에서 소용되는 것으로 도주가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며, 또한 준가(准價)로 상호간에 매매한다 하였으니 교린하는 사이에 모조리 방색하는 것도 불가하니,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해당

관서와 본도와 생산되는 곳으로 하여금 마련하여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여 먼 곳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행이함이 어떠할지.

구무물목(求貿物目)

인삼(人蔘), 100근 중 절반을 해사로 하여금 극진히 골라 마련하여 내려보낼 것.

생골(生骨), 1근 중 절반을 양 의사(醫司)로 하여금 준비하여 내려보내게 할 것

성분(星糞),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이니 무역을 허락하지 못함.

산 노루〔生獐〕 10마리. 본도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할 것.

석린(石鱗), 50근 중 30근을 황해도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할 것.

우승지 신 이원진(李元鎭)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정월 초2일

접위관 심(沈)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내용. 별견역관(別遣譯官) 홍희남(洪喜男)의 수본 내역. 조차(弔差)에게 할 하선연(下船宴)은 아직 그의 원대로 연상(宴床) 및 예단(禮單)을 아울러 들여주도록 조정하였음. 또한 조사(弔使)가 구청단자(求請單子)를 전례에 따라 글로 써서 주었는데, 금박(金箔) 4,000장을 혹은 미석(米石), 혹은 아무 물건 중에서 바꾸어 환무(換貿)하겠다고 하며 내어 보여 주거늘, 열어보니 종이〔紙地〕와 실과(實果)는 비록 민폐가 있지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 우황(牛黃)은 이런 철에는 극히 귀하고, 호안(胡鞍) 또한 매우 얻기 어렵기로, 말을 지어 말하기를 '이 구청 물건은 조사(弔使)가 나온 즉시 써 주었으면 해조에 품보(稟報)하여 약간 얻기 쉬운 물건이나마 찾아주었을 것이나, 이제 비로소 써서 올리니 일이 이미 늦었다. 오가며 마련하는데 결코 상선연(上船宴) 기일에 맞추기가 어려우니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방색하였으며,

'이른바 금박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청심원(淸心元)의 옷을 입히는 데 사용하지 달리 사용하는 곳이 없고, 쌀은 금년에 흉년이 들어서 지급할 쌀도 또한 대어주기 어렵고, 다른 물건에 있어서도 더욱 쉽지 않으니 어찌 하겠느냐?'라고 하니 조사가 말하기를, '금박의 값은 백장의 값이 은자 2냥에 불과한데,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또한 쉽지 않다고 방색하는가? 당초에 입을 열지 않은 것이 나았겠다'고 하면서 낙망하는 기색이 많은 지라, 어떻게 해야 하올지. 참작

하여 상의하여 조처하시기를. 수본으로 낸다 하였음.

저사람들이 구청하는 것을 이미 방색하였으니 금박에 있어서는 저들이 값이 작기 때문에 반드시 환무(換貿)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른지 해조로 하여금 속히 지휘 처치하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나머지 요구하는 물건은 홍희남이 이미 방색하였다고 하니 동래부사 및 접위관에게 명하여 시종 방색하게 하되, 금박은 사사로이 서로 환매(換賣)하는 물건이니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로는 모조리 방색하는 것이 어려울 듯하니,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정월 16일

11일 성첩한 접위관 심(沈)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내용. 운운한 일은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였는데, 방금 예조의 회이(回移)를 보니 운운한 일로 이관(移關)하였는바, 신 등이 치계(馳啓)할 즈음에 말을 하는 것이 분명치 않았는지, 조차(弔差)는 그의 금박(金箔)을 팔려고 하였는데, 해조의 이문(移文)에는 마치 금박을 우리측에서 발매(發賣)하는 것인 양 한 것은, 당초 장계의 본뜻과 전연 어긋나기에 부득이 다시 치계하오니, 해조로 하여금 속히 처치하게 하도록.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 차왜(差倭) 등이 가져온 물건이나 구청하는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별단(別單)에 분명하게 써서 보내어 복계(覆啓)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접위관 등이 장계할 때 말을 몽롱하게 보내어, 단지 조사(弔使)가 구청단자를 전례대로 써서 주었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금박 4,000장, 미석(米石) 또는 아무 물건이나 환매(換賣)한다 하고, 마지막에 또 말하기를, 구청한 물건은 이미 말을 만들어 방색하였는데 금박에 있어서는 저들이 값이 적다고 하여 반드시 환무(換貿)하려고 한다 하였거늘, 신의 예조에서는 이른바 환무(換貿)한다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무득(貿得)하자는 뜻이라고 여겨, 해조에서 갖추어 보내는 일로 복계(覆啓)하였는데, 이제 장계를 보니 저번의 금박(金箔)은 곧 조사(弔使)가 가지고 온 물건으로 환매(換賣)하고자 한다 하였은 즉, 이제 장계에 의거하여 본도 및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홍희남의 수본 내의 의도대로 동래에 유치(留置)해 두고, 호조에 저축한 잡물로 우선 계급(計給)한 뒤에 수량을 대조하여 회감(會減)하며, 저 사람들이 가져온 금박(金箔) 및 서울에서 내려보낸 금박은 아울러 올려보내고, 당초 장계에 비

록 말을 분명치 않게 만들었지만, 신의 예조에서 또한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범연히 회계(回啓)하였으므로 극히 황공하옵거니와, 금후로는 이런 일을 명백하게 구별하여 치계함으로써 몽롱한 폐단이 없도록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정월 18일

승정원에서 입계하기를, 지난번에 **접위관 등의 장계**에 조사(弔使)가 말하기를 '금박 4,000장을 미석(米石)이나 아무 물건 중에서 환무(換貿)한다'고 하였고, 말단에는 '쌀이 귀하여 무역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방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니, 금박이 조사(弔使)의 물건임이 분명한데도, 해조의 회계(回啓)가 원래 장계의 본의와 상반되었는데, 계목(啓目)의 공사(公事)를 본 신이 써서 판부(判付)하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은 황공함을 견딜 수 없으나, 해조의 회계(回啓)는 전례에 의하여 원 장계를 상고하여 글을 만들면 필시 이런 폐단이 없을 터인데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계사(啓辭)를 착오하여, 호조에 명하여 금박을 마련하여 여기서 내려보내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미 몽롱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가 있으니 마땅히 스스로 허물을 하여야 함에도, 또 이 계목(啓目) 중에는 '금후로는 이런 일을 명백하게 치계하여 몽롱한 폐단이 없도록 회이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여, 마치 책임을 외관(外官)에게 돌린 듯하니, 또한 매우 구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청컨대 예조의 당해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추고(推考)함이 어떠할지? 전교에 윤허한다 하였음.

경인(1650) 2월 초5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부산첨사가 치보한 내용. 왜의 소선(小船) 한 척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형남(李亨男)과 별차 한상국(韓相國)으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소선에는 격왜 8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대군(大君)이 구청하는 물건이 있어서 관수(館守)에게 보내는 서간을 가지고 왔다' 하거늘, 관수에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대군 및 대군의 삼촌이 구청하는 약재와 금조(禽鳥) 등의 물건을 급급히 찾아보내라고 서찰을 보내었거니와, 이제 이미 밤이 깊어 내일 아침에 동 금조·약재 등의 구청물을 등서하여 동래 영감 전에 고하고 급급히 치계하여 허급(許給)하게 할 것이라' 하였음." 뒤에 도부한 **훈도 이형남과 별**

차 한상국의 수본(手本) 내에는 "어제 나온 비선(飛船)은 오로지 대군이 구하는 금조 및 약재에 대한 일로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당일 관수에게 가서 상세히 탐문하니 관수가 말하기를, '대군이 새로 화원을 만들고 온갖 화초와 온갖 짐승을 구해와서 화원에 두고 때때로 감상하며, 도주로 하여금 조선의 화초와 진기한 금수를 극진히 구하여 오라 하여, 도주가 십분 방색하였으며, 그 중에 약간의 조류를 지난 해 6,7월 사이에 서계를 만들어 사람을 보내어 고하였는데, 보낸 것이 심히 약소하여 장차 중한 견책을 면치 못하겠기에, 부득이 비선을 내보내어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전응(鸇鷹) 10연과 꾀꼬리〔鶯〕 15마리를 기일에 맞추어 찾아 보내어 대군의 마음을 기쁘게 함이 옳겠다고 하였음. 이른바 꾀꼬리〔鶯〕는 노랑꾀꼬리〔黃鶯〕가 아니고 몸이 작고 색깔이 녹색이면서 꾀꼬리 소리처럼 우는 것이라 하며, 또한 대군의 삼촌은 미장대납언(尾張大納言)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자도 있고, 기이대납언(紀伊大納言)이라는 이름으로 칭하는 자도 있는데, 구하는 것은 육종용 2근와 완화(莞花) 1근, 집정(執政)으로 있는 굴전가하수(堀田加賀守)라 칭하는 자가 구하는 화예석(花蘂石) 1근, 집정으로 있는 정상축후수(井上筑後守)라고 칭하는 자가 청하는 『참동계(參同契)』 한 질을 또한 급급히 찾아 보내되, 이른바 『참동계』는 공동도사(崆峒道士) 추흔(鄒訢)이 주석한 책이라 함. 도주는 쉽지 않은 일인 줄 모르지 않지마는 사세가 대단히 절박하여 이렇게 말을 보냈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상항의 구청하는 물건을 다음 달에 찾아 주면 비선으로 에도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 바, 수본을 하였음. 이 일로 치통하고 수본을 올림.

상항의 각양 구청은 일일이 찾아주는 것은 불가하겠기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 하였거니와, 이제 들으니 비선이 나온 뜻은 실로 아주 절박한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종 방색할 수 없다면 금조(禽鳥)는 지난해의 전례대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찾아주고, 약재와 서책은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서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하올지 연유를 먼저 치계하오며 동 선박의 노인 1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리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차왜가 금조 및 약재와 서책 등을 구하는 일을 위임받아 또 나왔다고 하는데 금조는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주고, 약재 3종은 모두 북경(北京) 소산인데 당재(唐材)를 방색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동래부사로 하여금 명하여 전례대로 방색하라 하며, 『참동계』 또한 인가에 드문 책인데 찾으면 반드시 있는 곳이 있을 터이니 해조로 하여금 교서관(校書館)에 값을 주어서 하여금 사들여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받음.

이미 북경(北京)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당재(唐材)를 일체 방색하는 것은 정성과 신의가 없을 듯하니, 비록 숫자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금 무급(貿給)하게 함이 마땅한 듯하다고 하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차왜가 구하는 약재 3종 중 화예석(花藥石)은 의관(醫官)도 그 이름을 처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완화(莞花)는 내국(內局)에서 무역하여도 나오지 않아서 전혀 얻을 길이 없다고 하니, 이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이문(移文)하여 하여금 말을 만들어 사실대로 방색하되, 육종용 2근은 하교(下敎)대로 해조에서 값을 주어 사들여서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7년(1650 2월 초2일 좌승지 신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3월 초10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임. 이 달 초1일 왜의 작은 배 한 척이 나왔다는 일로 치보한 내용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이형남과 별차 한상국으로 하여금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당일 나온 비선에는 두왜(頭倭) 1인, 격왜(格倭) 7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나온 연유를 상세히 탐문하자, 두왜의 말이 '대군(大君) 및 대군의 삼촌 대납언(大納言)이 구청하는 잡물을 지금까지 찾아보내지 않아서 극도로 염려하고 있을 즈음에, 이달 22일에 에도에서 또 말을 전해 와서 기한을 정하고 재촉하였으므로 나왔으며, 범의 생간〔虎生肝〕 두세 부와 표피(豹皮) 40벌〔令〕의 용처가 매우 긴급하니 기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며, 전일에 구한 육종용(肉蓯蓉)도 역시 약용에 급하니 모쪼록 찾아주고, 이른바 일본 꾀꼬리〔日本鶯〕 한 마리를 잡아 보내니 이러한 새 수 십여 마리를 급급히 찾아 보내고, 전응(鸇鷹)도 전일에 들여간 것이 모두 중도에 죽어 대군에게 한 연도 들여주지 못하여 극도로 민망하니, 전일에 구청한 수 외에 대 여섯 마리를 더 들여보내되, 이러한 물건은 본디 그냥 얻자는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무역하여 오라 하는 것이니, 상항의 구청하는 물건을 심상하게 보지 말고 진작 찾아 주면 수일 내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거늘,

답하기를 '육종용은 전에 일찌기 장계하였으니 오래잖아 마땅히 내려오겠고, 범의 생간(生肝)은 비록 혹 얻더라도 생간으로는 에도에까지 가져갈 수는 결코 없으니, 생간은 결코 찾아 얻을 수가 없으며, 일본꾀꼬리는 겨냥을 보냈더라도 이런 새는 일찌기 못 보던 것이라 어찌하겠는가?' 하고 타이르니, 동 일본에서 보내온 죽은 꾀꼬리를 소인 등에게 내어 보이는 바, 어떻게 해야 할 지 극히

염려됨. 탐문하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하사(賀使)가 지금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래잖아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일로 치통(馳通)하고 수본을 올린다고 하였음.

청한 물건들은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나, 그 중에 범의 생간은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기가 따뜻해져 가는 철에는 에도에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만무한 바, 이는 다시 타이르고 만약 부득이하면 전례대로 말린 간〔乾肝〕으로 들여줄 것을 순찰사에게 알려 시행하며, 겨냥을 보인 바의 이른바 일본꾀꼬리는 죽통에 넣어 담아 두었거늘, 꺼내보니 곧 시골 울타리에 드나드는 뱁새〔鷦鷯〕의 종류인데, 시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수풀 사이에 많이 있다 하여, 방색할 수가 없어 또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잡아 줄 계획이라 함. 전일 계문(啓聞)하였던 약재 중 육종용과 이번에 구하는 표피는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셨는데, 하사(賀使)가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바, 접위관 역시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시도록. 동 작은 배의 노인 한 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여기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른바 일본꾀꼬리는 뱁새와 같은 종류인데 수풀 사이에 많이 있다면 본도에 명하여 찾아주라 하고, 범의 생간은 말린 간을 찾아 줌이 이치와 형편상 당연하니 장계대로 시행하고, 육종용 및 구하는 참동계는 몇일 내로 일시에 내려보낼 것이로되, 표피는 보내온 비선이 이렇게 간절히 요구하니 모조리 방색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해조로 하여금 절반으로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순치 7년(1650) 3월 초9일 좌승지 윤강(尹絳)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되 표피는 그 수가 많지 않으니 그 청대로 부응해 줌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셨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얼마 전 표피 40벌을 주상의 말씀에 따라 해조로 하여금 수에 맞추어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7년 3월 초10일 우승지 신 오정일(吳挺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10월 21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훈도 윤성립(尹誠立) 등의 수본(手本) 내용. 어제 관수(館守)가 글을 보내어 초치하거늘, 소인 등이 가서 보니 관수가 대군(大君)의 구청이라 말하면서 작은 종이를 내거늘, 소인 등이 열어서 그 발기〔件記〕를 보니 전응(鸇鷹), 초피(貂皮), 호골(虎骨), 호담(虎膽), 호경골(虎脛骨), 호근(虎筋), 호설(虎舌), 양경골(羊脛骨). 『참동계(參同契)』, 황필(黃筆) 등

의 물건이었습니다.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 중 얻기 쉬운 물건은 귀도(貴島)에서 이전부터 값을 주고 무역하여 갔으니, 모쪼록 주선하여 들여주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로되, 초피(貂皮)와 『참동계(參同契)』는 원래 우리나라에 언제나 있는 물건이 아니고, 금년 봄에 대군의 구청이라고 간청하거늘 근근히 얻어 찾아주었는데, 이제 또 와서 청하나 아마도 부응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반복하여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관수(館守)가 말하기를 '전일에 찾아준 초피(貂皮)는 그 수가 많지 아니하여 대군이 소용되는데 미치지 못하였으며, 『참동계』 몇 건도 도주가 돌아왔을 때 분부하여 보내었는데, 이제 만약 대군의 큰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도주의 무안함이 지극할 것이다. 이곳의 이렇게 절박한 뜻을 각별히 고품(告稟)하여 시행하면, 그 각종 물건의 본 값은 전례대로 절급(折給)하겠다'고 하며 종일토록 간청하기에 부득이 동 물목(物目) 발기〔件記〕를 동래부로 올리오니, 각별히 참작하여 속히 시행하시기를. 수본한다고 하였음. 전후로 구청하는 물건은 원래 그냥 들여주는〔白地入給〕 것이 아니라, 값을 쳐주고 사가는 것〔折價貿去〕인데 요구가, 그치지 않으면 수응하기 또한 어렵기로 여러가지로 방색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아서, 부득이 그의 물목 발기를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니, 비록 일일이 그 수량대로 들여줄 필요는 없으나, 또한 전연 주지 않아도 불가하옵기로, 전응(鸇鷹) 및 호골(虎骨), 호담(虎膽), 양경골(羊脛骨) 등의 물건은 전례대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참작하여 멱급(覓給)할 계획이며, 『참동계(參同契)』, 초피(貂皮), 황필(黃筆) 등의 물건은 해조로 하여금 전례대로 속히 마련하여 들여주도록 하면 어떠하올지. 연유를 아울러 치계함.

구청물목

새매〔鷂子〕 50연
초피(貂皮) 150편
상호필(上好筆) 100자루
호육 3근
호담 5개
호경골 5개
호근 3개
호설 5개
양경골 5개
『참동계』 2부 공동도사(空峒道士) 추흔(鄒訢) 주본(注本)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지금 이 관수(館守)가 구하는 물건은 비록 환무(換貿)한다고 하나, 허다한 각종 물자를 수량에 맞추어 부응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나, 저들이 이미 전에 부응해 준데 대하여 치사하고 이렇게 까지 간절히 청하니, 전연 방색하여 낙망하게 하는 것도 불가하며, 그 중 초피(貂皮) 150령 중 50령, 황모필 100자루 중 50자루는 해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 하며, 『참동계』는 전에 이미 찾아 보내었으니 지금에 와서는 방색하기가 어려운 듯하니, 호조로 하여금 값을 교서관에 주어 찾아 보내라 하고, 그밖의 새매〔鷂子〕 등 7종은 본도에 명하여 일의 형편을 참작하여 편의대로 멱급(覓給)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잃지 말라는 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오정일(吳挺一)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초피(貂皮)는 대략 더 보내라고 하심.

이에 근거하여 첨부한 **예조의 계목**. 주상의 하교에 의거하여 표피는 앞서 마련한 50령에 30령을 더하여 도합 80령을 마련하여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임전(林塼)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11월 초4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내용, 오로지 구청 물건을 재촉하기 위한 일로 비선(飛船)이 나왔는바, 전응(鸇鷹) 및 호담(虎膽) 등의 물건은 전례대로 참작 분정(分定)하여 멱급(覓給)한다는 뜻으로 순찰사에게 이미 첩보하여 찾아보내기를 기다려 들여 줄 계획이거니와, 초피(貂皮)와 황모필(黃毛筆) 등의 물건은 해조로 하여금 찾아서 내려보내는 일로 전에 이미 치계하였지만, 다시 해조에 명하시어 급속히 찾아 내려보내어 때맞추어 들여줄 수 있도록.

이에 근거하여 첨부한 **예조의 계목**. 전응(鸇鷹)과 호골(虎骨) 등의 물건은 생각건대 본도에서 이미 편의대로 찾아 주었을 것이거니와, 초피(貂皮) 80령, 황모필 50자루, 『참동계』 2부는 전에 이미 계하하여 바야흐로 각 해당 관서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니, 많지 않은 시일 내로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우선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안헌징(安獻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윤11월 초2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내용. 훈도 윤성립(尹誠立)과 별차 김우추(金遇秋) 등의 수본 내용. 금일 관수(館守) 및 대관(代官) 등에게 가서, 해조에서 내려 보낸 구청 초피(貂皮) 등의 물건 및 본도에서 마련한 전응(鸇鷹), 호육(虎肉) 등의 물건을 들여주었더니, 관수 등이 감사하여 마지아니하였는데, 그 중 황모필(黃毛筆)은 품질이 저열하여 정하지 않다고 받지 않았으며, 관수가 말하기를 '이번에 상품의 좋은 붓을 구청한 것은 에도의 예단에 사용하려 함인데, 너무 좋지 않아서 모쪼록 개비(改備)하여 들여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아니하기로, 동 황모필 50자루를 부득이 도로 동래부에 올리는 일로 수본한다 하였음. 신이 그 황모필을 열어보니 과연 품질이 열등하고 정하지 못하여, 저들이 특별히 구청한 붓에 합당하지 아니하였는데, 개비하기 어렵지 않고 그 청이 매우 간절하기로, 부득이 동 황모필 50자루를 감봉하게 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해조에서 각별히 정하게 택하여 개비하여 신속히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살펴보면 이번에 왜인이 구한 황모필은 전일의 전례에 따라 구청한 붓과 같지 아니한데, 이렇게 그다지 어렵지 아니한 물건을 구차스레 수를 채워 주어 먼 곳 사람이 원망하도록 하여서는 부당하기에, 도로 올려보낸 황모필 50자루를 해조에 도로 내려, 다시 장인에게 신칙하여 정하고 좋게 고쳐 만들어 신속히 내려보냄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좌승지 신 윤(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윤11월 12일

동래부사 유의 장계. 이달 초4일 분간되지 않은 왜선 5척이 물마루〔水旨〕로 나온다고 진고하기에 이에 근거하여 부산첨사가 보낸 치통 내역. 왜선 5척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즉시 훈도 윤제현(尹悌顯)과 별차 김우추(金遇秋) 등으로 하여금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회언(回言) 내용에 제1척은 경인조 특송 제1선이고 제2척은 이선주(二船主)가 타고온 배이고, 제3척은 수목선이고, 제4척에는 차왜 주천차병위(洲川次兵衛), 봉진압물 1인과 반종 3명과 격왜 33명 등이 예조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한 통,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과 별폭 두 통을 가지고 나왔거늘, 나와서 할 일을 탐문하니, 차왜가 말하기를 '저희가 나온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대군(大君)이 귀국의 조수(鳥獸)를 구하여 구경하려고 하기에 이 때문에 전일에 누차 구청하였거니와, 도주가 봄이

되는 즉시 또 에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때 친히 가지고 가려고 하므로 급속히 찾아주시라는 뜻으로 진달(進達)하려고 이 때문에 나왔다'고 하였으며, 이외에 또 면진(面陳)할 일이 있으니 속히 다례를 행하기 바란다고 하였음.

제5척은 기축조 2특송 1호선인데 잡물을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음. 또 일본 사정을 물었더니 전과 같다고 하여, 그 가지고 온 서계는 다례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하기로, 2특송 1호선의 노인 한 통 및 준수한 새매〔俊鷂〕를 구하기 위해 온 차왜가 가지고 온 서계 등본을 아울러 가져다 바치는 일로 회언(回言)하였기로, 받아 올리는 일로 치통하오니, 전일에 구청한 전응(鸇鷹) 등의 물건을 한편으로 치계하고 한편으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해조에서 내려보내는 것과 본도에서 분정하여 수송하는 것을 계속하여 들여보내 주시기를.

이번에는 또 전응을 특별히 보내달라고 차왜의 간청이 이러하온 바, 저쪽에서 실로 절박한 용처가 있음. 이른바 준수한 새매는 곧 새매〔鸇鷹〕인데, 분정하여 미납한 것을 재촉하여 기일에 맞춰 수송하여 때맞춰 들이라는 뜻으로 순찰사에게 다시 논보(論報)하시며, 접대하는 규례 역시 지난 해 금수(禽獸) 구무(求貿) 차왜 평성구(平成久)의 사례에 의거하여 본부에서 다례를 베푼 뒤에 하선연과 상선연 두 차례의 잔치만 베풀 계획임. 기축 2특송 1호선의 노인 1통 및 동 준요 차왜가 가지고 온 예조로 보내는 서계 등본 1통, 합 2통을 감봉하여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차왜 접대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지난 해의 예에 의하여 두 차례의 잔치를 베풀며, 전에 요구한 전응 등의 물건은 이미 본도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찾아서 부응하라고 분부하였는데, 이제 이른바 준수한 새매 역시 전응의 종류이고, 이는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되니 얻기가 어렵지 않으니, 바라는 바의 양을 편의대로 탐지하여 본도에서 재량하여 각관에 분정하여 때 맞춰 들여 주어서 오래 머무는 폐단이 없도록 하되, 가져온 서계에 대한 회답(回答)과 회례(回禮) 등의 일은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동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요구하는 물건은 본도에 명하여 원하는 대로 즉시 역급하여 오래 머물거나 낙심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심.

경인(1650) 윤11월 22일

동래부사 유의 장계. 이달 11일 신이 준요(俊鷂) 차왜 및 1특송에게 다례를 베푸는 일로 왜관에 갔던 바, 관수(館守)가 역관 등을 불러 말을 보내기를 '면

품(面稟)할 일이 있으니 송사(送使)의 다례를 행하기 전에 원컨대 평복(平服)으로 헐청(歇廳)[290]에서 잠시 뵙기를 청한다'고 하거늘, 그 말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관수가 먼저 '도주가 무사히 나와서 극히 다행이라'고 말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대군이 날마다 놀며 즐기기를 일삼는데 귀국의 진기한 새와 짐승을 이런 때에 다수 찾아서 보내어 도주의 얼굴을 내는 것이 어떠하고, 대군이 진기하게 여김이 또한 어떻겠으며, 동무(東武)의 여러 장관(將官)들도 또한 필시 이런 일로 귀국의 정성과 신의를 알게 될 것이기로, 도주가 돌아온 즉시 이 일로 한 사람을 차출하여 지금 이미 내도하였는데, 그 소망이 비단 준수한 새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이런 절박한 뜻을 혹 순찰사에게 보고하고 혹은 계문하여, 준수한 새매 이외에 어떤 새와 짐승이든지 완상할 만한 것을 속히 멱급하라'고 이야기하거늘,

신은 먼저 도주가 무사히 섬으로 돌아온 것을 하례한다는 뜻을 전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귀도에서 전후로 구하는 물건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기에 조정에서 즉시 무역을 허락하였고, 순찰사 역시 각관에 분부하여 계속 들여주고 있는 바, 도주를 염려하는 뜻이 지극하다 할 것인데, 무슨 새나 무슨 짐승이 감상할 만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대체로 새와 짐승은 봄과 여름철에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일이 성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옳지마는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명심하여 마음을 다해 연속으로 들여주어서 도주의 갈망에 부응해 줍시사'고 하였음. 관수는 말하기를 '또 진달할 일이 있는데, 조정에서 만약 시행해 주시지 않으면 도주에게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동무(東武)의 제장들도 또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니, 오늘의 일은 오직 영감에게 달려 있으니 잘 말을 만들어 계문(啓聞)함이 어떠할지'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말할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들어줄 만한 것이면 들어주고 불가한 것이면 그만 둘 것이니 말이나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관수가 재삼 우물거리다가 일어나서 다가앉아 말하기를, '저희 섬의 태수가 해를 넘기며 동무에 입시(入侍)하였다가 이제서야 무사히 돌아왔으니, 온 섬의 경사로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귀국에서 이런 때에 품계가 높은 역관 한 사람을 보내어 존문(存問)하여 위로한다면, 도주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동무의 여러 장관들도 차사(差使)를 보내어 존문한 사실을 듣고는 더욱 귀국에서 정성과 신의로 후대한다는 뜻을 알 터이니, 온 섬의 다행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제 도주의 서찰을 보니 저희로 하여금 영감 앞에 자세히 품신하여 그로써 주선하여 계문하도록 하라 하였다'고 하거늘,

290) 헐청(歇廳) : 고관에게 문안 온 사람이 잠시 쉬던 곳.

신이 답하기를 '이제 도주가 이미 돌아왔다 하니 내 마음에도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물며 공 등이 비록 오늘의 청이 없더라도 조정에서 저절로 재량하여 행할 일이 있을 터이나, 사자를 보내는 여부는 변방의 신하가 감히 계청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반복하여 타일렀더니, 관수가 말하기를 '오늘 존문(存問)하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니, 시행하건 시행하지 않건 간에 속히 계문하되, 비록 사자를 보내더라도 홍지사(洪知事)가 아니면 보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고, 간절히 청하는 뜻을 누누이 끊지 않았음. 교활한 왜인이 하는 말이 비록 헤아릴 수 없으나, 대개 그 뜻이 새와 짐승을 얻어 사사로이 바침으로써 대군(大君)의 뜻에 영합하자는 것이고, 차인(差人)의 존문을 청하여 동무(東武)에게 알려지기를 과시하려는 것이온 바, 일일이 듣고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전연 방색하기도 불가하기로, 준수한 새매 및 기타 얻기 쉬운 금수는 본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편의대로 더 분정하여 멱급할 계획임, 신이 본부의 등록(謄錄)을 가져와 살펴보니, 일찌기 병술년(1646) 간에 도주가 에도에서 돌아왔을 적에 또 역관 등을 보내어 존문하였는데, 도주에게 존문하는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처치하시되, 저들이 바라는 바는 오로지 홍희남이 들어오는 것이라 하는바, 만약 차인을 보내는 일이 있게 되면 또한 해조로 하여금 이대로 시행함이 어떠하올지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차왜의 문답한 사연을 살펴보니, 도주가 해를 넘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차사를 보내어 존문하는 일을 요구하였는바 , 이전에는 도주가 동무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 특별히 역관을 보내어 위문하는 것이 이미 규례로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금년에는 저들이 조위(弔慰)와 진하(進賀)의 예를 한 일이 있었으니, 지금 이 차사를 보내달라는 청은 더욱이 방색하여서 낙망하게 하기는 어렵거니와, 저들이 청하는 바 홍희남은 중풍의 묵은 병이 들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하니, 해당 사역원으로 하여금 합당한 역관을 차출하여 전례대로 거행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내용. 준요(俊鷂) 차왜 주천차병위(洲川次兵衛), 봉진(封進) 1인, 반종 3명, 경인조 특송 제1선 정관 등의 다례를 차례로 베푼 뒤 예조로 보내는 서계 별폭과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별폭 등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준요 차왜가 다례할 적에 말을 신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도주가 여러 해 동안 에도에 입시(入侍)하였다가 무사히 돌아와서 매우 다행인데. 내년 봄에 또 에도에 들어갈 터인데, 그 때 대군(大君) 전 및 동무(東武) 제장에게 예단으로 올릴 물건이 없지 아니하되, 대군 및 제장들이 구하는 것은 오직 귀국의 준수한 새매와 각색 진기한 새와 짐승이기로, 도주가

오로지 이런 물건을 구하기 위해 저희들을 보낸 것은 간절하고 급박한 뜻인데, 지난해에 새와 짐승을 구청하는 차왜가 나왔을 때, 각종 물건을 조정에서 거의 모두 찾아 주어 참으로 감격하거니와, 전응(鸇鷹) 및 각색 새와 짐승을 바다 건너 들여갈 즈음에, 중간에 죽은 것은 십중팔구였기로, 대군과 제장에게 진헌(進獻)하지 못했음. 이번에는 각별히 품보(稟報)하여 지난해 구청물목 중의 각종 새와 짐승을 신속히 가정(加定)하여 들여주어서 도주의 갈망에 부응하도록 하여 달라'고 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전후 구청이 모두 얻기 어려운 물건인데도 조정에서 도주의 절박함을 생각하여 이미 모두 멱급(覓給)하였거늘, 이제 또 조정에 품보하는 것은 일의 체면이 매우 미안할 뿐 아니라, 그 중에 노랑꾀꼬리〔黃鶯〕, 혈연(穴燕) 및 각색 조류는 이렇게 눈이 오는 날씨에는 또한 제 철이 아니다'고 하며 반복하여 타일렀더니, '저희의 이번 걸음은 오로지 이런 물건을 위해서이니 원컨대 속히 품보하여 조정의 회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였음.

전후로 구청한 것이 비록 값을 쳐주고 무역해 가는 물건이지만 이렇게 지루하니 마땅히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해야 하겠으나, 관수의 청이 저러하고, 차왜의 간청이 또한 이러하니, 도주의 절박한 뜻을 이에 근거하여 알 수 있겠는바, 준절하게 방색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후에 본부의 장계로 인하여 구한 바 준수한 새매를 넉넉하게 멱급하는 일은 이미 계하하여 분부하였거니와, 우리나라는 진기한 새와 짐승이 본디 산출되는 곳이 아님은 왜인들도 필시 상세히 알 터이니, 본부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응답하여 그 실정을 자세히 알게 하되, 황앵과 혈연은 지금은 제철이 아니니 산출되기를 기다려 멱급하겠다는 뜻을 친절히 언급하며, 이전에 구한 전응(鸇鷹) 및 이번에 구하는 준수한 새매는 바야흐로 생산될 때인지라 본도에서 전례대로 분부하여 속히 멱급하되, 이 외에 구하는 물건도 본도에서 얻기 쉬운 것이면 또한 편의대로 멱급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이문함이 어떠할지. 우부승지 신 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윤11월 26일

준요(俊鷂) 차왜(差倭)가 가져온 서계.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의 서계. 조선국 예조(禮曹) 대인 합하. 본국은 안정(安靜)하고 멀리 생각건대 귀국도 승평(昇平)하여 함께 유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동무(東武)에 있으면서 어김없이 주선하다가 휴가를 받아 얼마 전에 저희 주(州)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생각건대 귀국의 준수한 새매 다수를 얻어서 우리 대군에게 헌납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각관(各官)에 알려 구득하여 부산왜관에 도달되기를 애걸합니다. 전년 이래로 누차 구걸하였는데, 이제 바야흐로 여러 주에서 각기 새와 짐승을 헌납하는 데, 그 중에 이국에서 바치는 조수는 본국에도 간혹 일찌기 있었지만 오직 다른 나라의 물건만 감상합니다. 또한 귀국에 준수한 새매가 많음을 본국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납하는 것이 많지 않으면 우리의 태만이 될까 염려됩니다. 대저 구걸하는 물품을 속히 구득하여 보내주시면 정성과 신의의 마음이 더욱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역관 등에게도 타이르는 말씀을 더 내려서 노력하여 이루게 하여 주십시요. 삼가 천박한 물건은 바라건대 웃으며 놓아두시기 바라며, 오직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줄입니다.

별폭

첩금소병풍(貼金小屛風) 1쌍, 매 1쌍의 값 은 10냥씩, 20냥.
시회중갑(蒔繪重匣) 1좌(座), 값 은 2냥.
납발(鑞鉢) 1유(紐), 값 은 2냥 5전
이상 원수 24냥 5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답장을 꾸미게 하되, 회례하는 물건은 본 값을 살펴보고 참작하여 계목후록을 마련하오니, 해당 관서 및 본도에서 급급히 만련하라는 일로 이문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회례(回禮)
호피(虎皮) 1장, 표피(豹皮) 1장, 인삼 2근, 백저포(白苧布) 5필, 백면주(白綿紬) 5필, 흑마포(黑麻布) 4필, 백목면(白木綿) 39필, 황모필 30자루
이상 해당 관서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냄.
사장부유둔(四張付油芚) 2부
화석(花席) 10립(立)
진묵(眞墨) 30홀
이상 본도에서 제급

우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대마도 도주가 동래·부산에 보내는 서계. 조선국 동래·부산 두분 영공(令公) 합하. 엎드려 생각건대 거처가 편안하신지 참으로 우러러 바랍니다. 나는 동무(東武)에서 시종 온전히 봉직하다가 휴가를 받아 근간에 주(州)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귀국의 빼어난 새매〔逸鷂〕를 강무(江武)에 바치려고 하는데, 그 수효가 많지 않으면 우리의 태만이 됩니다. 대개 빼어난 새매〔逸鷂〕는 귀국에서 산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조 합하께 서찰을 올려 이 뜻을 상세히 진술하여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두 차사가 입으로 알릴 것입니다. 토산물이 비록 박하지만 두시기를 바라며 줄입니다.

동래별폭

시회문갑(蒔繪文匣) 1개 값 은 2냥
문지(紋紙) 500편 매 100편 값 은 8전씩 합 4냥

부산별폭

물종(物種)은 동래부와 동일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동래·부산에서 답장하는 초고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지어 보냈고, 두 곳의 회례(回禮) 물건은 본가(本價)를 보고 참작하여 계목후록(啓目後錄)을 마련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급급히 마련하게 함이 어떠할지.

후록(後錄)

동래·부산 두 곳의 회례(回禮), 각기
백면주(白綿紬) 4필, 백저포(白苧布) 5필, 백목면(白木綿) 7필

순치 7년(1650) 윤11월 21일 우부승지 신 채(蔡)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경인(1650) 12월 19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이달 12일 준요(俊鷂) 차왜 주천차병위(洲川次兵衛), 압물 1인, 반종 3명 등이 진상 숙배한 후 하선연을 전례대로 베풀었음.

신묘(1651) 정월 초6일

동래부사 유의 장계. 이달 27일 의진(義眞) 송사선의 다례를 파할 무렵 정관 평성태(平成太)가 신에게 말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런 일은 저희가 감히 말할 바 아니지만, 이번에 도중에서 특별히 차왜를 보낸 것은, 도주의 뜻이 속히 부사 전에 뵙고 왜관 중의 여러가지 일과 구청하는 등의 일을 상의하여 조정하라는 것인바, 진실로 일이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접촉하지 못하고 있어서 극히 걱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간절한 것은 곧 마필(馬匹)을 구무(求貿)하는 일입니다. 색깔이 좋고 체구가 크며 잘 달려서 마상재(馬上才)에 합당한 것 15필을 무역해 가고자 한다'고 누누이 진언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이제 지금 특별히 보낸 차왜는 이미 주관하는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서계를 해조에 보내지도 않았으니, 이는 근례에 전례가 없으니, 조정에서 분부가 내려오기 전에는 결단코 접촉할 뜻이 없음을 전에 이미 누차 말을 하여 보냈는 바, 이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으며, 마필을 구해 가는 일은 어디에 쓸 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체구와 색깔과 재능과 품격을 구비한 말은 얻기도 쉽지 않고, 전후로 도주가 구청한 각양 물건을 계속하여 조정에 품보(稟報)하여 이미 무역을 다 허락하였거늘, 난이(難易)와 가부를 막론하고 매양 번거롭게 청하는 것은 변방 신하의 체면으로 헤아려보아도 감히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였는데,

평성태(平成太)가 답하기를 '하시는 말씀은 사리가 참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군이 마상재를 즐겨하는데, 일본에서는 잘 달리는 말이 없기로 정해년(1647)의 사례에 의거하여 잘 달리는 말 15필을 사 가서, 금년 봄에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적에 일시에 대군 앞에 진헌할 계획인 바, 그 뜻이 매우 간절하니, 시행하건 시행하지 않건 간에 조정에 품보하여, 속히 팔려는 사람을 내려보내게 하면 도주도 귀국의 성신(誠信)에 감동할 것이니 그 광채가 나는 것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하고 재삼 말을 하는 바, 그 형편이 끝까지 방색하기 어려움. 팔려는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알려서 내려보내어 그 원하는 바에 부응함이 어떠할른지. 그가 하는 말이 이러하기로 부득불 치보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동래부사가 차왜와 접촉하는 일은 전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재차 복계(覆啓)하여 이문(移文)하였으니, 스스로 상접(相接)할 일이거니와, 마상재에 합당한 말은 비록 값을 주고 환무(換貿)하는 일이지만, 일찌기 정해년(1647)에도 단지 1필의 말을 재삼 점퇴하였으니, 먼 길을 왕래하는데 폐를 끼친 것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힘을 다해 찾아 보냈는 바, 이제 15필의 말은 그 형편이 더욱 어려우니, 동래부사로 하여금 이치에 근거하여 방색하도록 하며, 다만 저쪽에서 이미 대군 앞에 바칠

것이라고 간청하니, 교린(交隣)하는 사이에 모조리 방색하는 것도 성신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니, 사복시 및 평시서에 명하여 구하는 말 두어 필을 널리 더 구득하게 하고, 한편으로 호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서 기다리도록 하며, 본도에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하여금 알려서 들여보내는 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우승지 신 이일상(李一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신묘(1651) 2월 초5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당일 준요(俊鷂) 차왜 주천차병위(洲川次兵衛), 압물 1인, 반종 3명 등의 상선연을 전례대로 베풀었음.

신묘(1651) 4월 초3일

동래부사 유(柳)의 장계. 관에 머무르고 있는 대관왜(代官倭) 등이 도주(島主)가 구무(求貿)하는 말 세 필을 실어가려고 기축조 2특송 수목선(水木船) 한 척을 빌어 싣고서 들어가는 일로 치통함. 당초 마상재(馬上才)에 합당한 말 15필을 무역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해조의 회이(回移) 내의 사연으로 인하여 역관으로 하여금 이치에 근거하여 타이르게 하고, 본도의 말 2필과 서울에서 온 말 1필만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낸 일임.

경상감사 남(南)의 장계. 방금 접한 동래부사 유심(柳淰)의 치보 내용에 운운하였는데, 전일 금수(禽獸)를 구무(求貿)하는 차왜가 노랑꾀꼬리〔黃鶯〕를 구무하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한달을 기다려 잡아 주겠다는 뜻으로 타일렀는바, 어제 관수왜(館守倭)가 사람을 보내었는데, 동 노랑꾀꼬리는 우리나라 노랑꾀꼬리가 아니라 곧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피죽조(皮粥鳥)[291]라고 하거늘, 전일에 분정하여 아직 거두지 않은 각관에 다시 독촉하여 잡아 주게 할 일.

임진(1652) 8월 15일

대마도 도주 평의성(平義成)이 동래부사에게 보낸 서계. '아득히 그리워하

291) 피죽조(皮粥鳥) : 피죽새. 지빠귀과에 속하는 밤꾀꼬리의 한 종류.

며 동정이 편안하다니 기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미원(尾員) 14매와 수리〔鷲鳥〕 대 여섯 연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각관(各官)에 일러 사로잡아 깍지를 끼워서 일찌감치 부산 왜관에 도달하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살펴주시기 바라며 줄입니다.'라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미원(尾員) 및 수리〔鷲鳥〕 등은 전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에 이 물건은 얻기 쉬운 물건이니 본도 감사와 상의하여 편의대로 멱급(覓給)하겠다고 하였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수량에 모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두 가지를 약간씩 편의에 따라 멱급하여 먼 곳 사람의 바람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행이(行移)하였으며, 동래부의 답장 초고는 승문원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지어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8월 13일 동부승지 이후산(李後山)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9월 15일

동래부사 윤(尹)이 초4일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 어제 나온 대관왜에게 일본 사정을 탐문하라고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더니, 방금 훈도 최유립(崔裕立) 등이 사정을 물어본 회언(回言) 내용에 대관왜에게 저쪽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도주는 이번 달 안에 정녕 돌아온다 하며, 예조로 보내는 서계 별폭 및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별폭 등을 내어 보이거늘, 소인 등이 열어 보니 '닛꼬오산〔日光山〕에서 사용할 향로(香爐) 등의 물건을 만드는 일을 사사(槎使) 평성차(平成次)에게 구두로 전해주었다고 하였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이 서계를 보면 이를 위해 보낸 차사(差使)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른바 사사(槎使)란 무엇인가?' 하였더니, 일대관(一代官)이라고 하는 왜인이 답하기를, '저는 이 서계를 주어서 왔지, 사사(槎使)도 아니고 대관(代官)도 아니며 단지 동래·부산 두 영감에게 전할 따름이라'고 하였는데, 다른 왜인의 말을 들으니 이른바 평성차(平成次)와 일대관(一代官)에게 이 일을 겸하여 주어 나왔다고 하는 바, 이미 대관(代官)이 겸하여 나왔다면 별도로 접대하는 일은 없을 듯함.

가지고 온 동 서계는 전하여 드리거니와, 대관 등의 말에 수역(首譯) 등을 내려보내라는 뜻을 서계 가운데 언급하였거니와, 수역(首譯)이 내려온 뒤에 상의하겠다고 하니. 홍지사(洪知事)와 이첨지(李僉知) 중에서 속히 내려보내라는 일을 동래 영감 앞에 고달(告達)하여 속이 전계(轉啓)하라고 하였으매, 회언

(回言)한다 하였음. 동 서계 등본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도주가 구하는 바 주물(鑄物)은 장차 불사(佛事)에 바치려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나라의 토물(土物)을 얻어 자랑하려고 한다 하는 바, 극히 해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 써 보낸 명문(銘文) 양식에는 감히 '조선에서 아무 물건을 주조하여 그 장소에 바친다'고 하였고, 조선 두 글자를 평항(平行)에다 연서(連書)하고, 대유(大猷) 두 글자는 줄을 올려서 특별히 써서 무례 불공한 뜻이 현저하니, 보기에 분통과 놀라움을 이길 수 없음.

왜인의 말에 '속히 친히 올린 서계를 보기를 청한다' 하였는데, 그 소청을 속히 따라 줄 지 여부 및 그 서식을 책망하여 돌려보내는 뜻을 확정하기 이전에는 상접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동 차왜가 이미 대관(代官)이니 별도로 접대할 예가 없거니와, 서계를 받아 올리는 날 한 번 다례를 베푸는 것이 어떠할 지 모르겠사오니, 조정에서 속히 지휘하여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오며, 역관 등의 이름을 지적하여 오라고 청하는 일 또한 극히 외람된 말인데, 심지어 서계 가운데까지 이야기하였으니 별도로 할 말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되나, 이런 등의 수작은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연소배들이 능히 할 바 아니거니와, 역관 이형남(李亨男)이 이에 앞서 종을 주조할 때 시종 담당했다 하는데, 그는 전일 훈도(訓導) 때의 일로 회계(會計)할 일이 있어 마땅히 내려와야 하기에, 재촉하여 내려보내어 접응(接應)하게 함이 어떠하오며, 예조와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및 명문(銘文) 양식 등본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 및 서계 등본임.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습유(拾遺) 평의성(平義成)이 서찰을 받들어 조선국(朝鮮國) 예조(禮曹) 대인 합하에게 올립니다. 지난 해 선귀대군(先貴大君)이 세상을 떠나 명복을 추후에 빌고자, 바야흐로 등롱(燈籠), 화병(花甁), 향로, 촛대 등을 모두 구리로 주조하여 만들어, 닛꼬오산〔日光山〕 및 동헌산(東獻山)에 드리려고 귀국의 야공(冶工) 5·6 명에게 명하여, 부산에 내려와 조성하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또한 내가 좋아하는 형상을 사개(使介)로 하여금 구설(口舌)로 전하고, 인하여 넉넉지 못한 토물(土物)을 별폭과 같이 갖추오니 오직 바라건대 살펴주시기를. 줄이나이다. 게이앙〔慶安〕[292] 임진(1652) 8월 일.

별폭

시회제병(蒔繪提甁) 1개
난주철당(煖酒鐵鐺) 2개

292) 게이앙[慶安] : 일본 고꼬오묘오[後光明] 천황의 연호.

수로(水爐) 3개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및 별폭,

문지(紋紙) 300편, 난주랍당(煖酒臘當) 2개. 부산 별폭 위와 같음.

銘文을 전해온 글

봉헌(奉獻)하는 향로는 조선국에서 주조하여 만든 것임. 무주(武州) 동헌산(東獻山) 대유원전(大猷院殿) 존전(尊前). 게이앙〔慶安〕 5년(1652) 4월 20일 종사위(從四位) 하시종(下侍從) 종대마수(宗對馬守) 평의성(平義成).

봉헌하는 금등롱(金燈籠) 두 기는 조선국에서 주조하여 만든 것임. 야주(野州) 닛꼬오산〔日光山〕 대유원전(大猷院殿) 존전(尊前). 게이앙 5년 4월 20일 종사위 하시종 종대마수 평의성 조신(朝臣).

봉헌하는 촛대는 조선국에서 주조한 것임. 무주 동헌산 대유원전 존전. 게이앙 5년 4월 20일 종사위 하시종 종대마도수 평의성 조신.

봉헌하는 화병은 조선국에서 주조한 것임. 무주 동헌산 대유원전 존전. 게이앙 5년 4월 20일 종사위 하시종 종대마도수 평의성 조신.

이 일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 및 서계와 명문등본(銘文謄本)을 보니, 닛꼬오산에서 소용되는 향로 등의 물건을 우리에게 주조하여 보내게 하였는바, 이는 연전에 이미 부응한 일인데, 저들이 반드시 이에 근거하여 청하는 것은, 전일에는 곧 관백의 소청이라 하였는데 이번에는 도주의 자청이라 하였거니와, 조선 두 글자를 평항(平行)에 연서(連書)한 것은 피차간에 왕래하는 서식과 혹 차이가 있는 듯하고, 봉헌(奉獻) 두 글자 또한 저들의 처지에서 말한 것이지 조선에서 말한 것이 아닌 듯하기에, 무례 불공하다고 곧바로 물리치기는 어려울 듯함. 다만 그 명문(銘文)에 그들의 연호를 쓰고 우리측에서 주조하여 보내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하나, 해조에서 가벼이 의논할 것이 아니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시고,

평성차는 비록 대관이나 이미 서계를 겸하여 받아 왔으니 우리의 도리로서는 한 번 다례를 베풀고 상접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역관 이형남은 장계대로 해 사역원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며, 서계 회답 및 회례하는 등의 일은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마련하여 거행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9월 13일 좌승지 신 박장원(朴長遠)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대마도주가 우리나라 장인(匠人)에

게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 따름 별도 다른 사정은 없는 듯함. 조선 두 글자를 평행에 연서하는 것 및 일본 연호를 써 넣는 것은 모두 저쪽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무례 불공하다고 하여 그 청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과당한 듯함. 마땅히 그 서계의 뜻 대로 솜씨 좋은 주장을 본도에서 찾아 부산으로 보내되, 도내에 만약 솜씨좋은 장인이 없으면 서울에서 내려보내어도 무방할 듯함.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9월 14일 동부승지 신 정창주(鄭昌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9월 26일

동래부사 윤(尹)의 장계. 훈도 최유립(崔裕立)과 별차 김시성(金時聖) 등이 낸 수본 내용. 평성차(平成次)의 말에 홍지사(洪知事)와 이첨지(李僉知)·김첨지(金僉知)가 속히 내려와서 주조하는 일을 상의하자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수역(首譯) 3인을 청하여 오도록 청하는 일은 매우 불가하니 이런 무리한 말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더니, 근간에 평성행(平成幸)이 나올 것인데 진달할 말이 많이 있어서 홍지사와 이첨지·김첨지를 청하여 오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치계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도주가 구청하는 물목이라 하면서 작은 종이에 발기〔件記〕를 꺼내어 소인 등에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들 물건은 도주가 섬에 돌아온 뒤에 에도의 집정 및 제장 등에게 예단으로 올려야 할 것이기로, 도주가 길을 떠나면서 먼저 섬에 머무르는 봉행(奉行) 등에게 통기한 것이니, 이 일이 매우 긴급하다' 하였으며, 도주가 구청하는 물목의 발기를 내어주기에 동 발기 한 통을 올려보내거니와, 값은 시가에 따라 정하겠다고 하였음.

화병(花甁) 등의 물건에 새길 명문의 양식에는 글자와 줄의 높낮이에 불공무례한 뜻이 많아 극히 부당하다고, 왜관 가운데 있는 여러 대관과 송사 정관 및 평성차 등이 한 곳에 모인 자리에서 타일렀더니, 저들이 답하기를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오래잖아 평성행이 나오고 수역 등이 내려와서 주조할 적에 좋은 모양으로 상의함이 가하다고 하였기로, 수본(手本)을 하여 낸다 하였음.

세 역관을 한꺼번에 청하는 설은 극히 번거롭고 외람스러워 이형남(李亨男)만 공무로 내려보낸다는 뜻을 전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주조하는 일의 확정하는 공사(公事)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끝내 물리치는 것이 혹 어렵다 하더라도 명문의 서식은 우리가 진퇴(進退)할 수 있을 것이고, 저들의 의사 또한

상의하여 선처하자는 말이 있었으니 다툴 사단은 없을 듯하며, 그들이 구청하는 물목은 종류와 물품이 매우 많아 다 부응하기는 불가할 뿐 아니라, 사매(私賣)와 같아서 감히 계문하지 못하나, 이전에는 먼 곳 사람의 청원을 곡진하게 답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어 있기로, 물목단자를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로 장계 및 구청별단을 올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명문의 서식 등에 대한 일은 전에 본부의 장계로 말미암아 비국(備局)에서 이미 확정하여 행회하였는데, 저들이 좋은 모양으로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으니, 평성행이 나온 뒤 그의 말하는 바를 들어보고 다시 치계함이 마땅하며, 수역에 대하여는 이미 이형남을 내려보냈으니, 그들이 비록 세 사람을 보내라고 청하였으나 반드시 아울러 보낼 필요는 없으며, 이제 이번 구청별단의 물종은 매우 많아서 일일이 부응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도주가 에도의 별단에 사용하려 한다고 이렇게 간청할 뿐 아니라, 이는 사사로이 서로 환매(換賣)하는 것이고 또한 이전에도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지금 방색하여 그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불가함. 해조에서 마련하는 물건 및 본도에서 줄 물건의 별단을 마련하여 첨부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게 하되, 서책은 해조에 명하여 교서관에 값을 주어 있는 대로 찾아 보내게 하며, 그 중에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 예컨대 설면자(雪綿子) 등과 같은 물건은 어찌 모두 그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혹은 반으로 감하고 혹은 3분의 1로 감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도 무방하니 해조로 하여금 형편을 참작하여 시행하게 하며, 육종용은 곧 당재(唐材)이니 찾아보내지 못한다는 뜻을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행이함이 어떠할지.

구청물목

『참동계(參同契)』 주자(朱子)의 주본(注本) 2부
『사서대전(四書大全)』 2부
『칠서직해(七書直解)』 2부
『안광충사서(顔光衷四書)』 1부
『안광충전서(顔光衷全書)』 1부. 이상은 해조에서 값을 주면 교서관에서 있는 대로 찾아 주어 무역을 허락하게 함.
백저포(白苧布) 상품 20필.
초피(貂皮) 10편 꼬리가 길고 흑색인 것.
설면자(雪綿子) 300근.
정황모필(正黃毛筆) 200자루.
황사(黃絲) 1근.

백면주(白綿紬) 30필.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것.
호설(虎舌) 대여섯 부.
호안(虎眼) 좌우 구비한 것.
호경골(虎脛骨) 좌우 구비한 것.
호두골(虎頭骨) 좌우 구비한 것.
오미자(五味子) 10근.
황밀랍(黃蜜蠟) 50근.
우산유지(雨傘油紙) 50장.
메추리〔鶉鳥〕 산채로 잡은 것 30.
두루미〔野鶴〕 50 죽은 것.
산압(山鴨) 70 죽은 것.
기러기〔雁〕 40 죽은 것.
호도(胡桃) 10석.
잣〔柏子〕 5석.
대진묵(大眞墨) 도금각자(塗金刻字) 70. 이상 본도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상의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어 무역을 허락할 것.
육종용(肉蓯蓉) 5근. 당재이기에 찾아보내지 못한다고 방색할 것.

순치 9년(1652) 9월 23일 동부승지 신 정창주(鄭昌胄)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10월 초5일

이번 10월 초4일 영의정 좌의정 약방제조 박연(朴筵)을 인견할 때 정(鄭)이 입계한 내용. "도주가 요구한 향로에 그의 말로 봉헌(奉獻)한다 칭하였고, 그의 직함을 연호 아래에 썼으므로 염려되지 않기에 일찌기 부응하자는 뜻으로 탑전(榻前)에서 진언하였는데, 물러나 다시 생각하고 또한 여러 사람의 의논을 맞추어보니, 이미 조선에서 주조한 것이라 하였으면 사리가 이렇게 말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니, 역관에게 변론토록 명하여 그 연호를 제거하고 단지 임진 월 일이라고만 쓰는 것이 합당하기에, 역관 이형남을 품정(稟定)한 다음에 내려보내라고 아직 머물러 두었습니다"라고 하였음.

상감께서는 '그 연호를 제거하고 단지 월일만 써라는 뜻을 역관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보냄이 옳다'고 하였음.

임진(1652) 10월 22일

동래부사 윤이 12일 성첩한 장계. 이달 11일 왜선 한 척이 나왔기에 즉시 역관 노기현(魯起賢)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소선(小船)에는 차왜 귤성도(橘成道)와 종왜 6명, 격왜 6명 등이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차왜가 말하기를 도주가 9월 초3일에 이미 왜경(倭京)에 도착하여 오래잖아 본도(本島)에 당도할 터인데, 명년 2월 초승에 또 에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때 관백(關白) 앞에 바칠 것으로 귀국의 준마(駿馬) 두 필과 수리〔鷲鳥〕 3연을 무역하되, 동 말 한 필은 가라(加羅) 월라(月羅)로, 한 필은 유월라(騮月羅)[293]로 하며, 전일에 구청한 각색 물건도 아울러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일을 고달(告達)하고, 향로 등의 물건도 역시 속히 주조하여 달라는 뜻으로 고달하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며, 가져온 서계를 내어주기에 가져와서 드린다고 하면서 회언(回言)하였음.

지금 이 비선(飛船)이 나와서 두 번이나 별차왜를 보내어 계속하여 구청하는 일은 왜인의 정상이 지극히 번거롭고 외람스러우며, 동 귤성도가 비록 차왜라고 일컬으며 나왔으나 이전에도 따로 접대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가 구청하는 물건은 조정에서 참작하여 시행하며, 수리〔鷲鳥〕는 전일 나온 귤성소(橘成昭)가 구청할 때 산채로 잡는 것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미 타일러 방색하였는데, 새 훈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 타일러 방색할 계획이며,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한 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

동래·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두분 영공 합하. 바야흐로 비선으로 고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 휴가를 하사받아 동무(東武)에서 떠났는데 바람이 순조로우면 모름지기 저희 주로 갔다가 또 내년 봄 2월 초순에 참근(參勤)하라는 엄명을 받았기에, 이에 귀국의 물품과 준마를 함께 우리 대군(大君)에게 헌납하고자 사신 하나를 차출하여 보내오니 각도에 알려 얻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또한 동등롱(銅燈籠) 및 화병(花甁), 촛대〔燭臺〕, 향로 등은 닛꼬오산〔日光山〕에 바치려 한다고 앞서 계달(啓達)하였는데, 이제 구하는 방물(方物)과 동시에 보내주시면 좋겠으니, 여러분께서 명령하시어 불일간에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양찰하시기 바라며 줄입니다. 게이앙 5년 임진(1652) 9월 일 대마주(對馬主) 평의성(平義成).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전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인하여 이미 해사 및 본도에 명하여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한다 하였으며, 등롱(燈籠), 화병 등의 물건도 그 청에 부응하기로 허락하였

293) 유월라(騮月羅) : 월따말. 털빛이 붉고 갈기가 검은 말. 화류(騩騮).

는데, 이제 또 마필(馬匹)을 말하니 또한 본도에 명하여 각관에 알려서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것. 차왜가 서계를 지니고 왕래가 무상하여 사람마다 접대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니, 이제 이번 귤성도에게는 장계대로 접대하지 말라 하며, 수리〔鷲鳥〕는 산채로 사로잡기 어렵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방색하였으니, 다시 훈도에게 명하여 잘 타일러서 기어코 방색하라 하고, 동래·부산에서의 답장 초고는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서 보냄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0월 19일 동부승지 신 장응일(張應一)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되 먼 곳 사람의 청이 일에 해가 없으면 그 소원에 곡진히 부응함이 옳고, 마필은 이전에는 혹 서울에서 내려보내기도 하였으니 자세히 살펴 조처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지난해 분에도 마필의 무역을 요구한 일이 있었으므로 서울에서 내려보냈는데, 부사 유심(柳淰)이 본조에 첩보하여 말하기를 서울에서 마필을 내려보내면 왕래하는데 폐가 있어 아직 내려보내지 않는 것이 매우 합당하니 예조에서는 보내지 말라고 알려서 한 푼의 폐라도 줄이라고 첩보하였거늘, 그 때 본조에서는 지금 이후로는 말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본부에서 사서 보내고 서울에서 내려 보낸 말은 즉시 되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제송(題送)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들으니 이전부터 마필을 서울에서 내려보내면 사복시의 이마(理馬)가 사례대로 데리고 한 길로 저쪽에 도착한 이후로 폐단이 많았는데, 본부에서 첩보한 내용 중에 이른바 한 푼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것을 가리킨 것이오며, 또한 그 마필이 내려간 뒤에 왜인이 사들이지 않으면 비단 공연히 갔다가 공연히 오는 폐가 있을 뿐 아니라 다소간 값을 지급하는 일도 낭비에 관계되는 지라, 이렇게 복계(覆啓)하오니, 전일에 본부에서 청한바와 같이 본도에 명하여 찾아 주게 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0월 21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 이일상(李一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10월 26일

동래부사 윤(尹)이 13일 성첩한 장계 내용 중 차왜 귤성정(橘成正)에 대하여 전례대로 접위관(接慰官)을 차출할 일을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거행할 계획이며,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일로 사람을 데리고 온 차왜에게 한 번 다례를 베푸는 일은 전에 이미 확정하였는데, 수령을 접위관으로 겸하여 베풀 것인지 알 수가 없음.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 향로(香爐)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일은 역관 이형남(李亨男)이 내려갈 때 이미 분부하였고, 접위관은 장계대로 겸차(兼差)하여도 무방하니, 이런 내용으로 해조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0월 23일 우부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11월 초3일

이번 11월 초2일 주강(晝講)[294] 때 **지사(知事) 심지원(沈之源)이 입계**하기를,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중 갑주(甲冑) 및 예복(禮服)과 같은 여러 도구들은 먼 곳 사람의 청원이니 방색하여 그들의 바람을 실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상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갑주는 비록 병기이니 전일 왜인 역시 우리나라 신하를 돌려보낼 적에도 이 물건을 보내었다."고 하였고, 특진관 허적(許積)이 말하기를 "갑주와 예복 및 악기 등의 물건은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방색하여 회계하였는데, 갑주는 병기이니 방색하더라도 할 말이 있으나, 예복과 악기 등의 물건은 일례로 방색하여 그들의 좋아하는 마음을 실망시켜서는 부당할 듯합니다"라고 하여, 상감께서 "이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상의하여 조처하게 하자"고 하였음.

임진(1652) 11월 초10일

동래부사 윤(尹)이 초4일 성첩한 장계. 방금 바친 역관 이형남(李亨男)과 훈도 김근행(金謹行) 등의 수본(手本) 내용. 방금 나온 비선(飛船)에 다시 사정을 물어보라 하신 분부에 근거하여 어제 왜관에 가서 차왜 등에게 저쪽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기별은 없고, 도주(島主)는 10월 21일에 이미 섬으로 돌아왔고, 명년 2월 초승에 정녕 에도로 되돌아 갈 것인데,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일이 매우 긴급하니 반드시 금년 내로 주조하여 주시되, 연호에 관한 일은 이미 도주가 바치는 것이라 칭하였으니 일본 연호를 쓰지 아니하면 예에 합당하지 않으나, 조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러하니 경안(慶安) 두 글자를 제거하고 계사(癸巳) 4월 20일이라고만 써서 주조하여 주시는 것도 합당하

294) 주강(晝講) : 조선조 어전에서 시행된 법강(法講)의 하나로 낮에 시행하는 경연(經筵).

겠고, 무역을 요구하는 마필 및 기타 각양의 물건은 모두 도주가 에도에 가서 새 대군(大君)에게 바칠 물건이니 바라건대 모름지기 일일이 속히 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필에 있어서는 나이는 대 여섯 살, 체구가 크고 잘 걷는 것을 무역하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말하여 왔다'고 하며, 바다 건너갈 역관도 곧장 도중으로 들여보내라는 뜻을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이일로 수본을 한다 하였음.

일본 연호에 대한 일은 역관 등이 잘 타일러 써서 주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저쪽의 사체를 알 만하며, 바다 건너갈 역관을 미리 먼저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이미 치계하였는데, 해조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향로에 글을 써서 주조하는 일은 다행히도 저들이 순종하여 저들이 말하는 대로 단지 계사년(1653) 4월 20일 8자만 써서 주조하여 주고, 마필은 이전의 분부대로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회이(回移)하되, 이른바 바다 건너갈 역관은 아마도 조위역관(弔慰譯官)인 듯한데, 먼저 문위역관(問慰譯官)을 보내기로 이미 확정하였으니 묘당(廟堂)의 지휘를 따라 속히 내려보낼 일로 사역원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1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11월 19일

동래부사 윤(尹)이 22일 성첩한 장계. 방금 접한 별견역관 이형남(李亨男)과 훈도 김근행(金謹行)과 별차 이상한(李尙漢) 등의 수본(手本) 내용. 어제 왜관에 가서 차왜와 안부를 문답한 뒤, 차왜 귤성정(橘成正)이 말하기를, '대군(大君)이 죽은 뒤 조선에서 마땅히 차왜를 보내어 조위(弔慰)하는 일이 있어야 할 터인데, 글 가운데 명백하게 거론하지 않았으나, 그 말단에 누누이 혀끝에 부친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차사를 청하는 한 가지 일이다. 또한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평성춘(平成春) 및 서수좌(恕首座)라는 이름의 사람이 중한 풍병(風病)을 얻어 침구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귀국의 의원 이주부(李主簿)를 들여보내어 사람을 살리도록 해 주시면 도주의 큰 다행이겠다'고 하였는바, 이른바 이주부는 곧 의원 이시찬(李時粲)인데, 일찌기 매매하는 일로 왜관에 왕래하다가, 왜인이 그에게 침술이 있는 것을 알고 감히 이렇게 간청하는 것임.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일에 대하여 차왜(差倭)에게 일본 연호는 결코 써서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한결같이 분부한 데로 타일렀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조선국에서 주조한 것이라는 등의 말을 쓰려고 하는 것은, 일본 풍속이 평소 다른 나라의 물건을 보배로 삼기 때문에, 후세에 전하여 그것이 조선의 공장(工匠)이 만든 것임을 알리게 하자는 것일 따름 별로 다른 의도는 없고, 또 이미 도주가 봉헌하는 것이라고 칭하고는 본국의 연호를 쓰지 않으면 참으로 매우 불가한데, 어찌하여 이렇게도 심하게 곡해하는가? 이말 뜻을 다시금 곡진하게 진달하여 달라'고 하였음.

소인 등은 이제는 다시 진달하기 어렵고 결단코 따라줄 뜻이 없음을 반복하여 타이르니, 차왜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선(飛船)을 보내어 도중(島中)에 알려서 그 회보(回報)를 기다려 처치할 일이거니와, 대개 주조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니, 한편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회보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잡물 구청에 대하여는 차왜가 말하기를 '마필과 서책 및 기타 잡물은 모두 대군 및 여러 집정들이 구하는 물건이니, 힘을 다해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오로지 이 일을 위해 나왔고, 물목을 써서 올린 지가 이제 이미 여러 날인데도 아직까지 가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수리〔鷲鳥〕는 꼬리와 깃이 14개가 있는 것이 가장 빼어난 것이라고 하기에 간절히 얻고자 하니, 이 연유를 상세히 동래 영감 앞에 진달하여, 앞의 사항을 이번 달 안으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속히 돌아갈 수 있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라'고 하였음.

소인 등이 답하기를 '구청하는 일은 우리가 서울에 있을 적에 이미 들어서 아는데, 그 중에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닌 것이 있고, 혹 생산되는 것이라도 지금 제 철이 아닌 것이 있는데, 수리〔鷲鳥〕는 잡기가 매우 어려워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차왜가 답하기를 '귀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니면 실로 어찌할 수가 없거니와, 그밖에 귀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면 아울러 무역을 허락하여 기일에 맞추어 돌아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제 이 차왜 귤성정(橘成正)이 나와서 구청하는 물건은 그 수량이 많고, 심지어는 악기(樂記), 제기(祭器) 등의 물건은 화본(畵本)까지 가져 왔음. 그 중 옥대(玉帶), 사대(絲帶) 등의 물건 및 육종용(肉蓯蓉) 등의 약재는 각기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타일러 방색하였더니, 귤성정(橘成正)이 말하기를, '이런 물건은 곧 새 대군(大君)이 보고자 하는 물건이니, 바라건대 어려워하지 말고 동래 영감 앞에 상세히 진달하라'고 하였기로, 동 물목을 아울러 수본후록(手本後錄)으로 하여 수본을 올린다 고 하였음.

조위역관(弔慰譯官)을 진작 내려보내라는 뜻은 전에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의관(醫官)을 보내달라는 청에 대하여는 극히 번거롭고 외람스럽지만, 먼 곳 사람의 청원을 한 번 그대로 부응하여 주는 것도 무방할 듯 하오며, 향로 등의 물건을 주조하는 일에 있어서 일본 연호는 결단코 써서 주조할 수 없다는 뜻으

로 이미 준절하게 물리쳤으니, 그 회보가 속히 오기를 기다릴 것이며, 들어갈 잡물을 미리 먼저 마련해 달라는 청은, 일의 형편이 그러하기에 한편으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마련하여 기다리게 할 계획이며, 전후로 구청한 물건도 얻기 어려운 물건은 이미 타일러 방색하였음.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물건은 해조에서 진작 거행할 일로 분부함이 어떠하오며, 본도에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은 순찰사에게 상의하여 찾아줄 계획이며, 유미원(有尾圓) 14매는 전일 별차 김시성(金時聖)의 사정을 물을 때 원선(圓扇)이라 수본(手本)하였기로 이렇게 치계하였는 바, 훈도 김근행(金謹行) 등이 사정을 물은 내용 가운데는 '꼬리 깃이 14매가 있는 수리〔有尾羽鷲鳥〕'라 하여 전일에 사정을 물은 것과 서로 어긋나기에, 얻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미 타일러 방색하였음.

동 회답 서계를 고쳐지어 내려보내는 일은 해조에 분부하시되, 이는 곧 일특송(一特送) 정관이 가져온 일이거니와, 동 왜의 원래 기한이 이미 닥쳐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으니, 회답 초고를 기일에 맞추어 내려보내 주시며, 주조의 일로 차왜 평성차(平成次)가 나올 때, 전훈도 최유립(崔裕立)과 별차 김시성(金時聖) 등이 사정을 물은 수본에는 일대관(一代官)이라 칭하는 자가 담당을 겸하여 나왔다고 하기로, 한 번만 다례를 베푸는 일을 전에 이미 치계하였사온데, 훈도 김근행 등이 사정을 물은 내용에는, 일대관이 아니라 별차왜라 하였는데, 이미 별차왜가 나왔다면 전례대로 봉진압물과 반종 등을 접대하는 규례가 있고, 본부에서 다례를 베풀어 행하는 절목이 있으며, 개시(開市)에 대한 서계를 가지고 온 차왜 평성우(平成友)에게 역관 노기현(魯起賢)이 사정을 물은 수본 내역에도 접위관을 별도로 정하는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전 훈도와 별차 등이 전혀 일을 알지 못하여 절절이 착오하였는 바, 극히 통탄스럽고 해괴함.

신(臣)도 이렇게 형편없는 무리들을 일찌감치 처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고사(古事)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이런 잘못이 있게 되었는 바, 극히 황공하오며, 귤성정(橘成正)이 청한 물목의 발기를 등서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조위(弔慰)하는 일은 전에 탑전(榻前)에서 이미 확정하였거니와, 의원 이시찬(李時粲)에 대하여는 저쪽에서 이미 간청하였으니 방색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보내는 차사의 원역(員役) 중에 차출하여 넣는 것도 무방할 듯하며, 향로 등의 물건은 차왜가 보낸 비선이 돌아온 뒤에 마땅히 주조하여 주되, 들어갈 잡물은 미리 먼저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뜻으로 해도에 분부하오며, 전일에 요구한 바의 마필 등의 물건은 해당 관서 및 본도에 명하여 방금 마련하여 진작 내려 보내는 일로 다시 분부하오며, 유

미원취조(有尾員鷲鳥)는 당초 장계 중에는 원선(圓扇)으로 단정하였다가, 본조에서 조사하여 물을 적에도 이전 이야기를 견지하여 곧바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답장하는 초고에 잘못됨이 있음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극히 해괴하다. 그 초고는 승문원으로 하여금 급급히 고쳐 짓게 하여 보내고, 이전의 초고는 주지 말고 도로 올려보내도록 할 것.

지금 이 귤성정 등이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종류가 매우 많아서 일일이 부응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저들이 이미 에도에 소용되는 것이라 말을 하며 차인을 보내어 무역을 매우 간절하게 요구하니, 좋게 교류하는 뜻에 있어서는 방색하여 그들을 실망시켜서는 부당하니, 본부에서 보낸 별단 중에서 점을 찍은 것은 본부에서 이미 방색하였다고 하므로, 점을 찍지 아니한 물건만 별단에 열록하여 계목에 첨부하고 입계하여, 해사 및 본도로 하여금 이에 의거하여 찾아 보내어 무역을 허락하게 하되, 그 중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거나 얻기 어려운 물건이 있으면 이는 타일러서 방색하게 할 것.

심의(深衣) 등의 여러 도구는 곧 예복이고, 기타 제기와 악기 등의 물건은 저쪽에서 이미 국가의 예악 문물의 성대함을 흠모하여 이런 청이 있는 것이니 상량하기에 무방하온지, 이는 예사로 매매하는 물건과 같지 않고, 갑주(甲冑)는 병기(兵器)에 관계된 것이고 또한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없는데, 이런 물건을 아울러 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하게 하실 것.

차왜 평성우(平成友)와 평성차(平成次) 등은 모두 서계와 예물, 그리고 거느리고 온 인원이 있는데 당초 장계에는 원역(員役)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평성차에 있어서는 원역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대관(一代官)으로 서계를 겸하여 받아왔기에 별도로 접대하는 일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온 장계가 이러하니, 평성우(平成友)의 압물 1인, 반종 2인에게 지급할 예단 및 평성차(平成次)에 대한 예단과 그가 거느리고 온 압물 1인, 반종 3인에게 지급할 예단을 아울러 마련하여 내려 보내주시되, 평성차에게도 하선연(下船宴)과 회환연(回還宴) 두 차례의 잔치를 평성우와 한 가지로 베푸는 일로 본부에 분부하실 것.

대개 왜인을 접대하는 일의 체면은 지극히 중요하거늘, 훈도와 별차 등이 문답할 즈음에 착오한 일이 절절이 이러하고, 수리〔鷲鳥〕에 있어서는 이제 저들이 말하지 아니한 원선(圓扇)을 잘못 지적하여 초고 중에 두 가지 물건으로 만들어 답하였다가 저들에게 웃음거리가 됨을 면치 못했으니, 참으로 그 죄가 적지 아니하여 그대로 둘 수 없거니와, 훈도 최유립과 별차 김시성 등은 왜관에서 변고를 일으킨 일로 바야흐로 나문(拿問)하는 도중에 있거니와, 동래부사 윤문거(尹文擧)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치계하여 면하기 어려운 실수가 있으니 추고하여 경계함이 어떠할지.

후록. 구무 물목

우황(牛黃) 1부, 호조로 하여금 의사(醫司)에 값을 주어 구하여 보내게 할 것.
갑주(甲冑) 5벌,
심의(深衣), 대대(大帶), 술띠〔絛〕, 백리(白履), 홀(笏)과 신발〔舄〕, 버선〔襪〕을 아울러.
조(俎), 궤(簋), 보(簠), 변(籩), 두(豆), 금(琴), 슬(瑟), 소(簫), 적(笛), 지(篪), 약(籥), 관(管), 훈(塤), 축(柷), 어(敔).
이상은 제기와 악기, 병기 등에 관계되는 중요한 물건이니 아울러 부응하는 일의 당부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되, 묘당의 복계에 당초에는 모두 허락하지 않는다고 확정하였는데, 그 뒤 연신(筵臣)이 입계한 바로 인하여 아울러 부응하기로 허락하였는데, 갑주는 비단 우리나라의 제작이 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평상시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기에 허락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고, 배교(环珓)는 우리나라에서 항상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에 찾아 보내지 못한다는 일로 타일러 방색함.

대추, 오미자(五味子), 호경골(虎脛骨), 호담(虎膽),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년보(朱子年譜)』, 『역학계몽(易學啓蒙)』, 『소학집성(小學集成)』, 『소학자훈(小學字訓)』, 이퇴계(李退溪)의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산법통종(算法通宗)』, 금선(金線) 50필, 면단(綿段) 30필, 화사주(花沙紬) 200필, 능(綾) 120필, 사릉(沙綾) 80필, 축릉견(縮綾絹) 100필, 홍전(紅氈) 50닙, 상인삼(上人蔘) 100근, 이상은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무역을 허락할 것.
봉소율관(鳳簫律管), 봉소형제생(鳳簫形制笙), 대우(大竽), 반홍(礬紅), 소우(小竽), 이상은 혹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거나 혹 어떤 물건인지 몰라서 찾아 보내지 못한다고 타일러 방색할 것.

순치 9년(1652) 10월 30일 좌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되, 의원 이시찬을 들여보내는 일은 저들이 규례 밖에 보내주기를 청하는 일이고 가볍고 쉽게 생각함이 너무 지극히 외람스러울 뿐 아니라, 교활한 왜인의 정상을 측량하기 어려운데, 뒷날의 변고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 병폐가 없겠는가. 이렇게 외람스러운 일은 감히 조정에 알릴 수 없고 또 변방의 신하가 보내어서는 안될 사람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여 방색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하심.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심의(深衣) 등의 여러 용구

와 제기, 악기 등의 물건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록 국가 예악 문물의 성대함을 흠모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도, 이는 평소에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니 굳이 가벼이 허락할 것은 아니고, 갑주는 곧 병기이니 더욱이 무역을 허락하여서는 부당하니, 아울러 말을 만들어 방색하여 다시 청하지 않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1월 초1일 우부승지 신 김(金)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구하는 심의와 악기, 제기 등의 물건에 대하여 묘당에서는 당초에 방색한다고 복계하여 파출(罷黜)할 적에 당시 대신이 진달하여 갑주 외에는 아울러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이미 조정하였는데, 각 해사로 하여금 각별히 정하게 만들어 보내게 하되, 무릇 물건을 예식대로 만들어 보내지 못하여 먼 곳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심의 제도를 알지 못하니, 혹 예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혹 예를 아는 집안에서 만든 것을 모방하거나 하여 반드시 예법 대로 만들 것. 이런 물건은 저들이 그 제도를 보고자 한다고 말을 하였으면, 배교(环珓) 및 악기 등의 물건은 비록 각기 한 건씩 만들어 보내고, 조와 변두 보궤 역시 두세 개만 만들어 주어도 무방하나, 저들이 환무(換貿)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면, 한 두 건만 얻고자 하는 뜻이 아닌 듯하고, 많이 주자면 너무 소략하게 하여 매몰차게 한 듯하여서는 안되겠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수량을 정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1월 17일 동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조(俎)와 변두(籩豆) 보궤(簠簋) 등의 물건은 저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 체제를 보고자 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또한 이는 예사로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니, 예조에 통기하여 찾아 보낸다는 뜻을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차왜에게 말하게 하는 일을 전에 이미 탑전에서 확정하였고, 환무(換貿)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어서 많이 지급할 필요는 없고, 각기 한 건씩만 만들어 내려보내어도 무방하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는 물건이 아니면 지어내어서 보낼 필요는 없으니, 이렇게 해조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순치 9년(1652) 11월 18일 우부승지 신 유(柳) 차지로 입계하여 회계대로 시행하라 하되, 해조로 하여금 당상이 친히 물품을 보고 검사하여 타국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하심.

임진(1652) 11월 23일

동래부사 윤(尹)의 장계. 이달 17일 접위관 양산군수의 이문(移文) 내용. 어제 차왜 귤성정(橘成正)에게 첫 번째 잔치를 전례대로 베풀고, 파하여 나올 즈음에 동 귤성정이 구청단자(求請單子)라고 바치거늘 동 단자를 받아 보내는 일로 이문한다 하였음. 동 차왜는 이전에도 이렇게 나올 때에는 전례에 구청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구청하는 일이 있고 그 수량이 너무 많아 일일이 부응하기는 불가하기로, 역관 등으로 하여금 참작 상의하고 수량을 감하게 하여 별지(別紙)에 기록하고 본 단자와 아울러 해조로 올려보내어, 그 중 본도에서 먹급(覓給)할 물건은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전례대로 부응할 계획임.

이 일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번 이 차왜가 구하는 물건은 동래부사가 이미 타일러 수량을 감하였는데, 이는 모두 어렵지 않은 물건이나 모조리 방색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였는데, 본도 감사와 동래부사가 상의하여 편의대로 찾아 주게 하는 일로 회이하되, 『의림촬요(醫林撮要)』는 호조에 명하여 교서관에 값을 주어 찾아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차왜 귤성정의 구청물목을 감한 목록

『의림촬요(醫林撮要)』 1질, 황랍(黃蠟) 20근, 사장부유둔(四張付油芚) 5번(番), 대유지(大油紙) 20장, 소유지(小油紙) 40장, 운암지(雲暗紙) 2권, 녹색지(綠色紙) 2권, 홍색지(紅色紙) 2권, 장지(壯紙) 5권

순치 9년(1652) 11월 24일 동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임진(1652) 12월 초4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요구하는 물건을 각기 해당 관서로 하여금 각별히 만들어 보내라는 일로 전에 이미 계하하였는데, 악기는 장악원(掌樂院)에서 만들어야 하는 바, 본 장악원은 형장(刑杖)으로 다스리는 아문(衙門)이 아니라서 각색 장인을 추착(推捉)[295]할 수 없다고 함. 이렇게 칙사(勅使)가 있는 때에 자그마한 각 관서에서 위엄 있는 명령으로 더욱이 추착(推捉)하여 부역(赴

295) 추착(推捉) : 죄인을 찾아서 잡음.

役)하게 할 형편이 아니고, 타국에 보낼 물건을 진작 만들지 못하거나, 혹은 정하지 않게 만들면 실로 타당치 못하기에, 호조(戶曹)와 공조(工曹)로 하여금 별도로 낭관(郎官) 각 1원을 그들로 하여금 함께 검칙하여 조작하게 하고, 악기 이외에도 그 밖에 만드는 물건도 또한 모두 호조와 공조에서 관장하는 것이니, 지금 이 대마도에서 구하는 잡물도 아울러 이들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일체로 관장하게 하여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속히 조작하게 하고, 본조에서 일일이 품질을 살펴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음.

임진(1652) 12월 11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방금 교서관(校書館) 제조(提調)의 이문(移文)을 접하니 왜인이 구하는 『의림촬요(醫林撮要)』를 별도로 색리(色吏)를 정하여 있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이 책은 본디 판본이 없고, 난리 이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활자로 인쇄국을 설치하여 인출하였는데, 그 때도 역시 드물었고, 난을 겪은 뒤로는 여염에는 전혀 보관한 자가 없어 극히 염려됨. 들으니 내의원에 있다 하는데, 본조에서 본원(本院)에 이문하여 보내게 하였더니, 내국(內局)에 있는 것으로 왜인의 구청에 부응하는 것은 사체가 미안하고, 이 책은 비록 드물지만 의관(醫官)들에게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만약 가격대로 지급하면 얻지 못할 리가 없다 하니, 호조로 하여금 양 의사(醫司)에 값을 주어서 사들여 보냄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이르기를 "알았다" 하였음.

임진(1652) 12월 14일

동래부사 윤의 장계. 이 달 초8일에 도부한 접위관 기장현감의 이문 내용. 어제 표풍인(漂風人)을 데려온 차왜 평성광(平成廣) 등의 하선연을 전례대로 베푼 뒤, 정관(正官)이 말을 보내기를 '도주(島主)가 명년 2월 내로 에도로 돌아 들어가야 하는데 전일에 무역을 요구한 마필을 진작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누차 진달하였는데, 근일 도내(道內)에서 들여보내는 말은 모두 체구가 작고 좋지 않아서, 이러한 말은 새 대군(大君)에게 바칠 수가 없고 오가는 데 병폐가 있으니, 이후로는 도내의 말은 들여보내지 말고, 조정에서 모름지기 이 뜻을 염려하여 가라월라(加羅月羅)나 유월라(留月羅)로 잘 걷고 체구가 크며 나이가 적은 것을 서울에서 잘 골라 신속히 내려보내어 무역을 허락하여, 이 달 내로 대마도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거듭 말하

거늘, 현감이 답하기를 '이는 내가 알 바 아니니, 마땅히 말하는 대로 치계할 것이나, 다만 도내의 말도 잘 골라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로되, 먼 길에서 몰고 달려온 나머지 여위어 보이므로 매양 물리치는 것인데, 설령 서울에서 내려보내더라도 길이 매우 멀어서 몰고 달려온 나머지 반드시 여윈 것이 있을 터이나, 어찌 물리치지 않을 줄 알겠느냐?' 이런 뜻으로 대답하고 파하였다는 일로 이문하였기로, 이 연유를 치계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전에도 마필의 무역을 요구할 적에 서울에서 내려보내면 먼 길에 몰고 달리느라 여위어서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한갓 오고 갈 적에 지급하는 비용만 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일에 본부에서 서울의 말을 내려보내지 않음으로써 한 푼의 민폐라도 덜자는 뜻으로 치계하였기로, 이번에는 본도에서 찾아주게 하였는데, 왜차가 본도에서 찾아주는 말을 누차 점퇴(點退)하고, 또 서울에서 내려보내라고 말을 하였는데, 본도에서 각별히 가려 주라는 뜻으로 본도감사와 동래부사에게 다시 행이하되, 만약 그 도내에서 찾아줄 수 없으면 급급히 치계하여 서울에서 내려보내도록 아울러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0년(1653) 12월 14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윤(尹) 차지로 입계하였더니, 본도의 보고를 기다릴 것 없이 서울에서 합당할 만한 말을 한편으로 찾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고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차가 당초에 말한 바대로 말 두 필을 전례에 의거하여 호조에서 값과 물자를 지급하고 사복시 및 평시서로 하여금 급급히 구하여 내려보내어 오래 머무르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일로 알림이 어떠할지.

순치 10년(1653) 12월 16일 동부승지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사(1653) 정월 초3일

동래부사 임(任)의 장계. 이달 25일 임진조 평의진(平義眞) 송사 정관 평성구(平成久) 등을 다례에서 상호 접촉할 즈음에, 정관이 누누이 하는 말이 말 무역에 대한 한 가지 일이었음. 대개 '오는 봄 2월 초에 도주(島主)가 에도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급급히 무역하여 가지 않아서는 안되겠기에 말을 무역하기 위한 차왜가 왜관에 머무른 지 이미 오래인데, 본도에서 오는 말은 모두가 쓰지 못하여 극도로 걱정되니, 따로 서울에서 사들여서 때에 미치지 못하

는 걱정이 없도록 바란다'고 간청하거늘, 신이 답하기를 '이 일은 본도 방백(方伯)이 이미 각관에 분부하여 근일에 제법 계속하여 내도하고 있는데, 합당한 말을 얻기 어려워 참으로 염려되니, 말하는 대로 또 방백에게 첩보하겠다'고 하였거니와, 그들의 말 뜻을 들어보니, 이는 도주가 새 대군(大君)에게 줄 물건이고, 본도의 말은 털 색깔과 재능과 품격이 합당한 것이 전혀 없으므로, 바라는 바가 서울에 달려 있으니, 전에 접위관의 치통(馳通)에 따라 장계한 말의 뜻을 따라 주기를 이렇게 감히 치계한다 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왜인이 요구하는 마필을 서울에서 찾아 내려보내는 일을 누차 재촉하였는데, 근래에 칙사(勅使) 행차로 시장 사람들이 관소(館所)에서 떠나지 않고 명을 기다리고 있기에 다른 일을 서둘지 못한다고 하니, 그 형편이 또한 그러하거니와, 다시 사복시 및 평시서로 하여금 급급히 구하여 많지 않은 시일 내에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계사(1653) 2월 초7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구하는 물건과 관련하여 전일에 계하한 단자 중에 이른바 배교(环珓)를 대뿌리〔竹根〕로 한다 하였는데, 옛날 시제(時祭)의 날을 받을 적에 쓰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제도를 알지 못하니 반드시 새로 지어내어 보낼 필요는 없으며, 신〔舄〕은 곧 면복(冕服)의 도구들인데 이는 만들어 주기가 미안하므로 만들지 않았음. 복건(服巾), 치포관(緇布冠), 비녀〔簪〕, 혁대(革帶) 등에 대하여는 저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므로 앞서 계하한 단자에 넣지 않았는데, 이는 심의(深衣)의 여러 도구에서 뺄 수 없는 것이므로, 한결같이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만들어 이제 내려보낼 때를 당하여 감히 이렇게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는 바, 내려보낼 물건의 별단(別單)을 다시 만들어 들이고, 또한 우황(牛黃)은 저들이 수량을 말하지 않았는데, 전자에 대충 다른 물건처럼 1부를 마련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우황은 그 값이 비록 귀하지만, 제기나 악기 등처럼 그 제도를 보려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1부만 보내는 것이 실로 매몰차기로, 다시 2부의 값을 의사(醫司)에 지급하고 3부의 수를 맞추어 보내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서 아마 적당할 듯하기로, 이렇게 해조에 분부하시고, 지금 이 구청하는 물건은 저들이 환무(換貿)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니, 우황 이외의 제기(祭器)와 악기(樂器), 심의(深衣) 및 갑주(甲冑)는 예조(禮曹)에 통기하여 찾아 보내라고 하였

으니, 이렇게 준비하여 차왜에게 언급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행회함이 마땅할 것이며, 악기(樂器) 등의 물건은 만약 잘 가져가지 않아서 혹 부딪쳐 상하면 파손될 염려가 있으니, 가져가는 금군(禁軍)에게 병조(兵曹)에 명하여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더니,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 하였음.

계사〔1653〕 2월 초8일

왜인구청물건(倭人求請物件)

보궤(簠簋), 1궤짝에 넣음.
변두(籩豆)와 조(俎), 1 궤짝에 넣음.
치포관(緇布冠), 잠(簪), 복건(幅巾), 심의(深衣), 대대(大帶), 술띠〔絛〕, 흑리(黑履), 혁대(革帶), 1함에 넣음.
홀(笏), 버선〔襪〕, 1궤짝에 넣음.
비파〔瑟〕 1궤짝에 넣음.
거문고〔琴〕 한 궤짝에 넣음.
축(柷) 1궤짝에 넣음.
어(敔), 진(篪) 1궤짝에 넣음.
훈(塤), 축대(柷臺), 1궤짝에 넣음,
어대(敔臺), 소(簫) 1궤짝에 넣음.
적(篴), 지(篪), 약(籥), 관(管) 1궤짝에 넣음.
우황(牛黃) 3부,
갑주(甲冑) 1부. 내하(內下)

계사(1653) 2월 초10일

동래부사 임(任)이 초4일 성첩한 장계. 방금 도부한 예조 관문 내용에 계하한대로 왜인이 구청한 말 2필을 마주(馬主)인 사노(私奴) 무남(武男)과 사노 승남(承男) 등이 데리고 가니, 도착 즉시 훈도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전해 주고 넉넉한 값으로 환무(換貿)하게 한 뒤 장계하라는 관문이 있었기로, 관문 내의 사연으로 타일러 들여주라고 역관 등에게 말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김근행(金謹行)과 별차 이상한(李尙漢)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서울에서 온 말 두 필 중 사노 승남의 말 1필은 눈 둘레의 색깔이 좋지 않고 또한 잘 걷지 못

하며, 또 사노 무남의 말 한 필은 재품(才品)은 비록 좋으나 나이가 많아 모두 합당치 않은데, 장래에 쓸 곳이 박두하였을 뿐 아니라 조정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내려보내었기에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데, 도리어 물려 보내는 것도 황공하기로, 부득이 사서 갈 계획이라 하거늘, 그 값을 매 1필에 값을 공목(公木) 2동(同)씩으로 정하거늘, 소인 등이 다시 말하기를 '일본 말 값의 고하를 자세히 알지 못하나, 각관에서 온 말을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모두 점퇴하여, 동래 영감이 해조에 치보까지 하여 천리 눈길로 서울에서 특별히 내려보낸 말을 이렇게 헐값으로 보는 것은 일이 매우 부당하다'고 십분 타일러서, 1필의 값을 공목 3동씩 합 6동으로 약정한 후 동 마필은 이제 이미 왜관 안으로 들여주었다고 수본하였음. 서울에서 온 말 2필을 이미 값을 정하여 피집(被執)하였는데, 신은 도리어 생각건대 왜인이 자잘하기 짝이 없어 이미 잡은 뒤에도 뒷말이 없지 않기로, 동 마주(馬主) 등도 짐짓 물러나 왜인이 발선(發船)할 때까지 머무르라 하였는데, 이 달 초4일에 준마구무차왜(駿馬求貿差倭) 귤성도(橘成道) 등이 서울에서 온 말 2필을 구무(求貿)하여 함께 싣고 당일 발선하여 들어갔기로 연유를 치계하오며, 마주(馬主) 등의 사람도 해조로 첩정(牒呈)하여 비로소 서울로 올라가게 한 일임.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 (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 (경성대 교수)
국역감수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위 원 : 최해군 (항토사학자)
〃 : 강대민 (경성대 교수)
〃 : 이규호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 홍연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釜山史料叢書 11
國譯 倭人求請謄錄(Ⅱ)

2004년 6월 20일 인쇄
2004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부산광역시
편 집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인 쇄 : 대원문화사 Tel. 244-5500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